지급결제 30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

| 금융결제원 30년사 |

1986-2016



창립 30주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금융결제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 그리고 금융이용 편의증진에 기여해온 금융결제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금융결제원 30년사』를 발간합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 위함입니다.

돌이켜보면 금융결제원 30년 역사는 우리나라 근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지급결제 전문기관으로 출범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고도화 · 선진화에 매진해 온 금융결제원의 노력이 밑거름 되어 오늘날 우리들은 다양한 금융거래와 금융정보조회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 ·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 진출도 꾸준히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글로벌 지급결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성공적인 30년 역사에 함께 해 오신 고객 여러분과 참가기관 그리고 우리원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주신 전 현직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과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금융결제원과 한국 지급결제제도의 성장과 발전 여정을 담은 『금융결제원 30년사』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결제원 원장 이 홍 모



"금융결제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금융결제원 30년사』를
발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창립 이후 30년간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고객 편의 제고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참가기관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혁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IT 융합, 스마트폰 보편화를 바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될 예정이고 SNS플랫폼 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기관도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인증, 블록체인(blockchain) 등 새로운 기술을 지급결제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 서비스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결제원 30년사』 발간이 금융결제원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흐름에 대비하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선포한 비전대로 금융결제원이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과 『금융결제원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금융결제원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급결제 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 주 열



"금융결제원의 창립 30주년과
이를 기념하는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금융거래의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등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이 전담하여 운영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도, 호주 등 외국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금융회사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디지털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을 선도하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중인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은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고 나아가 핀테크 기반 지급결제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금융결제원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 정 수

"금융보안원의 모태,
금융결제원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것은 그간 금융결제원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임직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책무 수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금융공동망은 금융 고객이 이용하는 핵심중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위주의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창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금융결제원 임직원 여러분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덕분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하루에 약 2,300만건의 금융거래, 72조원의 금액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금융결제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금융의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금융보안을 전담하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하게 되었으니 금융결제원이 곧 금융보안원의 모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금융산업은 핀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 환경의 등장에 따른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최고의 지급결제기관으로 우뚝 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여정에 금융보안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결제원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금융보안원 원장 최 창 언

"금융결제원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창립 이래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으며,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30년간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자금융, e서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 확충하고, 최근에는 IT혁신과 금융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핀테크 기반 뱅크월렛 서비스, 국가간 송금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 금융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지급결제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역량과 도전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천둥과 태풍을 거치며 과일이 익어가듯이, 모든 세월 속에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 땀과 정성이 배어있고, 이것이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할 단단한 공력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융결제원의 30년 공력이 IT혁명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하여 우리나라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관으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금융결제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창립 30주년을 서울외국환중개 모든 임직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권 희 진

축 사

태국(Thailand)



KFTC has grown into main payment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which plays key role in promoting banking and payment industry to be in the forefront with the most prominent of the electronic banking system. There are several notable developments in Kore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have taken place in recent years, and we can trace many of your remarkable achievements. Through the Asian Payment Network, KFTC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payment industry within the region. I wish KFTC will continu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Asian economy.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I believe KFTC will gain and remain the most successful electronic payment systems for the country through innovated, convenient and reliable payment services.
I appreciate the dedicated effort of President Heung Mo LEE, Deputy President SHIN DONG WON and all the staffs of your credible and beloved payment institution. Once again, I congratulate you on the 30th anniversary of KFTC.

| **Wanna Noparbhorn** Managing Director |

일본(Japan)



Congratulations on your 30th anniversary. It has been a delight to work with such dedicated and inspiring partner like KFTC.
KFTC's contribution has opened APN (Asian Payment Network) to a greater and broader range of potentials.
As the first non-ASEAN member since 2010, KFTC has demonstrated sincere commitment in APN, with focus on the area of cross-border fund transfer, as well as through its leadership role in the technology task force. Today, as we see KFTC serve as the first Vice Chair of APN during 2014-2016, I rediscover the fact that the efforts driven by KFTC enabled APN to grow from an ASEAN-exclusive payment network into a pan Asia-Pacific initiative.
As a fellow member of such grand venture, I believe that KFTC's forward-looking approaches will continue to promote further evolution of APN in the days to come.
I wish you many, many years of continued success.

| **Akira Yamagami** Head of Global Consulting Division |

중국(China)



UnionPay International congratulates KFTC on your 30th anniversary. We wish the staff and partners of KFTC continued success and all our best wishes for the future.

| **Shuan Ghaidan** CPO |

호주(Australia)



"On be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all of our employees, Cuscal wishes to offer its sincere and warmest congratulations to all KFTC employees on reaching the auspicious milestone of 30 years of operations. Cuscal is privileged to consider KFTC a friend and ally, and we hope that the mutual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mpanies will continue to deepen and prosper, and trust that the next 30 years will be filled with continued friendship, innovation and prosperity."

| **Sean O' Donoghue** CFO |

뉴질랜드(New Zealand)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KFTC and Paymark Ltd is a valuable one with being able to provide customers in both countries with various ongoing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and it's a working relationship that we look forward to developing and continuing.
We wish you every success in the future.

| **Mark Rushworth** CEO |

싱가포르(Singapore)



Congratulations on KFTC 30th Anniversary!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KFTC these past few years as in champion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Asian Chip Standard in the Asian Payment Network.
We wish you the best in the next lap!

| **Jeffrey Goh** CEO |

축 사

필리핀(Philippines)



Congratulations and happy anniversary to KFTC!
It is my pleasure to greet you as you celebrate your 30 years of successful operations.
This important milestone in your history is a testament to the commitment of and hard work put in by the KFTC Board, officers and staff through the years. These same commitment and hard work paved the way for the successful interconnection between KFTC and BancNet ATM networks in June last year. With this interconnection,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who have made the Philippines their second home and preferred business and leisure destination are able to withdraw cash through BancNet ATMs. Soon, Filipinos in Korea will enjoy the same convenience at KFTC ATMs.
We value our partnership highly and hope that it will expand and be more fruitful in the coming years together with our other partners in the Asian Payment Network (APN).
I wish you more success in your next 30 years. More power!

| **Aris Zafra** Coo & Vice President |

말레이시아(Malaysia)



"CONGRATULATION... On behalf of Malaysian Electronic Payment System (MEPS), it is my honour to extend our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KFTC on your 30th Anniversary"
Working with KFTC since 2011 has been a real honour and we value each and every transaction and deal. We aims to bring about closer integration between Malaysia and Korea's banking industries and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With your services, the community has gained a lot.
KFTC has always been on the top of the list for serving the community with your unselfish services with great leadership over this time. You have always kept customers satisfaction as your priority and have never resorted to any wrong means for any work.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relationship with KFTC and working together even more closely in the future.
We wish KFTC every success and all the best for the years to come.

| **Zulkanian Kassim** Group Managing Director |

말레이시아(Malaysia)



"On behalf of MyClear, it is my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KFTC on reaching 30 years of operation.
Since its inception in 1986, KFTC has remained steadfast in its goal to improve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the provision of world-class payment services, which contribute to innovation, business efficiency and touch the daily lives of all Koreans. We have confidence that KFTC will continue to evolve, embracing new technologies and modes of delivery, to ensure it maintains its relevance in an increasingly online and global world. We value our relationship with KFTC and wish you every success in the years to come."

| **Peter Schiesser** Managing Director |

인도네시아(Indonesia)



Happy 30th Anniversary KFTC
"May KFTC filled with Prosperity and Great Success In Financial Payment Service Industry."

| **Nawawi** Director |

인도네시아(Indonesia)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express my heartfelt congratulation to KFTC Board on 30th anniversary of KFTC.
KFTC is already the most prestigious institution of national payment agency in South Korea, and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one of the foremost payment solutions excellence provider in Asia. An outstanding national payment agency cannot be built overnight. KFTC's position as the pillar of South Korea's modern-day payment ecosystem was secured through the hard work and selfless devotion of visionary KFTC leaderships over the last thirty years. But from our collaboration in developing Indonesia – South Korea payment interconnection as members of Asian Payment Network (APN), I've seen over yesterday and today, KFTC is thirty years young, and, continuing to flex its wings, dreaming of an even brighter future, energetically moving forward, building on KFTC's remarkable history of institutional new chapter.
We look forward for our fostering long-term collaboration, and we offer our best wishes for your continued success.

| **Iwan Setiawan** President Director |

베트남(Vietnam)



It gives me a great sense of joy and admiration of your achievements. On behalf of the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Vietnam, I would like to extend our sincerest congratulations to entire of KFTC on the occasion of the company 30th anniversary. KFTC has become a flagship of financial payment system in Korea, a dynamic member of the Asian Payment Network (APN). NAPAS is very pround of the true partnership between us, a partnership built on trust and full support. It would be a great honour to work with KFTC and we value each and every transaction and deal. We look forward to enhancing our relationship with KFTC more closely in future. We wish you the best success in business and continuous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ayment industry.

| **Nguyen Tu Anh** CEO |

지급결제 30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

금융결제원 30년사

CONTENTS

발간사 002
축사 004

제1편 금융결제원의 설립과 발전 014

연혁화보 사진으로 보는 금융결제원 30년 016
제1장 금융결제원의 설립 028
제2장 설립 초기의 경영 및 사업활동(1986~1990) 035
제3장 경영 · 사업체제의 기반확립(1991~1999) 044
제4장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성장(2000~2009) 058
제5장 글로벌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도약(2010~) 085
POWER INTERVIEW 신동원 전무이사 110

제2편 국내 지급결제제도 발전사 116

제1장 지급결제제도 개관 118
제2장 지급결제시스템 유형 125
제3장 지급결제산업에서의 금융결제원의 역할 142

제3편 금융결제원의 조직과 경영 148

제1장 경영이념 및 목표 150
제2장 정관 152
제3장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 156
제4장 조직기구의 구성 및 발전 159
제5장 경영관리 166

제4편 금융결제원의 업무 220

제1장 어음교환업무 222
제2장 지로업무 237
제3장 전자금융업무 251
제4장 금융정보업무 267
제5장 IT업무 287
제6장 금융정보보호 및 지급결제리스크 관리대책 300
제7장 e사업 316

1986~2016

제5편 금융결제원의 비전 324

CEO INTERVIEW 이흥모 원장 326
제1장 신 비전 및 가치체계 330
제2장 대내 · 외 경영환경 및 금융결제원의 발전방향 343

부록 362

01. 금융결제원 소개 364
02. 조직도 366
03. 현 경영진 368
04. 역대 원장 370
05. 역대 임원 374
06. 정관 376
07. 사원 · 준사원 · 특별참가기관 380
08. 국제업무 및 해외사업 현황 382
09. 연표 386
10. 통계 398

m.kftc.or.kr

| 일러두기 |

구성

『금융결제원 30년사』는 총 5개의 편으로 나뉘어 "설립과 발전, 국내 지급결제제도 발전사, 조직과 경영, 업무, 비전" 등 역사적 기록부터 현재의 위상, 그리고 미래비전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서는 주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여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표기

1. 역사 기술의 객관성과 편의를 위해 사명과 조직명, 정부 부처의 명칭은 각 시대별로 당시의 명칭에 따랐습니다.
2. 문장부호, 띄어쓰기를 포함한 모든 표기는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랐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 법률명은 법제처 규정에 따라 꺾쇠(「 」)를 사용했습니다.
3. 전문용어 및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시 영문, 한자 등을 병기하였습니다.

I

제1편 금융결제원의 설립과 발전

연혁화보

제1장 금융결제원의 설립

제2장 설립 초기의 경영 및 사업활동(1986~1990)

제3장 경영 · 사업체제의 기반확립(1991~1999)

제4장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성장(2000~2009)

제5장 글로벌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도약(2010~)

1986~1990

금융결제원의 설립과 금융전산망의 구축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기존 어음 · 지로 사업을 계승하고
5대 국가기간전산망 중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대한민국 금융사 ≫

1969 — 1969. 10. 01.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설립

1984 — 1984. 05. 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창립

1986 — 1986. 06. 02.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1986. 05. 29. 한국은행, 당좌수표에 의한 공공요금 납부 허용

1987. 03. 06. CD공동이용시스템 실시계획 확정

1987. 07. 01. 주식매매체결 전산시스템 가동

1988 — 1988. 07. 01. CD공동망 본격가동

1988. 07. 06.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1989. 02. 01. 어음교환 R/S시스템 가동

1989. 04. 19. ARS공동망 가동

1989. 10. 25. 재무부, "외화콜시장 개방방안" 발표

1989. 12. 16. 타행환공동망 가동

1990

금융결제원 30년사 ≫



1969. 10. 01.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설립



1986. 06. 02.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기념식



1984. 05. 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창립 기념식



1988. 07. 01.
CD공동망 가동식



1989. 04. 19.
ARS공동망 가동식



1989. 12. 16.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가동식

1991~1995

경영 · 사업체제 확립과 금융공동망의 정착

경영사업체제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신설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금융공동망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대한민국 금융사 ≫

1991

1991. 10. 22.
주식장외거래중개실 개설

1992. 01. 03.
국내주식시장 개방(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허용)

1993

1993. 08. 12.
정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공포

1994. 12. 15.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 Wire) 정식 가동

1995

1995. 12. 29.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정 [1996. 01. 01. 시행]

금융결제원 30년사 ≫

1992. 03. 02.
SWIFT시스템 가동

1992. 08. 20.
사보 「금융결제원 소식」 창간호 발간

1993. 05. 27.
원가 제정

1993. 10. 06.
점외CD/ATM망, CD공동망에 접속

1994. 02. 04.
금융기관 공동코드 온라인 전송처리시스템 가동

1994. 04. 01.
부산지부, 지로업무분산처리센터 가동

1995. 06. 23.
금융전산망 무역자동화망 상호접속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1991. 11. 16.
역삼동 본관으로 이전



1992. 03. 02.
SWIFT 개통 축하연회



1993. 10. 08.
금융전산망과 점외CD/ATM망 접속 서비스 개시 기념식



1994. 04. 01.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 가동식



다른은행에도 자동이체 된다

30일부터…대출금 이자등 정기납부금 대상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출금 이자 등 정기 납부금을 다른 은행에 보낼 수 있는 자동이체서비스가 30일부터 실시된다. 자금까지 한 은행 안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이체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은행들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의 일괄전송 시스템과 연계해 오는 30일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은행에 불입금을 낼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신청만 해두면 자기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 예금통장이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다른 은행에 입일이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자동이체서비스 대상은 대출금 이자, 적금 불입금, 신탁 적립금, 각종 회비, 입치료 등 정기적으로 내는 일정 불입금이다.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3백원 정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래은행의 아무 지점에서나 납부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1994. 04. 30.
납부자 자동이체 실시



1995. 06. 23.
금융전산망 · 무역자동화망 상호접속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식

1996~2000

금융공동망의 확대와 부가통신사업의 실시

신규 공동망 구축, 수납장표의 정보화, 부가통신사업의 실시 및 금융공동망 확장을 통하여 국민의 금융 · 경제 활동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대한민국 금융사 ≫

1996

- 1996. 06. 11.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발표
- 1997. 11. 21. 정부,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 요청

1998

- 1998. 04. 01.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 1998. 11. 18. 금강산 관광 개시

2000

- 2000. 02. 16. 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금융결제원 30년사 ≫

- 1997. 06. 02. 뱅텔시스템 가동
- 1997. 12. 10. 지급결제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 1998. 05. 12. 지로업무 IPS 본격 실시
- 1998. 12. 02. 산본생활관 준공
- 1999. 07. 16. Y2K인증 획득
- 1999. 08. 07. 베트남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참여
- 2000. 08. 29. 인터넷지로 전략적 제휴
- 2000. 09. 18. 서울외국환중개(주) 설립



창립10주년 맞은
申復泳 금융결제원장

인터뷰

퓨터로 금융거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결제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전자결제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申원장은 금융결제원이 금융정보유통 원활화와 신용사회 정착 등 금융환경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기관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요금을 납부할 때 수납은행 창구에서 장표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은행지로인 「납부자 자동계좌이체제도」 보급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자금융 서비스 선도지향
금융전산망 정부연결 추진

『지난10년간의 변화가 2~3년 사이에 일어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분야에서 선도역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금융결제원의 申復泳원장은 최근 올해를 21세기 선진지급결제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

금융결제원은 민원EDI업무와 자금관리서비스(CMS) 등을 조기에 도입, 정착시키고 선진국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자지갑(IC카드) 공동망을 구축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금융전산망을 보험·증권업 등 관련 금융산업과 정부에까지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

<洪基泳기자>

1996. 06. 02.
창립 제10주년, 신복영 前 원장 인터뷰 신문 기사(매일경제신문)



1997. 06. 02.
뱅텔시스템 가동식



1998. 05. 12.
지로업무IPS 가동식



2000. 09. 18.
서울외국환중개(주) 설립



1999. 08. 07.
베트남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협약 조인식



2000. 08. 29.
인터넷지로 전략적 제휴 체결식

2001~2005

자율 · 책임경영체제 구현과 지급결제서비스 안전성 강화

자율 · 책임경영체제의 구현을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백업센터 구축 및 금융정보보호 업무 추진 등을 통 해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대한민국 금융사 ≫ **2001**

- 2001. 12. 27.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 제정
- 2002. 07. 01. 은행권 주 5일 근무제 시행

2003

- 2003. 02. 14. 금융감독원,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 발표
- 2004. 03. 2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 2005. 01. 27. 한국증권거래소(KRX) 출범

금융결제원 30년사 ≫

- 2001. 02. 09. 사업본부 · 팀제 도입
- 2001. 06. 15.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실시
- 2001. 07. 11. 건강보험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은행컨소시엄 기본협약 체결
- 2002. 12. 17. 금융공동망 원격지 백업시스템 가동
- 2003. 10. 27. 금강산 관광시설 내 전자결제시스템 가동
- 2004. 06. 25. B2B결제 및 보증지원 업무 협약
- 2004. 12. 06. CLS공동망 가동
- 2005. 05. 27. B2B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



2002. 12. 17.
금융공동망 원격지 백업시스템(한국전산원) 가동식



2001. 06. 15.
전국 최초 지방세 인터넷 수납 개통식



2002. 08. 30.
금융ISAC 1단계 침해 사고대응체계 구축 완료



2003. 10. 27.
금강산 전자결제시스템 개통식



2005. 03. 21.
CD/ATM 타행거래 서비스 시간 연장



2004. 12. 06.
CLS공동망시스템 가동식

2006~2010

금융환경의 변화와 IT기반 신규서비스 창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 금융환경에 대처하고자 각종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IT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였다.

대한민국 금융사 ≫

2006

- **2006. 04. 28.**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 **2007. 04. 02.** 한 · 미 FTA협상 타결
- **2007. 08. 30.**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추진

2008

- **2008. 09. 14.** 미국 3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 **2009. 05. 04.** 한국은행, 신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 **2009. 08. 04.** 증권회사, 지급결제 서비스 시작

2010

금융결제원 30년사 ≫

- 2006. 01. 02. VIS(시각표시물 표준) 선포
- 2006. 05. 15. 고객센터 가동
- 2007. 03. 14. 분당센터 준공
- 2007. 10. 08. 인터넷지로와 행정자치부 위택스 연동납부 실시
- 2008. 09. 25. USIM기반 CD, ATM서비스 업무협약
- 2009. 04. 22. IT업무지속성 계획(BCP) 국제인증 획득(BS25999)
- 2010. 06. 18.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2010. 06. 28. 어음교환소 개설 10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2006. 01. 02.
VIS(시각표시물 표준) 선포식



2007. 03. 14.
분당센터 준공식



2008. 04. 23.
인터넷지로 가입회원 400만명 돌파 기념 사은행사



2008. 07. 10.
금융투자회사 대상 특별참가 설명회 개최



2010. 06. 28.
어음교환소 개설 100주년 기념 전시회



2009. 08. 20.
지방세납부 행정안전부 협약 체결식

2011~2016

금융공동망의 국제적 확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해외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창립 30주년인 2016년에 미래 신 비전을 선포하고, 금융 · IT융합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사 ≫

2011
- **2011. 12. 26.**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2013
- **2013. 05. 08.** 2016 세계청산결제기구 (CCP12) 총회 개최

2014. 11. 10. 한 · 중 FTA타결

2015
- **2015. 01. 27.**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발표

2016
- **2016. 06. 30.**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외 4개 부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결제원 30년사 ≫

- **2011. 03. 02.**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 업무 실시
- **2013. 03. 19.** 뱅크월렛서비스 본격 실시
- **2014. 12. 05.** 국가간 송금서비스 베트남 개시
- **2015. 10. 29.** 계좌이동서비스 시연 및 은행권 협약
- **2016. 03. 03.** APN 총회(분당센터)
- **2016. 06. 14.**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 업무협약 체결
- **2016. 08. 30.**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개통



2011. 03. 09.
국가간 ATM서비스 베트남과 본계약 체결식



2011. 12. 22.
금융분야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특허청)



2011. 06. 22.
온누리상품권 결제시스템 구축 완료



2015. 10. 29.
계좌이동서비스 시연 및 은행권 협약식



2016. 08. 30.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개통식



2016. 06. 02.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01

금융결제원의 설립

1. 설립배경 및 경위
2. 금융결제원의 전신 기관

5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이라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전산정보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지급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자 금융결제원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다.

설립배경 및 경위

설립배경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한 전산정보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제, 사회 발전 또한 실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여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1986년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 출범, 지난 30년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 국민 금융이용의 편의 제고에 기여해온 금융결제원의 설립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 산업상황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산정보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산업 부문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크나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산정보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제, 사회 발전 또한 실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國家基幹전산망 구축 현황
88年까지 거미줄 行政電算網
住民·부동산·統計관리 활용
90年代후반엔 「홈뱅킹」실현

국가기간(基幹)전산망 구축 현황
[1986. 6. 16. 매일경제신문]

이 같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당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기술 진흥을 통한 정보화사회로의 조기 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1983년 "정보산업의 해"를 선포함에 이어 「정보산업육성법」 제정, 전산망조정위원회 설치, "국가기간전산망 계획" 발표 등 일련의 시책들을 속속 수립, 추진하였다. 그중 금융결제원 설립에 직접적 근거가 된 시책이 바로 "5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었다.

5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 · 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금융결제원 설립은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에 해당하였다. 또한 금융전산망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 · 채무 등 자금 이체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었다.

1985년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통화에서 현금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43.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이유는 현금을 선호하는 전통적 관습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금 이외에 개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금의 사용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부담과 금융기관 지급결제 처리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산정보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지급수단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 사회적 당위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관련 기관과의 전산망 구축을 통해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급결제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금융결제관리원 현판식'
박성상 한국은행 총재, 김재윤 초대원장,
정인용 재무부장관(왼쪽부터)
[1986. 6. 2. 금융경제 6월호]

금융결제원의 출범

금융결제원이 설립되기까지의 주요 준비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면 1985년 5월 당시 총무처장관이 "금융전산망 추진기구 설립원칙"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설립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1984년 12월 금융기관의 전자계산조직 도입에 관한 협의권한이 금융전산위원회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됨에 따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1985년부터 1986년 4월까지 동 추진기구 설립방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1986년 4월 18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회에서 금융결제관리원 설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됨으로써 설립준비작업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당시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정관변경(안), 은행지로관리소의 인원, 재산 및 업무이관에 관한 협약(안),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전국은행연합회 간의 신용정보사업 이관에 관한 협약(안), 금융결제관리원 공식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그리고 금융결제관리원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을 위한 가지급금 출금 승인(안) 등이었다.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안)은 관련법규에 따라 당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재무부는 1986년 5월 19일자로 이를 일부 수정하여 허가하였다.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회를 개최하여 지로업무 및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이 추가된 1986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사업추가와 은행



金融決濟管理院 發足 案內

貴 機關(業體)의 日益繁昌하심을 仰祝합니다.

金融電算網을 構築運營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支給決濟制度를 더욱 發展시키고자 從前의 社團法人 全國어음交換管理所와 社團法人 銀行지로管理所를 統合하여 1986. 6. 2字로 社團法人 金融決濟管理院이 새로 發足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倍前의 指導와 聲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部署別 事務室 配置및 連絡電話番號는 다음과 같사오니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本館 : (任員室, 總務部, 어음交換部, 監査室)
중구 명동1가 4 - 1
대표전화 : 756 - 2440

別館 : (지로業務部, 金融電算推進部, 電算部)
강남구 삼성동 171 - 2
(한국감정원 빌딩)
대표전화 : 556 - 3550

1986. 6.

社團法人 金融決濟管理院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안내문
1986. 6.



금융결제관리원 명칭 변경(금융결제원)
신문광고
1989. 11. 1.

지로관리소 직원 인수 등의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198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금융결제관리원 임원선임(안),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에 따른 수정의결(안)을 의결하였다.

이같은 준비절차를 거쳐 마침내 1986년 6월 2일 금융결제관리원은 재무부장관을 비롯한 금융계 주요인사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한 새로운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공식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통합된 은행지로관리소 해산에 따른 청산작업은 금융결제관리원장을 청산인으로 선임, 1987년 3월 6일 종결하였다. 이어 1989년 11월 1일 금융결제관리원의 명칭을 금융결제원으로 변경하였다.

설립 당시 주요사업과 조직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 정관상 주요사업은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 은행지로에 관한 사업,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금융기관 공동전산사업의 개발추진 및 처리,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조사연구업무,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이었다.

설립 당시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4개 사원은행 대표자로 구성되는 총회와 총회 위임사항 및 각종 사업 규약 · 규정의 제정과 개폐를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었다. 아울러 총회와 이사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위임사항을 의결하는 사업별 5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실무조직으로는 5부 1실 5과 6담당 40개 지부를 두었다.

금융결제원 경영진으로는 초대원장에 김재윤 한국은행 감사를 선임하였다. 전무이사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고광직 소장, 상무이사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구본식 부소장 및 주형돈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장을 각각 선임하였다. 감사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하소곤 감사가 승계하였으며, 1986년 7월 18일에는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을 담당할 권영달 상무이사가 새로이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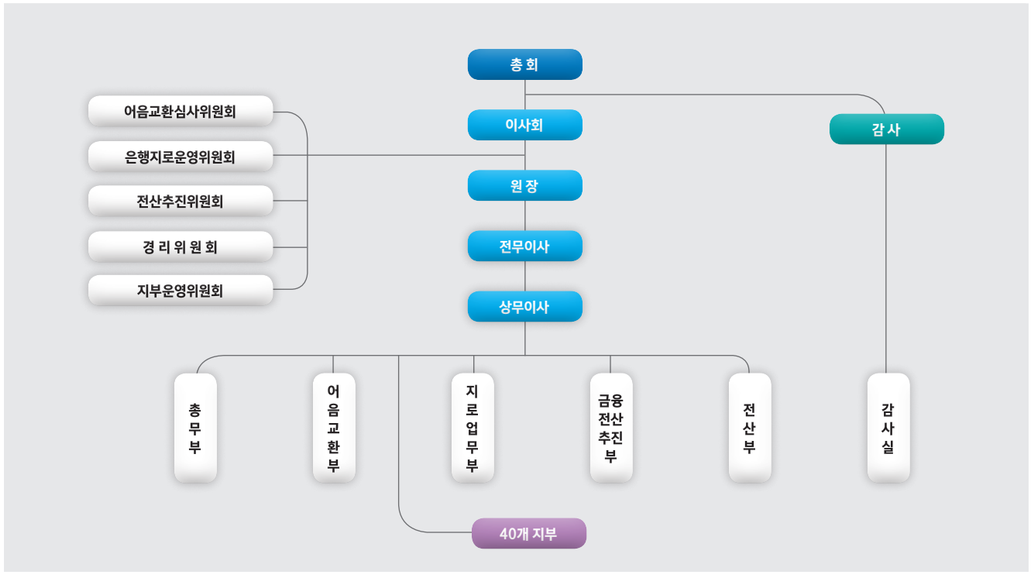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의 조직구성원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263명과 은행지로관리소 275명을 합하여 538명으로 출발하였으며, 설립 당시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연석회의
1988. 12. 5.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당시 조직도





전국어음교환관리소 현판식
1984. 5. 10.

금융결제원의 전신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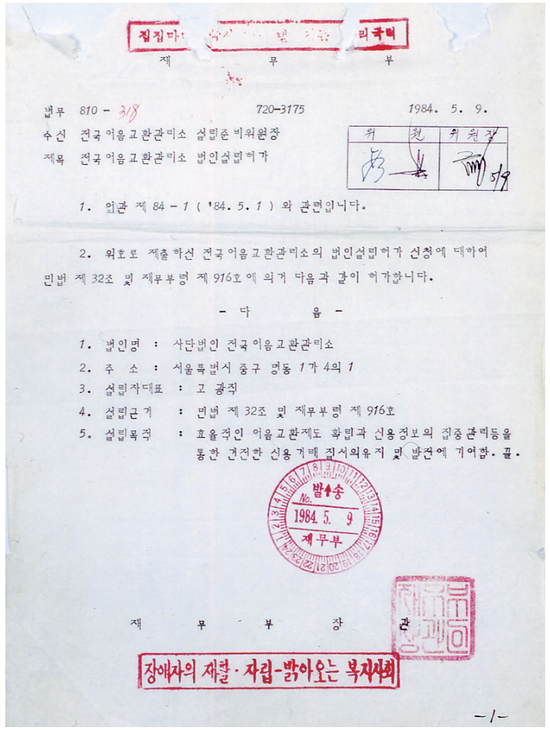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은행지로관리소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신기관 중 하나로 1984년 5월 10일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 신설되었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의 확립과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음교환소의 설치 · 운영, 신용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 · 신설된 것은 당시 정부의 금융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침과 관련하여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1984년까지는 여수신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는 전국은행연합회 내의 임의단체인 대한금융단 총회에서 정하는 「금융단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 면에서 자율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금융자율화를 주도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의 설립이 필요하였고, 당초 전국은행연합회의 주요업무 중 통화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음교환사업과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분리, 전담할 새로운 기관으로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설립된 것이다.


재 무 부

법무 810 - 318 720-3175 1984. 5. 9.
수신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설립준비위원장
제목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법인설립허가

위 원 장 | 위 원

1. 업근 제 84 - 1 ('84. 5. 1) 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제출하신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 32조 및 재무부령 제 976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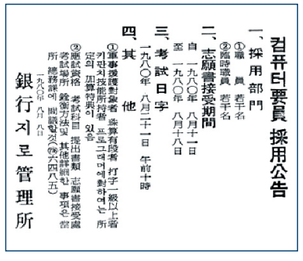
1. 법인명 :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의 1
3. 설립자대표 : 고 광직
4.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및 재무부령 제 976호
5. 설립목적 :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확립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등을 통한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의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 끝.

발신송 1984. 5. 9 재무부

재 무 부 장 관

장애자의 재활 · 자립-밝아오는 복지사회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법인설립허가 통지서
(재무부)
1984. 5. 9


컴퓨터要員 採用公告

一、採用部門
①電 算 員 若干名
②電算事務員 若干名

二、志願書接受期間
自 一九八〇年 八月十一日
至 一九八〇年 八月十八日

三、考試日字
一九八〇年 八月二十一日 午前十時

四、其 他
①電算有關學科 卒業者 및 同 二級以上者 및 電算事務에 經驗이 있는 者 中 學識과 技能이 所定의 水準에 該當하는 者
②應試資格 考試科目 提出書類 考試場所 合格者發表 其他詳細한 事項은 本院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銀行지로管理所

은행지로관리소 컴퓨터요원 채용공고
[1980. 8. 8. 경향신문]

은행지로관리소

은행지로관리소는 1975년 10월 1일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로 발족, 197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되면서 금융결제원 설립 이전까지 지로업무를 전담해온 기관이었다.

금융기관전자계산소의 모태는 1969년 10월 1일 임의단체 성격으로 발족된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였으며, 당시 전자계산본부는 금융기관의 사무기계화를 위한 연구와 개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계산처리, 전자계산조직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전자계산요원 양성과 교육, 금융기관 전자계산기 설치에 관한 협의, 기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에서 지시하거나 여타 목적사업에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는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1975년 4월 1일 해체되었고, 관장 사업은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 내 전자계산부로 승계되었다. 그리고 1975년 10월 1일 당시 재무부의 금융업무 전산화지침에 따라 "금융업무 전산화 육성계획 수립과 실시, 금융업무 전산화 공동개발, 금융기관 직원의 전자계산 교육훈련,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과 자료처리, 계좌이체제도의 계획 · 실시 및 조정, 기타 필요한 사업을 담당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전자계산소가 정식 발족하였다.

1977년 6월 22일 금융기관전자계산소는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되어 지로제도의 연구개발, 지로제도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지로업무의 계획 · 실시 및 조정, 금융업무 관련 신용정보자료 처리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지로대상 업무는 금융결제원 설립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기요금 수납이체업무, 가계당좌 예금거래를 위한 급여계좌 이체업무, 정부공사대금, 물품구매대금과 같은 국고세출금의 이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의 설립

·1986년 6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1989년 11월 1일 금융결제원으로 개칭

전국어음교환관리소

1910. 7 사설 경성수형관리소 개설
1928. 1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1975. 4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개칭
1984. 5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발족

은행지로관리소

1969. 10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설립
1975. 4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통합
1975. 10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발족
1977. 6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

02

설립 초기의 경영 및 사업활동(1986~1990)

1. 시대적 환경
2. 경영 ·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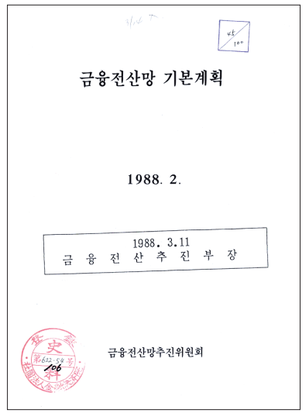
1986년 6월 공식 출범한 금융결제원은 전신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은행지로관리소에서 운영해오던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의 원활한 실시와 함께 같은 해 7월 금융전산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전산망 구축 · 운영사업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환경

국민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자금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밑받침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 및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 국내 은행들의 전산화 수준은 본 · 지점 간 온라인망 구축, 운영 및 과목별 온라인 업무개발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후발 은행들의 경우 창구업무 전산화를 점차 확대해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보통신산업과 전산정보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에 따른 효율적 금융서비스 제공 필요성 및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증진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대, 각 은행 간 업무네트워크화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었다. 특히 국민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자금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밑받침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 및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가의 기간 인프라로서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활력을 제고함은 물론 금융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1988. 2.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기념식
정인용 재무부장관 치사
1986. 6. 2.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과 각 경제주체의 금융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핵심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환경의 변화 및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 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어음, 지로 등 효율적 지급결제제도 확립과 정보유통의 원활화,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융결제원이 설립된 것이다.

경영 ·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 IT 인프라가 미흡하고 각 은행의 전산화 수준도 낮았던 우리나라 실정에서 단기간 내에 제반 시스템을 새로 구축, 운영하기까지는 경험 및 기술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어야만 하였다.

1986년 6월 공식 출범한 금융결제원은 전신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은행지로관리소에서 운영해오던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의 원활한 실시와 함께 같은 해 7월 금융전산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전산망 구축 · 운영사업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신설기구로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경영관리 부문을 비롯하여 업무체제 면에서도 새롭게 정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고, 제도와 시스템의 개편 및 혁신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았다. 조직체제 및 문화, 근무환경 면에서도 설립 초기에는 상당한 변화와 어려움이 뒤따랐고, 임직원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만 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금융결제원이 전담, 추진하였던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당시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 IT 인프라가 미흡하고 각 은행의 전산화 수준도 낮았던 우리나라 실정에서 단기간 내에 제반 시스템을 새로 구축, 운영하기까지는 경험 및 기술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이 제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전산망 구축 및 지급결제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와 금융기관들의 협력 그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金融전산망 순조롭게 진행
他行換장치 年內 가동
90년 가정 企業 연결 종합서비스

금융전산망 구축 관련 신문 기사
[1989. 2. 1. 매일경제]

어음교환 · 지로업무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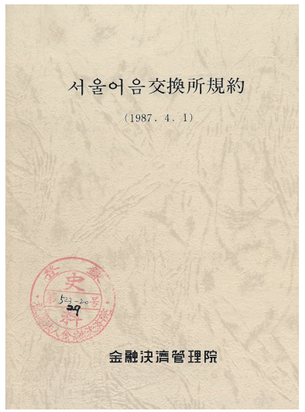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설립 초기 상시 지속사업으로 어음교환, 지로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사업의 저변확대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어음교환사업에 있어서는 어음교환 광역화를 목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강릉 등 전국 6개 권역 40개 어음교환소에서 상호교환을 실시하고 지부조직의 신설도 꾸준히 추진, 1986년 10월 태백지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말까지 평택, 홍성, 공주, 논산지부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였다. 또한 신규 시 · 군지역의 어음교환사업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호교환지역 확대에 주력하였다. 1985년 어음교환량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도입, 실시한 어음교환 분산처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어음교환 통계업무의 전산화 등 사무자동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미결제어음통보제도의 토요일 확대실시, 타지자기앞수표 등의 교환결제제도 개선, 정액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의 대지급제도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의 어음 · 수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88년에 거래정지처분제도의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가계수표 발행인에 대한 통지범위를 전 참가은행으로 확대하고, 사고신고담보금제도를 개선, 정당한 어음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담보금제도 운영 및 지급정지가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1989년에는 서울지역 어음교환 물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고자 야간교환은행 참가기준을 전체 교환장수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듬해에는 교환회부 대상어음에 은행신용카드 차액결제대금영수증과 현송금영수증을 추가하였고, 부도관리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콜거래 및 외환거래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자금시장의 활성화를 기하



금융결제관리원 초창기에 발간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1987.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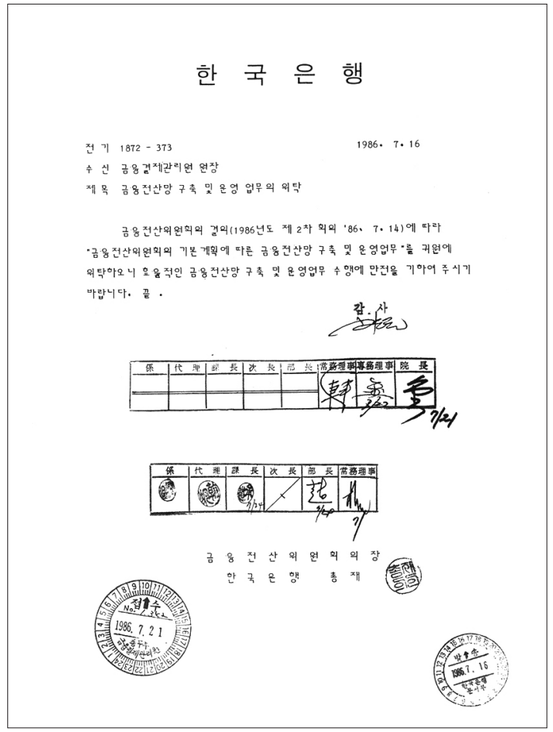
어음교환 R/S(Reader/Sorter)기 전경

고 콜자금 공급은 한국은행 차액결제방식으로, 콜자금 상환은 어음교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와 업무개선도 추진하였다.

한편 지로업무에 있어서는 기관 통합에 따라 40여 개 지부를 통한 지로실물의 수납 및 본 · 지부 간 자료송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로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에서의 지로 이용기관 확대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지방세의 지로제도 편입, 대상서비스의 실시지역 확대 등 사업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1988년부터 통합공과금 수납이체업무의 실시지역을 서울 전역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확대하였으며,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및 정액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장표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장표 건수를 R/S(Reader and Sorter, 자동판독분류기)기로 집계하도록 하였다.

1989년에는 자동계좌이체업무를 온라인 출금 가능한 전국 모든 점포에 확대하는 한편 지로 입출금자료를 MT(Magnetic Tape, 자기 테이프)화하고 통합공과금업무에 Reject Re-Entry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통합공과금업무를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명 이상인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업무에 서울시 주차위반과태료 수납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지방세 Reject Re-Entry시스템을 도입, 가동하는 등 제반 업무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하였다.



한 국 은 행

전 기 1872 - 373 1986. 7. 16

수 신 금융결제관리원 원장

제 목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금융전산의원회의 결의(1986년도 제2차 회의 '86. 7. 14)에 따라 '금융전산의원회의 기본계획에 따른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영업무'를 귀원에 위탁하오니 효율적인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영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감 · 사

係 代理 副長 次長 部長 常務理事 院長

係 代理 課長 次長 部長 常務理事

금 융 전 산 의 원 회 의 장
한 국 은 행 총 재

1986. 7. 21

1986. 7. 16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문서
(금융전산위원회)
1986. 7. 16.

금융전산망 구축사업 추진

1986년부터 추진된 금융결제원의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기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개발, 도입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정비 · 확충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금융관련 정보유통의 원활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결제원의 전산개발인력은 어음교환과 지로업무시스템 개발 등 주로 배치(Batch)업무에 대한 경험만 있을 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 간 금융전산망의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에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또한 1987년까지도 일부 특수은행에서는 개별 점포의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업의 기반 여건도 미비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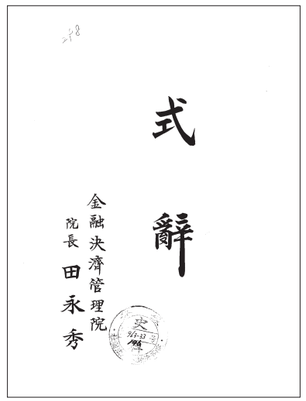
하지만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은 당시 국가 사회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대과제였고 금융결제원에 부여된 핵심사명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반드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서 CD(Cash Dispenser : 현금자동인출기)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금융결제원 설립 직후인 1986년 7월 금융전산위원회로부터 시스템 개발을 위탁받음으로써 추진된 사업이었다.

금융결제원은 인력,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작업들을 하나씩 추진하며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외국의 CD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CD개발팀 구성 및 교육, 현금카드 표준화 및 카드발급기 공동이용방안의 수립,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진 위촉 등 제반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써 사업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式辭
金融決濟管理院
院長 田永秀

CD공동망가동식,
전영수 前 원장 식사(위부터)
1988. 7. 1.



타행환공동망 시스템 가동식
1989. 12. 16.



타행환공동망 서비스 흐름도 설명
양학규 前 상무(당시 금융전산추진부장)
1989. 12. 16.

1987년에는 CD공동이용시스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함과 아울러 사업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 농협 외 10개 은행 11명의 인력이 금융결제원에 파견 근무하며, 인터페이스 접속방법, 현금카드 사양 등 CD공동 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이하 CD공동사업)의 표준화 · 통일화작업을 본격 진행하였다. 또한 CD공동사업 관련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제정하고 CD공동이용시스템 기본설계서 작성 및 시스템 설계를 완성함과 아울러 Turnkey Base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나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마침내 1988년 7월 CD공동이용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7개 시중은행 및 5개 국책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 지방은행의 모든 점포에도 확대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결제원의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은 이후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갔다. 1987년 9월에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자동응답서비스(Automatic Response Service : ARS) 공동운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1년 7개월간의 작업 끝에 1989년 4월 서울지역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1단계 ARS 공동운용시스템을 가동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듬해에는 ARS 공동업무를 10개 지방 도시로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타행환공동망 구축사업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이듬해 말 서울소재 8개 은행 및 5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타행환공동망서비스를 실시하는 성과도 이루어냈다.

금융결제원은 이처럼 설립 초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유 지속사업인 어음, 지로업무는 물론 금융전산망 구축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를 증진하였다.

경영기반의 조성

금융결제원이 전담사업인 어음교환과 지로업무,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계획 및 목표의 설정, 관련 제도와 업무 · 조직 시스템의 정비, 사업거점 확보 등 경영전반의 기틀을 다지는 일 역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우선 제도 및 조직의 정비를 위해 설립 직후부터 정

Tip Story

前 전무이사(삼성SDS, LG CNS 상임 고문) | 조이남

금융전산망 개발 초창기의 잊지 못할 이야기



1986년 창립 때 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금융결제원에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금융전산망 개발 초창기의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CD공동망서비스 구축 이야기이다.

CD공동망은 1988년 4월,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7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한미)과 5개 국책은행의 서울 소재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다. 일본산 CD기가 대부분이던 당시 CD공동망 개발 때 ISO규격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나라 CD기도 채택 가능토록 했고, CD기 대당 가격도 US 2,4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떨어져 금융권 전체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도록 했다. 한편 당시 CD공동망을 개발하던 한국컴퓨터의 직원 한 명이 철야 근무 후 귀가 중 사망하는 애석한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본인 또한 CD공동망 서비스를 시행하는 날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죽음의 계곡에서 헤매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현재까지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타행환공동망 재개발 관련 일화이다.

당시 타행환공동망 SW는 하루 처리건수가 25만건을 상회하면 처리지연 및 미완료거래 발생으로 재개발이 필요했다. 우리 원 공동망 SW는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는 의욕으로 재개발에 들어갔다. 그런데 재개발한 SW로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날 프로그램 정리 중의 실수 때문에 다음날 타행환공동망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해 고객들이 송금 의뢰한 수천 건이 미입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녁 9시 TV뉴스에는 "금융결제원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이 다운되었다"고 방송되었다. 뉴스를 듣고 황급히 회사로 오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무부 및 청와대 등 수많은 기관에서 전화가 쇄도했다. 외부 전화를 모두 단독 응대하면서, 직원들은 사고 해결에 집중하도록 했다. 은행 전산부장들에게도 응급처리(은행별 처리 데이터를 분류, 집계 후 자기테이프에 담아서 은행별 전산부로 송달하고 은행들은 자기테이프의 데이터를 검증하여 수취인 계좌로 입금)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사태를 정상화하고 원장에게 경위 보고 중 꾸중을 들으면서 개발 최고책임자인 본인과 담당자들 또한 많이 곤혹스러웠다. 이를 계기로 개발 최고책임자로서 SW의 중요성과 프로그래머에 대한 배려, SW 재개발 시 장애 대비 백업시스템의 준비 필요성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ARS공동망에 관한 이야기이다.

ARS는 사람을 대신해 전화가 응대 해준다는데 매력이 있었다. 동 서비스 시행 후 얼마 되지 않는 때였다. 명동 미도파 백화점(현재 롯데 백화점) 앞에 위치한 어느 시계포에서 원장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8백만원)가 들어왔다. 시계를 팔고 받은 수표를 ARS수표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니 "정상수표"라 하여 받았는데 "분실처리된 사고수표"여서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확인결과 은행에 사고 신고하고 이를 사고원장에 기록할 때까지의 시간차로 생긴 허점이었다. 만일 ARS 응대 내용이 "정상처리 수표입니다."로 끝맺을 것이 아니라 "정상처리 수표이지만 은행에 입금할 때 까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로 안내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지금은 동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쨌든 시스템 개발과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허점이 민사상의 배상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원인에게 자세한 경위와 원인을 알려주고 대법원 판결에서 금융결제원 잘못이다라는 제권판결이 나오면 변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 후 민원인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동 건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이행 전에 네거티브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訓和誠意
院人至創

원훈
1986. 7.

관 등 41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기구통합에 따른 법적 ·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제반 조치를 추진해 나갔다.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시스템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반 업무를 분장, 조정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실적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또한 조직의 경영이념과 정체성(Identity) 정립을 위해 1986년 7월 금융결제원 원훈을 "인화 · 지성 · 창의"로 정함과 아울러 심벌마크 및 로고, 영문명칭(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 KFTC) 등을 확정하였으며, 1990년에 이르러서는 CI(Corporate Identity)를 재정비하고 심벌마크 및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효율적 업무추진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체제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88년 3월에는 「업무분장규정」을 제정, 조직의 업무체계를 보다 명확히 수립, 운영함과 아울러 직제규정도 개정하여 각 부서의 세부 업무분장 및 직제운영을 금융결제원장이 통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각종 제재금 · 과태금의 적립방안이 총회에서 승인, 확정되었다. 이는 기본재산의 취득자금을 사원은행이 출연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과도한 세금이

"K.F.T.C." 영문 명칭의 제정 경위와 의미

제 정

금융결제원 초대원장인 김재윤 원장이 제정

제정시기

1986년 9월

명칭 의미

○ Financial Telecommunications(Financial messaging services for communicating)
- 금융거래를 온라인 리얼 타임 또는 온배치의 형태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든 단말기를 이용
  - 참고사례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Telecommunications
- 대화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처리
  - CD/ATM, 뱅킹터미널, PC, 모바일폰 등

○ Clearings
- 차액 또는 총액(Gross Settlement)으로 결제, 지로 및 어음교환은 차액결제

○ Institute : 법인,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포괄적으로 수용

출처 : 조이남 前 전무이사 인터뷰


◇국내금융기관의 제열회사 현황

통합 콜시장 仲介기관
金融 결제관리원 지정

'통합 콜시장 중개기관 금융결제관리원 지정' 신문 기사
[1989. 10. 3. 매일경제]



외화콜거래중개업무개시
1989. 12. 1.

부과되므로 각종 제재금 및 과태금을 적립, 기본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신설기구로서 구성원들이 효율적,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거점을 확보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금융결제원은 설립 당시 본관 사무실의 경우 중구 명동 1가 4-1번지 전국은행연합회 건물 구관 5개 층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지로업무부와 금융전산추진부는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1987년 12월 어음교환부와 콜거래실을 제외하고 임원실, 총무부 및 감사실 등을 포함한 본부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번지 소재의 한국감정원 빌딩으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분산되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1991년 11월에 이르러서는 삼성동 한국감정원 빌딩과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 건물 등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실을 현재의 역삼동 본관 건물로 통합, 이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한 사업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은 경영관리 효율화, 조직 및 업무운영체제의 합리화, 지급결제서비스 선진화 등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목표도 마련, 적극 추진하였다.

1989년에는 어음교환부 내에 자금중개실 신설, 지부운영관리를 위한 모지부제도 도입 등 합리적 조직구조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중기발전계획(1989~1991년)"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정관을 변경, 설립목적사업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다.

1990년 7월에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합리화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경영기반의 조기 확립방안 등 조직 발전대책을 모색하였다.

03

경영 · 사업체제의 기반확립(1991~1999)

1. 경영체제의 확립
2. 사업기반의 구축 및 확대
3. 부가통신사업(VAN서비스)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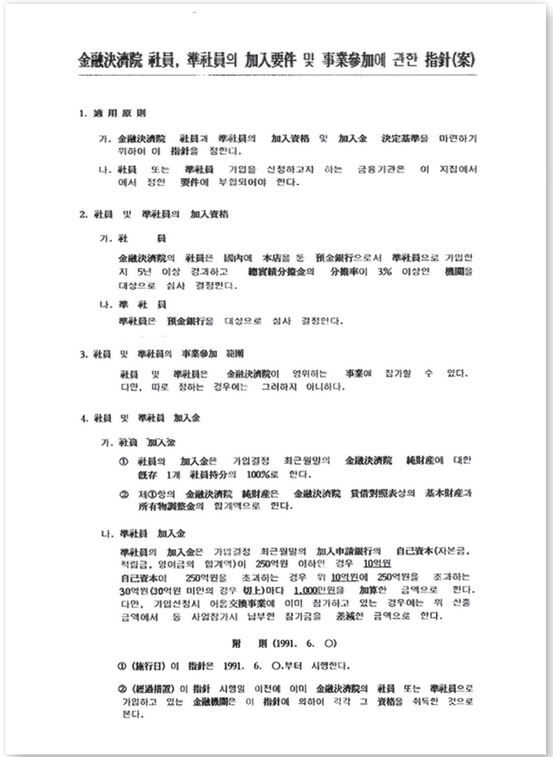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1990년대에 이르러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전산망의 성공적 구축 경험 등을 토대로 지속적 성장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결제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 및 사업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경영체제의 확립

금융결제원은 우선 사원은행 자격기준 제정과 금융결제원 사업에 대한 금융결제원 사원 · 준사원 외 금융기관의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각종 제도의 정비

금융결제원은 1990년대에 이르러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전산망의 성공적 구축 경험 등을 토대로 지속적 성장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결제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 및 사업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우선 사원은행 자격기준 제정과 금융결제원 사업에 대한 금융결제원 사원 · 준사원 외 금융기관의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6월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을 제정,



金融決済院 社員, 準社員의 加入要件 및 事業參加에 관한 指針(案)

1. 適 用 原 則

가. 金融決済院 社員과 準社員의 加入資格 및 加入金 決定基準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指針을 정한다.

나. 社員 또는 準社員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서 에서 정한 要件에 부합되어야 한다.

2. 社員 및 準社員의 加入資格

가. 社 員

金融決済院의 社員은 國內에 本店을 둔 預金銀行으로서 準社員으로 가입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總資産分擔金의 分擔率이 3% 이상인 機關을 대상으로 심사 결정한다.

나. 準 社 員

準社員은 預金銀行을 대상으로 심사 결정한다.

3. 社員 및 準社員의 事業參加 範圍

社員 및 準社員은 金融決済院이 영위하는 事業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社員 및 準社員 加入金

가. 社員 加入金

① 社員의 加入金은 가입결정 최근월말의 金融決済院 純財産에 대한 既存 1개 社員持分의 100%로 한다.

② 제①항의 金融決済院 純財産은 金融決済院 貸借對照表상의 基本財産과 所有物調整金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準社員 加入金

準社員의 加入金은 가입결정 최근월말의 加入申請銀行의 自己資本(자본금, 처분금, 잉여금의 합계액)이 250억원 이하인 경우 10억원
自己資本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10억원에 25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30억원 미만의 경우 切上)마다 1,000만원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신청시 이종交換事業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산출금액에서 등 사업참가시 납부한 참가금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附 則 (1991.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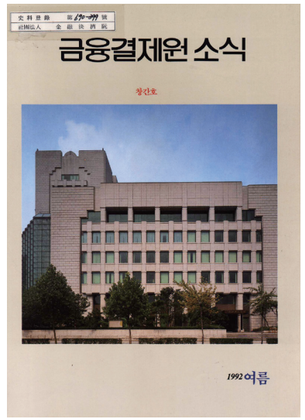
① (施行日) 이 指針은 1991. 6. ○.부터 시행한다.

② (經過措置) 이 指針 시행일 이전에 이미 金融決済院의 社員 또는 準社員으로 가입하고 있는 金融機關은 이 指針에 의하여 각각 그 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의 가입요건 및 사업참가에 관한 지침(안)」
1991. 6. 24.

최초 가입하는 금융기관은 준사원으로 하고, 가입 후 일정요건을 취득한 준사원에 대해서는 사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는 참가 금융기관의 희망에 따라 금융결제원 사원 또는 준사원이 될 수 있었다.
1992년 6월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외국계 은행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특별참가제도를 신설하였다. 특별참가제도란 사원 또는 준사원이 아닌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음교환, 지로업무 및 금융전산망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신설되면서 씨티은행이 어음교환, 지로업무 및 타행환공동망사업에 특별참가 하게 되었고, 우체국 및 농 · 수 · 축협 회원조합도 지로업무, CD공동망, ARS공동망 및 타행환공동망사업에 특별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참가기관 참가금에 대한 합리적 산출을 위하여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을 같은 해 10월 제정하였다.

자산운영과 예산관리체제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효율적 자산운영과 예산관리는 조직 및 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금융결제원은 1991년 7월 기본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재산의 운용지침」을 마련하였다. 기본재산이란 금융결제원의 자본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후 이 지침에 따라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그 상황을 결산 시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하여 「본 · 지부 경비분담 기준」을 일원화하고 각종 분담금의 은행본부 일괄 분담방안을 제정하여 199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 · 지부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분담금을 수입 ·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관리의 번잡함을 제거하고 지역별 · 은행별 회비분담의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예산 집중관리에 따른 효율성도 제고하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원활한 조직 및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율 경영체제 확립과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





「금융결제원 소식」 창간호 표지, 편집후기(위부터)
1992. 여름호

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1992년 12월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직을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회 이사를 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원 또는 준사원은행의 대표 8인(임기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장은 금융결제원 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였다.

1999년 7월에는 정관을 개정하여 총회 소집권자를 총회 의장에서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 가입대상을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특별참가 요건은 총회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경영관리업무에 있어서도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중 각종 신규 사업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5부 2실 2부속실이던 조직을 7부 2실 4부속실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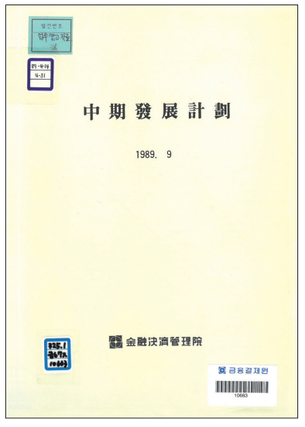
또한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조직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원가(院歌)를 제정하였으며, 사보인 「금융결제원 소식」을 창간하였다.

1993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사원제도를 폐지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합리적 인사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개선,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영관리체제의 정비 및 사업운영 효율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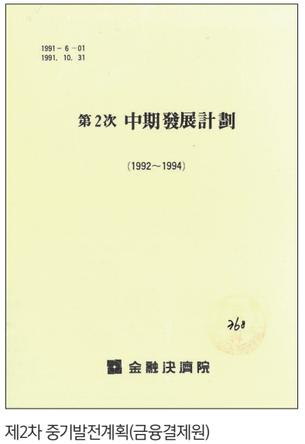
경영목표의 수립 및 업무효율성 제고

중기발전계획 수립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금융산업 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가 가능해졌고, 1991년에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설립과 재편이 이어졌다.



제1차 중기발전계획(금융결제관리원)
1989. 9.



제2차 중기발전계획(금융결제원)
1991. 10.

또한 1980년대부터 지속된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구현과 그에 따른 전자방식 지급결제 시스템의 도입은 국가차원의 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금융결제원은 경제 · 금융의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국제화 · 자유화 ·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구체적 실행방향과 조직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금융결제원은 1991년 제1차 중기발전계획(1989~1991년)에 이어 제2차 중기발전계획(1992~1994년)을 수립하고 대내 · 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지속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비전의 제시 및 경영목표, 실천방안 등을 설정하였다.

당시 수립된 제2차 중기발전계획에서는 지방어음교환소 설치기준의 정비, 부도정보제공업무의 개선 등 어음교환제도의 개선과 IPS(Image Processing System) 도입 검토, 조회업무 확대실시 등 지로업무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타 전산망과의 연계,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 가입 등 금융전산망사업의 확대와 경영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994년에는 제3차 중기발전계획(1995~1997년)을 수립,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개방화 및 국제화, 자율화 등 대내 · 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전국 부도정보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관리서비스)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금융전산망의 백업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수립된 제4차 중기발전계획(1998~2001년)에서는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금융편의 제고 및 조직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선진지급결제제도의 구현과 첨단 전자금융서비스 창출 및 확산, 고부가가치 사업구조 확립을 경영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다각화 및 지급결제부문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인인증시스템, 전자지갑 공동이용시스템 및 금융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는 등 시대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체계성 있는 발전계

획을 수립, 전원적으로 추진하였다.



안산지부 개설
1990. 8. 10.



해남지부 개설
1991. 4. 19.

지부운영의 효율성 강화

1990년 1월 금융결제원은 지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모(母)지부를 두어 관할지부의 업무지도와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처음으로 지정된 모지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및 강릉지부로 총 6개 지부였다. 이들은 관할지역 내 소규모 지부에 대한 업무지도 · 교육과 인력지원, 고충사항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1995년 5월 4일에는 기존의 6개 지부에 수원, 인천, 춘천, 청주, 창원, 제주지부를 추가함으로써 모지부 수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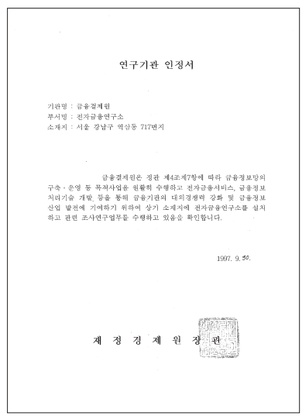
또한 어음교환 및 지로제도의 활성화와 행정개편 등에 따른 지역적 요구로 인해 지부의 신설과 개편작업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안산지부가, 1991년 4월 해남지부가, 1994년 7월에는 이천지부와 김해지부가 각각 개설되었다. 이듬해 12월에는 서산지부 및 양산지부의 개설에 이어 1996년 8월 상주지부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은 전국적으로 총 50개 지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5년 11월에는 인근 지부와의 거리 및 경제적 관련도 등을 감안하여 진해지부와 사천지부를 폐쇄, 창원지부와 진주지부로 각각 통합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사업거점의 사무소 건물 매입작업도 추진하였다. 금융결제원은 1993년 8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본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임대비용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전자금융연구소의 설립

금융결제원은 1996년 12월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위해 전자금융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다. 전자금융연구소 설립은 국내 대표적 지급결제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술력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전자금융연구소는 1997년 2월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전산개발부를 확대 개편하여 탄생하였으며, 시스템개발실과 기술연구실을 두어 각각 시스템개발과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금융결제연구소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 지급결제제도 조사연구업무를 중점 수행하였다.



연구기관 인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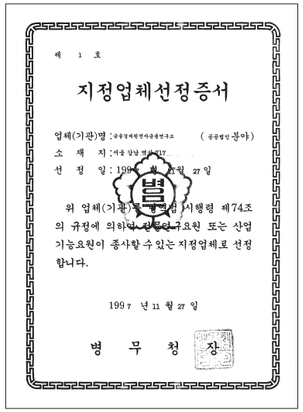
기관명 : 금융결제원
부서명 : 전자금융연구소
소재지 : 서울 중구구 역삼동 717번지

금융결제원은 정관 제4조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망의 구축 · 운영 등 부속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전자금융서비스, 금융정보 지리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금융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기 소재지에 전자금융연구소를 설치하고 관련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997. 9. 8.

재 정 경 제 원 장 인

재정경제원의 연구기관 인정서
1997. 9. 30.



제 1 호

지정업체선정증서

업체(기관)명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장)
소 재 지 : 서울 강남 역삼동 717
선 정 일 : 1997 년 11 월 27 일

위 업체(기관)를 병역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합니다.

1997 년 11 월 27 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의 병역특례업체지정업체 선정증서
1997. 11. 27.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활동 강화

금융결제원은 1990년대 이르러 조직구성원 간 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정보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내 커뮤니케이션활동을 적극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2년 8월 사보 「금융결제원 소식」을 창간하였는데, 당시 사보는 전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식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96년 6월 1일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함과 아울러 「금융결제원 10년사」를 발간, 기관의 역사적 활동과 의의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1999년 3월에는 사회 전반에 인터넷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kftc.or.kr)를 개설, 대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여파

1986년 설립 이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성장기반을 다져오던 금융결제원은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외부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7년 11월 이른바 "유사 이래 최대 국난"이라 불리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금융결제원 또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IMF구제금융 공식 요청

##부총리 어젯밤 회견 200억弗이상…내주초 협상단 訪韓

관련기사 2·3·4·5·6·7·9·11·19면

김흥현 기자

정부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창렬(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제1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를 캄드쉬 IMF 총재에게 IMF의 유동성 조절자금(Stand-by Credit)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전격통화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林장관은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은 다음주 초에 방한하는 IMF 협상단과 협의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시기와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3~4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청으로 일단 IMF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유동성 조절자금은 55억달러이다.

林부총리는 신청 규모와 관련, "앞으로 IMF측과 협상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유동성 조절자금을 포함해 한재로서는 2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야 할 유동성 외화는 약 7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이번 IMF 금융지원 신청으로 해외차입의 숨통을 틀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외화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도 100억달러 정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호주 정부와의 협조 아래 원화와 달러를 맞교환하는 스와프(SWAP)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국제와 포철, 한전 등 공기업 최시재 발행을 통해 이를 해외 금융시장에 내다 파는 형식으로 100억~200억달러 정도의 외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林부총리는 21일 오전 방한 중인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를 힐튼호텔에서 만나 IMF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피셔 부총재는 한국 정부가 요청해 올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IMF 금융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의 거시정책은 물론 산업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에 대해 일일이 IMF 의견에 따라야 한기 때문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신문 기사
[1997. 11. 22. 매일경제]

당시 재정긴축과 구조조정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금융결제원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우선 조직을 축소하여 기존의 9부 1실 1연구소 1본부 4부속실 19과 2팀에서 7부 1실 1연구소 5부속실 17과 11팀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98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됨으



퇴출銀명단 27~30일중 전격발표

금감위 '비상계획' 수립
공권력동원 은행 '접수'
예금인출 일시 정지
고객 그외 피해는 없어

일단의 무장경찰과 인수은행 직원들이 합동으로 퇴출은행의 영업시간이 끝난 직후 갑자기 들이닥쳐 전산시스템과 시재금(현금)이 가득한 은행 금고를 장악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퇴출은행 관련결과 발표를 앞두고 피인수은행 직원들의 반발을 제압하고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계획 시나리오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퇴출할 은행의 명단을 27~30일 전격 발표하면서 즉각 금감위와 인수은행의 직원들을 피인수은행 본 지점에 파견하기로 했다. <17면에 관련기사>

P&A방식에 의한 은행퇴출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일부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무장경찰이 인수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퇴출은행 인수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은 무장경찰을 포함해 1천여명에 이른다고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출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수작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검찰과 경찰이 공안 차원에서 개입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부실은행 퇴출 작전을 앞두고 워룸(War Room·전쟁상황실)으로 불리는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경찰과 인수은행에도 이미 협조를 요청해 놓았다.

국민 주택 신한 하나 등 인수 은행들도 퇴출대상 부실은행 인수팀을 구성했다. 한미은행도 퇴출대상 은행이 늘어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금감위의 부실은행 처리방침 발표와 퇴출은행에 대한 인수팀 투입은 예금자 및 관련은행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27~30일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나 휴일을 틈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수팀은 피인수은행의 현금 시재금을 접수하고 해당은행 거래계좌별 거래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에 나가있는 감독관들이 이미 전산망을 어느 정도 장악한 상황"이라면서 "P&A 담하는 은행원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자산부채 이전 작업을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4, 5일 정도로 예상되는 이 기간에 해당은행 전산시스템은 물론이고 은행 영업이 정지돼 고객들은 원칙적으로 예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소액예금은 한도를 정해 인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은행업무정지에 따른 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 및 수표결제는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8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선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고 피인수은행 계좌는 인수은행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며칠 안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IMF사태에 따른 은행퇴출 관련 신문 기사
[1998. 6. 26. 동아일보]

로써 오랜 기간 함께해온 많은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당시 외환위기는 일반 산업계는 물론 금융권의 경영 및 사업에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은행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1998년 6월 29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업무 정지 조치에 의해 동화, 동남, 대동, 충청 및 경기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사원 또는 준사원 자격이 자동 소멸되었다. 아울러 사원 및 준사원은행의 통 · 폐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현재의 우리은행)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조흥은행과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으로 통 · 폐합되었다. 이로써 금융결제원은 외환위기 발발 이전 17개의 사원은행과 19개의 준사원은행에서 1999년 12월 기준으로 13개의 사원은행과 13개의 준사원은행으로 재편되었다.

사업기반의 구축 및 확대

어음교환 · 지로업무의 안정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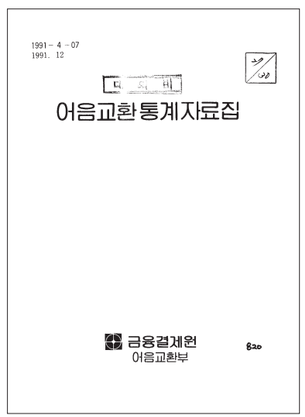
어음교환업무

금융기관 간 수납한 어음과 수표를 교환, 결제하는 어음교환업무는 금융결제원 설립 시부터 실시해온 고유 업무로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업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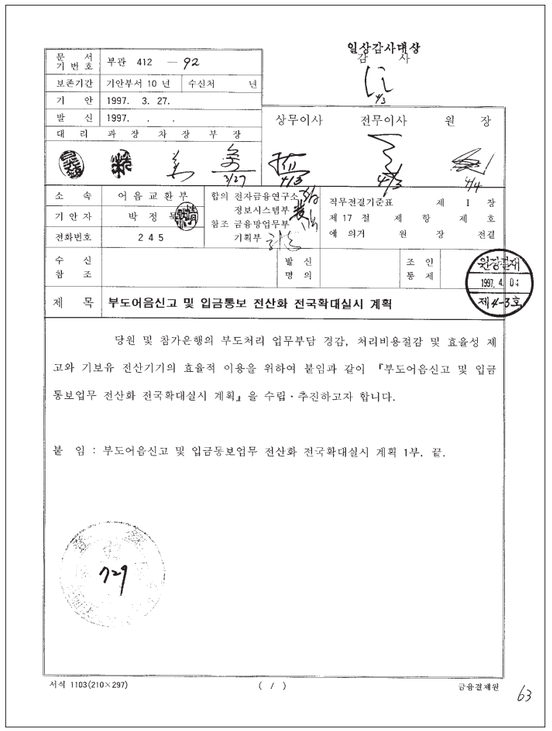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1990년 8월 안산어음교환소 개설을 시작으로 1996년 8월 상주어음교환소에 이르기까지 총 7개의 어음교환소를 개설하는 등 어음교환업무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어음교환 미참가 시 · 군의 어음교환 참가가 이루어졌고,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 21개 지역이었던 상호교환 실시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교환어음 중 정액자기앞수표의 지급은행 본점보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어음교환통계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음교환통계자료집」(1960~1990년)을 발간하였다.

한편 어음교환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총 어음교환물량 중 자기앞수표의 점유율이 93%를 차지함에 따라 실물현송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의 절감과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2년 3월부터 금융결제원과 9개 은행 실무자로 구성된 도입준비반이 10개월간의 검토 끝에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에 따른 교환량 감소 등의 사유로 시행이 전면 보류되었다.



「어음교환통계자료집」 표지
1991. 12.



'부도어음신고 및 입금통보 전산화 전국확대실시 계획' 기안문
1997. 3. 27.

1992년 7월에는 상호교환지역에서 발생한 정액자기앞수표를 당지교환에 회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실시, 현송물량의 80%를 감소시켰으며, 1994년 12월 일반자기앞수표에 대해서도 당지에서 교환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어음교환업무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책도 수립하였다.

금융결제원은 1995년 11월 "전국어음교환소 정비방안"을 수립, 합리적인 어음교환소 설치 및 광역화 기준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재해발생 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을 제정, 각종 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가계수표의 부도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당 최고 발행한도 초과 사유로 인한 부도횟수가 그때까지는 연간 3회면 거래정지처분하였으나 이를 연간 2회로 개정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장당 최고 발행한도 초과 발행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다.

1996년 3월에는 부도어음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부도어음신고서 작성 및 입력 관리업무의 부담

을 줄이고자 부도어음내역의 신고방법을 전산화하여 부도어음신고 및 입금통보 내역을 참가은행 점포에서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6월에는 전산화 실시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거래은행 본점을 거치지 않고 해당점포에서 직접 거래정지처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래정지처분 해제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어음교환업무에 따른 안정성 관련 대책도 수립, 시행하였다. 금융결제원은 1997년 8월 「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 시 어음교환 긴급조치규약」을 제정, 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 시 여타 참가은행으로의 파급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부도업무 전용시스템과 전국부도정보 DB를 구축, 가동하였다.

한편 1998년 10월에는 1993년 당시 도입을 보류했던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를 수정, 보완한 "금융기관 수납장표정보화추진 세부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시스템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규약 등을 제정하였다.

이어 1999년 7월에는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담당해오던 상호교환어음 현송업무를 금융결제원 지부에서 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재해발생에 따른 어음교환 처리대책"을 수립, 어음교환업무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어음교환업무의 원활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쳤다.

지로업무

빠르고 간편한 통합납부시스템인 지로제도는 1990년대 이르러 그 편리성과 경제성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급증하는 지로장표 처리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권역별 지로업무 분산처리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로장표 처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IPS를 도입하였다.

권역별 지로업무 분산처리방안의 도입은 1980년대 후반 소액자금결제 수요의 증가로 국민들의 지로사용이 급증하였고, 지방에서의 지로사용 또한 날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 본부 집중처리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지로 처리체제를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권역별 분산처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2년 권역별 지로업무 분산처리방안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1993년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를 구축, 1994년 4월 운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부산 · 경남권에서 수납되는 일반계좌이체, 전기요금 및 지방세 수납장표 등의 지로장표는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를 통해 처리되었다.

1994년에는 자동납부신청서를 은행점포 외의 수납기관에서도 직접 접수 ·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계좌이체 OCR장표의 발송을 생략하였다.

또한 ARS를 통하여 지로업무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납부자자동계좌이체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국민 편의 제고와 업무생산성을 증진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지로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지로장표 처리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IPS를 도입하였다.

IPS란 R/S기에 부착된 영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장표의 Text와 Image를 포착한 후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고, 필요시 저장정보를 화면으로 출력하거나 검색, 인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은 IPS를 1991년부터 도입 검토하였으며, 1996년 5월 IPS 도입추진과 관련한 추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거쳐 1998년 5월부터 본격 가동하였다.

금융결제원의 지로업무 활성화 및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은 이후로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1996년에는 은행별로 임의 표기되던 자동이체 출금내역 표기방법을 수납기관이 정한 내역을 표기하도록 표준화함으로써 자동이체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였으며, 대량지급 및 납부자 자동이체의 입금 예금과목으로 종전의 요구불예금에 적금과 신탁관련 예금종목을 추가하였다.

1998년에는 지로실물을 금융결제원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수납내역을 단말기에 입력,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로장표 처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격지(隔地)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기존의 전액출금 자동이체 출금방식에 부분출금방식을 추가하는 등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 가동 커팅식
박찬문 前 원장(정중앙)
1994. 4. 1



지로업무IPS 가동식
이경재 前 원장(정중앙)
1998. 5. 12.

금융공동망 확대 사업 추진

기존 공동망의 확대

금융결제원은 1990년대 이르러 CD공동망을 비롯하여 ARS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의 참가기관 확대, 대상서비스의 개선, 실시지역 확장 및 외부전산망과의 접속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적극 도모하였다.

특히 우체국, 농 · 수 · 축협 회원조합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공동망서비스 참가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1993년 9월부터는 타행CD기를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CD공동망을 이용한 타행 간 계좌이체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5년 9월부터는 CD공동망의 이용시간을, 1996년 10월부터는 계좌이체서비스 시간을 각각 연장하였다.

ARS공동망의 경우 1991년 4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체신청업무를 같은 해 11월에는 ARS FAX 통지업무를 실시하였으며, 1993년 5월에는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ARS 공동망 PC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99년 9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ARS 공동망용 특수전화번호 "1369번"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타행환공동망 역시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1993년 7월부터 송금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994년 6월에는 5,000만원으로, 1996년 12월에는 다시 1억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송금대상에 타행발행 일반자기앞수표를 추가하였다.

한편 1992년 「금융전산망에 대한 외부전산망 접속원칙(기준)」이 완화되면서 금융결제원은 운영 중인 금융전산망에 대한 외부전산망과의 접속을 추진, 1993년에는 점외 CD/ATM전산망 및 경찰전산망을, 1994년에는 종합무역자동화망(KTNet)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2년 3월에는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인 SWIFT업무를 개시, 국내 금융기관의 원활한 국제업무 수행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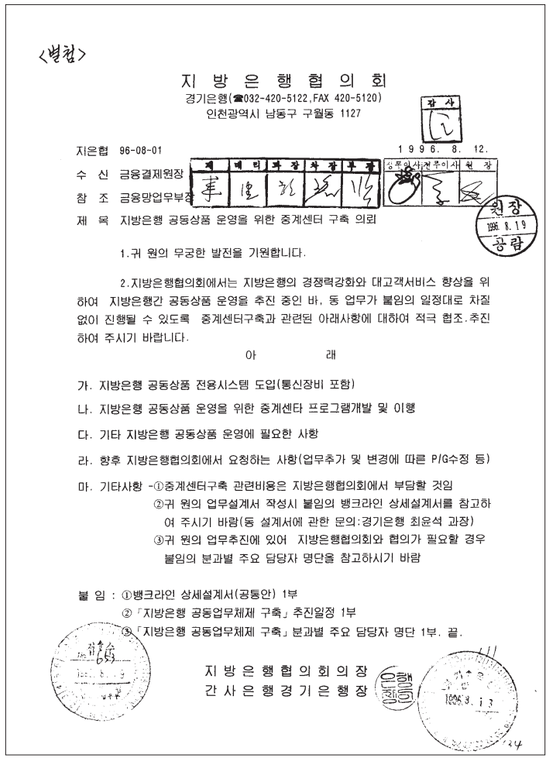


SWIFT 개통축하연회
1992. 3. 2.

신규 금융공동망의 구축

금융결제원은 1990년대 중 · 후반에 이르러 기존의 CD, ARS, 타행환공동망 등의 개선, 확충과 더불어 신규 금융공동망인 지방은행공동망을 구축하였다.

지방은행공동망 구축사업은 1995년 12월 지방은행협의회가 지방은행의 모든 영업점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산망 공동구축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997년 2월 지방은행협의회로부터 전산망 구축을 의뢰받아 같은 해 6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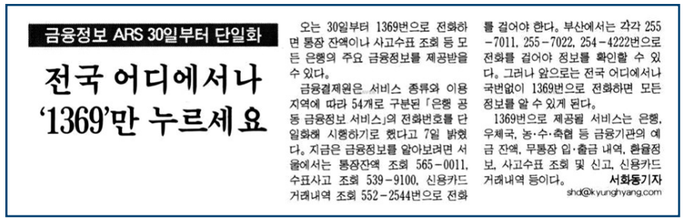
지방은행협의회의 '지방은행 공동상품 운영을 위한 중계센터 구축 의뢰' 문서
1996. 8. 12.

부가통신사업(VAN서비스)의 추진

부가통신사업이란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결합한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 VAN)을 이용,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축적하거나 변환 처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결제원이 VAN사업을 도입하기 전 대고객전산망은 1990년 12월 7일 수립된 "금융기관 대고객전산망 도입방안"에 따라 은행 간 전산망이 아닌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 국내 IT인프라 및 제반 규정의 미비 등 금융 · 경제적 현실여건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후 1994년 3월 30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판매대금 자동결제망) 시스템 구축 · 운


금융정보 ARS 30일부터 단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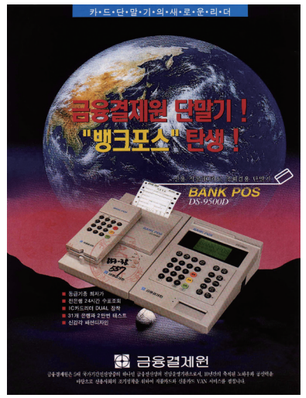
전국 어디에서나 '1369'만 누르세요

오는 30일부터 1369번으로 전화하면 통장 잔액이나 사고수표 조회 등 모든 은행의 주요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지역에 따라 54개로 구분된 「은행 공동 금융정보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단일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정보를 알아보려면 서울에서는 통장잔액 조회 565-0011, 수표사고 조회 539-9100,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552-2544번으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부산에서는 각각 255-7011, 255-7022, 254-4222번으로 전화를 걸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69번으로 전화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1369번으로 제공될 서비스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무통장 입·출금 내역, 환율정보, 사고수표 조회 및 신고,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이다. 서화동기자 shd@kyunghyang.com

'금융정보 ARS 30일부터 단일화' 신문 기사
[1999. 9. 8. 경향신문]



뱅크포스 포스터(1995년)

영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같은 해 4월 11일 은행 간 전산망에 의한 대고객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추진전담반은 1995년 2월 8일 부가통신사업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카드 및 단말기사업, 고객사업, 시스템통신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이후 1996년 1월 23일 부가통신사업실이 VAN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부가통신사업은 다수의 민간사업자 참여 등으로 경쟁환경 속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일반가맹점, 신용카드사, 여타 VAN사업자 등과 다원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운영경비를 사원은행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기존의 비영리방식으로는 사업수행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금융결제원은 사업 자체의 수수료 수입과 판매수입을 통해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방침을 정하고 1994년 11월 당시 재정경제원에 사업승인을 신청, 같은 해 12월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40억원의 기본재산을 출자하여 1995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1996년 2월 직불카드공동망을 가동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신용카드 거래대행승인서비스를 22개 모든 신용카드사로 확대하였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다이너스 등 해외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불 · 신용카드용 단말기인 뱅크포스 판매를 개시하였다. 뱅크포스는 상품판매시점에서 판매정보를 처리하는 개념으로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상품 구매시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단말기 판매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VAN사업에 대한 수익성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는 체계적인 판매망의 구축을 통하여 고품질의 VAN서비스 창출을 도모하였다.

한편 1995년 10월 금융결제원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대고객 은행공동전산망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이용시스템 구축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시스템의 구축을 위탁받고 이듬해 8월 CMS 대량자금이체사업을 시작으로 자금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뱅크포스 단말기 변천사



04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성장(2000~2009)

1. 중장기 발전방향의 모색
2. 기존 사업의 활성화 추진
3. 인터넷 · 모바일시대의 신규사업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 경영과 사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급변하는 경제, 금융, 정보통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인터넷 · 모바일시대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발굴 · 확대하였다.

중장기 발전방향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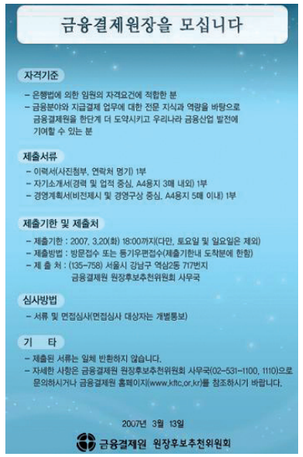
2000년대에 이르러 급변하는 경제, 금융, 정보통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자율 · 책임 경영체제의 구현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 경영과 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2000년 7월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정관을 변경, 기존 정관 제4조 제8호 "기타 금융결제원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의 조항 중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는 1999년 12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원장 모집공고
2007. 3. 13.



서울외국환중개(주) 개업식
박재준 초대사장
2000. 9. 18.

조치였다. 또한 기본재산의 주무관청 보고와 인사, 예산, 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 · 개정 또는 폐지 시 주무관청 보고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조직구조를 개편, 본부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각 본부에서 해당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고자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원장으로 선임하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가 선임하는 사원은행 대표 1인 및 학계와 연구기관 인사,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3인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선정, 총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장을 선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조직개편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 이르러 급변하는 경제, 금융, 정보통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우선 금융정책당국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국환중개업무의 복수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0년 5월 VAN사업부 내의 자금중개실을 금융결제원에서 분리, 서울외국환중개(주)를 설립하였다.

2001년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방향 및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신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기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방향은 유사업무를 묶어 본부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각 본부는 해당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당시 본부제 도입은 상호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동일본부에 편제하는 방식으로 인사, 총무, 시스템 개발 · 운영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본부와 기존의 어음교환 및 지로 등 장표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어음지로본부, 금융공동망 및 인터넷 관련 전자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전자금융본부, CMS 등 VAN사업을 담당하는 특수사업본부로 구분하였다.

특히 전자금융본부의 도입은 전자화폐(Korea CASH : K-CASH), 인터넷지로, PG, 공인인증사업 등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은행의 니즈에 부응하고 각종 첨단 전자금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으며, 특수사


금융ISAC실

업본부의 도입은 은행공동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일부 은행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금융결제원은 본부제 도입과 아울러 책임경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팀(Team)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과(課)체제를 팀제로 전환함으로써 결재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신속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부부장급 및 대리급 직원 약 150명을 각각 팀장, 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각종 신규사업추진 및 지급결제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별도 인력증원 없이 해결하는 등 조직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 2월 기준으로 4본부 6부 2실 1연구소 1센터 3부속실 1반 44팀으로 재편되었다.
2003년에 이르러서는 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정보공유분석센터)사업을 실시하고 분당 백업센터 구축을 본격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전담할 금융ISAC실과 백업센터 건축추진실이 같은 해 2월 신설되었으며, 6월에는 특수사업본부의 명칭을 e-Biz본부로 변경하였다.
이후 2005년 7월에는 본부 및 지부조직에 대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수행된 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사의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조직개편 결과 기획조정실과 전자금융연구소를 전무 직속에서 지원본부와 전자금융본부 소속으로 각각 배치하고, 50개 지부를 9개 지역본부와 36개 지부로 재편하였다. 조직 개편과정에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태백, 공주, 남원, 해남 및 상주지부를 폐쇄하였다. 또한 시스템운영실을 정보시스템부에 통합하고 IT기획부 및 e-Biz전산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금융망업무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금융망업무부와 인터넷사업부의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 인터넷사업부를 e-Pay업무부로 개칭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본부별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부편제를 계열화하고 일부 부서 업무를 조정하였다. 지원본부를 경영관리본부로, 어음지로본부를 금융망본부로, 전자금융본부를 IT본부로 e-Biz본부를 e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별 소관 부서 및 분장업무를 조정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에 걸쳐서는 어음교환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지로장표의 참가은행 자체처리 확대에 따른 지부 업무량의 급속한 감소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인천, 강원, 충북 등 3개 지역본부 및 성남, 양산 등 18개 지부를 폐쇄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

한편 이 같은 지부조직의 지속적 축소 과정에서 2009년 전체 인원의 21%에 해당하는 인력이 희망퇴직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는 아픔도 겪었다.
이처럼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에 이르러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편, 운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외부환경 대응능력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성과평가제도 도입

금융결제원은 조직개편과 아울러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개인과 조직단위별 성과를 측정, 경영에 반영하는 성과중시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성과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수립하였고, 조직단위 및 개인단위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성과평가 테스트런(test ru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1년 12월 「성과평가규정」을 제정하고 2002년 1월 성과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성과평가제도의 실시로 2002년부터 조직단위와 개인단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그 후 본격적인 성과평가를 조직에 도입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성과평가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은 재무,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4가지 관점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기반 조직단위별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 KPI)를 개발하였으며, 성과평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2005년 4월 기획조정실 내에 성과평가도입추진반을 설치하였다. 이어 2006년 1월 성과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헌도 평가항목 추가, 정성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단 운영 등의 변경된 성과평가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통해 본격적인 성과평가제도를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결과와 보수를 연계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5월과 11월 성과상

여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성과상여금의 차등폭 및 적용대상을 팀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결제원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다.



6시그마BB과제발표
2007. 8 . 7.



2012년 하반기 6시그마 우수과제 시상
유병갑 前 상무(왼쪽에서 다섯번째)
2013. 1 .15.

6시그마 경영기법 도입

2004년 말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품질, 조직문화, 인력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위해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 2005년 상반기 중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하여 6시그마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2006년에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여 36개 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금융결제원은 6시그마활동 추진으로 2008년까지 8차의 웨이브과정에서 29개의 BB(Black Belt)과제와 96개의 GB(Green Belt)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약 14억원의 재무적 효과를 달성하고 업무수준을 1.61σ에서 3.36σ로 개선하였으며, MBB(Master Black Belt) 7명, BB 1명, GB 116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2009년부터는 QSS(Quick Six Sigma)방법론을 도입하여 6시그마활동의 수행방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6시그마활동을 사무국(혁신추진팀) 주도 방식에서 본부별 수행체제로 전환, 경영혁신을 위한 전원적 조직문화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6시그마 활동은 이후 2013년까지 계속되었으며, 6시그마 과제 수행은 각 부서원들에게 지속적인 과제 발굴수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팀장 이하 조직원에게는 부서 내 소관 라인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업(task) 외에 전원적 혁신활동에도 자발적,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평소 원 전체 및 소관 조직의 불합리한 업무 프로세스 등 문제점을 찾아내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 세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데 역량과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다.

금융결제원의 심벌마크 및 로고

금융결제원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시각표시물 표준 변경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업무 전담기관으로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 마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2006년 시각표시물 표준(Visual Identification Standards : VIS) 매뉴얼을 변경하였다. VIS매뉴얼 변경을 통한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심벌마크는 4개의 도형이 중심점을 향한 형태로 금융결제원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임을 의미하며, 각 도형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결제원의 이해관계자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각 도형을 이어주는 원은 원활한 자금의 흐름과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VIS매뉴얼은 원내 각종 서식류, 장표류, 사인류, 홍보물류, 포장류, 차량류 등 업무 수행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용도, 기능에 따라 디자인과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통해 원내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서비스 등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표시물과 조직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그 체계성,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투자회사 대상 특별참가 설명회
2008. 7. 10.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특별참가

2009년에 이르러 정부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 의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사업 참가기관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금융결제원은 2008년 중 은행코드를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하는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전산접속기준 정비 등 제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정책당국 및 국회에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허용범위를 개인고객을 대

특별참가 초기에 참가한 금융투자회사들

시기	참가기관	누적
2009. 7.	동양종합금융증권	1
8.	현대증권 등 11개 기관	13
9.	유진투자증권 등 2개 기관	16
10.	교보증권 등 2개 기관	19
11.	부국증권	20
12.	E-TRADE증권 등 3개 기관	24
2010. 2.	키움증권	25

상으로 한정(법인고객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반영하였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2009년 사원총회 의결을 통해 25개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사업별 특별참가를 승인하였다. 당시 금융투자회사들은 금융결제원 사업 중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로, PG, CMS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참가를 시작하였다.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결제원 사업에 참가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대상사업별 참가기관 수는 기존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여 개 기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대외 인지도 및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백업센터 구축

금융결제원은 2002년 11월부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백업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금융결제원의 백업센터 구축사업은 1997년 제2차 총회에서 의결되어 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까지 매입한 상태였으나 외환관리체제하의 사원은행 구조조정 등 대내 · 외 여건 변화로 잠정 중단된 사업이었다. 이후



분당센터 부지 C.I.P(CAST IN PLACE PILE) 굴착 공사
2005. 1.



분당센터 철골 설치 공사
2006. 2.





분당센터 준공식
이상헌 前 원장 축사
2007. 3. 14.

미국 9 · 11테러 사태와 관계법령의 보안성 강화 요구, 전자금융거래 비율의 급속한 증가 등 백업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2년 11월 백업센터 구축을 재개하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은 백업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한 주요업무(금융공동망 · 공인인증사업)에 대해서는 분당의 자체 백업센터 구축 완료 시까지 임시로 외부건물(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전산원)을 임차, 2002년 12월 주요사업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당시 분당 백업센터 구축계획의 기본방향은 최적의 시스템과 보안, 전산업무에 적합한 기반구조 및 설비를 구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독자적인 건물 확보를 통한 자영형 · 상호운용형 백업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자영형이란 독자적으로 백업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방식을 뜻하며, 상호운용형이란 운용의 효율성, 활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백업센터에서 평상시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재해 시 양 센터를 각각의 백업센터로 활용하여 구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였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997년 매입했던 부지에 백업센터 건축을 추진하였다. 백업시스템 구축 시 백업대상사업은 금융공동망, 공인인증, 인터넷서비스, 어음 · 지로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이었고, 백업방식은 사업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방식을 달리하되 핵심시스템인 금융공동망과 공인인증 등에 대하여는 미러사이트(mirror site)방식을 채택하였다. 미러사이트방식이란 주 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백업센터 신축계획은 2004년 제4, 5차 총회를 통해 건축 연면적을 1만 9,174㎡(5,800평)에서 2만 2,364㎡(6,765평)로 확대하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2004년 12월 14일 공사에 착공, 약 2년 3개월만인 2007년 3월 14일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되었다.

특히 분당 백업센터는 지급결제 관련 전산시스템의 하중은 물론 진도 7.0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구조와 최신기술의 보안시스템 및 이중화된 전기 및 통신선로와 기반설비를 갖춘 첨단 전산전용 건물로 구축되었다.

금융결제원은 백업센터의 준공으로 역삼동 본부와 분당센터 간 상호 전산시스템 백업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한국전산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원격지 백업기능을 수행할 때에 비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백업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각종 테러 및 자연재해 등에 의한 시스템 파괴 및 장애에 대비함으로써 전산 자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존 사업의 활성화 추진

어음교환 · 지로업무의 발전



「어음교환업무규약 해설」(2011년)

어음교환업무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 이르러 어음교환소별로 제정 · 운영되던 「어음교환소규약」의 통합과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실시 및 실시지역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대국민 이용편의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2000년 7월에는 전국 51개 어음교환소별로 제정 · 운영되던 「어음교환소규약」을 통합한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음교환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방어음교환소의 제재 · 과태금 처리 및 징수 업무를 본부에서 일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9월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어음의 실물이동이 크게 감소하고 자기앞수표의 실물처리가 생략됨에 따라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2004년 8월에는 실시간 정보교환제도를 도입, 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신분증 제시만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결제원은 어음발행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을 위해 어음의 교부정보, 발행정보, 결제정보, 부도정보를 집중 · 제공하는 어음정보시스템을 구축, 건전한 어음거래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참가은행은 어음발행인의 월평균 결제금액 및 부도여부 등 제반 정보를 파악하여 당좌거래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어음 발행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행인



어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note.kr)



B2B결제 및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식
이상헌 前 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신동원 전무(제일 오른쪽)
2004. 6. 25.


지 정 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 관리기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기술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함.

- 아 래 -

전자어음관리기관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기술지원사업자 : 한국유과테크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길음동 21화138, 1층)

2005년 1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서
(법무부)
2005. 1. 1.

이 어음발행 시 인터넷을 통해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면 어음소지인이 인터넷 또는 ARS(☎1369번)로 그 내역과 당좌거래정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어음발행정보 등록 및 조회서비스"를 2009년 2월부터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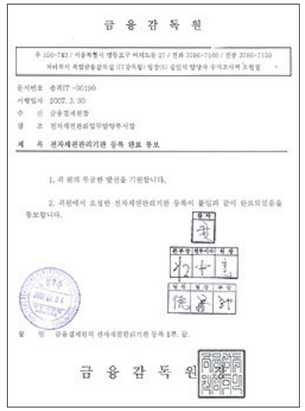
또한 2000년 8월부터는 구매자금융제도 시행에 따라 구매자금융에서 발생하는 환어음의 내역을 전산정보화하여 교환하는 정보교환결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제시은행으로부터 환어음정보를 접수, 분류하여 지급은행으로 전송하고, 그에 따른 차액결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3년 8월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구축, 타행 내국신용장 개설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차액결제업무를 정보교환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후 2005년 7월에는 정보교환 대상 지급수단을 전자방식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까지 확대하였으며, 미결제어음금 회수방법을 정보교환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 이르러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공동망 및 인터넷 기반의 지급결제서비스로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온라인송금을 지급수단으로 200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2005년 9월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전자어음은 기업 간 상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실물어음을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대금결제가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전자문서로 발행 · 유통되는 어음으로서 약속어음에 한해 적용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서 전자어음의 등록, 보관, 결제 등의 과정을 안정적 ·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는 전자어음 이



금 융 감 독 원

문서번호 총제77-00190
시행일자 2007. 3. 30
수 신 금융결제원장
참 조 전자채권관리업무담당부서장
제 목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완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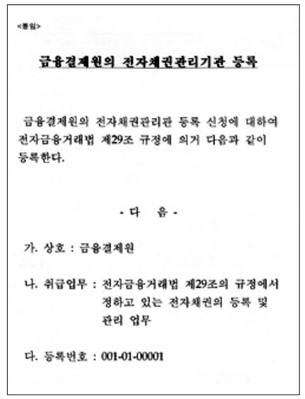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원에서 요청한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이 붙임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붙 임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1부. 끝.

금 융 감 독 원 장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통지 문서
(금융감독원)
2007. 3. 30.



<붙임>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 다 음 -

가. 상호 : 금융결제원

나. 취급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 업무

다. 등록번호 : 001-01-00001

용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자어음 사용 의무기업은 약속어음 발행 시 반드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여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결제원은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방식의 기업 간 지급수단이었다. 이는 어음 · 수표 등 장표방식 결제수단이 가지고 있는 분실, 위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거래쌍방이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발행, 결제, 양도통지, 담보대출 등 일련의 거래과정을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같은 해 어음 · 수표 교환 시 이미지를 실물과 대조하여 지급가능 여부 및 인감조회지급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미지 표준의 보완을 위한 이미지교환 시범실시를 추진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의 "2단계 어음 · 수표 전자정보화 사업 세부 추진계획" 의결에 따라 당좌 · 가계 및 제증서를 실물 이동 없이 이미지 등 전자정보의 송 · 수신만으로 어음교환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어음 · 수표 이미지 정보교환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지부의 업무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부조직을 대폭 폐쇄, 정비하게 되었다.

지로업무

금융결제원은 2000년도부터 전기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화요금 등 4대 공과금 장표와 일반이체 OCR장표를 대상으로 장표 대신 전산정보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수납장표정보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국 모든 지부에 수납장표 처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장거리 장표이동에 따른 불편과 이동상의 위험을 동시에 제거하였으며 지부업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인터넷지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인터넷지로는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해 납부자가 직접 전화 및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가서비스로 예금 및 사고수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같은 인터넷지로 이용을 통해 납부자들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지로이용기관은 지로장표의 발행 및 발송 비용 절감과 신속한 대금회수가 가능해졌다. 또한 은행의 경우에도 지로 수납 및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로 생산



초창기 인터넷지로 납부 모습

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6월에는 지로 입금내역 통지방식을 우편 또는 인편 송달방식에서 인터넷 조회 · 통지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이용기관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지로장표 수납정보화사업 대상장표를 기존 전기 · 전화요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표준 OCR장표에서 모든 지로장표로 확대하였다.

2006년에 이르러서는 개인고객 외 기업용 지로 ·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일반지로대금 자동이체 처리 기일을 7영업일에서 4영업일로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납부자의 자동납부 신규, 변경, 해지 신청내역을 실시간 등록하여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처리 여부 및 적용일자 등 신청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e-Giro사이트(e-giro.giro.kr)를 통해 자동이체 및 대량지급 업무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인터넷지로 이용안내 홍보물

2007년에는 지급수단의 범위를 계좌이체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에는 e-Giro 사이트,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사이트 및 CD/ATM에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지로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모바일납부서비스를 도입, 365일 납부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e-Giro사이트 외 은행창구에서 지방세입금 조회수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등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금융공동망의 확장

2000년대 이르러 금융공동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안정화, 선진화가 이루어졌고 이용자들의 편의 또한 크게 증진되었다.

고객이 거래은행에 가지 않고도 현금인출, 계좌이체, 송금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각종 전자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의 제

약이 해소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은 지급결제 업무의 효율성 · 안전성 강화 및 고객 니즈에 충실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해졌다.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운영사업에도 신규 공동망의 확장과 시스템 개선, 보완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우선 신규 공동망인 전자화폐공동망의 경우 1999년 2월 당시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가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2000년초 전자화폐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화폐공동업무규약」을 제정하는 등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울 역삼동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이듬해 1월부터 전자화폐공동망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전자화폐시대를 열었다.

전자화폐공동망은 발급 · 매입기관, 가맹점 및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를 금융결제원과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형 전자화폐 K-CASH는 은행 및 카드사가 공동 개발한 신규 지급수단으로 IC칩이 내장된 카드에 화폐 가치를 전자기호 형태로 저장해 현금 · 신용 · 직불카드 기능을 통합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촉식과 비접촉식 기능이 동시에 구현되어 버스, 지하철 등 교통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K-CASH는 2001년 1월부터 춘천시를 시범도시로 시작하여 2003년 서귀포시, 2004년 통영시 등의 도시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교통카드에서 더 나아가 다수의 대학교, 전국 군부대 및 편의점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범용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K-CASH 이용 모습

전자금융공동망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일반 국민들에게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00년 6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ARS공동망의 확대 ·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공동망 구축 추진계획"을 같은 해 7월 수립하였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01년 4월 전자금융공동망을 본격 가동하였다.

전자금융공동망은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조회, 수표,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거래 활성화에 따라 매년 그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대표하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귀포시 K-CASH 교통카드 개통식
2003. 3. 14.

이 밖에 금융결제원은 이미 구축한 CD공동망 및 타행환공동망과 관련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CD공동망의 경우 2003년도에 기존 현금 인출, 계좌이체 · 조회 서비스 외에 지로대금 및 공과금 자동수납시스템을 가동하였다. 2006년도에는 타행 CD/ATM을 이용한 현금입금서비스를 도입하여 타행 현금카드 소지자도 모든 은행에 설치된 CD/ATM을 이용, 현금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창구업무 경감 및 이용고객의 금융편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2007년도에는 시스템 운영시각을 전자금융공동망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체계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든지 CD/ATM코너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현금입금, 인출 및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어 2008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칩에 여러 은행의 계좌정보를 수록, CD/ATM을 이용할 수 있는 UbiTouch서비스를 개시하였다. UbiTouch서비스의 실시로 여러 개의 현금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녀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었다.





'USIM기반 CD/ATM 서비스' 업무 협약식(위), 김수명 前 원장 (앞줄 왼쪽)
UbiTouch 서비스광고(아래)
2008. 9. 25.

타행환공동망의 경우 2004년도에 공동망 개시시각을 기존 08:00에서 07:00로 앞당김으로써 참가 금융기관들이 창구에서 타행환업무를 보다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공동망 통신방식 전환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 통신방식을 X.25에서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일괄전송, 무역자동화망에 이어 타행환, 지방은행, 전자금융(대고객)공동망 등을

TCP/IP로 전환 완료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다양한 통신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방식 전환을 통하여 네트워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크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증대되었다.

부가통신사업(VAN)의 운영 및 확대

부가통신사업은 은행 이용고객의 다양해진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대 금융결제원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였다.

금융결제원이 2000년대 추진한 부가통신사업 내역을 연차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01년 9월 물품대금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나 양곡 등의 구매 시 휴대용 무선단말기(PDA)를 통해 구매전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이며, 물품대금결제서비스의 활용 대상업무는 2001년 주류를 시작으로 양곡(2003년), 유류(2004년)로 확대되었다.



트러스빌 홈페이지(www.trusbill.or.kr)

2002년 8월에는 전자세금계산서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사업인 TrusBill서비스를 실시하였다. TrusBill은 기존의 우편이나 인편으로 주고받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수신, 송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ASP서비스이다. 특히 TrusBill은 철저한 보안 및 인증시스템을 갖춘 금융결제원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은 별도의 솔루션 구입이나 개발, 유지, 보수 인력이 필요 없어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수신하는 대기업, 금융기관 및 유통업체 위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온라인 쇼핑몰, 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계약 1주년 기념식
김영준 상무(앞 줄 가장 왼쪽)
2016. 6. 7.

2004년에는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및 온라인 전문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5년에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금영수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란 국민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을 공제받는 제도에 있어 금융결제원이 현금 구매 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전송하는 사업자로 선정됨을 뜻하였다.

2006년 3월부터는 자금을 수납, 지급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원장 및 수납(지급)내역 등을 생성,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기관이 별도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CMS ASP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카드 VAN사업의 경우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2006년부터 POS형 단말기를 개발 ·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나라사랑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운영

나라사랑카드 개념

"나라사랑카드"란 징병검사부터 예비군 임무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 카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IC칩 내장)이다. 병무 행정을 간소화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병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징병검사 시에 발급되고 있다.

용 도

나라사랑카드는 입대 전, 군복무 중, 전역 후로 구분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구 분	용도
입 대 전	병역증, 여비지급통장, 징병검사용 신분인식카드
군복무 중	급여통장, 충성마트(PX)에서 구매 지급수단
전 역 후	전역증, 예비군훈련 보상비 수령수단, 개인 금융카드 등

연계카드

나라사랑카드는 체크카드(신용카드사), 전자화폐(K-CASH), 현금카드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계카드	세부내용
체크카드	- 나라사랑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은 병사는 충성마트(PX)에서 체크카드 방식으로 물품구매 대금 결제 가능 - 금융결제원이 개발 · 보급한 복합결제단말기와 충성마트의 POS시스템 간 연동으로 군부대별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기초 데이터 제공 및 결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분화된 판매관련 정보 제공
전자화폐	- 장교식당, 매점, 세탁기, 자판기 등의 군부대 내 복지시설에서 이용 - 온라인 통신불가 지역에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화폐 결제 가능한 단말기와 동글을 지원 - 사이버지식정보방(군내 PC방)에서 충전 가능하도록 온라인충전시스템과 더미단말기 지원
현금카드	- 군 영내 및 주변의 ATM기기 인프라 부족 현실을 감안, 복합결제단말기에서 나라사랑카드 계좌 금액을 충성마트 계좌로 이체하고, 해당금액을 병사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현금인출 서비스 제공(신한, 국민, 기업은행과 제휴)

결제시스템 구축 운영

금융결제원이 나라사랑카드와 관련하여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스템은 동 카드에 탑재된 금융기능(체크카드, K-CASH, 현금카드) 전반에 대한 결제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은 2005년 6월 국방부로부터 나라사랑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년말까지 동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5년 진행된 2기(2015~2025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금융사업자로 기존의 신한은행 단독에서 국민, 기업의 2개 은행 체제로 변동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발효에 따른 환경변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의 안정적 사업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은 재차 결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16년 하반기에 2기 결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의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충성마트에 이어 추가로 체력단련장, 호텔/콘도, 쇼핑타운 등의 군 복지시설에 금융결제원의 결제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보안단말기, 최신 POS기기, LTE 무선통신환경, 결산관리시스템 등 고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기대효과

나라사랑카드 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 운영을 통해 금융결제원은 향후 10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주요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을 지향하는 금융결제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금융정보업무부 팀장 | 문영석

나라사랑카드의 탄생



항상 아이처럼만 생각했던 아들놈이 대학생이 되어 올 8월 의정부에 있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왔다. 신체검사를 마치고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와서는 신기해 하길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라사랑카드에 대하여 일장연설을 한 적이 있다.

2005년 말 국방부는 타 업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IT 및 결제 인프라 개선과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이 사업이 국방부 주요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나라사랑카드는 당시 종이 신분증인 병역증 및 전역증을 대체하고, 군 복무 중 지급되는 급여 입금통장으로, 매점 및 사이버방(부대 내 PC방) 등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도입되었지만, 주된 기능은 급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군부대 매점 등 복지시설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원 법인영업팀에서 프로젝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04년 지인으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국방부, 군인공제회 등 주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2005년도에는 우리 원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1~3위인 타 신용카드 VAN사들의 적극적인 물량 공세를 통한 영업이 시작됨으로써 1년 가까이 공들여온 사업이었지만 꼭 우리 원이 선정된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순히 군부대에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원이 선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 관계자들에게 군부대 매점뿐 아니라 사이버방, 노래방, 빨래방 등의 복지시설에 소액 선지급결제수단인 "한국형 전자화폐 K-CASH"가 제격이라는 점을 적극 설파하였고, 그 결과 2006년 군인공제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나라사랑카드 및 결제 인프라 K-CASH를 의무탑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 내부에서는 초기 투자비용만으로 수십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를 단 며칠만에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당시 결재라인이었던 전평수 실장님, 김영필 팀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우리 원과 신한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인공제회와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줄어들기만 하던 신용카드 법인부문 매출에 큰 숨통을 튼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계약 체결 후 2,000개가 넘는 군부대 매점과 수만 개가 넘는 사이버방 등의 복지시설에 결제 인프라를 설치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여러 달 동안 군부대가 있는 전국 오지를 다니면서 담당자들과 고락을 같이했던 시간이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후임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나라사랑카드 10년 재계약이 성사되어, 우리 원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큰 보람을 느낀다.





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군부대 PX 및 편의시설에서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 결제,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화폐인 K-CASH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해외사업의 실시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에 이르러 사업영역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급결제 SI(System Integration)사업에 착수하였다. 해외지급결제 SI사업은 금융결제원의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노하우에 기반하여 국내 SI업체와 협력, 해외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지급결제솔루션 수출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베트남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협정 조인식
김영대 前 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1999. 8. 7.

금융결제원이 해외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세계은행(IBRD)의 자금지원으로 추진한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 : IBPS) 구축 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1999년 당시 이 사업에 국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정부(외교통상부 및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는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금융결제원은 국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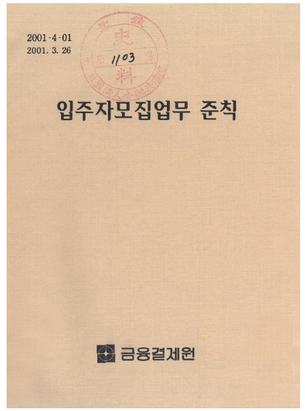
베트남의 IBPS는 중앙처리시스템과 하노이, 다낭, 하이퐁 등 모두 6개 지역 운영센터(Operation Center : OC) 처리시스템을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실시간 총액결제) 거래 및 은행 간 소액송금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3월까지 약 18개월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은 그 핵심요소인 지급결제부문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였다. 즉,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소프트웨어 PM(Project Manager), 시스템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코딩지원, 시스템 테스트 등 소프트웨어 부분과 지급결제제도, 시스템 운영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베트남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은 한국형 공공정보기술(지급결제 분야) 솔루션의 첫 해외 수출이라는 개가를 올리는 한편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을 성공적으로 구축 · 가동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업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2003년 3월 국내 SI업체의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사업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해외 수출경험은 금융결제원이 향후 해외사업을 확대함에 있어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주택청약 입주자모집 업무 준칙」
2001. 3. 26.

인터넷 · 모바일시대의 신규사업

공동전산업무

주택청약공동업무

주택청약공동망은 주택청약예금 · 부금 취급은행이 국민은행에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청약관련 은행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2000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금융결제원을 "주택청약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청약계좌관리시스템과 청약접수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주택청약공동망을 통하여 주택청약 계좌개설 중복점검, 당첨자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택청약공동망 이용자는 2000년 9월부터 인터넷과 ARS를 통해 주택청약당첨자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서도 아파트 당첨확인 및 분양정보, 청약접수결과, 청약제도 안내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청약 추첨 장면

퇴직연금 공동 기록관리

퇴직연금 기록관리(Record Keeping : RK)사업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가입기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RK) 센터 가동식
이상헌 前 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
2005. 12. 1.

업에 대한 퇴직연금 제반 정보를 기록 · 보관 · 통지하는 업무로서 금융결제원은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참가 금융기관 간 퇴직연금 업무를 연결하는 중계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3년 9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2004년 2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RK센터 구축 전담팀을 설치,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은행연합회 신탁전문위원회에서 금융결제원을 은행권 공동기록관리센터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3월 금융결제원 총회에서 센터 구축 추진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식 업무는 2005년 12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2개 은행 및 1개 증권사가 추가로 참가하였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퇴직연금제도 계약, 가입자, 자산운용, 입금, 지급 등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은행의 퇴직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품정보관리, 시산 · 연금계리 업무지원, 수수료관리, 통계관리 등의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독자시스템 구축 또는 사업철수 등으로 참가기관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6년 6월말 현재 4개 은행(KEB하나, 수협, 대구,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정보중계

국민주택채권 정보중계시스템은 2005년 5월 18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을 국민은행에서 농협과 우리은행을 추가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국민주택채권 정보중계는 금융결제원이 국민주택채권 취급금융기관과 대법원 및 조달청 간에 국민주택채권정보를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농협과 우리은행 외에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국민주택채권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서비스에 참여하기 시작,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라빌 홈페이지(www.narabill.kr)

정부납품대금청구서비스

정부납품대금청구(나라빌)서비스는 2007년 1월부터 당시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igitalbrain, D-Brain)을 구축, 운영하면서 물품 및 용역제공자의 대금청구 및 일부 재정지출업무가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전산화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납품대금청구서비스는 소액 · 소량의 물품 납품업체가 정부부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대금청구서류를 대금청구 홈페이지 나라빌(www.narabill.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축한 대금청구서비스로 2008년 11월부터 업무를 실시하였다.

2009년 9월에는 나라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청구서류 작성방식 개선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다음 해 1월에는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나라빌 모바일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CLS공동망 시스템 가동식
이상헌 前 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
2004. 12. 6.

외환동시결제(CLS)공동망

2000년대 이르러 국내 외환시장의 결제리스크 해소를 위하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행의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한국은행 주도로 추진되었다.

외환동시결제서비스는 금융기관의 비용부담 완화 및 결제인프라 조기 확보 차원에서 금융공동망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금융결제원이 시스템 구축 ·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CLS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공동망을 구축,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함으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수취통화 및 지급통화의 동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CLS공동망을 운영하게 되면서 금융결제원은 CLS메시지의 생성 및 중계, 참가은행의 자금지급(Pay-In) 및 자금수취(Pay-Out) 내역에 대한 대사, 송 · 수

신 및 모니터링, 제3자은행의 결제내역 생성 및 관리, CLS결제처리 상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CLS결제 대상거래는 현물환, 선물환 스왑거래에 이어 2007년 초 NDF(Non Deliverable Forwards, 역외선물환)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NDF거래는 폐지되었다.
CLS공동망시스템의 가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거래를 할 때 수취통화와 지급통화의 결제가 국가간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외환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LS은행은 결제회원은행 간 외환거래 결제자금을 결제일자별, 통화별로 합산하여 수취분과 지급분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건별 총액결제방식에 비해 원화 및 외화의 결제 소요자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결제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관처리(Straight Through Processing : STP)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결제 업무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수작업에 따른 입력오류 등의 운영리스크도 크게 감소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이처럼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통화 위상 제고와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 및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 모바일기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은행공동 PG서비스 이용안내서」
2001. 5. 2.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PG)

2000년대 이르러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정보통신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PG(Payment Gateway)서비스와 접속함에 있어 시스템 안정성 저하, 중복투자 발생, 수익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동의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고, 2000년 2월 PG시스템 구축 추진관련 은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금융결제원은 2000년부터 PG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PG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대금지급의 승인 · 결제 등 자금정산업무를 은행 및 카드사 등 지급서비스기관으로 중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알려주는 One-Stop 서비스이다. PG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구매자는 은행계좌 등 기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지급수단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 휴대폰결제 등 온라인에 특화된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매자는 온라인결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금융결제원의 PG서비스인 "Bankpay(www.bankpay.or.kr)"를 통하여 국민들은 국내 전 은행과 연계된 실시간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물품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지급 여부를 온라인 실시간(On-Line Real Time)으로 이용업체에 전송하고 익영업일에 판매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망을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서비스 출시 후 점차 확대되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행정안전부 민원혁신(G4C)시스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 전자정부의 주요 사이트 및 다수의 민간 사이버 쇼핑몰 등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2006년에는 소비자의 피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서비스와 TV를 이용하여 실시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하였다.

모바일지급결제(UBI)

금융결제원은 2005년 7월 은행 공동의 모바일지급결제(Ubiquitous Banking Interface : UBI)서비스를 본격 실시하였다. 은행 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송금, 공과금 및 물품대금의 납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해졌다.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계좌입출금 내역을 비롯한 수표 사고유무, 당좌거래정지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 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고객은 별도의 전용 휴대폰이나 칩(chip)없이 유비 홈페이지(www.ubi.kr)에서 누구나 고객등록 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납기관은 SMS를 통해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고객이 SMS를 이용해 서버에 접속 후 청구대금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해당대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시 초기 야심차게 시작했던 UBI서비스는 이후 가맹점(이용기관) 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정착되기 힘든 주변 여건 때문에 활성화에 많은 난관을 겪다가 결국 2009년에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즉, 고객은 피처폰 기반 환경에서 느린 처리속도와 과다한 이용요금의 부담을 상쇄할 이용 유인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참가은행은 피처폰

기반 VM(Virtual Machine)뱅킹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었고, 이동통신사와의 주도권 경쟁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다. 한편 이동통신사는 개별은행과의 제휴서비스에만 열중하여 UBI서비스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e-L/C(전자신용장)공동업무

2003년 7월 국가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8일 열린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e-L/C(Electronic Letter of Credit, 전자신용장)업무와 관련하여 "전자무역촉진종합이행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e-L/C관리시스템 구축 주관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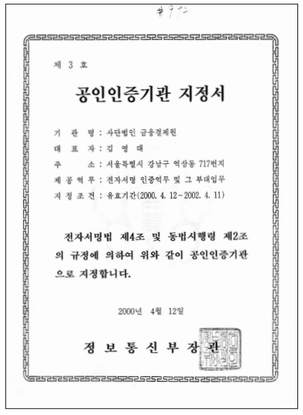
e-L/C관리시스템은 단절없는 전자무역 기반을 마련하여 무역 관련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L/C의 이중 네고(negotiation), 위 · 변조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방지 및 네고시간 단축, L/C 보관 및 내역관리 편의성 제고 등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구축되었다.

e-L/C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대금 지급방법 중의 하나인 L/C를 e-Trade 플랫폼으로 전송함과 동시에 은행공동의 e-L/C관리시스템에 등록 ·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L/C 발행내역 및 매입내역을 근거로 해당 L/C의 매입가능 한도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매입, 양도 등 L/C관련 모든 업무처리 및 조회 기록 등을 관리하는 이력(history) 관리서비스 및 L/C 매입한도 등 L/C 관련 정보조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인인증 및 금융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공인인증(yessign)

금융결제원은 2000년 4월 당시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9월부터 공인인증 홈페이지(www.yessign.or.kr)와 참가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사업자 대상의 서버 공인인증서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전자서명법」에 의거, 실거래상의 서명,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 3 호

공인인증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대 표 자 : 김 영 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지 정 업 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지 정 조 건 : 유효기간(2000. 4. 12 ~ 2002. 4. 11)

전자서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00년 4월 12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공인인증기관 지정서(정보통신부장관)
2000. 4. 12.

금융결제원은 모바일뱅킹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와 기타 무선 전자거래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1년부터 금융기관 공동의 무선 공인인증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였다. 2005년에는 공인인증체계의 안전성 및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국제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부의 공인인증체계 개선에 맞추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체계 개선 적용계획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공인인증서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퇴직연금(RK) 업무용과 재정경제부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 업무용 등 특정 응용업무를 위한 용도제한용 인증서 신설 · 발급과 공인인증서 기반 사업추진 지원(e-L/C시스템의 시점확인 서비스 이용, 전자어음 및 퇴직연금 시스템의 인증서 이용 등)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06년에는 공인인증서 보관 · 관리방법 개선, 공인인증서 온라인 재발급 절차 개선,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포함) 시 가입자 앞 휴대폰 단문 메시지(SMS) 통지와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서비스 관련 기본 방침을 수립 · 실시하여 인증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휴대폰 등 무선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2008년에는 공인인증서를 무선단말기로 이동 저장하여 무선단말기 내에서 전자서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공인인증서 기반 VM뱅킹서비스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필요한 보안서버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개시하였다.

금융ISAC

금융ISAC이란 은행권 등 금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각종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 · 탐지 ·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금융ISAC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 필요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부터이다.

200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이버테러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서 금융ISAC 설립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제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주관부서인 당시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듬해 1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거, 2002년 12월 금융분야 정보공유 · 분석센터(ISAC)를 설립하여 2003년 3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침해사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금융ISAC의 제공 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사고 발생 시 실시간 경보 · 분석체계 운영 및 대응지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 평가 및 기반보호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지원, 침해행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공동대응 등이다.

이 밖에도 금융결제원은 사이버공격이 피싱, 웜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고도화, 다양화되면서 인터넷뱅킹 사용자구간 및 웹서버의 취약점 상시점검 실시, 참가은행과 침해사고 공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기능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후 금융ISAC은 금융당국의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치방침에 따라 2015년 금융결제원에서 분리되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로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에 사업 및 인력이 모두 이관되었다.



금융보안원으로 전적하는 직원들에 대한 송별식
김종화 前 원장(앞 줄 정중앙)
2015. 4. 9.

05

글로벌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도약(2010~)

1. 국제업무의 추진과 해외 협력사업의 확대
2.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전환
3. 미래 30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간 인적, 물적 경제교류 활성화로 지급결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각국의 지급결제 관련 기관들은 상호 경쟁적으로 국가간(Cross-Border) 지급결제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금융결제원도 국가간 ATM 연계 사업을 비롯 APN 활동, 해외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업무의 추진과 해외 협력사업의 확대

금융결제원은 2010년 12월 ATM망의 상호 연계를 통한 국가간 ATM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말레이시아 MEPS(Malaysian Electronic Payment System)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간 인적, 물적 경제교류 활성화로 지급결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각국의 지급결제 정책기관과 운영기관은 상호 경쟁적으로 국가간(Cross-Border) 지급결제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하였다.

금융결제원에서도 일본, 중국, 동남아 4개국 및 필리핀의 지급결제 운영기관과 국가간 ATM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급결제망 연계에 대해 2007년 말부터 논의해왔다.

금융결제원은 2010년 12월 ATM망의 상호 연계를 통한 국가간 ATM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말레이시아 MEPS(Malaysian Electronic



국가간 ATM서비스 태국과 MOU 체결
박윤배 前 상무(앞줄 왼쪽), 김영준 상무(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2010. 9. 3.



국가간 ATM서비스 베트남과 본계약 체결
송창헌 前 원장 (앞줄 오른쪽)
2011. 3. 9.

Payment System)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미국 NYCE(The New York Currency Exchange), 필리핀 Megalink, 베트남 Banknetvn[현 NAPAS(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Vietnam)], 태국 ITMX(National ITMX Company Limited), 2015년 인도네시아 Rintis(PT Rintis Sejahtera)까지 총 6개국과 ATM망을 개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성장시켜 왔다.

국가간 ATM 서비스 연계 현황

국가(서비스 개시)	기관명	제공 서비스
말레이시아(2010. 12)	MEPS	현금인출
미국(2011. 1)	NYCE	현금인출, 잔액조회
필리핀(2011. 1)	Megalink	현금인출
베트남(2011. 8)	Banknetvn	현금인출, 잔액조회
태국(2011. 12)	ITMX	현금인출, 잔액조회
필리핀(2015. 6)	BANCNET	현금인출, 잔액조회
인도네시아(2015. 11)	Rintis	현금인출, 잔액조회

그 과정에서 2014년 12월에는 기존에 연계해왔던 베트남 Banknetvn과의 국가간 ATM공동망을 기반으로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인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당시 G20 정상회의에서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비용 절감에 대한 논의를 기점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내 은행의 국가간 송금서비스 참여를 독려하였고, 국가간 ATM서비스 연계 국가 중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업무비중이 높은 베트남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본국 송금을 위한 당발(Outbound)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가간 ATM서비스를 기반으로 연계 국가를 추가하며 공동망의 이용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던 상황에서 신규 지급결제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간 지급결제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4월 금융결제원이 Asian Payment Network(이하 APN, 前 ASEANPay)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지급결제기관들까지 순차적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APN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지급결제기관연합기구로 성장하였다.

금융결제원은 APN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추진과 국가간 송금서비스 주도 등의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2년간 APN 부의장직과 기술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결제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APN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3, 4일 분당센터 대회의실에서 APN 정기총회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APN 정기총회 및 포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신동원 전무(앞줄 정중앙)
2016. 3. 3.~4.

Focus

APN 소개

설립 및 일반 현황

APN은 2006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일부 국가의 지급결제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회원 상호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ATM/POS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와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APN은 초창기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로까지 지역적 기반이 확대되어 11개국 13개 기관이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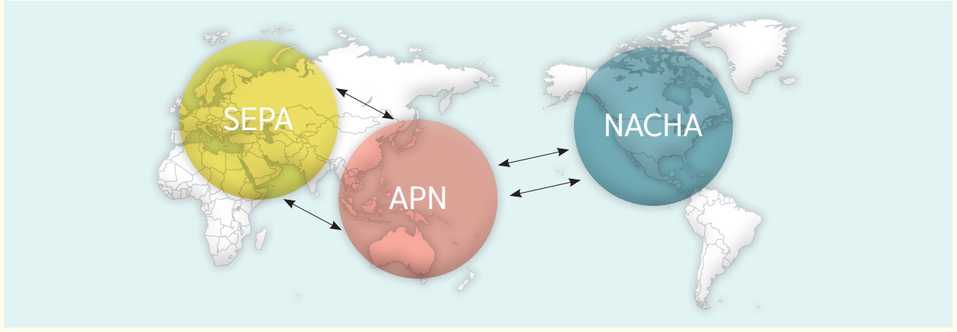
참가국별 기관 현황(11개국 13개 기관)



APN의 현재와 미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지급결제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APN은 현재 동북아 · 오세아니아 국가로까지 지역적 기반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국가간 ATM/POS망의 1:1 연계를 통한 기존 서비스 이용기반의 단순한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Hub를 통한 N:1 방식으로 국가간 연계방식을 전환하여 APN이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지급결제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APN은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등 타 대륙을 대표하는 지급결제시스템 Hub들과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의 아태지역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PN Hub시스템 권역별 연계 확장 개념도



그리고 APN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존 상대국과의 양자 간(1:1) 연결방식이 아닌 1회 연결로 모든 국가의 지급결제기관과 공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1 : N방식의 허브(Hub)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 APN포럼 내에서 아시아 · 태평양지역 내 허브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이듬해 8월 APN 허브시스템 구축 원칙이 수립되고, 회원기관 간 경쟁입찰을 거쳐 2016년 3월 말레이시아 MEPS를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MEPS를 중심으로 2017년 하반기를 목표로 APN 허브시스템 1단계(국가간 ATM 및 국가간 송금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도 APN 허브 TF(APN업무위원회 주관)에 "허브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시, 시장조사, 공식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APN 허브시스템이 2018년 하반기 2단계(POS 물품구매서비스) 구축까지 완료될 경우 금융결제원은 참가 회원국들과 함께 아시아 · 태평양지역 11개국 내에서의 국가간 ATM, 송금, POS 물품구매서비스를 이 허브시스템을 통해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PN은 허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미얀마, 대만,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여타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APN 회원가입 및 허브시스템 참여 독려와 함께 모바일, e-Commerce, 기업 간 자금이체 등 국가간 다양한 신규 지급결제서비스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앞서 설명한 유럽의 SEPA(Single Euro Payment Area)와 미주의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와 같은 권역별 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를 더욱 성장 ·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외 협력사업의 확대

금융결제원은 지난 30년간 안정적으로 성장 · 발전시켜온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운영 및 제도 수립 관련 유무형의 지식 역량을 해외 중앙은행 및 지급결제기관 등에 수출해왔다.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노하우 및 S/W의 활용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해외 협력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

분 류	대상국	시기	수행업무
시스템 구 축	베트남	2001	- 시스템 분석 · 설계 · 테스트 · 감리
	나이지리아	2006	- 시스템 구축 자문
컨설팅	몽골	2011	-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분석 및 현대화 방향 제시
	라오스		
	필리핀	2012	
	몰도바		
	아르메니아	2013	
	캄보디아	2014	
	몰도바	2014	- 지급결제기관 설립 지원 컨설팅
	캄보디아	2015	- 지급결제시스템 설계
	아르메니아	2015	- 국외송금시스템 설계
		2016	- 국외송금시스템 입찰서 작성지원

개발도상국 등의 지원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9년 8월부터 베트남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건, 관련 컨설팅 9건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니즈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간 협력"의 틀을 통해 지급결제인프라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또한 금융인프라 수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개발도상국 금융인프라 수출 정책에 공조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해외 협력사업이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6년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 관련 조직을 국제업무실로 통합, 개편하여 지급결제인프라 수출 등 해외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에 있다.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전환

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확산

모바일지급결제 이용 확산

2010년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된 이후 해마다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및 지급결제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점차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금융결제원은 2010년 1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계좌잔액 및 거래금액 조회 등의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 공동의 스마트폰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시 공인인증서 적용을 위하여 은행권 공동의 스마트폰 기반 공인인증서 중계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같은 해 4월 옴니아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5월에는 아이폰, 9월에는 안드로이드폰으로 서비스 적용 대상 스마트폰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은행 공동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SKT 휴대폰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8월에는 KT 휴대폰 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하였다.

한편 2013년 12월 기존 뱅크월렛서비스와 (주)카카오 플랫폼을 연동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후 201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간담회
김종화 前 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2014. 10. 6.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서비스 부문 외에도 대금납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실시를 확대해가고 있다. 2014년 8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대상으로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내역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납부에도 역시 행정자치부 모바일 납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서

비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은 모바일뱅킹, 모바일지급결제, 모바일대금납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를 다각화함으로써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이용 확산 및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지급수단의 전자화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금융서비스 환경은 물론 소비자의 지급행위에도 많은 변화가 도래하였다.
오프라인 상점은 물론 PC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급수단의 이용행태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기존 지급수단의 개선 또는 보완을 통하여 전자적 지급결제방식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2010년 11월 어음 · 수표 이미지 정보교환서비스를 전국 32개 어음교환소에 확대 실시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전자어음 부도 시 상환청구인 즉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시스템을 통하여 상환의무자 즉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게 전자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의 주민번호 앞 7자리 제공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어음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2010년 8월 일반지로요금, 전기, 전화요금을 모바일 기반 지로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상품권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자 선불형 기프트카드(Gift Card)와 유사한 "온누리 전자상품권 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상품권 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CD/ATM에서 현금 입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IC(Integrated Circuit)카드를 마트, 식당 등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융당국이 추진한 MS(Magnetic Stripe)카드의 IC카드 전환정책에 따라 발급된 보안성이 뛰어난 현금IC카드 한 장으로 비밀번호 본인 확인 후 현금입출금과 대금결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지급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5년 4월에는 고객이 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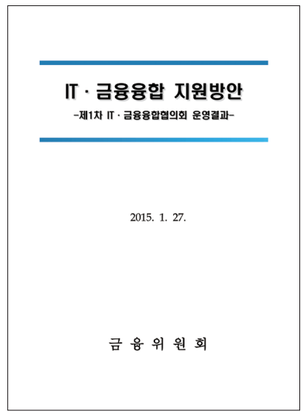
온누리 전자상품권 카드

금액의 0.5%를 결제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캐쉬백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이 서비스의 참여 금융기관이 25개로 확대되고 가맹점도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으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금융결제원은 전자방식의 지급수단 도입 및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 IT 융합 가속화

핀테크 환경 분석

근래 들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 각종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및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등 금융 IT 융합의 변화 물결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2010년대에 이르러 금융과 기술의 접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라는 용어가 금융산업 전반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은 본격적인 핀테크산업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의 주된 내용은 IT와 금융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금융거래와 규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변혁하고 업종 규율과 규제 방식을 창의적 혁신이 요구되는 핀테크 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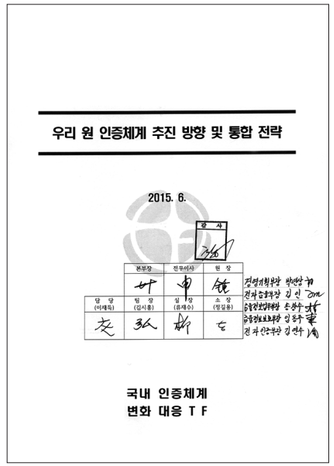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2015. 1. 27.

전략적 대응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핀테크 트렌드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제시한 정책 관련 업무 방향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2015년 7월 금융결제연구소 내에 핀테크업무실을 신설하였다. 핀테크업무실은 보안 · 인증 관련 신기술 도입 검토는 물론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 방안, 최신 지급

결제 및 금융산업 신기술에 관한 조사 분석 등 금융 IT 융합 환경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환경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2015년 3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주관 핀테크지원센터의 협력기관이자 전문 멘토단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동 지원센터 설립 이후 핀테크 지원센터에 인력을 파견,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 결제, 인증, 보안 등 금융 및 지급결제시장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2016년 7월 신설된 미래금융실 내에 핀테크 업무팀이 편제되면서 향후 금융과 IT융합 가속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이로 인한 지급결제시장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급결제 보안성 강화


우리 원 인증체계 추진 방향 및 통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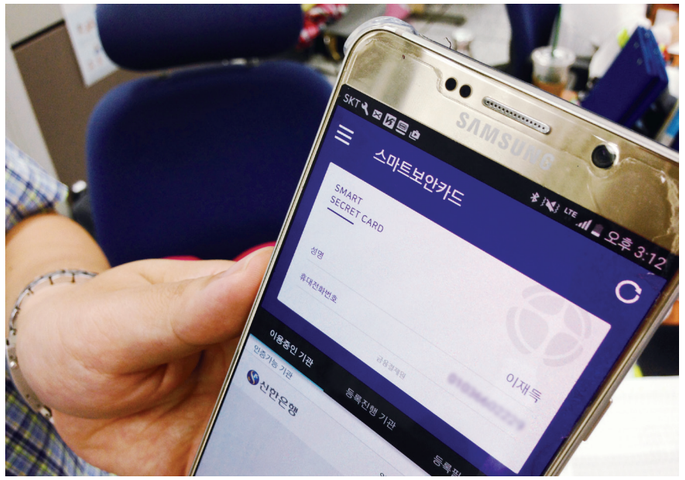
2015. 6.

국내 인증체계
변화 대응 T F

인증체계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2015. 6.

인증체계 다변화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본인 인증방식은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금융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인증 기술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및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바이오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편리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의 다변화에 걸맞은 통합인증기관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1999년 2월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거, 2000년 4월부터 정보통신부로부터 은행권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인인증업무의 고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1년 3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방법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3월에는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 5월에 이르러 금융결제원은 금융IC카드에 공인인증서, OTP 등 인증



신 인증수단인 스마트보안카드 이용 모습

수단을 추가하여 금융IC카드를 지급 및 인증서비스가 가능한 통합금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스마트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기능을 활용한 "금융IC카드 기반 통합 인증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인증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토큰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금융IC카드와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OTP를 생성하는 신기술인 "스마트OTP공동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12일부터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기존의 플라스틱 보안카드와는 달리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번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입력하는 형태의 스마트보안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개별 은행별로 발급하는 플라스틱 보안카드를 대신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로 사용가능하며, 스마트보안카드 하나로 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2015년 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에 의거, 비대면 금융거래 등 혁신적인 금융 및 결제 서비스에 맞는 지문, 홍채, 정맥 등 바이오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이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정보를 분산 저장한 후 인증 시 분리된 바이오 정보를 결

합하여 인증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이 다변화되고 있는 인증방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OTP, 바이오 인증을 모두 포함하는 신원확인방식으로 2013년 출범한 FIDO(Fast IDentity Online) 얼라이언스(alliance)의 표준 전략에 대비하고 있다.

정보보호 강화

최근 이용자의 금융거래 방식과 고객과의 접점이 다양해지고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디도스 공격, 해킹 및 웹 · 앱 변조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성 검토, 보안관제,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해킹에 취약한 사회기반 시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거, 2012년 7월부터 금융결제원에 금융ISAC이 구축 운영되었다. 2015년 4월부터는 정보기술과 금융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각종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관제를 개선하여 금융권 침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증권은 코스콤에 분산 운영되어온 정보공유분석센터 및 금융보안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3년 7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중 「금융회사 정보기술 보호업무 이행 지침」과 금융기관은 이상금융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분석한 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FDS)을 구축, 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5년 4월 부정거래 발생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FDS를 적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같은 해 9월 금융결제원은 국가중요시설 및 기반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실 출입통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12월에는 금융공동망 이체 거래 시 의심 · 유의정보 및 일시 인출정지 정보를 참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업무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대비함으로써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와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의심기기를 분석, 침투경로 및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기술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실시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훈련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금융보안원 창립기념식
김영린 초대원장
2015. 4. 10.

미래 30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

스마트금융

2009년 11월 아이폰 및 2010년 초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의 본격 출시는 국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가 봇물처럼 제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금융 분야에서도 범용 OS가 탑재되어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권 공동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행자로서 시스템 개발과 중계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0년 4월 옴니아폰을 시작으로 5월에는 아이폰 그리고 9월에는 안드로이드폰까지 스마트폰뱅킹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스마트폰뱅킹서비스는 현재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자 제공 중에 있으나 개시 5년 만에 PC 기반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을 능가하는 대표적인 모바일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가 모바일카드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도한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 통신과금서비스(Phone Bill)를 제외하고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NFC를 활용한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모델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었다.



뱅크월렛 서비스 이용 모습

특히 2008년에 NFC기술의 표준화가 완료되고, 전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인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에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확산을 위해 2009년 중반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도록 촉구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NFC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은 NFC 기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로의 시장변화 및 성장 가능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스마트폰에서 NFC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모바일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여 2012년 11월부터 "뱅크월렛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뱅크월렛서비스는 은행 공동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로서 고객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뱅크월렛 앱을 설치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몰라도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으면 개인 간 편리하게 뱅크머니 송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 쇼핑몰 등 온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1회용 바코드나 뱅크머니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4년에는 모바일 기반 SNS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추진하여 국내 최초로 대중에게 친숙한 모바일메신저 기반 뱅크월렛 제휴서비스(뱅크월렛카카오)를 실시함으로써 급격히 확산 중인 핀테크서비스의 선도사례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현재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또한 2016년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이미 50%를 상회할 만큼 급성장 중에 있다.

한편 모바일지급결제시장은 "간편결제", "간편송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은행, 신용카드사 외에도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ICT기업,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비금융기관까지 가세하여 이른바 "○○PAY서비스" 출시 경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해외 ICT기업들의 국내 모바일지급결제시장 진출은 물론 텐센트와 같은 해외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택시 요금, 청구서, 인증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연계한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등 국내 · 외 비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 및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모바일지급결제시장은 O2O(Online to Offline) 환경, 빅데이터(Big Data)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율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스마트금융업무는 급변하는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환경 및 고도화하는 최신 스마트 기술환경 하에서 은행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
김종화 前 원장(오른쪽)
2015. 1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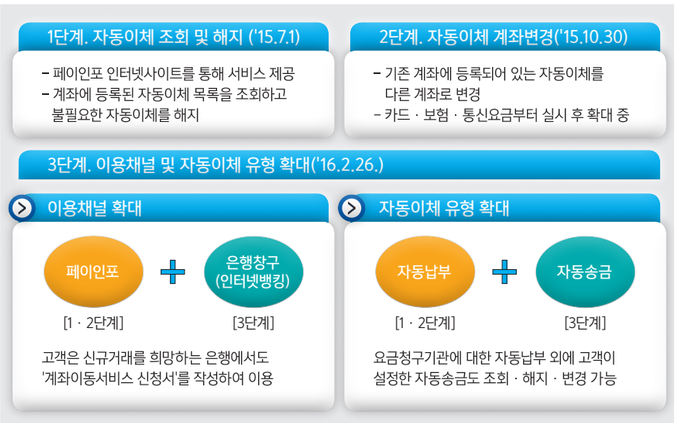
계좌이동서비스

기존에는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요금청구기관별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금융거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거래은행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최초로 발표하면서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TF가 운영되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추진 결과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개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란 자동이체서비스의 안전성과 대고객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통합관리하고, 동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자동이체 일괄 조회 · 해지 · 변경 및 자동납부 동의자료 열람 등을 제공하는 자동이체 관련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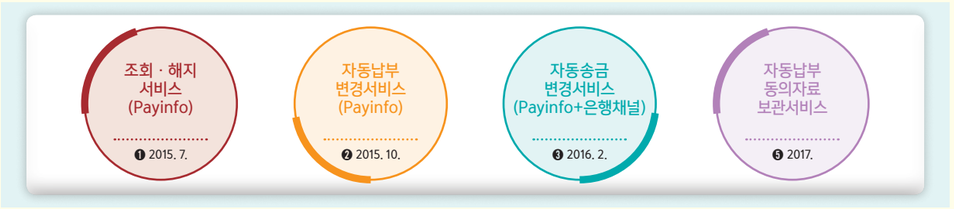
구 분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참가기관	실 시
조회서비스	자동이체 일괄 조회	매 일 09:00~22:00	전 금융회사 (51개)	2015. 7.
해지서비스	자동이체 해지	영업일 09:00~17 :00		
변경서비스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16개 은행	2015. 10.

서비스 추진 현황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는 다수의 기관(금융기관 51개, 요금청구기관 약 5만개)와 방대한 자동이체 건수(약 6억건)를 고려한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결제원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용기관에 자동이체 신청 시 제공한 자동납부동의자료(녹취, ARS, 서면 등)를 모아 고객이 원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동의자료 보관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건별로 해지 및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계별 서비스 실시 일정



기대효과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는 자동이체정보의 조회-해지-변경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이용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고객의 주거래 은행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고객의 자동납부동의자료를 이용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관리함으로써 자동이체 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6년 2월 총 1천 3백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 서베이(나이스알앤씨)에서 인지도 71%, 만족도 73%, 유용성 80% 등 소비자 반응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 뿐 아니라 정보중계 등의 새로운 사업영역에 본격적인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금융정보업무부 과장 | 홍혜정

계좌이동서비스의 탄생을 위해



계좌이동은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들을 한 번에 변경해 주 계좌까지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이다. 2016년 6월, 계좌이동서비스의 커다란 첫 걸음이 완성되었다. 짧은 기간에 통합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오픈을 해야 하기에 늘 쫓기는 마음이었다. 아이러니하게 그 가운데도 이 업무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전역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군인의 심경처럼.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단계적 시행을 택했기에 2014년 12월부터 2년간 시범실시 포함 총 10번의 크고 작은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새로운 서비스 시행 준비와 기존 서비스의 개선, 향후 서비스에 대한 업무요건 협의를 동시 진행해야 했다. '자동이체에 이미 변경절차가 있기에 서비스별 차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지'했으나 오산이었다.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건물만 올리면 되겠지'했던 당초 생각은 깨졌다. 은행회의와 업무설계를 진행할수록 '내가 할 일은 도로 건설이었구나'에서 '아! 도로건설도 아니네. 깨끗한 도로를 위해 울퉁불퉁한 길을 매끄럽게 다듬고, 박힌 돌들을 빼내고 불순물 제거를 하면서 도로를 포장하는 일이구나'라고 점점 현실화 되었다.

여러 난관도 겹쳤다. 금융기관들의 자동이체 원장을 모아 거기에 우리 원의 중계업무를 설계하면 되었으나 50여개 금융기관의 원장 관리기준과 업무절차가 모두 달라 이를 통합하는 것이 첫 난관이었다. 통일된 이용기관 코드가 없는 펌뱅킹을 어떻게 할지도 난제였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자동이체 연관업무를 오래 운영해왔기에 신규 절차를 만들고 조정하기란 더욱 어려웠다. 처음 1년간 30차례 이상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왜 계좌이동서비스 때문에 현재 절차를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지로, CMS, 펌(Firm), 카드 담당자 등 한 은행 내에서도 서로 다른 업무를 여러 은행 수많은 담당자가 모여 회의를 하니, 합의가 쉽지 않았다.

격주 회의와 잦은 서비스 오픈에 자정 넘긴 퇴근은 일상화 되고 서비스 오픈 때마다 주말 근무와 조기 출근이 추가되었다. 해결 못한 문제, 해내야 하는 압박감 속에 새벽 퇴근길은 우울했고 종일 꾹꾹 눌러놓은 감정이 쏟구쳐 자주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엔 머리가 맑아지고 도저히 떠오르지 않던 문제해결의 아이디어가 물꼬처럼 터지기도 했다. 팀원 모두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자나 깨나 '계좌이동을 어떻게 설계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런 산고의 시간들 속에 팀원들과 관련부서 및 은행 담당자들까지 전우애가 느껴질 정도로 함께 고민하고 애쓴 결과 당초 걱정과 달리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2단계 오픈 때엔 모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고(그 순간은 두려움이 앞섰지만), 일반인에게도 꽤 인지도 높은 서비스가 되었다. 덕분에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TV에도 나오는 중요한 일이에요"라는 말을 딸아이한테 듣는 기쁨도 있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믿음을 주었던 팀 동료들의 "전우애"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하는 축복이었다.

긴 여정의 첫 문을 통과하니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이겨냈다는 뿌듯함과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걱정이 곧 성장판이 되었다. 꽤 힘들었지만 또 이런 상황을 선택하라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것 같다. 좋아하는 일을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인들 못 넘으랴. 서비스를 만드는 건 아이 키우는 것과 같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산고 속에 출산하고, 많은 준비를 해도 처음은 늘 어렵고 서툴다. 그래도 믿음과 의지로 키우면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모도 성장한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한 그간의 시간도 그랬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이 서비스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오늘도 불철주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격려와 박수, 그리고 정여울 작가의 글로 응원을 대신한다(나에게도).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망설임, 설움과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의 눈부신 쾌감을 생각하며 끝까지 견디고 싶다.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정여울)."

어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계좌이동서비스는 51개의 금융기관과 약 5만여 개의 요금청구기관 그리고 약 6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자동이체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2015년 7월 1일 1단계 서비스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Payinfo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역은 해지할 수 있는 조회 · 해지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2단계 서비스로는 카드 · 보험 · 통신업종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에 대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3단계 서비스는 Payinfo홈페이지 이외에도 각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 조회 · 해지 · 변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계좌이동 2단계 서비스 시행 이후 7개월 만(2016년 5월 기준)에 551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하였고, 501만 건의 계좌변경 신청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약 14%가 본인의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016년 12월부터는 자동이체 통합관리기능을 "계좌통합관리"로 확장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는 잔고 5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즉시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이 잊고 있었던 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은 계좌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방치된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TEST BED 전경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코스콤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월 실무협의회를 구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작업에 착수하였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은 핀테크기업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에 해당한다. 동 플랫폼은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좌 입 · 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개발된 핀테크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 중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각의 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 구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TEST BED 오픈 기념식
조화건 본부장, 한창현 본부장, 황문연 감사, 김종화 前 원장, 신동원 전무,
이종규 본부장, 김영준 본부장, 박연상 본부장(왼쪽부터)
2015. 12. 15.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개통식 및
핀테크 데모데이(제10차), 이흥모 원장
2016. 8. 30.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개통식 및 핀테크 데모데이(제10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정중앙)과 이흥모 원장(오른쪽)
2016. 8. 30.



바이오인증 세미나
정맥인증 시연
2015. 7. 30.

현을 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핀테크기업은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구현이 보다 쉬워지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과도 또 다른 채널을 통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며, 고객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은 16개 은행이 참가하여 1년여의 실무작업과 시스템 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2016년 8월 개통식을 갖고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조회 등 핀테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5개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핀테크기업에게 표준화된 API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들이 구현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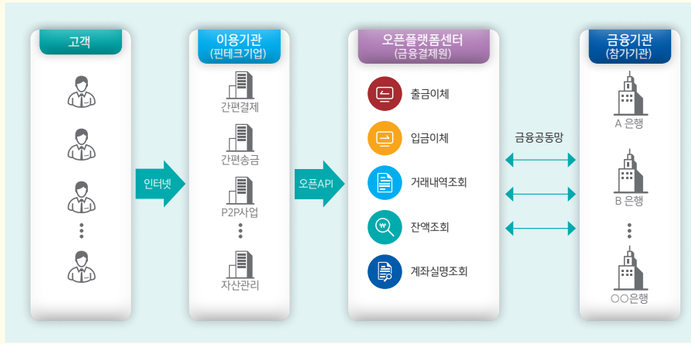
Focus

오픈플랫폼 공동업무 소개

개요

오픈플랫폼 공동업무는 이용기관(핀테크기업 등)이 ICT를 접목시켜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내부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고, 핀테크기업의 API를 활용한 각종 이체 및 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국내 주요 16개 은행이 2016년 8월 30일부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오픈플랫폼 공동업무 흐름도



금융기관(참가기관) : 오픈플랫폼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
오픈플랫폼센터(금융결제원) : 이용기관과 참가기관 간의 API 금융거래 정보를 중계하는 시스템 구축 · 운영(이용기관의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테스트베드 운영 포함)
이용기관 : 오픈플랫폼 공동업무 이용을 승인받아 오픈 API를 활용하여 핀테크 금융서비스 개발 · 제공
고객 :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금융서비스 이용

이용대상

오픈플랫폼 공동업무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핀테크 산업 유관업종",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 는 보조업자 등에 해당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 사업모델 업체, 과거 부도기록 또는 금융질서문란 기록 업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모델, 불법자금 이체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업체, 사업모델상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 타기관의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대신하여 출금한 후 정산해주는 사업모델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오픈플랫폼 공동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핀테크기업 등은 오픈플랫폼 웹페이지에 서비스 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용적합성을 승인 받은 후, 표준 API 명세서에 따라 서비스를 개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며, 금융보안원 등이 개발한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완료하여야 최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제공서비스

오픈플랫폼 공동업무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오픈 API를 통해 각종 이체 및 조회 서비스를 연중무휴로 00:30~23:30까지 제공하고 있다.

오픈플랫폼 공동업무 제공 서비스 내역

업무 구분	내 용
출 금 이 체	고객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약정 계좌로 실시간 집금
입 금 이 체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 입금
잔 액 조 회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
계좌실명조회	이용기관이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고객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

지를 사전에 시험하고 업무적, 기술적으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5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에 있다.

바이오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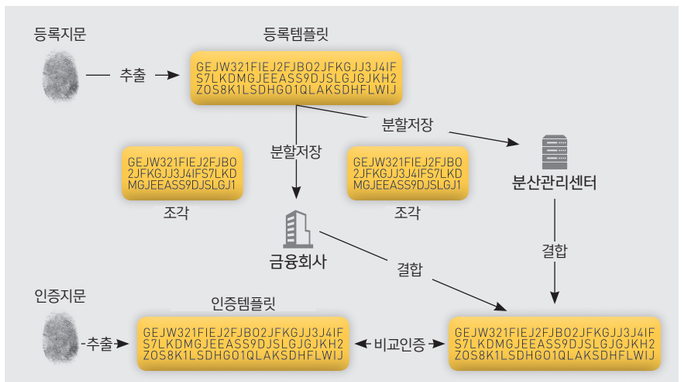
배경

2015년 초부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은 고객의 금융거래 편리성 제고 및 금융기관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의 변화는 금융기관들에게 개방적인 대고객 금융서비스 추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기관 책임하에 인증 ·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 또한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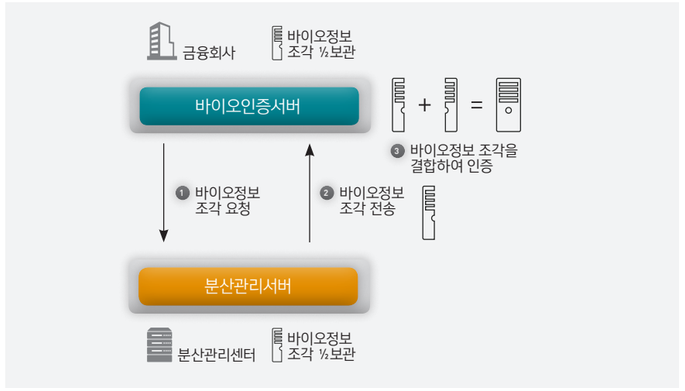
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신인증기술이 국내 금융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바이오인증이 그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지문, 홍채, 정맥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이용,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바이오인증은 기존 인증수단에서 발생 가능한 위 · 변조, 정보 유출, 공여 등의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고 카드나 신분증, 통장 등의 전자금융매체 소지가 불필요한 무매체거래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차세대 인증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 개념도



바이오정보 자사인증서비스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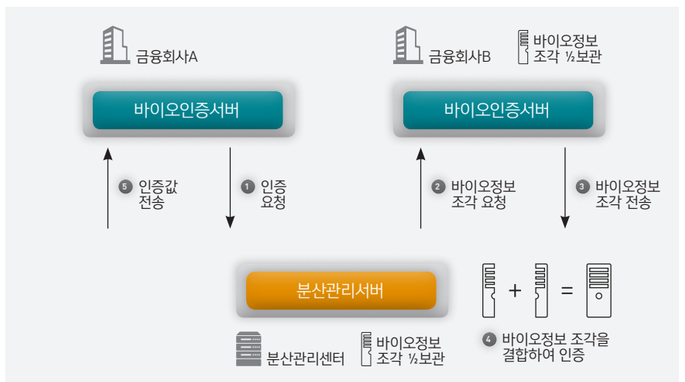


지문, 홍채, 정맥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이용,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바이오인증은 기존 인증수단에서 발생 가능한 위 · 변조, 정보 유출, 공여 등의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고 카드나 신분증, 통장 등의 전자금융매체 소지가 불필요한 무매체거래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차세대 인증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생 변하지 않는 바이오정보의 특성상 유출 시 해당 바이오인증 이용이 영구 불가능해지는 문제와 정보 집적기관의 정보 수집 · 이용의 오 · 남용(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본격 도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바이오인증 관련 연구에 2014년부터 본격 착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정보 인증중계서비스 흐름도



금융권의 바이오인증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설명

금융결제원이 연구개발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바이오정보를 인증에 사용할 수 없는 조각으로 분할,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나누어 보관하고, 거래시점에 바이오정보 조각을 일시적으로 결합시켜 인증함으로써 해킹 및 정보유출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기술 적용 시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인증 수행이 불가능하고 제3의 독립된 기관인 분산관리센터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인증프로세스를 구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목적 외 인증에 대한 이력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고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기관 간 바이오정보 및 바이오인증채널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인증중계 기능을 제공하여 금융기관별 중복 등록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TM, Digital Kiosk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공용 매체와 스마트폰 등 개인 소유 매체를 통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호환업무 규격 또한 포함하고 있다.

향후 계획

금융결제원은 분산관리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의 바이오인증 인프라로 기능할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을 2016년 중 구축 완료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은 바이오정보 조각의 보관, 금융기관 간 인증 중계뿐 아니라 독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기능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최소 비용으로 다양한 인증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증분야 통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서민금융기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권을 넘어 핀테크기업, 전자금융업자 등 바이오인증이 필요한 전 산업 분야로 적용범위를 확장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은 향후 금융결제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ocus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개념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는 전용 앱을 통해 거래(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시마다 금융결제원이 1회용 보안카드 번호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이미지 형태로 전송하여 거래 인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차세대 인증서비스이다.

2016년 7월 4일 금융결제원 내부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신한은행(2016. 7. 12), 우리은행(2016. 7. 15), 대구은행(2016. 8. 12)에서 대고객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향후 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가능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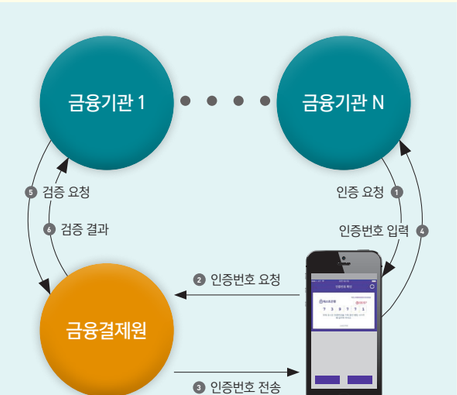
등록 및 이용

고객은 신분증(주민증)과 스마트폰만 가지고 은행 점포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등록코드(5자리), 비밀번호(PIN, 6자리) 등을 입력한다. 스마트보안카드를 이용한 인증은 먼저 고객이 금융거래 시에 스마트보안카드 인증번호를 요청하고, 금융결제원에서 6자리의 인증번호가 표시된 이미지를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면 고객은 수신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스마트폰 뱅킹 혹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입력하면 된다. 이 때 은행은 입력된 인증번호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 검증을 요청하고, 금융결제원이 검증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인증과정이 완료된다.

장점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보안에 취약한 플라스틱 보안카드나 금융거래를 위해 OTP 등을 소지해야 했던 기존 인증방식에서 탈피하여, 별도의 매체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결제원 전용앱 하나만으로 대부분 은행에서 공통 사용이 가능(기존에는 은행마다 별도 발급, 소지)하며, 6자리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ARS, SMS 등 추가인증도 필요 없다. 특히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6자리의 인증번호는 특정 거래, 특정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미지 형태로 전송되므로 데이터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개념도



스마트보안카드 인증절차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신 동 원



전무님께서는 금융결제원 창립멤버로서 우리 원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발전사를 뒤돌아보며 창립 30돌을 맞는 감회가 어떠하신지요?

금융결제원은 1986년에 기존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어음교환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저는 금융결제원 창립 당시의 일원으로서 금융결제원에 몸담았던 선후배 및 동료들의 땀과 열정이 어린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니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국가 5대 기간 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과제를 부여받고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전산망 구축 · 운영 전담기관으로서 원활한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통해 금융기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은 금융결제원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 · 발전해 온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실물 수작업과 기계처리에 의존해 오던 어음 · 수표 및 지로장표 처리방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CD 및 타행환공동망의 성공적인 구축에 이어 전자금융공동망 등 차세대 핵심 지급결제 인프라도 구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인터넷뱅킹은 물론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등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부가서비스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기관들과 쉽고 편리하게 연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융권 공동 오픈API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와 OTP를 비롯하여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차세대 인증수단들도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해 나감으로써 향후 통합인증 허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급결제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연계 · 확장해 나가는 국가간 공동망사업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시스템 해외수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결제원이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 대해 지난 30년간 금융결제원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오늘의 금융결제원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 현 임직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융결제원이 설립되던 1980년대 열악한 IT기술과 금융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융전산망 구축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일화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986년 금융결제원이 발족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던 금융공동전산망을 구축할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 IT인프라 및 제반 여건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양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융결제원 직원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금융공동전산망 구축사업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30년 넘게 금융결제원에 몸담으며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열정도 많았고 개선의지도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 시절 어음교환부 근무 당시 야간근무를 했던 기억들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대부분의 결제업무 처리방식이 전자화된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특히 집중일이 되면 수십 명의 인원들이 어음 · 수표의 기계처리를 위해 R/S(Reader/Sorter)기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오후 늦게서야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서 졸다가 내릴 역을 한 번 더 돌고 나서야 내린 날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처리해 내야 할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완수해 냈다는 보람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금융결제원의 성장과 발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각 나라들은 역사적 · 경제적 배경과 상거래 관습 그리고 IT환경 등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지급결제제도와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수표와 직불카드형태의 지급결제수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들어 민간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실시간이체 등은 아직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이 지급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단일통화 지역에서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를 통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통합이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음 · 수표거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의 사용이 활발합니다. 전국은행협회가 산하기관을 통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어음교환소와 ATM 및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이들 나라와 다른 특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보통 지급결제수단별로 그 운영기관이 각기 다르거나 동일한 지급결제수단인 경우에도 복수의 기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지급결제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같은 한 기관에서 전담 ·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단위의 단일 집중식 지급결제 네트워크인 금융공동망을 통한 각종 지급결제서비스는 효율성,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 등의 면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 년 전부터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협력사업은 대한민국 스타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한류의 물결처럼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무님께서는 지난 30년간 금융결제원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개인 또는 회사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일 또는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사 후 우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추진했었던 모든 업무들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해외협력사업과 지급결제서비스를 국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국가간 공동망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추진했었던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에 들어서 신사업 발굴과 업무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해외수출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지난 30여 년 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중앙집중형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통해 축적한 유무형의 제도적, 기술적 경험과 지급결제솔루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스타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한류의 물결처럼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개발도상국 금융인프라 지원 및 수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원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간 공동망사업에서 금융결제원이 APN(Asia Payment Network) 부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회원국 내 국가간 네트워크 연계와 서비스 확대를 주도적으로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원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던 점은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아시아 · 태평양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주와 같은 권역별 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확대 · 발전에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후배직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나 금융결제원의 바람직한 노사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눈부신 발전은 금융결제원이 발족하여 성장 · 발전해 온 지난 30년의 시간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앞으로도 한 차원 더 성숙 ·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투철한 주인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급결제와 IT기술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현재의 금융결제원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금융결제원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역사는 노와 사의 구분없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금융결제원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결제원이 먼 훗날 또 다른 눈부신 발전의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사가 함께 더 높은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한 방향으로 함께 굴러가지 못하면 결국 수레가 제 구실을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동반자로서의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조직발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노사문화가 바탕이 될 때 우리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Tip Story

비서실 실장 | 안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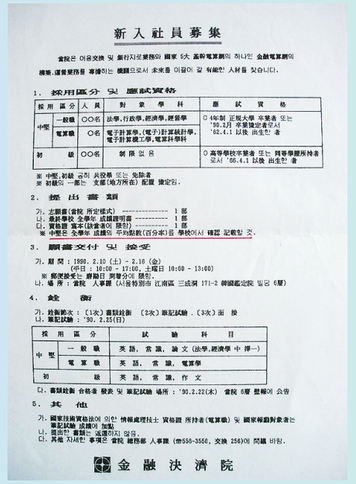
내 생의 절반,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에 근무한 지 만 26년이 지났습니다. 제 생의 절반을 금융결제원에서 보냈고, 이제는 우리 원과 함께하는 세월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원에서의 제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얼마 전 개인 사물을 정리하다 1990년 우리 원 신입직원 모집 안내문을 찾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 봐도 낯선 한자와 타자체 글씨의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 채용 안내문이 바로 우리 원과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고리였습니다. 타자기 시대에 문서작성 전용기기가 새로 들어와 그 기능을 익히겠다고 씨름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도입한 IBM PC를 신기해하던 시기가 이 때였습니다.

입사 후 1992년에는 결혼도 하였고, 대리로 승진해 연수업무를 담당하면서 50개에 이르던 지부의 직원들을 연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어렵게 만들어졌던 연수과 조직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수과를 떠난 후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1999년에는 Y2K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우리 원 역시 많은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며 고생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본격적인 업무 창출시기였던 2001년, 인터넷사업부에서 B2B, PG업무를 수행했고, 인터넷지로를 담당하며 추진했던 이메일뱅킹도 생각나는데 그 당시 짧았던 IT 지식으로 후배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후배 직원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제풀에 지쳐 무척이나 힘들어 했을 시기였습니다. 2005년에는 고대하던 팀장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구미지부장으로 발령받아 다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서도 축하와 함께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고 가족을 동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부 생활의 어려움을 옆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고, 그 때 만난 구미지역 은행 지점장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지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기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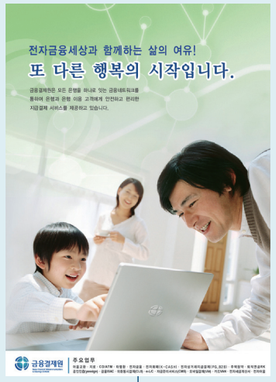


新入社員募集

金融決済院

서울로 올라와 맡게 된 공인인증업무는 중간에 2년 반 동안의 다른 업무경험이 있었지만 총 6년여에 걸쳐 경험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B대학 교수와 대법원까지 간 지루한 민사소송은 태어나 처음으로 재판이란 것을 체험했고 업무적으로 많이 단련된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언론플레이로 인한 무차별적 악성댓글에도 그저 쿨하게 대처했던 내 자신이 기특했고,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는 기쁨보단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이후 6개월간의 외부 교육은 재충전과 일반 금융회사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금융결제연구소에서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경험은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였습니다. OTP업무 인수 추진과 추진과정에서의 전입직원 면담은 우리 원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사례였고, 차질 없는 업무인수와 프로그램 자체 재개발과정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열정은 제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저는 다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짧게 돌아본 저의 원 생활은 감사함 그 자체입니다. 미약한 저에게 우리 원과 함께한 세월은 매순간 순간이 소중할 따름입니다.

금융결제원
최근 10년간 홍보 포스터



2006



2007



2011



2012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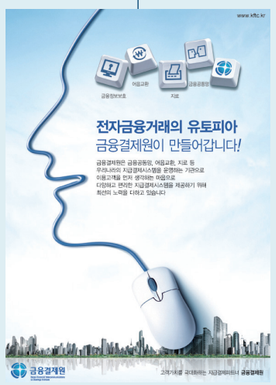
2008



2009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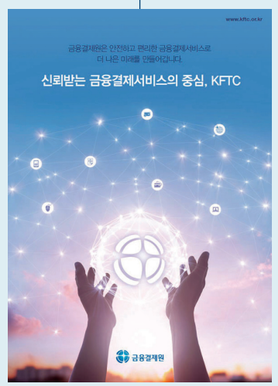
2014



2015



2016



II

제2편 국내 지급결제제도 발전사

제1장 지급결제제도 개관

제2장 지급결제시스템 유형

제3장 지급결제산업에서의 금융결제원의 역할

01

지급결제제도 개관

1. 지급결제제도의 정의
2.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정의

지급결제 개념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비롯하여 어음, 수표, 카드, 계좌이체 등의 각종 지급수단을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는 지급수단의 제시와 함께 시작된다.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인 현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지급수단으로 거래과정에서 현금이 제시되면 지급결제가 즉시 완료된다. 그러나 카드, 어음, 수표 등 지급수단이 제시된 경우 지급수단과 관련된 금융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화폐가치가 이전되어야 지급결제가 마무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의 지급결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 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급결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급, 결제 그리고 중간단계인 청산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지급결제 시 제시되는 경우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지급(payment)이란 지급인이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를 보내면 수취인이 지급지시를 수취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즉, 경제주체 간에 채권 ·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어음, 수표 및 카드 등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clearing)이란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금융기관) 간 결제에 필요한 지급수단을 교환한 후 각 참가자 간에 수령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 간 현금 외에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청산기관이 개입하여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결제(settlement)란 청산과정을 통하여 각 참가자 간에 정산된 차액을 상호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완결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청산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상계, 지급은행 계정에서 수취은행 계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급결제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소비자의 지급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고 있다. 각 소비자가 지닌 취향, 습관, 거래관행, 가치관 등도 반영되며, 특히 오늘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지급수단은 더욱 고도화되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지급결제가 최종 완결되는 중앙은행(한국은행)

일종의 지급지시가 지급인과 수취인 간 전달되는 채널 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접근 채널은 초기에는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장표 위주에서 전자매체,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지급 및 수납의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접근 채널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급 수취 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이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참가기관,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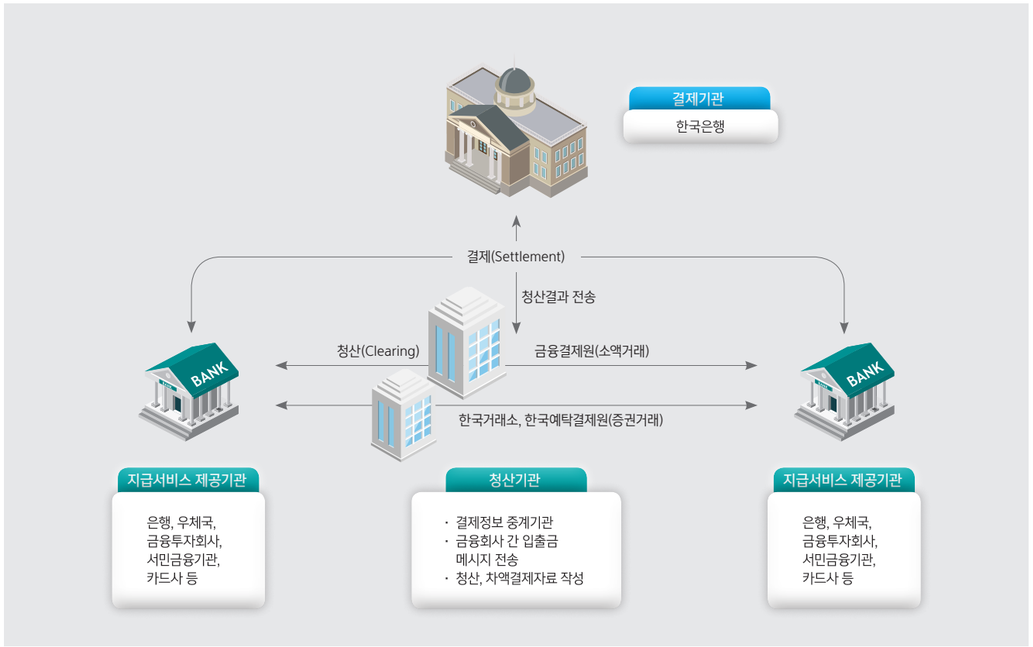
지급과 수취 행위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기관(이하 참가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지급인과 수취인 이외에도 지급서비스 또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 지급지시를 기반으로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각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 등이 필요하다. 이들을 일컬어 참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참가기관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개인, 기업, 정부 등 지급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 등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이외에도 참가기관의 지급, 청

산, 결제 처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필요하다.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그 지급지시를 기반으로 참가기관 간 차액정산 처리는 물론 그 결과를 전자적인 정보로 참가기관 간 송수신 내역을 처리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청산기관으로부터 최종결제에 필요한 차액결제내역을 수령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에서 자금이체를 시행함으로써 지급 및 청산 처리과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기관인 결제기관이 있다.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청산기관(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결제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참가기관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관 간 채권 및 채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청산 결제업무의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은행은 어음교환,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은행 창구, CD/ATM, 지로,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현금출금,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예금을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어음, 수표 발행, 지로, 타행환, 전자금융 등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도 현금서비스,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산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들 수 있다. 5대 국가기간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전산망의 구축과 함께 1986년에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기존 어음교환과 지로업무 외에도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금융공동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특별참가기관으로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도 있다. 1970년 중반 본격적으로 증권예탁결제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유일한 중앙증권예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증권기관 간에 주고받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종 결제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산기관에서 확정한 금액을 동 계정을 통하여 최종 결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거액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 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 운영 및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지급수단 유형

지급수단은 현금 지급수단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분류된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어음, 수표, 계좌이체, 신용 · 직불카드 등을 들 수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더 나아가 지급수단의 실물 형태에 따라 장표 지급수단과 비장표 지급수단 즉,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나눠진다. 전자방식 지급수단은 고객의 서비스 접근 방식에 따라 PC, 모바일기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금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급수단이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현금이용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어음 및 수표는 1900년대 초부터 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지급수단이다. 어음은 기업의 부도 발생 시 관련 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점차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어음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이 도입되고 있다. 카드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지급수단의 활성화 및 5만원 고액권 발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어음 수표 교환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계좌이체는 지급당사자인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지급수단을 주고받지 않고 지급당사자 거래은행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계좌이체는 입금이체와 출금이체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인 계좌이체 방식인 지로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 간 또는 다수 사람들과의 이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급인이 특정 수취인 또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또 다른 계좌이체 방식인 타행환은 금융기관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현금, 자기앞수표를 온라인으로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1 : 1로 송금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계좌이체 방식은 CD/ATM 또는 전화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가장 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인 지급카드는 지급시기에 따라 물품 구매 이전에 지급되는 선불형 카드, 물품 구매 시점에서 지급되는 직불형 카드, 물품 구매 이후 지급되는 신용카드로 구분된다. 선불형 카드는 카드발행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고객이 구입하여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이용금액이 카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카드를 말한다. 선불형 카드는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신용카드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불형 카드는 고객이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고객의 계좌로부터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업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수단이다.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에 주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지급수단이다. 직불형 카드는 발행주체에 따라 직불카드, 체크카드(신용카드사 발행), 현금IC카드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지급수단 이외에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바일 기기 등 혁신적인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잔액조회, 이체 등 뱅킹업무는 물론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대금지급 등 전자지급 거래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뱅킹 및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모바일 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연계된 서버에 자신의 지급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대금결제 시 이용하는 모바일 카드 기반의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지급수단으로서 가상화폐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은 법규에 의하여 정비되지 않

비현금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



1980년 약속어음, 한국외환은행(現 KEB하나은행)



1989년 환어음, 중소기업은행



1990년 송금수표, 조흥은행(現 신한은행)



1993년 가계수표 50만원 이하권,
한국상업은행(現 우리은행)



1996년 정액 자기앞수표 10만원권,
한국주택은행(現 KB국민은행)

고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장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등과 함께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 · 운영되어야만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국가간 경제상황이 상호 영향을 주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물론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지급결제제도는 통화 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거액결제시스템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소액결제시스템도 민간의 지급수단 이용 관행의 변화가 통화 승수와 유통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은 통화 신용정책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그 나라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기에 선진화되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수단별 결제금액

(일평균, 십억원)

	2012	2013	2014	2015
어음 · 수표	29,287	25,977	24,414	22,818
교환제시	17,192	14,965	12,561	10,166
발행창구제시	11,684	10,615	11,358	11,559
전자어음	411	397	495	1,093
계좌이체	264,123	272,856	288,137	323,065
입금이체	263,415	272,128	287,415	322,343
출금이체	708	728	722	722
지급카드	1,771	1,830	1,909	2,053
신용카드	1,535	1,563	1,594	1,683
체크카드	232	263	312	368
선불카드	4.3	3.3	2.7	2.3
직불카드	0.1	0.0	0.0	0.0
현금IC카드	0.0	0.1	0.3	0.5
전자화폐	0.1	0.1	0.0	0.0
합 계	295,181	300,663	314,460	347,936

* 출처: 「2015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와 경제성장

지급결제제도는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으로서 가계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은 지급결제제도에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전해오고 있다. 전통적인 지급결제제도에서 점차 전자방식의 지급결제제도로 변화되면서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지급행위는 물론 지출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방식 지급결제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 및 채널이 다양해지고, 판매자의 영업 방법은 물론 정부의 세금 징수 방법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자적 지급결제 방식은 소비자가 자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정부에게도 탈세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여 세금 수입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시장은 소비자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소비자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소비자의 주된 지급수단인 카드 이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경제가 불안하고, 고유가 등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가 지속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결국 신용카드 결제건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 등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만일 지급결제제도 자체가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추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전반에 걸쳐 마찰비용을 최소화하고 재화와 용역 지출 활성화, 소비 증가로 인한 생산 증가를 가져 오고,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의 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적 지급결제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경제시스템의 안정성도 제고된다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급결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의 연계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개선되고 있다.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프로세스의 전산화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 참여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제고되고 이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가계 및 기업의 경제 참여 및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와 신용사회

지급결제제도는 신용사회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해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시장은 소비자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급결제제도의 구성 요소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은 신용사회의 구현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어음 및 수표, 지로 등의 장표방식 지급수단이나 신용카드 등 전자방식의 지급수단은 대금결제와 청산결제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믿음을 구현해오고 있다. 또한 전자어음, B2B 및 e-LC시스템 구축 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신용거래 비율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는 기업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02

지급결제시스템 유형

1. 개요
2. 소액결제시스템
3. 거액결제시스템
4. 외환결제시스템
5. 증권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소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이 있다.

개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주체들이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급수단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여 왔다. 현금 이외 지급수단이 안전하고 원활하며 신속하게 현금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환경 변화, 참가기관 및 중계기관의 운영체계 변화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하여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은 시대별로 중요한 진화를 해오고 있다. 1910년대부터 1970년대는 기존의 지급수단을 통한 원활한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 장표의 원활한 유통과 이와 관련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는 정부 정책, 참가기관인 은행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급수단을 창출하여 그에 걸맞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금융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 은행들은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 등이 도입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설립되었으며 한은금융망도 구축, 운영되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 모바일지급결제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확산되어 이와 관련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은 더욱 진보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장표기반 지급결제제도는 현금을 대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 및 지로에 의하여 처

리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장표기반 지급결제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10년 7월 경성수형교환소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경성수형교환소는 관련 참가기관들이 별도의 규약을 제정하여 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지급수단, 참가기관, 지급결제시스템 및 업무규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인 1910년 우리나라 지로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우편대체결제제도가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은행지로제도는 1977년 2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지로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시작되었다. 장표기반 지급결제제도는 1980년대 초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후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입된 전자방식 지급결제제도는 화폐가치의 이전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 데이터의 이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는 1978년 4월 한국외환은행이 비자 인터내셔널과 제휴하여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에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및 서울은행이 연합하여 은행신용카드협회(현재의 BC카드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은행 신용카드업무가 개시되었다. 1987년에는 「신용카드업법」(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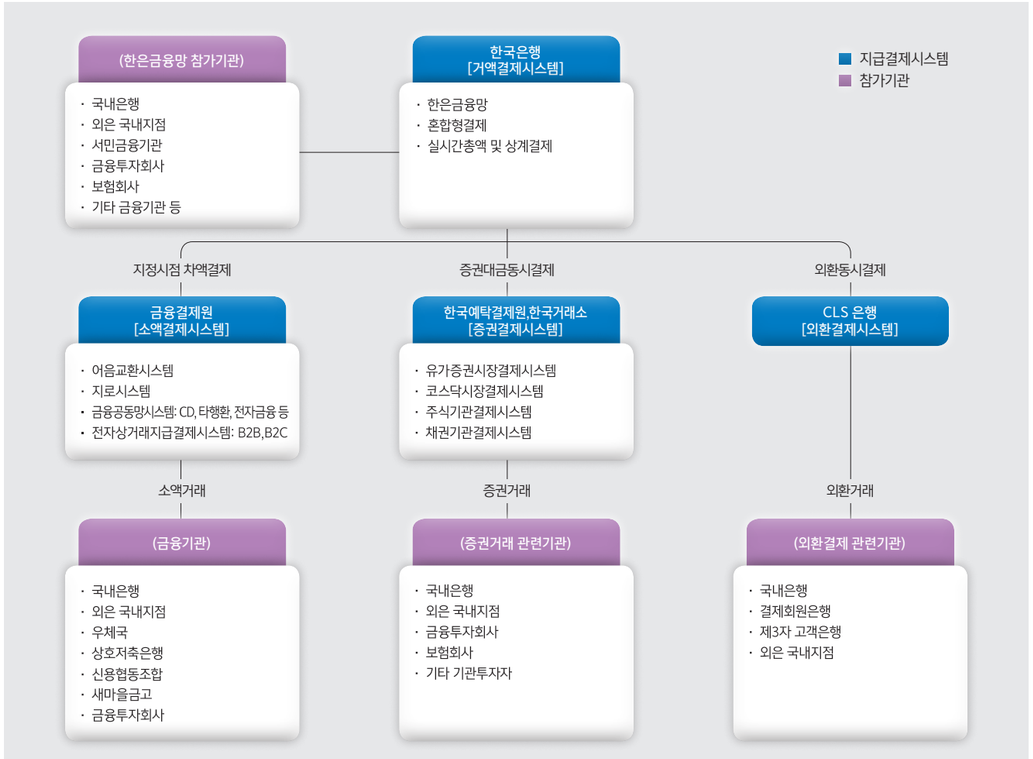
한편 각 은행 및 정부의 전산화 추진으로 인하여 계좌이체가 도입되었다. 은행지로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1981년 3월부터 대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일반계좌이체제도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7월 대량지급업무를, 8월에는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하였다.

1986년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 금융결제관리원(현재의 금융결제원)이 설립되어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 등 선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및 지방은행공동망 등이 차례로 구축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자방식 지급결제시스템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1989년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지급결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선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후반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은 지급결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각 경제주체들은 인터넷과 다양한 전자방식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며 대금지급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결제시장에서는 장표방식의 지급보다는 신용카드, CD/ATM, 텔레뱅킹,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자화폐가 등장하고, 우편에 의한 대금 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대체한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등 신규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990년대 초부터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년간의 개발 및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金融決濟管理院 발족
6월께 어음교환·銀行지로업무 통합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신문 기사
[1986. 4. 18. 매일경제신문]



行政·金融등 5대 國家基幹전산망
政府부처서 전담추진

'행정 · 金融 등 5대 국가기간(基幹)전산망 추진' 신문 기사
[1989. 4. 6. 매일경제신문]

구축 기간을 거쳐 1994년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구축하였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통화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통화속보, 지급준비금 상황, 외국환포지션 상황 및 은행예금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전국 본 · 지점의 자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급결제환경은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최신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하였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스마트폰 뱅킹 등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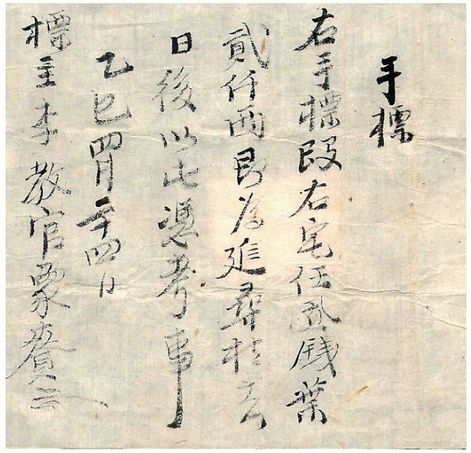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 수표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이중에서 발행한 사람이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주로 기업 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음은 객주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어음의 형식은 발행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통상 긴 종이의 중앙에 금액, 발행연도, 발행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입하여 날인하였다.

어음증서의 가운데를 절단한 후 우측은 채권자가, 좌측은 채무자인 발행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채권자가 어음금액을 청구하면 양쪽을 대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시대 말기 이후부터는 어음을 절단하지 않은 형태로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어음은 현



조선시대 수표





1961년 약속어음 앞면(위쪽), 뒷면(아래쪽)

금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서 편리성과 함께 기업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에서 신용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쇄부도 등의 구조적 부작용과 전자방식 지급수단 및 은행 신용공여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지급수단이 개발되고 보급됨에 따라 2000년 이후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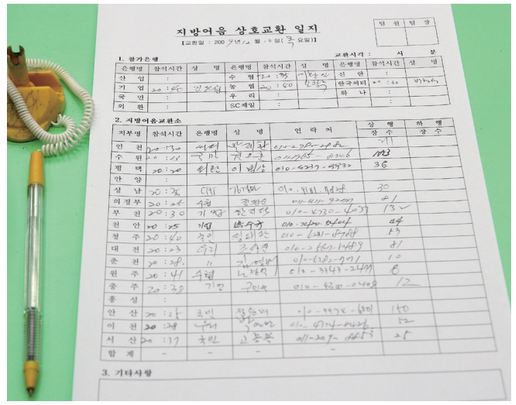
한편 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이나 적법한 소지인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지급받도록 지급인인 은행에게 위탁하는 지급 위탁증권이며, 「수표법」상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식증권으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 당좌수표 및 보증가계수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수표는 1906년 11월 16일 수형조례가 공표되고 동 조례에서 수형의 종류에 소절수(수표)를 추가하였다. 1932년에는 일본 「수표법」을 기반으로 조선 민사령 제1조 8호의 2, 3에 의하여 「수표법」이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1963년 1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어음법」과 「수표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1981년 7월에는 가계종합예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계수표제도가 실시되었다. 가계수표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수표로 기업들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 유사한 개인 당좌수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수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기앞수표는 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발행됨에 따라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어음 · 수표 교환 처리 방식

초기 어음 · 수표 교환 처리 방식은 수교환처리 방식이었다. 이는 각 참가은행의 어음교환원이 어음교환소에 모여 다른 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해당 지급은행 어음교환원 앞으로 제시하고 자기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수취한 후 이에 따른 어음교환차액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시은행은 다수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어음을 여러 지급은행에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어음교환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상호 입회하에 어음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어음교환소에서 교환된 어음 중 지급할 수 없는 어음은 부도사유를 부기하여 제시은행에 반환하게 되는데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되면 그 발행인은 당좌거래가 정지된다.

수표도 자행 발행수표는 직접 처리하고 타행 수표는 각 은행 담당자들이 어음교환소에 모여 상호 간의 수표를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1910년 7월 1일 최초 어음교환소인 경성수형교환소의 업무처리는 전형적인 수교환처리방식이었다.

1979년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음교환소는 교환대상 어음을 모두 수교환 처리하였으나, 경제규모의 확대 및 신용경제의 발달로 어음교환량이 증가하여 1981년 1월부터 서울교환소는 자동판독분류기(R/S)를 도입하여 서울 시내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후 같은 해 11월부터는 서울 소재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어음교환업무의 기계화를 실시하였다. R/S기는 어음표면에 어음발행번호, 금액, 지급은행 및 점포번호 등 소정의 정보사항을 MICR로 인자하여 이를 판독 분류하도록 한 기기이다. 1982년 12월 이후부터는 교환량이 많은 은행은 자체 R/S기를 도입하여 자행 수납어음은 자행에서 직접 분류 처리하고 R/S기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의 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처리하는 어음교환 분산 처리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985년 8월부터 어음교환 분산처리 및 야간 교환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어음 상호교환 일지
2009. 12. 10.



서울어음교환소 어음교환 장면

이와 같이 어음교환업무의 전산기계처리 실시로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고객들은 입금한 다음날 14:30 이후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진되었다.

실물 약속어음



전자어음



1996년 각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수납장표 정보교환제도(check truncation) 도입을 추진하여 2000년 5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앞수표의 정보교환을 본격 실시하였다. 2002년 9월부터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표 실물의 이동에 따른 위험이 제거되고 벽지 주민의 수표대금 회수기간이 하루로 단축되는 등 금융기관 장표수납 업무를 크게 개선하였다.

2004년 3월 약속어음의 발행 · 유통과정을 전자화하여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높이고 실물어음의 발행과 관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기업 간 지급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금융결제원은 2005년 1월 1일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전자어음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의 결제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어음을 발행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어음대체지급수단이다. 2009년부터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전자어음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어음발행정보 등록 조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어음 · 수표 이미지 정보교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어음의 사고신고 조회서비스도 시작하였다.

어음대체 지급수단의 도입

금융결제원은 어음대체 지급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도입하였다. 2000년 8월 도입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은 물품을 납품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발행하고 구매기업이 대출 또는 자기자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어음대체 지급수단이다. 2005년 8월에는 판매대금의뢰서를 통해서도 기업구매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11월 정보교환에 회부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한 지급인의 인수거절과 부도통보도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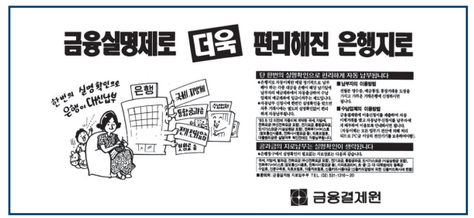
한편 금융결제원은 2007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에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6월 담보대출에 따른 전자채권 양도통지를 전자문서 통지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08년 9월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채권의 발행 및 결제, 미결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결제를 직접 대면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었다. 또 하나의 어음대체 지급수단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2001년 개별은행이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매기업이 만기에 미결제함으로써 판매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9년 12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발행내역, 결제 및 미결제정보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13년 4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이 은행별 발행한도를 집중 관리하도록 개선하였다.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제도가 반영되어 2015년 6월부터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로시스템

지로

지로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의 결제나 각종 자금이전을 지급인과 수취인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로 주고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지급결제제도이다. 돈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은행의 집중처리센터를 통해 손쉽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지로제도의 효시는 1910년에 도입된 우편대체계좌제도라 할 수 있다. 우편대체계좌제도는 거래자가 우편대체계좌를 이용하여 계좌 간 이체를 통해 채권 · 채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전국의 우체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였다. 1977년 2월 서울지역 전기요금 수납업무를 지로방식으로 변경한 현재의 지



'금융실명제로 더욱 편리해진 은행지로' 신문 광고
[1993. 8. 29. 한겨레]

로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예금계좌에 자금이 있어야 납부 또는 출금 처리되므로 어음 · 수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도나 위 · 변조 위험이 없어 안전한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로업무 방식 변천

지로제도 도입처리 초기에는 장표의 분류와 집계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 지로번호별로 분류하고 정렬하는 수작업처리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1977년 6월 지로제도 전담기구로서 은행지로관리소가 설립되었다. 은행지로관리소는 장표를 분류 집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은행지로통지서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량처리체제 구축 계획을 검토 추진하였다. 은행지로관리소는 1981년 8월 OCR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로업무 기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1982년부터 도입된 R/S기는 지로용지에 인자된 발행번호, 금액 및 수납기관 등 소정의 데이터를 인식하여 판독 분류하도록 한 기기이다. R/S기 처리방법은 1983년 10월 통합공과금업무에, 같은 해 12월부터는 일반계좌이체업무에 적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국민 경제규모의 확대로 지로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에서 발행된 지로장표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본부 집중처리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지로처리체제를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권역별 분산처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를 가동, 부산 · 경남 지역의 지로장표를 현지에서 처리하게 하였다.

지로업무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일반계좌이체는 수납내역 발송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혼입 또는 착오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98년 5월 지로장표 자체를 영상으로 판독하는 영상판독분류시스템(Image Processing System : IPS)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판독기에 부착된 영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장표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포착한 후 컴퓨터파일에 저장하고 필요시 저장정보를 화면으로 출력하여 검색, 인쇄 및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로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2000년 3월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인터넷지로서비스는 요금청구기관이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요금을 고지하면 납부자가 인터넷상에서 청구내역을 직접 입력하거나 조회하여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세금 등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지로 이용기관은 지로장표를 발행하고 발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인터넷 납부로 인해 창구수납 업무 및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납부자는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모습

부터 금융기관 수납장표정보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0년 7월 서울지역에 한하여 표준OCR장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12월부터는 MICR장표도 관할 지역처리센터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지부에서도 OCR장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2월부터는 지방세 장표를 제외한 모든 장표에 대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져 처리과정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2006년에는 기업용 지로 및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지급수단의 범위를 계좌이체에서 신용카드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으로 e-Giro 사이트,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 등에서 납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입금이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업무를 실시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2013년 12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13년 12월에는 전자수입인지 대행업무가 실시되었고, 2015년 7월에는 지방세입금을 모바일지로로 납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종 요금도 모바일지로를 통해 납부하게 되었다.

금융공동망시스템



'금융전산망 서비스' 신문 광고 [1993. 11. 11. 경향신문]

금융공동망시스템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금융정보망이다.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간 각종 금융거래 및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1983년 10월부터 시작된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창출을 통해 대국민 금융편의를 증진하고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동 시스템의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6년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공동망시스템에는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있으며, 금융공동망을 통한 은행 간 거래의 정산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고객이 전화,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각종 금융정보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은 1989년 4월부터는 은행 고객이 전화기, 팩스, PC 등을 이용하여 조회, 통지 및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RS공동망도 구축 가동하였다. 이후 ARS공동망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기존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을 통하여 제공되던 홈뱅킹과 펌뱅킹 업무를 분리, 2001년 4월부터 전자금융공동망을 본격 가동하면서 동 업무를 통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되던 ARS 공동망 서비스는 폐지되고,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하여 PC통신,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던 계좌이체 서비스 등을 기존 창구거래 및 CD/ATM을 통한 타행 자금이체와 구별, 별도의 전자금융공동망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공동망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전자금융공동망업무는 홈 · 펌뱅킹 중계업무와 대고객서비스업무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홈 · 펌뱅킹 중계업무는 초기에 타행이체, 자기앞수표 조회 및 거래확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2년 6월 대량이체서비스가 추가되었다.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운영시간은 00:05~23:35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공동운영시간은 07:00~23:30까지로 그 외의 시간에 대한 운영 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로 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총 55개 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홈 · 펌뱅킹 중계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은행 달라도 카드한장으로 現金인출

全國 1천178店舖 인출기 연결

12개銀 CD공동電算網 구축

來1일부터

‘은행 달라도 카드 한장으로 현금 인출’ 신문 기사
[1989. 6. 29. 매일경제신문]


다른 은행서도 入金 送金 마음대로

他行換제도 내일부터 실시

‘타행환(他行換)제도 실시’ 신문기사
[1989. 12. 15. 매일경제신문]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BANKLINE)은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모든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예금거래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 1997년 6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에게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입 · 출금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통 · 폐합으로 현재 6개 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대 상 지방은행 공동상품 ‘뱅크라인통장’

지역한계딛고 1,300개점포 연결

실무담당자 100명 16개월 걸려 개발

지방은행간 수수료면제등 이점 많아

뱅크라인 체계도

‘지방은행 공동상품 뱅크라인통장’ 신문 기사
[1998. 3. 20. 매일경제신문]

참가하고 있다.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전자화폐(K-CASH)를 소지한 고객이 K-CASH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전자화폐로 지급하면 동 대금을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이다. 전자화폐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IC칩이 내장된 카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은행예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전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카드 내에 저장(충전)된 가치로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전자화폐 소지 고객은 발행기관에 전자화폐 발급을 위한 주 계좌를 보유하고, 가치저장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화폐 잔액을 충전할 수 있다. 전자화폐 지급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 전자화폐공동망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전자화폐업무는 국민은행, 충북은행, 동남은행이 1994년 7월 “전자화폐 표준화 제정”을 제안하고 1995년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 은행이 참가하는 은행공동사업인 “한국형 전자화폐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 7월부터는 전자화폐공동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전자화폐의 주요 서비스로는 충전, 환불, 구매서비스가 있으며, 전자화폐를 발급하는 참가기관, 가맹점 인프라를 제공하는 VAN사, 정산센터인 금융결제원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교통카드 시장에 뛰어 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T머니 등)와 경쟁하면서 대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선불식 지급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 후 지급수단으로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소지자 예금계좌에서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자동 입금되도록 구현한 시스템이다. 고객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 없이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카드 발급기관은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수수료 수입 증대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1994년 재무부의 “직불카드 시행 안”에 따라 직불카드 참가은행 협의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7월 금융결제원을 비롯하여 6개의 VAN사가 전담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199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전자상거래공동망)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고객 결제 계좌에서 출금 및 승인

을 위한 결제정보를 금융기관으로 중계하여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 12월에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좌이체PG 중계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주로 전자상거래 계좌이체, 정부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납부, 전자화폐 지급 등 필요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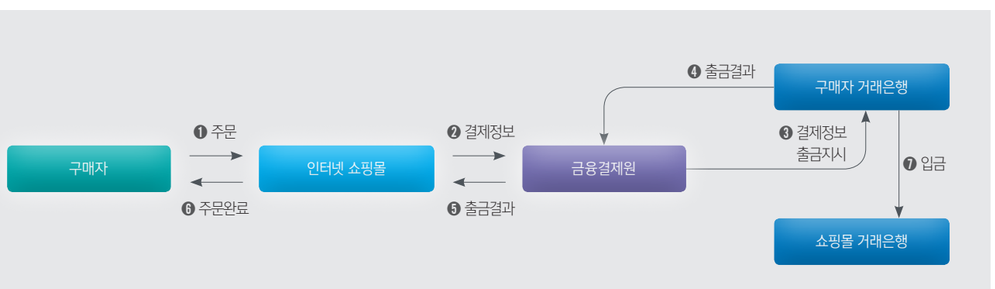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01년 7월 해당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비스 명칭을 BANKPAY로 정하였다. 2001년 7월에는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실시간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를 추가하였고, 2004년 3월에는 전자화폐(K-CASH)도 추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신용카드서비스는 중단되었고 전자화폐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3월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주체가 되어 기업 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객은 금융결제원의 BANKPAY PG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전 은행에 연계된 실시간 계좌이체와 전자화폐 등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품 구입 후 금융결제원은 기업 간 결제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결제여부를 실시간으로 이용업체에 전송하고 익영업일에 판매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하였다.

PG업무는 2001년 정부의 전자정부사업과 연계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7월에는 대법원의 등기인터넷서비스에도 PG서비스가 이용되었다. 2005년 7월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11번가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PG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은 2004년 12월부터 타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PG 제휴방식으로 이용기관을 모집, 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는 IPTV를 기반으로 TV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스마트폰에서도 P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바코드를 기반으로 실시간 출금과 지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급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감안하여 지급 관련정보를 사전에 등록 저장하여, 간편하게 지급하는 이른바 "간편 결제"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PG(BANKPAY) 결제 절차



2016년 6월 현재 이니시스 등 22개 제휴 PG사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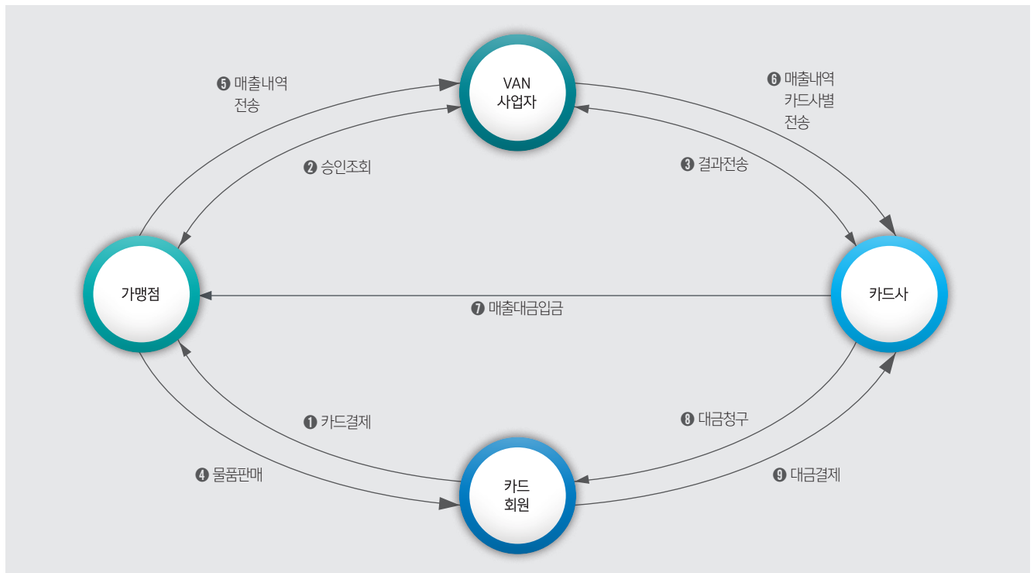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구매한 거래에 대해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고객은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적인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전문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와 BC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업무처리방식도 다르다.

우선 고객이 가맹점에서 전문카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해당 신용카드사로 전송되고 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승인여부를 고객이 이용한 가맹점에 전송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로 매입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이 요청한 매출전표를 매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VAN사(카드부가통신사업자)는 신용카드사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관리, 매출전표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제부문은 해당 신용카드사가 거래은행에 지급을 의뢰하면 거래은행은 지급을 요청한 신용카드사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해당 결제대금을 이체하고, 신용카드사는 카드 결제일에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 고객이 결제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절차



한편 고객이 BC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BC카드사에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거래승인 요청내역이 카드발급은행에 전달되며 이에 대한 거래승인 여부는 카드발급은행이 BC카드사를 통하여 가맹점에 보내주는 구조로 전문카드사와 차이가 있다. 정산절차는 가맹점이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출전표를 BC카드사에 보내주고 BC카드사는 BC카드사 회원 간 거래내역을 정산한다. 이후 거래은행은 은행 간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 가맹점에 대금을 송부하고 BC카드사는 카드 결제일 고객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수취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거액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거액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한은금융망은 1990년대 초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금융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4년 12월 구현된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거액자금이체를 건별로 처리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 간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 국 · 공채의 발행 및 상환, 한국은행 대출, 국고금 수납 업무 등이 이루어진다. 한은금융망은 개별적인 자금이체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결제의 완결성을 부여하여 일단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간 결제과정에서의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은 국내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의 이체는 물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 기반의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증권 및 외환결제시스템과 연계하며 타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를 축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9년 5월 기존 한은금융망에 혼합형 결제방식을 추가하고 동 서버와 각 금융기관 서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한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가동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절감 등 유동성리스크, 결제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크게 줄이고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간 자금이체의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다. 2010년 2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자금중개회사의 서버를 연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담당의 입력 오류 리스크를 제거하므로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운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신한은금융망 가동
이성태 前 한국은행 총재
2009. 5. 4.

한편 한은금융망은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대기제도, 지정시점처리제도, 예약자금이체제도, 반일물 콜거래제도 및 일중당좌대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기제도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당좌예금 잔액 부족에 따라 지급지시대로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동 지급지시를 대기파일에 기록하였다가 결제자금이 입금된 후 선입선출방식으로 지급지시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은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은행 간 교환차액의 최종 결제, 콜거래 자금의 상환, 국고자금의 회수 및 공급 등 거래 성격상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는 지급거래를 특정 시점에 처리하는 지정시점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의 운영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전국 본 · 지점 간 자금수급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자금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는 외환의 매도 및 매입 기관 간에 매매한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외환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외환결제시스템은 이러한 외환결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 중앙은행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외환결제방식은 크게 환거래에 의한 결제방식과 CLS은행을 통한 외화동시결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환거래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외환결제방식은 각 통화별 환거래은행에 매도통화의 지급을 지시한 후 환거래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환거래은행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외환매매 체결 후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수통화의 수취가 개별적으로 처리되므로 매도통화가 지급되더라도 매수통화를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각 거래통화국가 간 시차가 크면 클수록 거래 당사자 중 매도통화를 먼저 지급하는 한 금융기관이 원금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외환결제리스크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CLS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방식은 이러한 국가간 시차로 인한 결제리스크를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1974년 헤르스타트은행의 외환결제 불이행 사태가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접어들어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 BIS) 산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 CPSS)에서 중앙은행 전문가로 구성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관련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6년에 작성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 권고에 따라 1999년 전 세계 주요 대형은행들 간 외환거래를 동시에 결제하는 CLS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CLS시스템은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결제회원 및 제3자기관 등 참가기관 그리고 CLS은행과 CLS Services Ltd. 등 운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CLS은행은 미국 뉴욕에 소재하며, 각 거래통화국 중앙은행과 연계하여 CLS에 제출된 외환매매 거래에 대한 동시간대 결제, CLS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및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LS Services Ltd.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며 CLS시스템의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CLS은행은 2002년 9월 미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 등 7개 결제통화를 대상으로 외환동시결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원화는 2004년 12월에 CLS결제통화로 지정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18개 통화가 CLS결제통화로 지정되어 CLS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CLS은행을 통하여 결제 가능한 금융거래는 주로 현물환, 선물환, 스왑 등 외환매매 거래가 있다.

CLS은행 참가기관은 2016년 6월 현재 66개 결제회원과 약 1만 8,000개의 제3자기관이다. 결제회원은행은 CLS그룹 지주회사의 주주이며 CLS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제3자기관이 제출한 거래도 수탁결제한다. 제3자기관은 CLS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결제회원을 통하여 외환매매 거래를 제출할 수 있고 외환결제도 결제회원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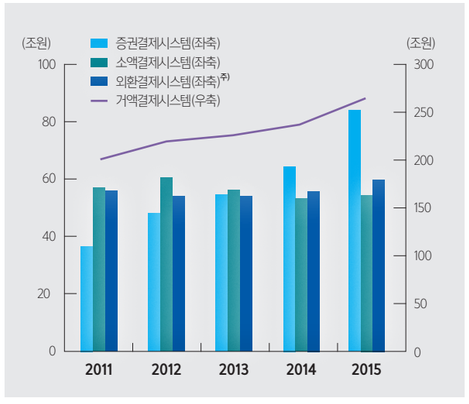
CLS은행을 통한 결제는 결제자금납입계획서에 의거, 중부 유럽시간대를 기준으로 07:00~12:00까지 각 시간대별로 이루어진다. 결제자금납입계획서는 결제일에 CLS은행이 각 결제회원별 및 결제통화별로 납입금액(pay-in)과 수취금액(pay-out)을 산정하여 각 결제회원에 통지한다. 각 결제회원의 납입 완료 후 CLS은행은 각 통화국 중앙은행에 수취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각 결제회원 CLS 계좌에 지급한다.

한편 외환매매거래를 CLS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국내 은행을 위하여 2004년 12월 금융결제원 내에 구축된 CLS공동망은 CLS은행과 국내 결제회원인 국민 · 외환은행과 제3자기관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참가기관들이 CLS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메시지 생성 및 송 · 수신 중계, 참가기관들의 자금납입 및 수취 일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신한은행이 제3자기관에서 결제회원으로 전환하여 결제회원이 3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7월에는 CLS공동망시스템에 사용 중이던 해외 CLS서비스용 패키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자체 개발한 코어 S/W를 업무에 적용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CLS공동망의 CLS서비스 접속 아키텍처를 교체하고 전문체계도 변경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3개 국내 결제회원, 15개 국내 은행을 비롯하여 국내 외국은행지점, 비은행금융기관 등 총 20여 개 금융기관이 동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주요 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 (일평균)



주)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십억달러)
* 출처: 「2015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란 유가증권 매매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채권 · 채무관계를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을 통하여 완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참여자, 규제기관 및 예탁기관 등 여러 구성원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체계라 할 수 있다.

증권결제업무는 통상적으로 청산, 결제 및 결제리스크의 관리로 구분된다. 우선 청산은 결제에 필요한 최종적인 채권 · 채무 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매매보고, 매매확인 및 차액산출 등이 이루어진다.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거래 당사자 간의 증권 및 대금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단계이며, 결제리스크 관리는 결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결제 리스크를 통제 · 배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증권결제운영기관은 증권업무의 효율적인 실행을 통해 증권시장을 관리 ·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업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수탁회사 등이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기존 자금결제와 달리 참여 당사자가 개인고객, 기관투자자, 증권사, 보관기관 등으로 다양하고, 거래내용과 당사자를 변경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제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또한 자금결제의 결제대상은 통화인 반면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대상은 주식, 국공채, 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다양하다.

자금결제와 달리 증권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증권이 인도되는 시점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다. 또한 증권결제는 결제대상이 통화가 아니라 증권으로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상품별로도 결제방식이 다를 수 있다.

증권결제의 유형으로는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장내증권결제와 장외증권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의 유형에는 장내증권결제시스템과 장외증권결제시스템이 있다. 장내증권결제시스템은 유가증권시장결제, 코스닥(KOSDAQ)시장결제, 코넥스(KONEX)시장결제, 파생상품시장결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반면 장외증권결제시스템은 채권기관 투자자결제, 주식기관 투자자결제,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 장외파생상품결제, 전자단기사채결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결제운영기관의 하나인
한국예탁결제원 본사(부산소재)

03

지급결제산업에서의 금융결제원의 역할

1.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금융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3. 금융기관 공동 전산업무 지원

지급결제산업에서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금융기관 공동 전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역할들을 수행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각종 금융공동망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각 금융공동망의 계획수립 단계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이르기까지 업무, 개발, 운영 담당 간 충분한 업무 협의를 거치며 수개월간에 걸친 체계적인 시범 실시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니즈, 최신 기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추가 개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각종 시스템 운영상의 제반 안전관리규정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이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경기도 용인시 한국전산원(현재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백업센터를 구축, 천재지변 및 사고 등의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분당센터에 자체 백업센터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자체 및 참가은행들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해킹,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연중무휴 실시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10년 6월 이후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를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해오고 있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 업무별 대상시스템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수시로 내부통제 활동을 점검 ·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리스크관리 대상 시스템에는 어음교환,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어음은 물론 지로, CD공동망, 국가간 공동망, CLS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모든 시스템이 포함된다. 자가진단 주요 항목으로는 시스템 운영 능력,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유지보수 능력, 정보보호, 위기대응 등이 있다.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하여 위협적인 잠재리스크와 통제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장애, 재해 또는 대내 · 외 주요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및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단위별 「IT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BCP) 조치매뉴얼」을 제정하여 연 2회 IT BCP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IT BCP 역량을 제고하고 전산시스템 운영 부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증을 위하여 현 IT BCP 체계를 점검 보완하여 영국표준협회가 부여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다.



IT업무지속성계획 국제인증서 ISO22301 인증 수여식
한창현 본부장(정중앙), 조화건 본부장(제일 오른쪽)
2013. 7. 31.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설립 초기부터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지로, 전자화폐공동망, CMS공동망 등 인터넷 기반과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뱅킹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여 2005년에는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건수가 창구 이용건수를 추월하였다.

금융결제원은 2006년 성능이 낮은 IT 통합관리시스템을 교체하고 처리성능 향상을 위하여 “IT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2008년 9월에는 CLS공동망시스템 업무용 해외 패키지 S/W의 운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자체 개발한 CLS Core S/W를 CLS공동망 실업무에 적용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어음교환업무의 효율적 운영 도모와 참가은행의 업무 편의성 제고,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사이트(https://community.kftc.or.kr)를 구축하였다. 2013년에는 외환업무시스템 성능 정보, 프로세스 상태 정보 및 로그 등 업무 운영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은 운영 중인 소액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업무, 개발, 운영 담당 조직 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1986년 금융결제원의 설립과 함께 개발 구축한 각종 금융공동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과 결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후 구축된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모든 고객이 1년 365일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금융소비자들은 CD공동망의 도입과 확대로 인하여 창구 방문 이용의 불편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잔액조회, 입 · 출금업무, 계좌이체 등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구에서 납부하던 지로요금을 ATM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였고, 정액 자기앞수표의 경우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어음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간 전자어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CMS공동망은 대량출금 및 대량입금에 따르는 일반기업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으며 자금수금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금융결제원은 PG, B2B 및 인터넷지로 등의 인터넷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금융기관과 고객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는 CLS공동망이 구축되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매매 결제리스크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전자금융공동망과 CD공동망의 운영시간을 00:05~23:55까지 연중무휴로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009년 9월


보험료등 결제은행 다른 모든 금융거래
16일부터 한은행서 처리
금융결제원 CMS시스템 가동

'금융결제원 CMS 시스템 가동' 신문 기사
[1996. 8. 10. 매일경제신문]

금융결제원은 정부 납품대금청구서비스인 나라빌서비스의 청구서류 작성방식을 개선하고 2012년 3월에는 동 서비스를 모바일환경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2014년 3월에는 전자세금계산서ASP 및 정부납품대금청구업무로 분리 운영 중이던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의 유사 업무를 통합하여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타행환 송금 자기앞수표 취소 업무의 운영을 개선하였고 어음의 압류 및 가압류 시 현행과 같이 계좌 압류와 동일하게 법적 제한 부도사유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11월 금융결제원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제공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어음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2016년 7월 25일부터는 어음교환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19개 은행과 공동으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분실, 도난, 계약불이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지급결제서비스 개발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들의 업무 개선 및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금융정보화사업의 추진체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 각 참가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신규 지급결제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로부문에서 기존의 은행 창구 중심의 납부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납부채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 10월 인터넷지로를 도입하여 지로이용 청구기관의 징수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2002년 4월에는 국세 전자납부, 2008년 8월부터는 경찰청 범칙금 인터넷납부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금융결제원이 "국세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인터넷 기반의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어음제도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0년 8월 어음대체지급수단인 기업구매자금어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전자어음의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등 어음을 대체하는 지급수단을 도입하였다.

2000년 12월 금융결제원은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업무를 실시하여 대국민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국내 이동통신 기반이 확충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스마트폰 기반의 신속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2010년 은행공동의 스마트폰지급결제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010년에는 신용카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2년 11월부터 현금카드결제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5%를 결제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캐쉬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참가은행과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신규 지급결제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신사업 개발담당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금융기관 공동 전산업무 지원

금융기관 공동업무의 지속적 추진

금융결제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융공동망을 구축, 자금결제와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의 이용자 편의 제고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 3월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청약 계좌시스템과 주택청약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택청약 예금부금 취급은행의 주택청약 관련 은행 공동사업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2004년 12월부터 외환매매거래의 동시 결제를 통하여 국가간 시차로 인한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CLS공동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05년 1월 은행권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9개 은행을 대상으로 계약, 가입자, 자산운용, 입금 등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는 소규모 납품업체가 정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청구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정부납품대금청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2012년 11월부터 CD/ATM에서 현금입출금용으로 사용하는 현금IC카드를 마트, 식당 등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공동 현금카드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금융결제원은 은행공동의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 번호만으로 소액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휴대폰번호 기반의 "뱅크월렛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중계 업무영역으로 확대

금융결제원은 고유의 지속사업인 금융공동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외에도 정보중계업무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중계업무"라 함은 자금의 이체 또는 결제를 직접 수반하지 않은 각종 정보를 참가기관 간 또는 참가기관과 정부기관 등 사이에 교환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중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보중계업무로는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중계, 예금 압류 관련 정보 중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 중계,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 채권정보 중계 등이 있다.

금융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중계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에 의거,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실시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실시하였다. 2016년 현재 전체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금융기관, 11개 금융투자회사, 3개 생명보험사 등 38개 기관이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금융결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예금압류 관련정보 중계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압류요청기관이 체납자의 세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은행에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는 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압류요청기관과 은행 간 관련 정보를 중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이 업무를 이용하고 있으며, 17개 은행이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은 창업자가 법인 설립 시 중소기업청 및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은행을 경유하여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는 온라인 법인설립 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증명서 발급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15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은 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감사인에게 피감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16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부터는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한 단체로 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2017년에는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청약 추첨프로그램 및 추첨 장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2금융권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이흥모 원장(위쪽 사진의 앞쪽, 아래쪽 사진의 왼쪽에서 두번째)
2016. 6. 21.

III

제3편 금융결제원의 조직과 경영

제1장 경영이념 및 목표
제2장 정관
제3장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
제4장 조직기구의 구성 및 발전
제5장 경영관리

01

경영이념 및 목표

1. 경영이념의 정립
2. 경영목표의 수립과 추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 국민 금융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경영이념은 설립목적의 구현방향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침 그리고 미래지향적 경영철학을 포괄하고 있다.

경영이념의 정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 국민 금융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경영이념은 설립목적의 구현방향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침 그리고 미래지향적 경영철학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의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등은 장기적 · 거시적 관점에서 기관의 지향점, 실행목표, 미래과제와 전략 등을 모두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 사회적 역할 제고 등을 위해 2016년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라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비전정립에 대한 의미와 실행노력은 궁극적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 는 확고한 경영의지의 천명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핵심가치로 "전문성, 미래지향, 신뢰, 고객만족"을 설정하고 모든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의사결정과 행동기준으로 삼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는 미션을 정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비전과 미션하에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확충,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선진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현하고자 전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목표의 수립과 추진

금융결제원은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내 · 외 경영여건과 고객니즈 등을 반영한 경영목표를 수립, 지난 30년간 조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중 · 장기 경영목표와 연도별 경영목표 수립을 통해 제반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 경영효율 증대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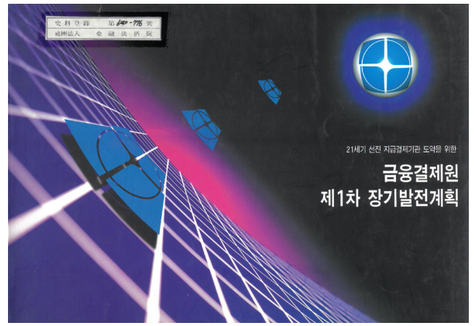
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금융결제원이 설립된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의 조직, 인원 및 업무를 통합하는 시기로서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성장기반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경영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1990년부터 1990년대 중반에는 경영목표를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 및 고도화, 금융정보 유통의 원활화, 고객만족의 금융서비스 개발 및 개선, 경영내실과 혁신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시기는 지급결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금융공동망을 구축, 운영하였던 시기로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 발전기반을 다진 중요한 시기였다.

1990년대 중 · 후반기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부가서비스 확대, 사원은행의 이익 증대 도모, 전자결제방식의 확산, 선진 지급결제제도 도입, 대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 등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지급결제제도 및 전자지급 수단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증대된 시기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신규 금융결제서비스 창출과 은행권의 전자금융서비스 선진화를 선도하는 금융결제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경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IT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첨단 IT와 융합한 신규 금융결제서비스 창출 역량 집중, 둘째, 기존 금융결제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참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 셋째, 전자금융거래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정보보호 중요성 증가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 넷째, 합리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다섯째, 참가기관의 만족도와 수익성 제고 및 이용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금융결제원은 이처럼 1986년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대내 · 외 환경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 · 장기 경영목표 및 연도별 목표,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반 경영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글로벌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의 발전과 위상확립을 실현해가고 있다.



제1차 장기발전계획
1997. 6. 2.

02

정관

1. 정관의 제정
2. 정관의 변천

금융결제원의 정관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비롯하여 의사결정체계와 절차, 조직 구성 및 운영, 사업범위, 예산회계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최상위 규정으로 설립 시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정관에 기초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

정관의 제정

제정경위

금융결제원의 정관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비롯하여 의사결정체계와 절차, 조직 구성 및 운영, 사업범위, 예산회계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최상위 규정으로 설립 시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정관에 기초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

당시 작성된 정관 초안은 1986년 4월 18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86-4차 총회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시 재무부로부터 일부 수정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23일 제86-6차 총회에서 수정 의결함으로써 전문 총 11장, 37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정관이 확정되었다.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금융결제원 설립 시 정관은 다음과 같이 총 11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당시 정관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첫째, 사원 및 준사원의 자격을 참가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둘째, 사원은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였으며, 준사원은 사원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희망에 따라 준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셋째, 금융결제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은 사원은행이 담당하게 하고, 모든 사원을 당연직 의원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등이다.

최초 정관의 구성 내용(1986. 5. 19)

제 1 장	총칙(제1조~제4조)
제 2 장	사원(제5조~제10조)
제 3 장	총회(제11조~제16조)
제 4 장	이사회(제17조~제21조)
제 5 장	위원회(제22조)
제 6 장	임원(제23조~제26조)
제 7 장	사무부서 및 직원(제27조~제28조)
제 8 장	출자 및 회계(제29조~제32조)
제 9 장	정관변경(제33조)
제10장	해산(제34조~제35조)
제11장	보칙(제36조~제37조)

정관의 변천

변천내용

정관은 1986년 5월 19일 제정 이후 총 1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관의 주요 변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정(1986. 5. 31)에서는 평택, 태백지부의 신설을 사무소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금융전산망 구축사업 전담 상무이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상무이사 정원 관련 조항을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하였다.

제2차 개정(1987. 7. 6)에서는 공주, 논산, 홍성지부의 신설을 규정하는 한편 제4조(사업) 제3호에서 정한 금융전산위원회 명칭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제3차 개정(1989. 9. 28)에서는 원(院)의 명칭을 "금융결제관리원"에서 "금융결제원"으로 변경하고 약칭도 "관리원"에서 "결제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제3조(사무소)의 단서를 신설하여 사무소 소재 행정구역명이 변경될 경우 사무소의 명칭도 지역명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장내 · 외 콜시장 통합추진정책과 6개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콜거래중개업무 승인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제4조(사업)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중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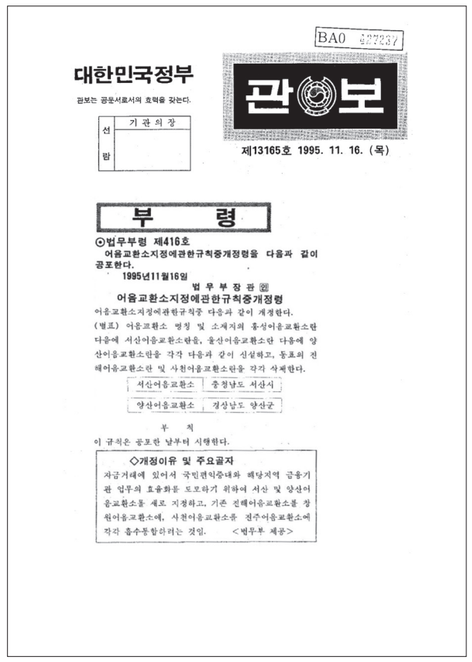
제4차 개정(1990. 5. 17) 및 제5차 개정(1991. 3. 5)은 각각 안산지부 및 해남지부 신설과 관련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

이어 제6차 개정(1992. 1. 24)에서는 경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상임고문직(1인)을 신설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제7차 개정(1992. 7. 6)에서는 사원의 가입기준을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의 사원가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1992. 4. 1)"에 부응하였다. 또한 사원, 준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도 개별 사업별로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참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제8차 개정(1993. 1. 15)에서는 자율경영의 확보와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직을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와 구성원이 동일한 이사회 이사를 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원 및 준사원은행의 대표 8인으로 변경하고 회의 소집권한을 한국은행에도 부여하였다.
제9차 개정(1994. 6. 11)에서는 이천 및 김해지부 신설, 마산지부의 창원 이전과 관련 지부명칭 등의 변경이 있었으며, 제10차 개정(1995. 1. 9)에서는 특별참가기관에 대하여 "사원자격의 취득, 사원명부, 사원의 대표권, 사원자격의 소멸, 사원의 제명 결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제11차 개정(1995. 11. 24)에서는 전국어음교환소 정비방안에 따라 서산 및 양산지부를 신설하고 진해, 사천지부를 폐쇄하였으며, 제12차 개정(1996. 8. 22)에서는 상주지부의 신설 조항을 비롯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금융전산망을 "금융정보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제13차 개정(1999. 8. 7)에서는 재정경제부의 감사 지적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관규정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총 18개 조항의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우선 총회와 관련하여 총회 소집권자를 기존 의장에서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정기총회 개최시기도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서 개시일 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다. 또한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와 관련하여 사원 및 준사원 가입대상을 한국은행 및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특별참가요건을 총회


BA0 627237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관보

제13165호 1995. 11. 16. (목)

부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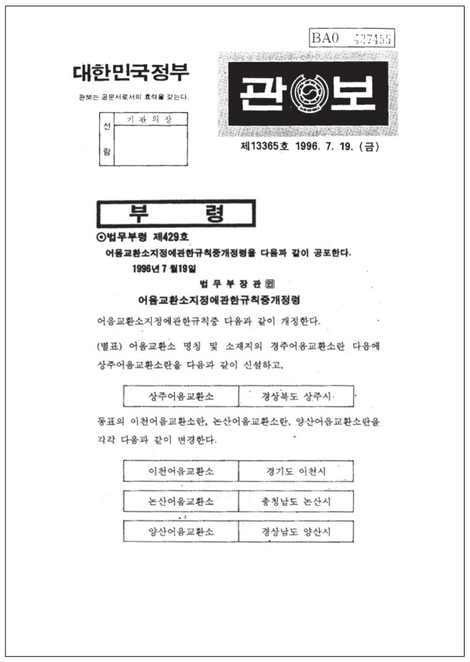
⊙법무부령 제416호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5년11월16일
법 무 부 장 관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어음교환소 명칭 및 소재지의 홍성어음교환소란 다음에 서산어음교환소란을, 울산어음교환소란 다음에 양산어음교환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진해어음교환소란 및 사천어음교환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서산어음교환소	충청남도 서산시
양산어음교환소	경상남도 양산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금거래에 있어서 국민편익증대와 해당지역 금융기관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 및 양산어음교환소를 새로 지정하고, 기존 진해어음교환소를 창원어음교환소에, 사천어음교환소를 진주어음교환소에 각각 흡수통합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어음교환소(지부) 신설 및 통합을 공포하는 관보
1995. 11. 16.


BA0 627455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관보

제13365호 1996. 7. 19. (금)

부 령

⊙법무부령 제429호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6년 7 월19일
법 무 부 장 관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어음교환소 명칭 및 소재지의 경주어음교환소란 다음에 상주어음교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상주어음교환소	경상북도 상주시

동표의 이천어음교환소란, 논산어음교환소란, 양산어음교환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천어음교환소	경기도 이천시
논산어음교환소	충청남도 논산시
양산어음교환소	경상남도 양산시

어음교환소(지부) 신설 및 변경을 공포하는 관보
1996. 7. 19.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사원 및 준사원으로 신규가입하거나 특별참가 시의 가입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총회에서 가입금만 결정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지부소재 지역명을 삭제하고 이를 직제규정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원자격 상실 시 회비 납입금에 대한 정산 조항과 총회 의장의 총회 안건에 대한 이사회 심의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비상임이사 선임기준을 한국은행 1인, 특수은행 2인, 시중은행 4인, 준사원 1인에서 한국은행 1인, 사원 6인, 준사원 1인으로 조정하였다. 경비분담금의 명칭을 "회비"로 변경하고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로 구분하는 한편 특별참가기관의 회비분담도 명시하였다.
제14차 개정(2000. 7. 15)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11호)」의 개정(1999. 12. 9)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였다.
재정경제부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은 제4조(사업) 제8호 기타 금융결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중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문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기본재산의 주무관청 보고와 인사, 예산, 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 · 개정 또는 폐지 시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별도 법인화에 따른 콜거래중개 업무를 사업범위에서 삭제하였으며,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제15차 개정(2006. 12. 1)에서는 재정경제부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익사업의 범위 및 승인절차를 명시하고, 수익사업의 사업수익도 경비의 재원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별참가기관의 참가업무에 공동전산업무 등을 추가하여 특별참가제도를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제16차 개정(2012. 3. 7)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 수익사업 범위를 사업단위별로 규정하고 기본재산의 사용 ·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원의 권리 ·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 결의제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임원의 결원 시 차기 임원선임, 임원의 보수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금융위원회의 「사단법인 정관준칙」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현재의 정관

현재의 정관은 전문 총 11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설립 당시 정관 체제(총 11장 37개 조항)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관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정관 구성 내용

제 1 장	총칙(제1조~제4조)
제 2 장	사원(제5조~제11조)
제 3 장	총회(제12조~제17조)
제 4 장	이사회(제18조~제22조)
제 5 장	위원회(제23조)
제 6 장	임원(제24조~제30조)
제 7 장	사무부서와 직원(제31조~제32조)
제 8 장	출자 및 회계(제33조~제36조)
제 9 장	정관변경(제37조)
제10장	해산(제38조~제39조)
제11장	보칙(제40조~제41조)

03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

1. 사원의 구성
2. 사원의 자격 및 권리 · 의무
3. 준사원
4. 특별참가기관

금융결제원은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 제도를 두고 있다.

사원의 구성

금융결제원은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사원으로 하여 발족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 의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가입 시 금융기관의 희망에 따라 사원 또는 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1년 6월 24일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준사원으로 하고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취득한 준사원에 대하여는 사원 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1992년 6월 27일에는 특별참가제도를 신설하였고, 참가금의 합리적 산출을 위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금융결제원 사업특별참가금 산출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의 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농 · 수협,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외국계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다수기관이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였다.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 현황 (2016년 10월)

구 분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
기관수	10	10	60

사원의 자격 및 권리 · 의무

금융결제원에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본래 "대한민국 내 본점을 둔 14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1986년 4월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으로 변경하였다. 1992년 6월 27일에는 외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별사업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또한 1999년 8월 7일 사원 및 준사원 가입대상을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변경한 후 2012년 3월 7일 이를 다시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은행" 으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外國銀도 지로서비스등 가능
금융전산망 가입하면
외국은행의 금융전산망 특별참가 관련 신문 기사
[1991. 6. 26. 경향신문]

본래 금융결제원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정관, 자기자본 등을 기재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1997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정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원 가입을 제한하므로 사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신청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1999년 8월 7일 정관을 개정, 사원 가입 시 총회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금융결제원에 사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준사원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각 업무별 회비의 총 납부 비율이 연평균 3% 이상인 경우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원의 자격은 총회에서 정한 가입금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고 사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취득하게 된다. 가입금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1년 6월부터 기존 사원의 기득권을 감안하여 가입 결정 최근 월말의 금융결제원 기본재산과 기금을 합산한 순재산액에 대한 기존 1개 사원 지분의 100%를 적용하여 산정해오고 있다.

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별도의 승인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등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원은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의 상실, 파산선고,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 및 정관 제11조에 의한 제명 등의 경우는 사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원 가입자격의 변천

기관명	기간	사원자격	명 칭
경성수형교환소	1928. 11.	경성부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주)	조합은행
서울수형교환소	1961. 8.	서울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주)	조합은행
은행지로관리소	1975. 10. ~ 1986. 5.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사 원
전국어음교환관리소	1984. 5. ~ 1986. 5.	대한민국 내 본점을 둔 금융기관	사 원
금융결제원	1986. 6. ~ 1992. 6.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사 원
	1992. 6. ~ 1999. 8.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1999. 8. ~ 2012. 2.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2012. 3. ~ 현재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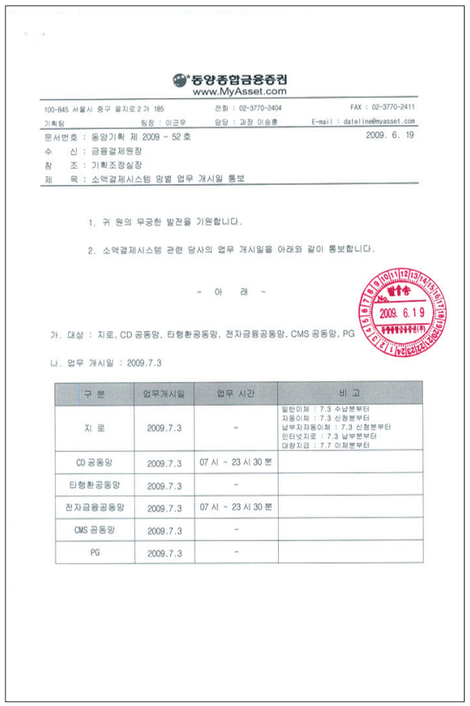
주) 사단법인 경성(서울)은행집회소

준사원

금융결제원에 준사원으로 가입하려면 가입신청 당시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3개 사업 중 2개 이상의 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준사원으로의 가입, 가입금의 결정, 탈퇴절차와 사업참가의 범위 등은 사원과 동일하며 다만, 준사원의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가입금은 가입 결정 최근 월말 현재 사업단위별 참가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기존에 특별참가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준사원은 2016년 4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개 지방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참가기관

특별참가기관이란 사원 또는 준사원이 아닌 기관으로서 「은행법」상 은행,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업무 및 기타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별참가제도는 1985년 10월 어음교환업무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개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보통신부(우체국)는 1990년 7월 객원으로 어음교환에 참가하던 것을 인정하여 별도의 참가절차 없이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6월 24일에는 어음교환업무 이외에 여타 업무에도 특별참가제도가 신설되었다.
당초에는 이사회에서 특별참가기관을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년 8월 7일 정관과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현재는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닌 기관이 특별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은행법」상의 은행이 특별참가할 경우 총회는 별도의 승인 없이 가입금만 결정하고 있다.
특별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소정의 기일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참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금은 최근 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 영업규모, 자기자본비중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어음교환, 지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사업에 62개 기관이 특별참가하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www.MyAsset.com

100-845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전화 : 02-3770-2404 FAX : 02-3770-2411
기획팀 팀장 : 이금우 담당 : 과장 이승훈 E-mail : dateline@myasset.com

문서번호 : 동양기획 제 2009 - 52 호 2009. 6. 19
수 신 : 금융결제원장
참 조 : 기획조정실장
제 목 : 소액결제시스템 망별 업무 개시일 통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당사의 업무 개시일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지로, 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 공동망, PG

나. 업무 개시일 : 2009.7.3

구 분	업무개시일	업무 시간	비 고
지 로	2009.7.3	-	일반이체 : 7.3 수납분부터 자동이체 : 7.3 신청분부터 납부자자동이체 : 7.3 신청분부터 인터넷지로 : 7.3 납부분부터 대량지급 : 7.7 이체분부터
CD 공동망	2009.7.3	07.시 ~ 23.시 30.분	
타행환공동망	2009.7.3	-	
전자금융공동망	2009.7.3	07.시 ~ 23.시 30.분	
CMS 공동망	2009.7.3	-	
PG	2009.7.3	-	

금융투자회사 중 최초 특별참가기관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업무 개시일 통보 문서
2009. 6. 19.

04

조직기구의 구성 및 발전

1. 의사결정기구
2. 업무조직
3. 임원 및 직원

금융결제원은 1986년 설립 이후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영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대내 · 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그동안 조직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개편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의사결정기구

조직체제 및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금융결제원은 1986년 설립 이후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영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대내 · 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그동안 조직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개편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금융결제원의 이와 같은 조직 변천 및 발전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기구 등 조직체제의 구성과 운영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각급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원(가입 금융기관)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금융결제원의 경영 · 사업 전반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결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며, 각급 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함과 아울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의결기구의 심의, 결정사항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조직으로 각 부서 임 · 직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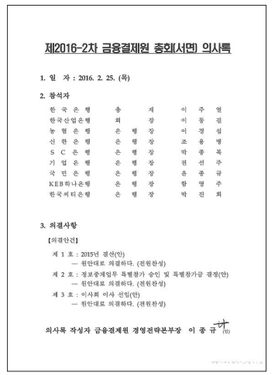
총회

금융결제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 사업 전반의 중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며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의장은 사원 중에서 선출하고 의장 유고 시에는 의장이 대표로 있는 사원 금융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되며, 의장의 임기는 3년

으로 연임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일 전 2개월 이내에 금융결제원 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총회를 총회 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8월 7일 제13차 정관 변경 시 금융결제원 원장이 소집하도록 변경하였다.

임시총회는 금융결제원 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총회 의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사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관리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업무 및 회계 감사결과 발견한 위법 · 부당한 사실의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금융결제원 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16-2차 금융결제원 총회(서면) 의사록

1. 일 자 : 2016. 2. 25. (목)

2. 참석자

한국은행	총 재	이 주 열	
한국산업은행	회 장	이 동 걸	
농협은행	은 행 장	이 경 섭	
신한은행	은 행 장	조 용 병	
SC은행	은 행 장	박 종 복	
기업은행	은 행 장	권 선 주	
국민은행	은 행 장	윤 종 규	
KEB하나은행	은 행 장	함 영 주	
한국씨티은행	은 행 장	박 진 회	

3. 의결사항

[의결안건]

제 1 호 : 2015년 결산(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전원찬성)

제 2 호 : 정보중계업무 특별참가 승인 및 특별참가금 결정(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전원찬성)

제 3 호 : 이사회 이사 선임(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전원찬성)

의사록 작성자 금융결제원 경영전략본부장 이 종 금

총회 의사록
2016. 2. 25.

총회의 의사록은 금융결제원 원장이 작성하여 총회 의장의 확인을 받아 사원에게 배포하고 금융결제원 본점에 비치하여 사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회 의결사항은 정관의 변경, 사원의 가입금 결정 및 제명, 특별참가기관 참가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분, 출자금 및 회비분담기준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선임, 기타 의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각 사원은 1개의 표결권을 가지며, 준사원과 금융결제원 원장은 표결권 없이 총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과 총회에서 의결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결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구이다.

이사회의 이사는 원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 8인 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내 유고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승계하는 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 이사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관리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총회 의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는 금융결제원 운영의 핵심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 이사회 이사는 사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 전원과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사업과 조직이 확대되어 이사회의 의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총회와 동일한 구성형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15일 이사회의 구성원을 사원은행 그룹별로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8인(한국은행 1인, 특수은행 2인, 시중은행 4인, 준사원은행 1인)과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금융결제원 원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사원의 발의 및 회의 소집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 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1999년 8월 7일에는 비상임이사의 선임기준을 한국은행 1인, 여타 사원은행 6인, 준사원은행 1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3월 7일에는 금융결제원 전무이사를 이사회 이사에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각급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성해 왔다.

금융결제원은 2016년 현재 기획위원회, 어음교환위원회, B2B위원회, 지로위원회, 전자금융위원회, 금융공동망위원회, 공동전산위원회, 외환무역위원회, 주택청약위원회, 전자인증위원회, CMS위원회, 금융정보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각급 위원회는 금융결제원 및 이사회 비상임이사가 속한 기관(한국은행 제외)의 관련 부서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결제원 원장이 선임한다.

각 위원회 의장은 금융결제원의 관련 부서장이 되며, 의장 유고 시에는 금융결제원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각급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정관변경 심의, 가입금 심의, 기본회비 분담에 관한 심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심의, 세무업무 심의 또는 결정, 기본재산(가입금 · 참가금 · 적립금)의 사용 심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규정 중 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심의와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업무별 위원회 소관업무

위원회명	소관업무주)
어음교환위원회	어음교환업무,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업무,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업무
B2B위원회	B2B업무, 전자어음업무, 기업구매자금 어음정보교환업무
지로위원회	지로업무
전자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공동망업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업무, 모바일공동업무, 금융정보표준화업무, 기타 전자금융 관련업무
금융공동망위원회	CD공동이용업무, 타행환공동망업무,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업무, 금융IC카드공동업무
공동전산위원회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업무, 일괄전송업무, 금융기관 공동코드업무, 정보중계업무 및 기타 공동전산 관련 업무
외환무역위원회	무역자동화망 접속업무, CLS공동망업무, e-L/C공동업무,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 국가간 공동망업무
주택청약위원회	주택청약공동업무
전자인증위원회	전자거래 공인인증업무
CMS위원회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이용업무
금융정보관리위원회	자동이체 통합관리업무
OTP위원회	OTP업무

주) 소관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별 위원회

업무별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심의 및 세부 시행계획 결정, 업무별 회비분담 심의, 특별참가 심의, 규약의 제정 · 개폐 심의, 시행세칙의 제정 · 개폐 결정, 참가기관의 제재 심의,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각 업무별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성 ·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심의사항을 심의한 후 해산한다.

기타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일부 사원 및 준사원이 참가하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결제원 및 해당업무 참가기관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 · 운영한다.

업무조직

금융결제원은 설립 당시 본부의 업무조직을 총무부, 어음교환부, 지로업무부, 전산부, 금융전산추진부와 감사실로 구성하였다. 총무부에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리담당을 두었으며, 어음교환부에는 교환관리담당, 부도관리담당, 야간처리담당을 두었다. 지로업무부에는 지로기획과와 지로1과, 지로2과를, 전산부에는 전산개발과와 전산운영과를 두어 5부 1실 5과 6담당 체제로 출발하였다. 이후 업무량 증가 및 사업영역 확대 등 주변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2016년 8월 현재 5본부, 12부서, 7실, 5부서 소속실, 80팀으로 업무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의 변천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후 국내 · 외의 경제, 사회 여건과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기관의 경영 ·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직을 정비, 개편하여 현재의 조직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금융결제원이 지난 30년간 실시한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변천 내역

일시	주요 내용
1988. 04. 01	- 총무부를 3담당에서 3과체제로 개편 - 총무부 내 기획실 신설
1989. 10. 14	- 어음교환부 내 자금중개실 신설
1992. 08. 01	- 금융전산추진부와 전산부를 금융망업무부,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로 재편 - 기획실에 조사홍보과, 총무부에 관재과와 안전관리과, 지로업무부에 지로3과 신설 - 어음교환부의 교환처리1과와 교환처리2과를 교환처리로 통합
1995. 02. 08	- 금융망업무부 내 부가통신사업실 신설
1996. 01. 23	- 부가통신사업실을 금융망업무에서 별도 분리하여 VAN사업부로 변경
1998. 02. 20	- 총무부, 인사부, 건축본부를 업무지원부로 통합 - 자금중개부를 어음교환부 부속 자금중개실로 편제
1999. 08. 10	- 전자금융연구소 내의 기존 정보보호실을 금융정보인증실(인증기획팀, 인증운영팀)로 개편
2000. 02. 18	- 전자화폐팀, 주택청약팀 신설
2000. 05. 19	- VAN사업부 내 자금중개실을 서울외국환중개(주)로 독립시킴
2001. 02. 09	- 본부제 및 팀제 도입(BCG 경영 및 조직 컨설팅 결과)에 따라 4본부 6부 2실 1연구소 1센터 3부속실 1반 44팀으로 재편
2003. 02. 03	- 전자금융연구소 내 금융ISAC실 신설 - 업무지원부 내 건축추진실 신설 - 정보시스템부 내 시스템운영실 신설
2004. 12. 06	- CLS구축전담반을 금융망업무 내 CLS업무실로 확대 개편
2005. 01. 01	- 업무지원부 내 안전관리팀을 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
2005. 01. 28	- 퇴직연금RK센터추진반 구성
2005. 07. 27	- 기획조정실과 전자금융연구소를 각각 지원본부와 전자금융본부 소속으로 배치 - 50개 지부를 9개 지역본부 및 36개 지부로 재편 - 5개 지부 폐쇄(태백, 공주, 남원, 해남, 상주)
2006. 02. 07	- 퇴직연금RK센터추진반 폐지 및 금융망업무부 내 퇴직연금RK업무실 신설
2007. 07. 30	- 분당시스템구축반 폐지하고 정보시스템부 내 분당시스템실 신설
2008. 01. 29	- 퇴직연금RK업무실을 폐지하고 RK업무팀은 공동업무부로 RK개발 · 운영업무는 정보시스템부로 이관 - 금융망본부 내 업무기획실 신설
2008. 11. 07	- 7개 지부(김해, 양산, 포항, 경주, 통영, 군산, 익산) 폐지
2009. 08. 03	- 3개 지역본부(인천, 충북, 강원)와 11개 지부(성남, 의정부, 안산, 안양, 부천, 충주, 천안, 평택, 이천, 서산, 여수) 폐쇄
2010. 02. 02	- e사업실에 채널사업팀과 해외사업협력전담반을 설치하고 통합빌링ASP전담반을 빌링사업팀으로 변경
2011. 01. 01	- 6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강원, 전북)와 18개 지부(울산, 창원, 진주, 구미, 김천, 안동, 영주, 논산, 홍성, 제천, 목포, 순천, 제주, 정읍,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폐쇄 - 4개 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설치
2011. 01. 31	- 경영관리본부에 고객지원실, e사업본부에 e사업전산실 각각 설치 - 정보시스템부를 IT개발부와 IT운영부로, 시스템분석팀을 1, 2팀으로 분리 - 대외협력팀, 고객관리팀, 모바일업무팀, 모바일개발팀, 기술지원팀 각각 신설 - 업무기획실 폐쇄 및 업무개발팀을 금융결제연구소로 배치
2012. 01. 31	- 금융결제연구소에 사업개발실 신설, 기획조정부에 리스크관리팀 신설
2013. 01. 28	- 전자금융부에 현금카드업무팀 신설, IT기획부에 IT감리팀 신설
2013. 07. 09	- 경영개선TF를 원장 직속으로 설치 · 운영
2013. 07. 29	- 전자금융부에 스마트금융실 신설
2014. 01. 27	- 정보보호본부 설치(5본부 체제) - 대외협력실, 진단평가팀, 업무개발총괄팀, 공용S/W개발반, 침해사고대응팀 신설 - 금융결제연구소의 통계반 및 결제연구팀, 기술연구팀을 폐지
2015. 01. 26	- 금융정보업무부에 금융정보분석팀 신설
2015. 04. 10	- 금융ISAC부 폐쇄 및 전자인증부에 OTP업무실 신설
2016. 07. 25	- 핀테크업무실을 신사업개발실로, 스마트금융실을 미래금융실로 개편 - 리스크관리실 및 국제업무실 신설

조직과 업무

금융결제원 조직은 2016년 8월 현재 5본부(경영전략본부, 금융망본부, IT본부, 정보보호본부, e사업본부)와 12부서, 7실, 5부서 소속실, 80팀, 5반, 4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의 주요 업무분장 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업무 분장 내용

본부	부서	업무분장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부 (리스크관리실)	· 경영전략 및 중 · 장기발전계획,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법규에 관한 사항
	고객지원실	· 고객만족 계획 수립 및 추진 · 민원업무 처리통할
	금융결제연구소 (신사업개발실)	· 지급결제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금융정보통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 응용 신규서비스 기술연구 및 프로토타입 구현에 관한 사항 · 신규업무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지급결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총무부 (안전관리실) (비서실)	· 문서 및 서무, 관재 및 영선, 결산 및 경리, 경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건물의 신 ·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 사무자동화기기 수급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노사관리 · 인력 개발 및 지식공유 · 보안 및 경비업무 · 임원의 비서에 관한 사항 ·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금융망본부	전자금융부 (미래금융실)	· 금융공동망에 관한 사항 ·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업무에 관한 사항 · 전자화폐 및 금융IC카드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결제서비스의 기획 · 추진에 관한 사항 · 미래금융, 스마트금융, 핀테크업무 기획 · 추진에 관한 사항
	금융정보업무부 (국제업무실)	· 금융기관 정보중계, 공동전산업무의 기획 · 추진에 관한 사항 · 자동이체 ·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의 기획 · 추진에 관한 사항 · 주택청약 업무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 외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공동망업무에 관한 사항

본부	부 서	업무분장
금융망본부	어음교환부	· 어음교환업무 관련 사항 · 부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전자어음에 관한 사항 · 전자채권에 관한 사항
	지로업무부	· 지로업무추진 관련사항 · 지로업무 이용승인 및 관리 · 지로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세 등 수납대행업무 기획 및 추진
IT본부	IT기획부	· IT전략의 수립·추진 및 IT시스템 구축 통할에 관한 사항 · IT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관한 사항 · IT자원 및 IT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IT감리에 관한 사항
	IT개발부	·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수 · 유지에 관한 사항 · 사무자동화 추진에 관한 사항
	IT운영부	· 전산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통신설비 및 회선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본부	금융정보보호부	· 정보보호 기획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기술에 관한 사항
	전자인증부 (차세대인증실)	· 전자거래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 OTP업무에 관한 사항 · 차세대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 소관업무 프로그램 개발, 소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사업본부	e사업실	· 수익사업 기획 및 추진 · 지급결제 관련 S/W의 자문 및 개발 · CMS업무 기획 및 추진 · 채널사업에 관한 사항 · 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운영
	VAN사업실	· VAN사업 기획 및 추진 · 대리점 및 가맹점 관리 · 법인 영업 및 관리 · 단말기 관련 기술지원
	e사업전산실	· e사업본부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수 · 유지에 관한 사항 · e사업본부 전산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실		· 감사업무 기획 및 추진 · 업무 및 회계의 감사 · 감사의 지시 및 원장이 의뢰한 사항의 감사 · 외부감사 수감 통할 · 사고 보고 및 처리

임원 및 직원

임원

임원은 금융결제원의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진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원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3인 이내 그리고 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 · 관리하고 있다.

임원의 직무권한과 역할 등을 살펴보면 원장은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최고경영자이다.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이사회 상임이사로서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무이사는 원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선임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감사는 금융결제원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직원

직원은 일반직원, 서무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원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이며, 일반직원의 직위에 따른 대응직급 및 직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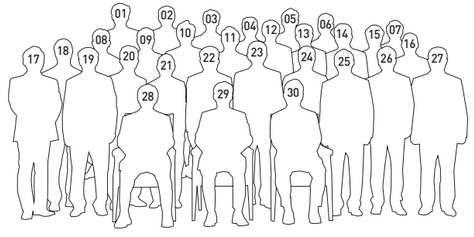


이흥모 원장 취임식
임원 및 부서장 기념촬영
2016. 4. 7.

일반직원의 직위별 대응직급 및 직책

직 위	대응직급	직 책
부 장	1급	부서장, 실장, 팀장, 반장, 사무소장, 팀원, 역직주)
수석부부장	1급, 2급	
부 부 장	2급, 3급	
과 장	3급, 4급	팀장, 반장, 사무소장, 팀원, 역직주)
사 원	4급, 5급, 6급	팀원, 역직주)

주)역직 : 전산역, 연구역, 검사역, 조사역, 기술역, 비서역, 자문역, 보좌역



01 박순만 금융정보보호부장
02 박완성 IT기획부장
03 최재희 안전관리실장
04 김연수 전자인증부장
05 정대성 미래금융실장
06 박철우 IT개발부장
07 남진석 e사업전산실장
08 안순용 비서실장
09 이순락 감사실장
10 김충진 지로업무부장
11 문관섭 신사업개발실장
12 정길용 금융결제연구소장
13 최 영 금융정보업무부장
14 손희성 e사업실장
15 김종찬 리스크관리실장
16 서성윤 차세대인증실장
17 조화건 정보보호본부장
18 임경빈 고객지원실장
19 박연상 금융망본부장
20 김승호 IT운영부장
21 김 인 전자금융부장
22 류재수 경영기획부장
23 장우찬 어음교환부장
24 장건흥 총무부장
25 이종규 경영전략본부장
26 김영준 e사업본부장
27 한창현 IT본부장
28 황문연 감사
29 이흥모 원장
30 신동원 전무이사

05

경영관리

1. 경영활동 및 예산
2. 재무 및 자산관리
3. 인사관리
4. 업무개선
5. 경영지원
6. 사회공헌활동
7. 고객만족활동
8. 안전관리
9. 감사활동
10. 구성원 권익 및 복지증진 활동

금융결제원은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난 30년간 각 시기에 부합한 경영목표 및 실행전략, 세부사업 등에 관한 경영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경영활동 및 예산

경영계획의 수립

금융결제원은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난 30년간 각 시기에 부합한 경영목표 및 실행전략, 세부사업 등에 관한 경영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경영계획은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중기발전계획과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세부계획 등이 있다.

중기발전계획

금융결제원은 비전 및 경영목표를 실현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선진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설립 초기부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다. 중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과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계획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 실현하는 데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금융환경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반영,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수립, 추진해온 주요 중기발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기발전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1989~1991	·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제도의 전산화 ·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과 경영관리의 합리화 · 금융결제원의 발전 비전 제시 등
1992~1994	·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및 비전, 실천방안 등 제시 등
1995~1997	· 금융개방화, 국제화, 자율화 등 당시 환경변화와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등
1998~2001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 금융편의 제고 및 조직 경쟁력의 우위 확보 · 선진지급결제제도의 구현, 첨단 전자금융서비스 창출 및 확산, 고부가가치 사업구조 확립 등
2002~2004	·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화 ·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 · 은행의 수익성 기여 및 경쟁력 강화 ·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2004~2006 (2005~2007)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촉진 ·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개발 · 보급, 조직역량 강화 · 사원은행과 이용고객의 편익증진을 경영목표로 제시
2009~2011	· 종전 비전 "세계 최고수준의 종합지급결제서비스 기관"을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지급결제파트너"로 변경 · 비전 구현을 위한 미션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증진, 신규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제시 · "사원은행과의 신뢰 강화",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등을 경영목표로 제시
2011~2013	·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위기극복 및 기회획득을 통한 조직발전 기반 마련을 중기 전략목표로 설정 · 전략방향으로 신규서비스의 창출 및 성공적 추진,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안정성 강화, 조직역량 강화 제시
2013~2015	· 2011~2013년 중기발전계획과 동일한 경영목표를 제시 · 전략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및 국내 · 외 경영환경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중기발전계획과 중기전략과제를 조정하는 체계 도입
2017~2019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비전 달성 및 미래 30년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중기발전 방향으로 설정 · "신성장동력 발굴", "핵심사업 가치창출 확대", "미래지향 경영체제 구축"을 중기전략목표로 제시

사업계획

금융결제원은 대내 · 외 환경변화 요인 및 경영목표 등을 반영하고 중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매년 사업부문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이 계획에 따라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지침은 경영기획부에서 작성,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며 각 부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지침의 중점 반영사항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중기발전계획을 기본방침으로 활용, 단위업무의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제별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계획 작성 시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재무적 효과, 업무처리 건수 등 비재무적 효과) 및 목표수준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시 기대효과를 재점검하여 목표수준을 설정, 일정기간(1~3년)이 경과된 시점에 실제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신규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있는 경우 준법검토를 사전 실시하고 사업목적, 시장전망, 수익성 및 기술성 등을 추가로 분석하는 등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의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 등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때 기존의 조직, 인력 및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작성된 부문별 사업에 대하여 본부장 주관으로 소속 부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 조정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 경영기획부 앞으로 계획서를 송부하고, 기획위원회 심의 후 총회 승인절차를 받게 되면 차기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시대별 주요 사업추진 내역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설

사업계획 수립절차



립 이후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어음교환 · 지로 업무의 개선 및 이용촉진, 금융공동망의 구축 및 안정화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수익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기반 구축과 기존 금융공동망업무의 부가서비스 발굴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말까지는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 확대와 공인인증, 금융ISAC, 퇴직연금RK업무 등 금융기관의 공동전산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정보중계업무,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와 신인증수단, IT아키텍처 고도화, 자동이체 및 계좌정보통합관리 등 금융정보관리, 핀테크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경영관리

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사업성의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제도, 사업추진상황관리, 사업실적 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이는 조직별로 계획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고 계획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점검 ·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조직에 통지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과관리제도

금융결제원은 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PMS)의 시행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책임업무 수행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1년 조직단위 및 개인단위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Test-Run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 추진하였다.
이후 성과지표의 균형성, 평가의 객관성, 구성원의 수용성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수행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체계도 및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는 고객, 재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4가지 관점으로 구분되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방식을 적용하여 수립하였다.
또한 지표측정방법의 개선 및 성과관리 IT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2008년에는 부서장 및 팀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팀원까지 확대하여 성과관리제도와 보상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관리체계의 운영 보완을 추진하였다.
현재 성과관리평가 대상은 비서실 등 일부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단위이며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추진상황 관리

금융결제원은 사업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본부장 전결 이상의 비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성과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 분석하고 있다.
사업추진상황은 대상사업별로 정상추진, 일정 일부 지연, 미진, 완료의 형태로 구분 · 계수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사업 이외에도 업무량, 수수료수입, 인원, 예산집행현황 등의 경영현황자료를 점검하고 해당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지하는 피드백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한 점검 및 분석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업실적 평가

금융결제원은 연 1회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실적 평가는 계획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단순하게 집행실적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성과, 향후 과제 및 전망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목표의 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요 구성은 총평부문(사업실적, 경영실적), 추진 내용(추진상황, 일정, 추진실적), 소요자원(예산집행 내역, 기타 자원 투입 내역),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안, 추진성과(정량적, 정성적 성과, 향후 계획 및 전망) 등으로 구성하여 각종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러한 평가결과를 단위조직 성과평가제도 및 정기포상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책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산관리

예산의 편성

예산이란 연간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 정관상의 금융결제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반사업 예산"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CMS 및 VAN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 예산"으로 구분된다. 예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된다.
예산은 전기이월금의 차감 및 업무별 회비 특례, 예산전용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예산전반에 대한 총괄 규정인 예산총칙과 수입예산, 지출예산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위원회 심의 후 총회의결 과정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하고 있다.

- 수입예산

금융결제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운영수익, 수익사업이익전입금 등의 자체조달자금과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이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한다. 회비는 크게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로 구분하며 총회에서 정한 「회비분담기준」에 따라 참가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기본회비는 사원과 준사원이 부담하는 회비로서 연간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기본비용에서 자체 조달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회비는 한국은행이 20%를 선제분담하고 여타 사원이 20%를 각각 균등분담하며 잔여 60%를 사원(한국은행 제외) 및 준사원이 직전년도 말일 현재 자산, 예금 및 대출합계, 경비, 당기순이익의 4개 요소를 균등한 가중치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업무별회비는 해당 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이 부담하는 회비로서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서 자체 조달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참가기관이 동일하게 분담하는 균등분과 참가기관별 업무처리실적에 따라 차등 분담하는 실적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별회비의 종류에는 어음교환, 지로, CD, 전자금융, 타행환, 무역망, 뱅크라인, 금융IC카드, 전자인증, 주택청약, PG, B2B, CLS, 퇴직연금, 국가간 공동망, 금융정보, OTP회비가 있다.


供覽

문서기번호 金經 240 — 3기

보존기간 기안부서 永久 년 수신처 년

기안 1991. 5. 20.

발신 19 . . .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원장

소속 企劃室 합의

기안자 鄭吉鎭

전화번호 133 협조

수신 참조

발신명의 조인통제

제목 豫算統合運營方案 報告

전무전결기준표 제Ⅱ장 제4절 제마항 제 호 예의거 院長 전결

재무1-16호

豫算統合運營方案을 붙임과 같이 報告하오며 同方案을 關聯機關과 協議하여 推進코자 합니다.

붙 임 : 豫算統合運營方案 1部. 끝.

서식 1103 (210×297) (/) 금융결제원

예산통합운영방안 관련 보고(기안문)
1991. 5. 20.

예산의 배정

지출예산 확정 후 예산관리자가 회계단위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정기배정, 자동배정, 수시배정으로 구분한다. 또한 모든 예산배정 및 집행 프로세스는 예산관리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예산관리 강화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재무 및 자산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산출·보고하고 수입 · 지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각종 사업계획 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결제원 일반사업의 각종 경비는 주로 사원은행의 회비로 충당하며 금융결제원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을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

- 회계의 특징

금융결제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결제원 내부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및 준칙」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실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 회계체제는 예산회계, 기금회계 및 현금주의회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융결제원 회계체제의 특징

구 분	특징
예산회계	·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회계체제 · 사원 및 준사원이 부담하는 각종 회비를 관리 · 운용하는데 가장 효과적
기금회계	· 회계주체를 기금으로 보는 회계체제 · 비영리법인의 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각각 구분된 자원을 의미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원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현금주의회계	· 모든 수입과 비용의 집행 시 현금의 입 · 출금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회계체제 · 2012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일부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

- 수익사업 구분경리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결제원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콜거래중개업무에 대한 수익사업 구분경리를 실시하였고, 1995년부터는 직불카드거래중개업무 등을 실시하면서 수익사업 구분경리를 재개하였다.

금융결제원 수익사업 회계는 1995년에 40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0억 원을 출연하였다. 수익사업 회계는 1996년까지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사업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가로 1997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 외부 회계감사 실시

금융결제원은 법령에서 정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04년 결산 심의 시 사원은행의 적극적인 도입권고에 따라 2006년 결산분부

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감사보고서는 결산심의 시 사원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재무구조

- 자산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 자산은 예치금,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보증금,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자산형태는 크게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선급비용, 수익사업회계)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유동자산의 재원은 기본재산, 충당금, 각종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원 및 준사원 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유동자산 중 선급비용 계정은 2012년부터 발생주의회계를 일부 도입하면서 신설되었고 수익사업회계 계정은 일반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따른 대차관계 정리를 위하여 1997년에 신설되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투자자산 중 장기투자자산은 유형자산 취득 시 구입한 채권이며 수익사업전출금 301억원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수익사업에 출연한 금액이다. 유형자산은 초기에는 집기와 차량, 전화가입권이었으나 2007년 분당센터, 2014년 양재동 생활관을 준공하면서 증가하였다.

한편 1993년에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취득한 부산, 대구, 대전사무소와 2002년에 취득한 광주사무소 건물은 2007년에 대전사무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사무소 모두를 매각하였다.

- 부채 및 재산

부채 및 재산은 창립 초기에는 예수금, 미지급금, 충당금, 소유물조정금, 기본재산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재산은 유동부채(예수금, 미지급비용, 이월금조정), 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본재산(가입금, 참가금, 적립금), 기금(보증기금, 소유물기금), 잉여금(미처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면으로 보면 기본재산이 83.3%로 비중이 가장 크고 기금,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순이다. 유동부채 중 미지급비용, 이월금조정은 유동자산의 선급비용과 함께 2012년부터 발생주의회계를 일부 도입하면서 신설되었고, 이월금조정 계정은 현금주의회계와 발생주의회계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조정하는 계정이다.

한편 금융결제원 자본금의 성격을 지니는 기본재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계리하였으나 1998년부터 기금을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재원조달 및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기금 중 보증기금은 사무실 및 직원 주택 임차보증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소유물기금은 집기, 차량 및 소프트웨어 등의 유·무형자산 구입 시 재원으로 하고 있다.

수지상황

금융결제원은 매월 수입과 지출의 집행이 예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수지상황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 차액은 차기 이월하여 다음 연도 수입예산 회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일반사업의 수입은 사원 및 준사원은행의 회비, 예금 및 국공채이자, 잡수입, 수익사업이익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비의 종류는 1986년 사원분담금을 포함하여 8개에 불과하였으나, 전자금융업무 등 신규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16년 현재 기본회비를 포함하여 18개로 증가하였다.

지출부문은 소유물비, 인건비, 경비, 전산업무비로 구분되며 그 규모는 수입부문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인건비, 경비 및 전산업무비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금융결제원의 사업비 및 각종 경상비 지출에 사용된다.

기본재산

- 개요

기본재산은 금융결제원의 자본금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입금, 참가금,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1991년 「기본재산의 운용지침」을, 2005년에는 「기본재산의 운용요령」을 제정하였다.

기본재산 운용상황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 현황

기본재산은 1986년 출자금, 가입금, 적립금 및 주택임차기금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87년 사무실임차기금, 1989년 별도적립금, 1992년 참가금이 신설되었고 1995년 출자금 계정이 삭제되면서 6개 과목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1998년 기본재산(가입금, 참가금, 적립금, 별도적립금)과 기금(임차기금, 보증기금, 소유물기금)을 분리하고 2009년 임차기금과 보증기금을 현재의 보증기금계정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적립금과 별도적립금은 2012년에 현재의 적립금계정으로 통합되었다.

자산관리

자산관리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집기 및 기계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한다.

자산관리 활동

- 건물 임차

금융결제원은 1986년 6월 설립 시 전국은행연합회 건물(명동 소재) 5개층을 무상임차하고, 지로업무부와 금융전산추진부는 한국감정원 강남지점 건물(강남구 삼성동 소재)을 유상임차하였다. 1987년 12월 한국감정원 건물을 추가 임차하여 어음교환부 및 콜거래실을 제외한 여타 부서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1년 한국은행 강남지점 신축과 동시에 금융결제원 전용 건물(총 6개층)과 한국은행 강남지역본부 일부를 무상(1995년 10월부터 유상으로 전환)으로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업무증가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2002년 8월부터 수익사업 부서인 e-Biz본부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현재의 강남파이낸스 센터)빌딩 7층 일부를 임차, 사용하였다. 또한 중요 업무장애 시 실시간 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2002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한 한국전산원 1층 일부를 임차, 백업센터로 사용하였다.

- 분당센터 준공

설립 이후 타 건물을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금융결제원은 드디어 2004년 12월 착공 후 2년 3개월만에 2007년 2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준공함으로써 자체 사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분당센터는 지상 12층, 지하 2층, 전용면적 약 1만 1,132㎡ 규모로 진도 7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으며, 최신기술의 경비·보안 시스템과 이중화된 전기·통신선로 및 기반설비를 갖춘 첨단 전산전용 건물이다.

분당센터의 준공으로 역삼동 본부와 분당센터의 전산시스템은 상호 백업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분당센터는 역삼 본부의 CD · 타행환을 비롯한 금융공동망의 백업센터로서의 기능을, 역삼 본부는 공인인증 및 OTP업무의 백업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테러 및 지진 등 재해 · 재난과 전산시스템 파괴로부터 전산자원의 안전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 생활관 신축

직원 생활관은 1989년 5월 강남구 삼성동에서 처음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1991년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성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98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0실(2인실) 규모의 건물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신축하여 운영하였다.



산본생활관, 1998년 준공



양재생활관, 2014년 준공

이후 산본생활관의 교통 불편 등으로 2012년 동 생활관을 매각하고 2014년 6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생활관을 신축하였다. 양재생활관은 대지 1,497㎡, 연면적 4,605㎡의 지하 2층 지상 5층 64실(1인실) 공동주택으로 신축되었다. 역삼 본관과 분당센터의 출퇴근 교통 편의와 주거 환경을 최우선 고려한 양재생활관 신축으로 직원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었다.

– 옥상공원 조성

본관 건물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였는데, 강남구청의 옥상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 8월 본관 옥상을 공원화하게 되었다. 당시 공원 명칭을 내부 공모하여 "원마루"로 선정하고 본관 옥상 약 990㎡ 면적에 금융결제원의 상징물 설치 등 조직문화를 최대한 구현한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여름철에는 냉방효과와 겨울철에는 단열효과로 에너지 절약도 도모하게 되었다.

용역 및 시설관리

금융결제원은 본관 및 분당센터 건물의 각종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건물 시설관리용역계약, 기기유지보수계약 및 기타 파견직 용역계약을 체결, 운용하고 있다.



역삼본관 옥상정원(원마루) 준공, 송창헌 前 원장 기념 식수
2010. 9. 13.

또한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설 비중이 높고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있어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력 당국에서는 본관 및 분당센터를 단전 제외 건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전력공급방식은 주 변전소 및 예비 변전소로 이중화 되어 있다. 여기에 본관 및 분당센터의 경우 자체적으로 각각 UPS(무정전 전기공급장치) 4대를 보유하고 있어 만약의 정전 시에도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인사관리

인사관리

인사관리의 주된 목적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 적재 · 적소에 배치하고 행동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성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조직 발전과 개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과 활동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고 보면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그 인적자원을 유효하게 관리, 운용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

금융결제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동기부여 도모, 조직 생산성 증대를 실현하고자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직원구분

금융결제원은 직원의 담당직무 특성에 따라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원



2000년대 이전 근무복

외 인력으로 사무사원, 용역직원, 파트타이머를 운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되었던 "여자사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1993년 5월 폐지, 여자사원을 "사원"으로 흡수 통합하였으며, 서무직원 및 별정직원은 2009년 7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로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일반직원의 직급은 사원에서 부장까지 1~6급으로 구분된다.

직위체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 직급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직급중심체계였으나 1996년 12월부터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위와 직급을 분리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직위는 부장, 수석부부장, 부부장, 과장, 사원으로 구분된다.

인원현황

금융결제원은 1986년 설립 당시 기존의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직원 259명과 은행지로관리소 직원 274명을 합하여 총 533명(본부 405명, 지부 128명)의 인원으로 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금융공동망 구축 및 수익사업 등 신규사업 확장으로 1997년까지 연평균 21명의 인원이 증가하였다.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 이후 사원은행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한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1998년과 1999년, 2005년 그리고 2009년 4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 총 280명이 퇴직하였다.
2000년대에는 공인인증센터, 금융ISAC실 설립, CLS 공동망 구축 등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원증가 없이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이는 2001년 팀제 도입 등 조직 체계 개선을 통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 확대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뱅킹, 뱅크월렛 등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서비스 추진과 금융ISAC 기능강화에 따라 전산전문 인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의 인력과 기능을 통합한 금융보안원이 설립됨에 따라 금융ISAC 직원 66명이 퇴직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기준 6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채용

직원의 채용은 금융결제원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업무 중 하나이다.
금융결제원은 설립 초기 신입사원과 경력직원 채용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인력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1995년 12월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는 인턴사원제를 도입하여 우수 전산직 인력을 확보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은 직원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실무책임자 면접, 임원 면접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전형과정 및 심사를 거쳐 채용절차의 신뢰성,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승진 및 승격현황

금융결제원은 1996년 12월부터 직위와 직급을 분리 운용함에 따라 승진과 승격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승진은 차상위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하며, 승격은 차상위의 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진은 직위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상위직위의 결원이 있을 때 관리능력, 근무성적, 업무수행능력 등 승진종합평정성적과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한편 승격은 직급별 승격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성적, 업무수행능력, 근무경력 등 승격종합평정성적과 품행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직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1급은 34호봉, 2급은 29호봉, 3급은 24호봉, 4급은 18호봉, 5급은 11호봉의 기준호봉을 부여하며, 승격 당시에 이미 기준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호봉을 적용한다.

종합근무평정제도

금융결제원의 종합근무평정제도는 직원의 승진 · 승격 심사 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승격 및 승진종합근무평정으로 구분된다.
승격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연수평정 및 경력평정으로 구성되며 승진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관리능력평정 및 경력평정으로 구성된다. 금융결제원은 인사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력중심 인사제도 확립, 인사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종합근무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1995년 12월 종합근무평정의 핵심요소인 근무성적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근무성적배점의 상향조정, 절대평가제 및 상향식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6월에는 평정결과의 조정방법 변경, 평정등급의 조정(6단계→5단계) 등 평가제도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2차 평가의 상대평가제 전환, 직위별에서 직책별로의 평정단위 변경, 실적항목의 근무성적 반영비율 상향 조정, 평정요소의 축소

연도별 인원현황

구 분		'86.6	'95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본 부	부 장	6	10	9	16	16	17	17	10	15	15	17	18	18	16	18
	수석부부장	7	14	18	24	28	28	28	29	29	30	32	33	35	35	38
	부 부 장	10	27	35	53	53	55	62	58	63	64	64	68	72	71	74
	과 장	30	77	90	147	168	190	204	200	212	225	239	247	258	247	252
	사 원	314	400	299	283	271	264	252	242	228	232	238	244	242	217	222
	소 계	367	528	451	523	536	554	563	539	547	566	590	610	625	586	604
지 부	부 장	5	6	9	4	6	7	6	0	0	0	0	0	0	0	0
	수석부부장	15	16	14	17	14	14	16	0	0	1	1	1	2	2	2
	부 부 장	14	27	26	29	32	32	26	0	0	1	3	3	2	2	2
	과 장	8	17	18	15	14	11	12	10	6	5	2	4	3	3	3
	사 원	67	116	85	59	62	61	52	21	15	5	6	4	5	5	5
	소 계	109	182	152	124	128	125	112	31	21	12	12	12	12	12	12
합 계		476	710	603	647	664	679	675	570	568	578	602	622	637	598	616


신입 사원 모집

1. 채용구분 및 응시자격

채용 구분	인원	대 상 학 과	응 시 자 격
중견	일반직 ○명	법학, 경제학, 경영학	· 4년제정규대학대학원 상학과졸업자또는8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60. 3. 1 이후 출생한 남자
	전산직 ○명	전자계산학, 전자계산통계학, 전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전산학과	
초급	일반직 ○명	—	· 고등학교졸업자또는동등학력소지자로서64. 3. 1 이후출생한남자
	전산직 00명		

※중견, 초급 공히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소지자(전산직)및 주산 1급이상 자격증소지자(일반직초급)는 필기시험성적에 가점
2. 제 출 서 류
가. 지원서(당원 소정양식)……1부
나.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1통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통
3.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88. 2. 1(월)~88. 2. 6(토)
(평일 10:00~17:00, 토요일 10:00~14:00)
나. 장소 : 당원총무부(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71—2 (한국감정원 빌딩내)
4. 전 형
가.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
나. 필기시험과목

채용구분		시 험 과 목
중견	일반직	영어, 상식, 논문
	전산직	영어, 상식, 전산학
초급	일반직	영어, 상식, 작문
	전산직	영어, 상식, 전산기초 (PROGRAM LOGIC중심)

다.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88. 2. 11)당원 게시판에 공고
5.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주의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교부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필기시험 성적에 가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원 총무부 인사담당(556~3550 교218)에 문의바람
금융결제원 金融決濟管理院

1988년도 신입사원 모집 신문 공고



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 홈페이지 공고

Tip Story

지로업무부 사원 | 최규돈

신입사원의 다짐



여러분은 상대방을 처음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따로 준비해둔 멘트가 없다면, 혹은 준비해둔 것이 있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이름과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부터 말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만큼 직장이라는 곳은 나를 나타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결제원에 근무하는 최규돈입니다."

올해 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기에 아직은 조금 낯선 감이 없지 않은 인사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남들에게 저 자신을 소개할 때면 "금융결제원"이라는 다섯 글자를 말하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창립 이후 지난 30년간 여러 선배님의 노력과 헌신의 열매로 맺어진 우리 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중요한 사회적 역할, 위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저희에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역사를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빛나는 역사와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단단한 토대 위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라도 더 배우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배님들께서 이룩해 오신 지난 30년에 비견될 수 있는 미래 30년을 책임지는 금융결제원의 중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제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갈 후배 직원으로서 우리 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 앞으로 배워가야 할 것이 더 많아 모든 행동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혹여 이러한 두려움에 망설이거나 멈추어 서지 않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근무평정제도의 변천 과정

구 분	주요 내용
1995. 12.	· 근무성적평정 체제 개편 · 근무성적배점의 상향조정 · 절대평가제 및 상향식 평가제도 도입
1997. 6.	· 평정결과의 조정방법 변경 · 평정등급의 조정(6단계→5단계)
2005. 12.	· 2차 평가의 상대평가제 전환 · 평정단위 변경(직위별→직책별) · 실적항목의 근무성적 반영비율 상향 조정 · 평정요소의 축소 등
2014. 11.	· 근무성적평정 실시횟수를 연 2회로 개편 · 종합근무평정의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직위·직급 전체로 확대 · 부서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 부서소속 실장에 대한 평정권 부여

등을 통하여 평정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에는 근무성적평정 실시횟수를 연 2회로 개편하고 종합근무평정의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직위 · 직급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부서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부서소속 실장에 대한 평정권 부여 등 인사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인적자원 개발

연수제도의 개요

금융결제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직원들 개인 및 조직 전체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제도는 「연수규정」과 「연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 ·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초 연수 기본방향, 주요내용(연수방식), 예상 소요비용을 정한 "종합연수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 연수이수학점제 및 핵심인재 양성체계 운영, 인적자원개발(e-HRD)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있으며 그 운영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

금융결제원은 대내 · 외 환경변화로 인한 경영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고 조직 전반의 직무 전문성 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매년 역량진단 실시와 아울러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은 자체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인 "인재로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연수이수학점제 운영

연수이수학점제는 매 직급마다 소정의 연수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제도이며 해당 직급 내에서 최소 이수목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최소 이수목표 학점을 이수하여야 승격 대상이 되도록 인사제도에서 규정화하고 있다.

학점은 각 연수과정별로 부여하고 있으며 수료 및 미수료 결과에 대하여 가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점은 직무역량연수 수료 시 인정되는 연수학점이 이수 목표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부여되고 있으며, 감점은 과정을 미수료하면 학점에 비례하여 반영하고 있다. 또한 5급 직원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업무지식 및 기본소양 학습을 위해 "지급결제", "규정", "전산기초"등 3과목으로 이루어진 직무기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인적자원개발(e-HRD)시스템 운영

금융결제원은 직원들에게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관련 정보, 지



인재로시스템

식, 교육연수 관련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재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인재육성 체계를 정립, 구현함으로써 교육연수의 기획에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HRD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재로시스템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수과정의 수강신청 및 관리 측면에서 편의성을 제고, 효율적인 연수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력개발계획 수립 기능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연수과정 수강과 연수이력 및 학점이수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제도의 변화 및 발전

금융결제원의 연수제도는 전신 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연수규정」에 기초하여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 왔다.

설립 초기 10년간은 기본적인 연수체계 마련에 주력, 다양한 형태의 계층별 교육(신입직원연수, 중견사원 과정, 초급관리자과정, 4급 책임자과정 등)과 직무교육(PC교육, 지부직원 직무연수, 전산 원외연수 등)을 운영하며 질적, 양적으로 교육과정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팀제가 도입되면서 4급 책임자 자격고시가 축소(2000년 6월) 및 폐지(2003년 8월)되었고 2004년 8월에는 핵심인재 양성과 직무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직무전문가과정, 글로벌고급관리자과정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기존 연수 관련 제규정을 종합 정리하여 「연수규정」 및 「연수규정 시행세칙」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e-HRD)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당시 인적자원개발(e-HRD)시스템은 전문업체의 컨설팅과정을 거쳐 2009년 2월 "인재로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1994년도 신입사원 연수


2008년도 신입사원 연수

e사업실 대리 | 이동욱

아타튀르크 공항 그리고 쿠데타(글로벌 챌린지 연수)



2016년 7월 15일 오후 4시, 우리 원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챌린지 연수과정 중 잠시 경유를 위해 도착한 터키 아타튀르크 공항의 첫인상은 무더움과 많은 사람 그리고 무질서함이었다. 내 앞에 늘어선 사람들의 줄은 펜스를 7번이나 휘감을 정도로 길었다. 각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새치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쾌함은 극에 달했고, 환승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무척이나 초조했다. 2시간 30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입국심사를 겨우 마쳤지만 느긋한 터키인들의 성향 탓에 결국 4시간의 환승시간에도 불구하고 비엔나로 출발하는 저녁 8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함께 출국심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비행기를 놓친 관계로 별도의 비용 없이 다음 날 아침 8시편 보딩패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수하물도 찾지 못한 채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장거리 비행의 여독을 풀고자 어렵사리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과 함께 휴대폰 문자음에 잠에서 깼다. 새벽 2시 외교부에서 온 문자였다.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보는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외교부] 터키 내부 무력충돌 발생, 외출 자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터키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단다. 나는 잠시 터키에서 환승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쿠데타라니……. 불안함에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단신으로 보도된 뉴스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BBC 뉴스를 찾아봤다. 아뿔싸! "터키 쿠데타 성공, 군부에 의한 아타튀르크 공항 폐쇄."

뉴스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동유럽 연수 일정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저공비행하는 전투기 소리가 잦게 들리자 그때부터는 내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아타튀르크 공항에 나가있는 총영사관 직원분께 연락을 하니 절대 외부 출입을 삼가고 호텔에만 머무를 것을 당부하였다. "아, 최소한 하루는 호텔에만 있어야겠구나. 동유럽 연수에서 이스탄불 공항 근처 호텔 연수로 바뀌는 것인가? 일정 내에 귀국은 가능한 것일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교차했지만,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서 모자를 눌러쓴 채 호텔 로비에 위치한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터키어로 방송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TV 화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연설을 시작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라고 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BBC 뉴스를 찾아보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 군부의 쿠데타를 제압했다는 내용이었다. 설마 이처럼 쉽게 쿠데타가 진압되나 싶은 마음에 총영사관 직원분께 다시 전화를 하니 공항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니 올 수 있다면 조심해서 공항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어제 발생한 쿠데타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 몇 대의 탱크와 부서진 차량들을 볼 수 있었다. 공항 근처로 갈수록 터키 국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간색 국기를 흔들고 있었고 외신 기자들이 레포팅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침 8시 비행기는 이미 결항되었고, 모든 것이 마비된 공항에서 무한정 체크인 카운터 오픈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무려 5시간 동안이나 공항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터키항공 직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평소 성향을 보여주듯 매우 천천히 발권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행히 오후 5시 비엔나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터키항공 라운지에 도착해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견해는 잠시 미뤄두더라도 그날 하루 남짓 머물렀던 터키였지만, 터키가 쿠데타나 테러에 의해 불안한 정세에서 빨리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당시 혼잡한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노란색 바탕에 대한민국이라 적혀있는 조끼를 입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도와준 이름 모를 총영사관 직원 2분께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9년 4월에는 「연수규정」 및 「연수규정 시행세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때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연수분류의 체계를 연수 지역 기준이 아닌 역량을 기준으로 한 계층역량연수, 직무역량연수, 기타역량연수로 정립하였다.
또한 인재로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동 시스템의 재구축 추진계획을 수립, 2015년 9월 신규시스템이 가동되었다.
2016년 3월에 이르러서는 효율적인 연수제도 운영을 위해 「연수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학점인정시간제도를 규정화하고 학점부여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핵심인재 양성체계 운영

2000년대 이후 IT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날로 고도화되었으며, 사원은행이 요구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수준이나 업무수행 역량 또한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전문역량 강화과정, 학술연수과정, 예비팀장과정으로 이루어진 핵심인재양성 연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직무전문역량 강화과정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직원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직무전문역량 강화과정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직무 및 지식습득에 대한 열정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조기에 발굴 ·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 선발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다. 과정 입과자는 1년 6개월간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며 전문지식 및 스킬(skill) 습득 외에도 해외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선진사례조사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수조건을 완수한 입과자에 대해서만 수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이력을 인사 · 연수 등 인력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 학술연수과정

금융결제원은 최신 학술이론과 경영기법,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92년 6월 「학술연수규정」을 신설, 제도화한 이후 학술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술연수과정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인력을 금융결제원 업무와 관련된 국내 · 외 대학 및 학술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과정이며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된다.
학위과정은 업무와 관련된 전공분야에 대한 국내 · 외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이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학위과정은 대학 이외의 전문연구기관에 단기 파견형식으로 참여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의 과정으로 2005년 이후 도입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함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간과정으로는 부서장 국내 파견과정(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팀장 국외 파견과정 및 팀장 국내 파견과정(서울대학교, 세종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과정으로는 부서장 위탁과정(서울대학교, 산학정 등)과 팀장 위탁과정(KAIST, CIO학회, CIO유니버시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수와는 별도로 직원들이 입사 후 업무수행능력 제고와 자기계발을 위하여 금융결제원 업무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예비팀장과정

금융산업 및 지급결제서비스 분야의 기술환경 변화 등에 부응하고 사원은행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단위조직인 팀과 팀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이전부터 예비관리자군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차세대리더과정을 개편하여 2009년부터 예비팀장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예비팀장과정은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경영직무 및 리더십과 관련된 미니 MBA과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별 과제수행을 통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액션러닝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학습하고 사업추진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액션러닝 수행과제는 과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하게 심사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2010년 예비 팀장과정 최우수과제 시상
송창헌 前 원장(정중앙)
2010. 11. 1.

복리후생

금융결제원은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규정」에 의거,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안정 지원

금융결제원은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독신직원 등의 주거편의를 위해 대용사택 및 생활관도 운영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직원이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보증금지원제도와 임차사택제도가 있는데, 전세보증금지원제도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임차사택제도는 금융결제원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직원에게 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아울러 본부와 사무소 간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소장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용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을 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본부에서 근무하는 지방연고 직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교통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불편했던 기존의 산본생활관을 매각하고 2014년 6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직원생활관을 신축, 2016년 9월 현재 59명(남 42명, 여 17명)이 생활하고 있다.

보건 및 건강관리

금융결제원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입사와 함께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발생 시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노동부 지정 기본

검진항목만을 실시하였으나 1994년부터 초음파검사, X-선 촬영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고,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만 35세 이상인 직원 및 만 37세 이상인 배우자, 만 30세 이상으로서 연간 100일 이상 출장 또는 6개월 이상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매년, 만 33세 이상인 직원 및 만 35세 이상인 직원의 배우자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장애인 자녀의 생활기능 회복을 위하여 특수치료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후생시설 운영

금융결제원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가 편의도모 및 식사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상설휴양소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상설휴양소와 관련하여 1984년부터 매년 여름 성수기 동안 전국 유수 여관, 모텔 등 집단숙박시설을 임차하여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휴가기간의 사계절 분산효과와 하계휴가기간 중 숙박시설 임차 · 운영에 따른 비용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을 콘도미니엄 구좌 확보를 통한 상설휴양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최초에 콘도미니엄 15구좌 수준으로 시작한 상설휴양소는 각종 세미나, 교육, 회의 또는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대체시설의 확보,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직원들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좌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2016년 9월 현재 총 43구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91년 역삼동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의 식사편의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급식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 구내식당을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현재 역삼 본관과 분당센터 그리고 생활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결제원은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의거, 1990년 2월 28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며, 1992년 1월 1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의 제정으로 이 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선택적 복지제도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직원들의 근로복지사업에 운용되고 있다.

기타 복리후생제도

금융결제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2년 9월부터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임 · 직원단체보험(배우자 포함)에 가입, 주요 질병 및 상해 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임 · 직원과 배우자의 보장범위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복리후생제도 외에도 매년 직원 체육대회 및 부서별 춘 · 추계 단합행사 개최, 각종 동호회 활동 장려와 문화행사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교류 화합과 체력증진,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업무개선

지식경영

지식경영의 개요

지식경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지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 창출하여 보편화된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역량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금융결제원은 2002년 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그룹웨어 등 내부 통신망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보유한 핵심 지식자산인 지급결제 관련 업무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공유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역량과 직무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 인사이동 시 해당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직원의 업무지식이 후임 직원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거나 또는 사장되어 업무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크게 개선하게 되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지식은행, 나누미, 열린 커뮤니티, 아카이브(archive) 등의 운영을 통해 지식경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추진경과

금융결제원은 지식경영의 원활한 도입, 실행을 위하여 2001년 2월 전자금융연구소 내에 지식경영팀을 신설하고, 이듬해 지식경영시스템(Ask & Reply to ME, 아르미)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후 2004년 7월에는 아르미와 그룹웨어인 원텔의 화면을 통합, 재구성한 포털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원활한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을 돕는 한편 지식경영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공통 관심사를 지닌 구성원들의 관련 지식 축적,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협업공간인 “나누미”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등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9년 8월에는 변화관리프로그램 추진방안에 따라 임 · 직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열린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조직 및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임 · 직원이 원내 전반의 운영상황을 이해하고 업무학습과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지식은행 및 나누미 운영 현황(2016년 6월 현재) (단위 : 개)

지식은행(등록건수)	나누미 개설				
	업 무	프로젝트	학 습	친 목	합 계
4,586	139	41	43	40	263


원텔 내 나누미

주요활동

금융결제원은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경험, 아이디어, 노하우, 사례, 문헌자료 등을 "지식"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식자산은 전 직원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은행에 등록, 관리하며, 각 본부별로 지식전문가(개선리더)를 지정, 지식의 등록 및 등록된 지식의 업그레이드, 보존연한이 만료된 지식의 삭제 등을 통해 양질의 지식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협업공간인 나누미는 개설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업무, 프로젝트, 학습, 친목)으로 구분, 운영하며, 직원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성 · 습득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온라인 협업공간인 나누미에 등록하게 하여 보다 편리하고 자유로운 공유,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원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열린 커뮤니티는 직원들 간 상호소통의 장으로서 열린경영 토론방, 칭찬마당, 책 읽는 마을, KM Plaza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일부 게시판은 익명제로 운영하고 있다.



원텔 내 아카이브

그리고 아카이브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직원 누구나 쉽게 익히고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으며, 업무매뉴얼에서는 각 팀의 단위업무에 대한 실무활용을 위하여 업무개요, 업무흐름, 단계별 처리사항, 참고자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결제원의 수행사업, 조직운영 현황 및 기타 경영지원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 게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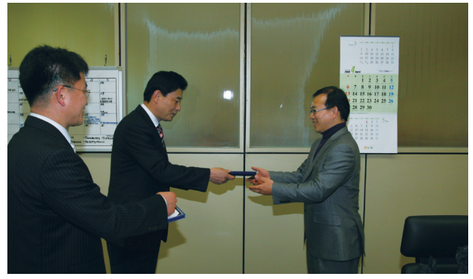
제안제도

제안제도의 변천

금융결제원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바탕으로 업무효율 향상과 사무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 초기부터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다.

금융결제원의 제안담당 조직은 효율적인 제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금융결제원 설립 초기 제안업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하였으나 1990년 1월 기획부가 총무부에서 분리, 신설되면서 기획부 경영관리과에서 제안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2001년 2월에는 전자금융연구소 지식경영팀으로, 2008년 1월에는 기획조정실 혁신추진팀으로 제안업무 담당조직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 1월 고객지원실이 발족되면서 이때부터는 고객관리팀이 제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안 관련 제도는 금융결제원 전신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제정한 「제안제도 실시요령」을 시작으로 「경영관리규정」 및 「경영관리규정 시행세칙」 등에 이르기까지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었다. 제1차로 1986년 6월에 기존 제안제도를 대폭 변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접수제안의 기록 · 관리, 제안의 재심사, 제안장려기간의 운용 및 채택제안 권리귀속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채택제안의 시상금 또한 현실화하여 최고 3배까지 상향조정하였다.


제안왕 포상, 신동원 전무(중앙)
2008. 3. 28.

1990년대 이르러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5년 1월에는 부서장 추천에 의한 제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제안심의절차의 간결화와 신속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이다.

2000년대 이르러서는 인터넷의 도래와 지급결제 환경 변화로 금융결제원의 업무확장 및 전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제안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갔다.

2001년 9월에는 제안 성격 등을 고려한 직원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익명제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전 모든 제안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예비심사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연도별 제안왕 선출제도를 도입,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제안심사위원회 체계 및 제안 보상기준도 강화하였다.

2003년 3월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집중적으로 공모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제지정 제안공모제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제안접수 후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즉결심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개선 권고 및 변형 채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제안 평가기준 및 제안시상 기준을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최초 제정된 「경영관리규정」 및 「경영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제안업무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제안제도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어 2011년 11월에는 연수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제안의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제안 최다 제출부서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였다.



원텔 내 제안함

주요 실적

금융결제원이 제안제도를 실시한 이후 총 1,487건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그 중 1,092건이 접수되고 심사결과 341건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제안은 "금융결제원 현금카드결제서비스 이용 장려제 도입"과 같은 신규서비스 관련 제안에서부터 "VAN업무용 전용회선 Node 추가" 등의 비용절감 제안과 "문서작성방법 등의 개선" 및 "전화통신 네트워크 개선"과 같은 사무환경 개선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제안의 채택을 통해 업무효율화, 경비절감 및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성과를 제고하였다.

2012년에는 제안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적용하여

연도별 채택 제안 주요 내역

연 도	제안명
2015	–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개선 요청, 주택구매자금 사후관리 개선
2014	– 금융결제원 현금카드결제서비스 이용 장려제 도입
2013	– 규정 개정 사항 표기방법 변경
2012	– 지방교육재정 정보중계 업무의 채널 중계 부문 S/W 재개발 적용
2011	– 스마트폰뱅킹 아이패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 원내 표준UI툴지정 및 운용 – 원내 업무용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제안 – 홈페이지 접속 관련 정보변경절차 가이드 라인
2009	– 신용/직불카드 승인시스템(TANDEM) 업무처리 자동화 추진
2008	– CMS 민원처리 업무 합리화 및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2007	– VAN업무용 전용회선 Node 추가
2006	– 부도신고내용 정정신청서 처리업무 개선
2005	– 카드 VAN서비스 확충을 통한 통신 Node 신설
2004	– 전화통신 네트워크 개선
2003	– 수납장표 정보화 Check digit 오류 무시 등록방법 개선
2002	– 원내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인증에 PKI기반의 공인인증서 적용 – 일반이체(신규, 변경) 승인통보서 인터넷 송부
2001	– 특수사업본부 고객만족을 위한 A/S제도 도입 – Bank-Pos서비스 전화접속점 개선 방안
1999	– 지로통지서 발송방법 개선(팩스통지 방법 추가)
1998	– 지부 전산소모품 구입방법 개선
1996	– ARS공동망 통지서비스 이용신청 접수방법 개선
1994	– 문서작성방법 등의 개선
1992	– ARS시스템을 이용한 지로업무조회 및 안내
1991	– Tray재질 변경제작(Tray를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 제작)
1990	– Bank-Pos서비스 전화접속점 개선
1989	– 대 은행 및 지로 이용기관 앞 자료 전송방법 개선
1988	– 일반이체 수작업처리업무 전산화
1987	– 일반이체 처리체계 개선방안

전 직원이 제안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제안사례집」을 발간, 게시함으로써 전 직원의 업무 개선 제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안 참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2007년부터는 외부고객인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업무에 대한 개선의견을 조사, 업무개선 제안으로 처리해왔는데, 2015년 기준 109건의 제안을 접수, 52건을 채택하였다.

연도별 제안제도 접수 · 채택 실적

(단위 : 건)

구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접수	1	1	11	6	6	3	7	3	–	4	3
채택	–	–	2	2	1	–	1	1	–	1	1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접수	20	5	4	27	6	81	30	40	31	13	74
채택	7	1	3	5	1	20	7	9	9	5	21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수	62	57	88	68	79	88	87	108	93		
채택	21	28	40	21	28	29	31	24	28		

경영지원

조사연구 기능

조사연구 기능 및 조직

금융결제원의 조사연구 업무는 국내 · 외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최신 동향분석과 조사연구를 통해 지급결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신규 서비스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의 경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국내 · 외 지급결제 통계 분석」
2014. 3.

금융결제원의 조사연구 조직은 설립 초기의 경우 단위업무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또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2년 8월 1일 당시 기획실 내에 조사홍보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사홍보과의 조사연구 업무는 주로 각 국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기초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조사자료 또한 주로 금융결제원 직원이 해외 지급결제기관 업무 출장 시 입수한 자료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발간한 각 국의 지급결제제도 소개 자료(소위 Red Book)를 참고하는 수준이었다.

1995년 9월 18일 조사홍보과가 폐지되고 신설된 조직인 경영전략팀에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경영전략팀 내 조사연구 업무는 신규 사업 발굴과 연계된 지급결제제도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2010년도 지급결제세미나, 정이모 前 상무 환영사
2010. 6. 17.

1997년 2월 해외 선진 지급결제기술 도입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전산개발부를 확대 개편하여 전자금융연구소를 신설하고 동 연구소 내에 기술연구실을 두어 지급결제 관련 신기술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2001년 2월 9일 전자금융연구소의 전산개발업무 기능이 타 조직으로 분리되고 조사연구팀이 신설되면서 지급결제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사업부서의 업무 개선 및 신규 지급결제서비스 개발 등 금융결제원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11월 30일에는 국내 · 외 지급결제산업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연구소 내에 조사연구팀과 동향분석팀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30일에 이르러 조사연구팀과 동향분석팀이 각각 결제연구팀, 기술연구팀, 통계조사팀으로 편제가 바뀌었으며, 이듬해 1월 29일에는 전자금융연구소가 금융결제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사연구팀과 전략연구팀이 신설되었고 이어 같은 해 9월 16일에는 지급결제산업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급결제표준화반이 신설되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경영개선 일환에 따른 조사연구 기능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4년 1월 27일 금융결제연구소의 조사연구팀과 통계반 기능을 연구기획팀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팀제 대신 조사연구담당, 결제연구담당, 결제기술연구담당, 인증보안기술연구담당 등으로 편제를 변경, 효율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결제연구소는 2014년부터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금융과 ICT 융합 및 핀테크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7부터 업무개발실을 핀테크업무실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개

발실 소속 업무개발총괄팀과 업무개발팀을 핀테크업무실 내 핀테크전략팀과 핀테크업무팀으로 각각 개편하여 각종 핀테크 전략 수립과 핀테크 기반 기술 및 사업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핀테크지원반도 신설하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업 및 지원 등의 대외 채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은행권 공동 오픈 API 플랫폼 구축 업무도 적극 추진하였다. 동 핀테크업무실은 조직개편에 따라 2016년 7월 25일부터 신사업개발실로 개편되어 신사업개발팀, 신기술개발팀을 두고 신규 사업 발굴 및 신기술 개발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수행과정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주로 중점발굴과제, 부서 요청과제 및 은행 공모과제, 수시과제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중점발굴과제는 최근 수개월간 지급결제산업 또는 금융서비스산업의 주요 부문 즉, 제도 및 정책, 서비스, 기술 부문의 동향 및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다.

연구의 진행절차 및 과정은 연구기획팀 주관하에 연구담당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선정 회의를 거쳐 연구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연구윤리 확립 및 정착을 위한 표절방지시스템 도입
2016. 7.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각종 웹사이트와 문헌 검색은 물론 해당 연구주제를 의뢰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 관련 기관 방문 뿐만 아니라 해외기관에 이메일 또는 전화 문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과제연구 수행 중 수시로 연구 담당자 간 검토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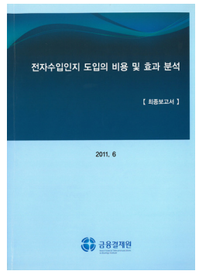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해외 지급결제산업 및 금융기술 산업정보를 정리, 연구소 내에 공람하고 별도 마련된 자료실에 게시해옴으로써 최근 급변하는 지급결제산업 및 금융서비스 환경에 대한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각 연구담당의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고자 연구기획팀에서는 조사연구 업무 기획을 총괄함은 물론 연구과제의 선정 및 조정을 담당하며, 연구지 발간 및 조사연구 자료실 관리, 국내 · 외 연구 관련 기관과의 대외 교류 및 협력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금융결제연구소는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 및 부적절한 연구수행 예방을 위해 2016년 연구윤리지침을 제정, 운영 중에 있다.

조사연구 실적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후 국내 · 외 지급결제제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활동을 수행, 내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경영 ·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외적으로는 국내 지급결제서비스 발전에 기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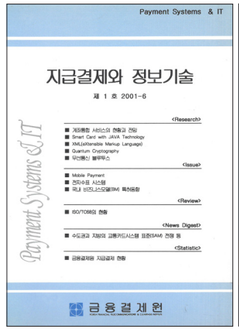
2001년 6월부터는 내부 직원의 조사연구 성과물과 대외 전문가들의 기고문 등을 중심내용으로 격월간 조사연구지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을 발간하였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전자수입인지 도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2011. 6.

2004년 3월 이후부터는 발간주기를 계간으로 변경, 발간함으로써 조사연구활동의 성과 제고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은행 등 유관기관의 구독 계층 증가와 함께 이들 기관이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사원은행의 서비스 개선 및 신규업무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인쇄책자의 발간과 더불어 2001년 창간호부터 2016년 제62호에 이르기까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사원은행 등 유관기관 및 일반인 독자들까지 금융결제원의 조사연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사연구지에는 2016년까지 총 166건의 조사연구 자료를 수록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연구소는 2003년 9월부터 「지급결제동향」이라는 조사연구자료집도 매월 발간, 조사연구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창간호
2001. 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0호
2015. 4.



창립 30주년
논문 및 사업아이디어
현상공모 포스터
(2016년)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금융결제원 및 사원은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내 · 외 최신 지급결제 동향과 금융서비스 산업동향 등을 조사 분석, 수록하였으며, 2016년 6월 현재 261호까지 발행하였다. 그리고 「지급결제동향」 수록내용 역시 2013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하고 있다.

금융결제연구소는 조사연구지에 수록된 연구내용,

최근 4년간 은행 공모 연구과제 수행 내역

구 분	과제명	제 안 은 행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통장 및 금융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씨티은행
	국내외 금융기관의 SNS 활용사례 조사 및 시사점	하 나 은 행
	HTML5 지원 웹 브라우저 기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서명 관련 연구	국 민 은 행
2013년	오픈뱅킹 사이트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EV SSL 인증서 발급 방안	기 업 은 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농 협 은 행
	금융microSD기반 모바일결제시장 전망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	신 한 은 행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APT 고도화 분석	신 한 은 행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은행책임 및 대응책(외국사례 비교)	기 업 은 행
2014년	비대면 전자금융 채널 보안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연구	신 한 은 행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	우 리 은 행
	온프라인 뱅킹 모델링 연구	기 업 은 행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한국씨티은행
2015년	빅데이터 활용 금융업 국내외 우수 사례 및 향후 대응 방안	우 리 은 행
	은행간 담보대출 상환 프로세스 개선 연구	우 리 은 행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권의 대응 전략	우 리 은 행
	ATM 내 환전서비스 기능화 검토	SC제일은행

성과 외에도 각 부서의 현안 이슈 및 사원은행의 서비스 개선,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지급결제산업 분야별 주요 동향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과제는 물론 국내 · 외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신속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들도 수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연구소는 지급결제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공동망 등 참가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지급결제제도 및 동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급결제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연구소는 2011년 3월부터 4개월간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자수입인지 도입의 비용과 분석" 이라는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지로업무부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결제원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지정을 받는 등 신규서비스 도입에 기여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22일에는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금융 · 지급결제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결제연구소는 2012년 7월부터 지급결제 관련 제도 · 서비스 · 정보보호 · 인증 및 관련 특허 · 기술 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산학협동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산학협동연구는 전문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로서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금융결제원과 사원은행의 신규 사업 모델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5년까지 수행한 과제로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기반의 지급결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진출 강화에 따른 지급결제전문기관의 대응전략 연구", "핀테크, 플랫폼 등과 관련된 기술 요인의 분석 및 지급결제 중계기관의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2016년 8월부터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로드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업무

개요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후부터 사업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관의 역할과 지급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추진사업에 대한 이용촉진 및 올바른 사회 여론 조성 등을 위해 홍보업무를 실시하였다. 금융결제원의 홍보업무는 공적 기관의 성격상 상업광고의 형태보다는 사업 또는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왔다.

설립 초기에는 지로제도의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로업무 홍보가 대부분이었으며 홍보매체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및 각종 연수교재와 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88년 이후부터는 금융전산망 서비스 개시 등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홍보매체도 팸플릿, 이용안내서 등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로 확대되었고 별도의 홍보동영상도 제작하였다. 또한 VIS(시각표시물 표준화) 및 원가(院歌) 제정, 사보 발간 등을 통하여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메인 홈페이지(www.kftc.or.kr)를 개설하여 업무소개 및 정보제공 등 대외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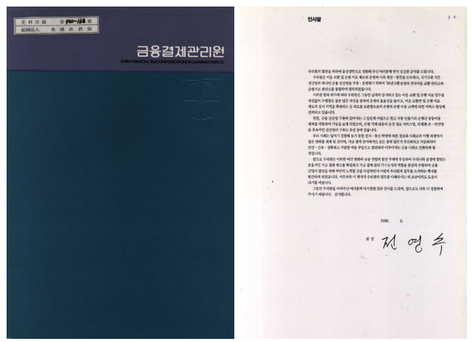
- 매체별 홍보활동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는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자체 제작한 팸플릿(소책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부터는 금융결제원 조직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업무소개서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매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국내 · 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의 각종 활동이 언론매체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의 대국민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는 1999년 3월 메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4차례(1999년 11월, 2000년 11월, 2002년 12월, 2006년 1월)의 개편을 통하여 업무소개 및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고객 민원사항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인 및 업무 부문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UI(User Interface)를 통일하기 위한 웹사이트 통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최첨단 디지털금융서비스 제공



최초의 금융결제원 업무소개서, 표지, 인사말(왼쪽부터)
1988. 8.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3년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후 2005년 개편된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아울러 CD로 배포하였고 2008년과 2014년에는 이를 새롭게 개편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기관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

- VIS 매뉴얼 제작

금융결제원은 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장표 및 디자인물 등에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CI 제정작업을 추진, 설립 첫해인 1986년 6월 관련 실무반을 편성하여 원훈, 영문명칭 등을 확정하였다. 이후 환경설계연구소에 작업을 의뢰하여 같은 해 12월 CI 제정작업이 완료되었다.

1992년 12월에는 기존 CI를 보완하고 CI 매뉴얼 책자를 발간, 홍보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였고, 2004년에는 CI 매뉴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 CI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어 2005년 3월에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금융결제원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 마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시각표시물 표준화(VIS) 매뉴얼」로 변경 추진하였다. VIS 매뉴얼은 심벌마크를 비롯하여 원내 각종 서식류, 장표류, 홍보물류 등을 용도와 기능에 따라 디자인하여 2006년부터 본격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기관 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다.

- 사보 발간

금융결제원은 원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대외 홍보 등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1992년 8월 사보 「금융결제원 소식」을 창간하였다. 창간호에는 금융결제원 주





「금융결제원 소식」 제89호(2014년)　「금융결제원 소식」 제96호(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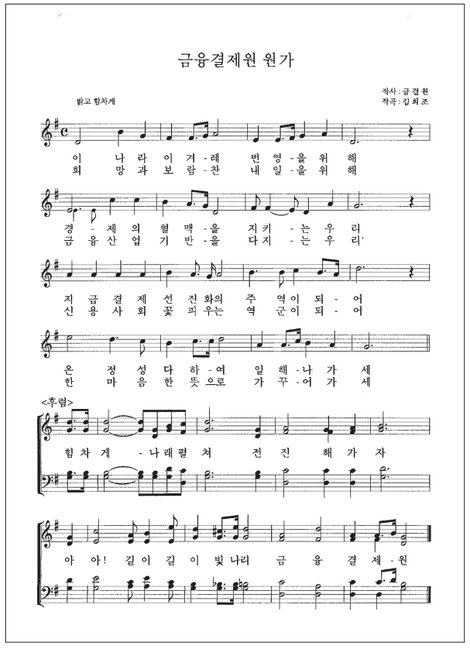
요업무 실시 및 개선 등을 소개하는 시사通, 임 · 직원을 소개하는 KFTC가족, 동호회 탐방, 직원들이 참여하는 문화산책, 해외여행기와 임 · 직원의 동정을 전하는 KFTC뉴스 등을 실었다.

사보는 210㎜(가로)×280㎜(세로) 규격에 52면의 계간지 형태로 매회 1,000부씩 연 4회 발간, 임 · 직원 및 유관기관, 퇴직 임 · 직원 등에 배포하였으며 2016년 4월 현재 통권 96호까지 발행하였다.

- 원가(院歌) 제정

금융결제원은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창달을 위하여 원가 제정을 추진, 1993년 2월 임 ·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원가 가사를 현상공모 하였다. 당시 현상공모에 접수된 총 11편 중 가작 1편, 장려상 2편을 채택, 이를 토대로 원가 가사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원가 가사는 사가제작 전문업체에 제작을 의뢰, 작곡가 김희조 씨의 작곡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금융결제원 원가는 2절 6행으로 제정되었고, 밝고 빠른 행진곡풍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금융결제원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원가는 1993년 창립기념식부터 공식행사에 사용되었으며 영상물로도 제작, 각종 원내 행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애사심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다.



금융결제원 원가
1993. 5. 27.

법률지원

개요

금융결제원은 전자결제방식의 확산, 대고객서비스의 다양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지급결제제도의 개발 등으로 업무가 복잡다양해지고 관련 법무업무 및 대내 · 외적인 법률리스크도 증가함에 따라 2008년 1월 29일 기획조정실 내에 법무반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2년 7월 31일에는 기존의 법무반을 법무팀으로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법무업무는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규정 및 규약, 제반 약관 심사, 소송 수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 업무

- 법률자문

법률자문 절차는 각 사업부서의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한 법률자문 의뢰의 경우 구두답변으로, 문서에 의한 법률자문 의뢰는 법률의견서를 통해 답변을 하고 있다. 법률의견서는 원칙적으로 법무팀 사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되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법률의견이 필요하거나 법률 질의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법무법인에 요청,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3개 대형 법무법인(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2개 중형 법무법인(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에이펙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계약서 검토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금융결제원이 직접적 의사를 표시한 법률행위이며, 계약서는 채권 · 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무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규정 및 규약, 약관 등 심사

금융결제원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업무처리 준칙인 각종 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참가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준칙인 규약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규정 및 규약, 기타 약관 및 협약서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법무팀은 내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여부, 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저촉 또는 중복 여부, 체계 및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 용어 및 표현방법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소송 수행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수행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팀은 금융결제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배경

2000년대 이르러 지속가능 경영전략이 산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국가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해왔다.

주요 활동

1사 1촌 자매결연활동

1사 1촌 자매결연활동은 도시기업과 농촌마을과의 상호 교류 및 지원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금융결제원은 2007년 농촌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충북 괴산군 소재 농촌 1개 마을(간곡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주민초청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교류,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해외 봉사활동

금융결제원은 국가간 송금 및 계좌이체서비스, 해외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 해외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관의 해외 이미지 제고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치원 교실 신축, 도색작업, 교육환경 개선활동을 비롯하여 미술, 음악, 컴퓨터 등 현지 교육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활동으로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봉사활동 실시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봉사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베트남
기 간	11. 4~11. 9 (5박6일)	10. 20~10. 25 (5박6일)	6. 22~6. 27 (5박6일)
참가인원	15명	14명	15명



최초 해외 봉사활동, 베트남 푹르엉 유치원
2013. 11. 4. ~ 9.

기타

금융결제원은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불우이웃을 후원하고 헌혈을 통한 생명 및 사랑나눔 행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결성된 자원봉사회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부식 지원, 사랑의 연탄배달, 한가위 선물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사 1촌 자매결연 활동내용

마 을 명	소 재	가구수	결연시기	특산물
간곡마을	충북 괴산	40가구 (100여 명)	2007년 11월	사과, 옥수수, 배추

구 분	활 동 내 용	연간횟수	참가인원/회		봉사내용
			직원	주민	
정 기	일 손 돕 기 (상 · 하반기)	2	30	6	- 배추 · 옥수수 파종, 거름주기, 배추수확 - 옥수수 · 사과 적순, 마을환경정리
	가 족 봉 사 / 체 험	1	80	6	- 사과 · 옥수수 수확
	농산물직거래	3	-	-	- 사과 · 옥수수 구매
비정기	주민초청행사	2008년, 2013년	3	50	- 금융결제원 방문 및 수도권 관광



헌혈을 통한 생명 및 사랑나눔
2012. 6. 20.



소방공제회 후원
2016. 3. 16.

성금기탁 현황

구 분	기탁처	비고
민간부문	경기밀알선교단 등 9개 기관	정기성금기탁
공공부문	대한소방공제회 등 2개 기관	
기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연말기탁

고객만족활동

고객센터 운영

고객센터의 변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는 2006년 5월 15일 33명의 상담직원으로 지로업무 등 12개 업무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각 부서별로 상담업무를 수행해오던 것을 이때부터 전담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인력을 통합, 확충하여 고객센터로 본격 출범한 것이다.

출범 당시 고객센터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는 업무기획실 고객지원팀에서, 2011년 1월부터는 고객지원실이 신설되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하여 2007년 5월 14일 시스템 및 상담센터를 분당센터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상담시간을 09:00~17:00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 고객센터 시스템 및 상담프로그램을 새롭게 교체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정화된 상담 환경을 제 공



고객센터 가동식, 이상헌 前 원장 축사
2006. 5. 15.

연도별 고객센터 상담실적

(단위 : 건, 명, 개)

연도별	상담 인입콜	상담 응대콜	O/B콜[주]	상담 인원	1인당 건수	상담 업무수
2007	378,627	356,764	9,346	33	52.8	12
2008	372,494	353,724	11,290	34	50.8	12
2009	444,783	415,870	22,206	26	73.4	12
2010	488,499	419,421	14,298	32	82.0	15
2011	661,953	542,765	20,388	32	82.4	15
2012	592,034	557,849	25,855	33	85.0	17
2013	634,307	548,474	38,932	34	90.1	18
2014	675,759	613,817	39,388	44	84.4	22
2015	804,511	749,513	60,969	48	94.3	22
증감률	212.5%	210.1%	652.4%	145.5%	-	183.3%

주)out bound

하였으며, 2014년 10월 25일에는 상담인원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분당센터 10층으로 고객센터를 이전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고객센터는 공인인증 등 22개 업무에 대하여 6개 조로 업무를 분장, 49명의 상담직원이 평일 09:00~17:00까지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요 상담 실적

고객센터가 분당센터로 이전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2007년과 비교할 때 2015년 상담 응대콜은 약 2.1배, 상담 인원은 1.4배, 상담 업무수는 1.8배 증가했으며, 상세 내역은 위 표와 같다.

고객만족활동

고객만족 추진체계

금융결제원은 고객 중심의 금융결제서비스의 제공이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고객만족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활동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모니터링과 외부고객 만족도를 조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 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고객만족리더 협의

연도별 VOC 처리실적

(단위 : 건)

연 도	처리완료	고객요구 유형							
		문의	제안	칭찬	불편사항 신고	정보공개	불법신고	규제개혁	모바일
2016	5,713	3,882	167	0	6	0	0	0	1,658
2015	14,521	9,873	381	17	209	1	0	0	4,040
2014	1,540	650	35	4	10	0	0	0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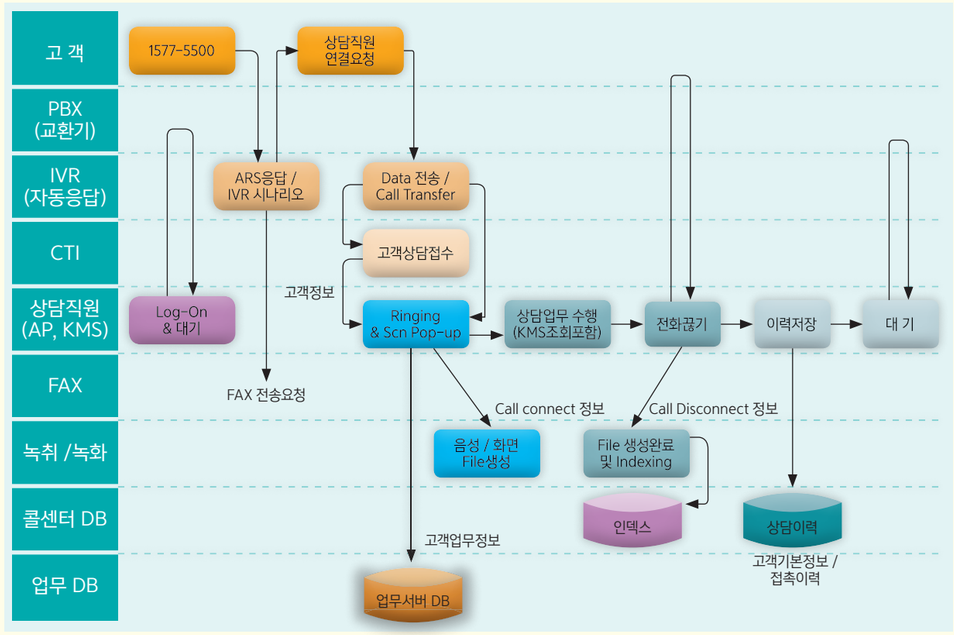
* 2016년은 6월말 기준

Focus

고객상담시스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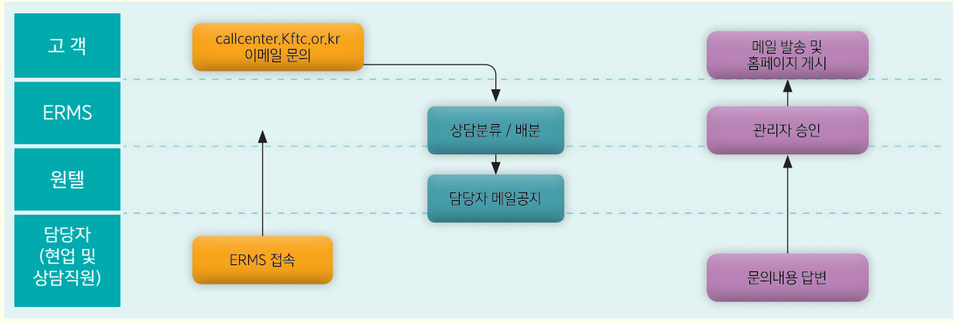
전화 상담

고객센터 전화상담 시스템은 고객이 금융결제원(1577-5500)에 전화를 거는 때부터 교환기, IVR, CTI, KMS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되어 고객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내용 전달을 위한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메일 상담

고객센터 이메일상담 시스템은 고객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callcenter.kftc.or.kr)에 문의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무분류 및 담당자에게 배정되어 고객 문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고객지원실 과장대우 | 조대성

사랑받아 마땅한 상담직원들



"야, 이 XXX야! 상담을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헤드셋을 통해 차마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육두문자가 들려온다. 고객센터 상담직원은 때론 너무 서러워 눈물을 글썽거린다. 저들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런 욕을 들어야하는 것일까?

2006년 5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가 오픈하고 난 후 상담직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객들의 온갖 폭언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사회에서는 상담업무 종사자들을 이른바 '감정노동자'라고 부른다.

2016년 7월 현재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는 인터넷지로, CMS, 공인인증 업무 등 24개 업무에 49명의 상담직원이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상담직원 1명당 10종류가 넘는 업무를 능숙하게 상담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3년 고객센터 상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면서 고객지원실 직원들과 상담직원들은 하나가 되었다. 상담업무가 종료된 저녁이나 주말에도 출근, 상담 시스템 테스트 작업에 임하면서도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소한 오류까지 족집게처럼 찾아내어 개발 담당자들을 자주 감탄하게 하였다. 현재의 상담 시스템이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역시 상담직원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배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13년부터는 속칭 "진상"이라 일컫는 특별한 고객들로부터 상담직원을 보호하고자 욕설, 성희롱 등으로 정상적 상담업무를 방해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통화거절 시스템을 새로이 개발, 적용하였다. 그러나 상담직원들의 이용률은 매우 적었다. 이유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특정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 염려스러워 상담직원들 스스로가 사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량고객들의 거친 모습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혹시라도 원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염려하고 배려하는 상담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면 감사하고 또 일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때로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년층 고객의 상담전화를 받고 오랜 시간을 소비해가며 원격지원으로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모습과 본인의 성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담이나 고객들에게도 늘 최선을 다해 상담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더욱 대견스럽다.

고객센터는 불특정 다수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질문과 전문적 상담은 물론 심지어 감내하기 힘든 온갖 시비조의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고객의 특성에 맞추어 정확한 내용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에 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야말로 고객만족, 고객섬김의 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고객만족 추진체계



회"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견) 기반 업무개선 프로세스를 정립, 운영하고 있다.

VOC통합관리

금융결제원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VOC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채널로 유입되는 VOC(고객의견)를 통합, 수집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피드백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원적으로 공유 · 관리하여 고객의견의 원활한 수렴을 도모하고 고객의 체감서비스도 한층 향상시켜가고 있다.

주요실적

VOC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첫해인 2014년도 고객의견 등록 및 처리건수는 1,540건이었으며, 이듬해에는 1만 4,520건, 2016년에는 6월 현재 5,54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관리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중요시설로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재난사고발생 시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고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관리 조직의 변천

금융결제원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조직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 이후 수차례 개편되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면서 업무지원부 소속 안전관리팀을 안전관리실로 별도 부서화하여 비상계획관을 실장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무부도 1993년 7월 1일 금융전산망 운영관리 및 은행상호 간 지급결제기능 유지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 금융결제원을 보안산하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 본관의 경우 2002년 12월 23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당센터는 2006년 12월 26일 국가보안시설 "다"급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6월 27일 "나"급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에는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되었다.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보안업무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금융결제원의 경영기밀, 중요시설 및 인원 등을 보호,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 ·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산업무의 계속적인 증가와 중요성으로 인해 전산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일반보안과 전산보안을 분리하여 한층 강화된 보안체계를 확보하였으며, 2008년 6월 5일부터는 규정 체계 효율화 방안으로 「경비규정」, 「중요열쇠 및 금고구역관리요령」 등을 통합하여 「안전관리업무 규정」 및 동 시행세칙으로 운영해 오다 2016년 7월에 「보안업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분리하였다.



을지연습 실시 장면
2012. 8. 22.

금융결제원은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의식 함양과 자율적 보안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본부 및 사무소의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는 기존의 "보안진단의 날"과 "정보보안 진단의 날"을 통합,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매월 세 번째 수요일) 지정, 운용하여 인원과 문서, 전산 및 시설관리에 대한 보안진단, 보안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점검이 필요하거나 취약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보안심사분석, 보안업무관련 규정의 제 · 개정 및 폐지, 보안사고의 처리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한편 비상계획업무는 전시나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국가시책에 부응, 수행하는 업무로서 자체 비상사태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충무실시계획"을 수립, 대비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국가비상계획(충무계획) 훈련의 일환으로 을지연습에 참가해오고 있다.

2005년 1월 1일에는 금융결제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보안중점관리대상업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30일 종전의 자체 충무계획에 소산 및 후방이동계획 등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고, 2007년 2월 9일 분당센터 준공으로 소산시설 및 방호계획 등을 보완한 "금융결제원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경비업무

금융결제원은 각종 시설의 보호와 재해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관 및 분당센터의 경비계획과 경계근무 강화계획 등을 수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 인력위주에서 점차 첨단시스템 위주의 경비체제로 바뀌어왔다.

2011년 10월에 이르러서는 "보안업무 강화방안 수립"에 따라 스피드게이트 및 차량통제시스템을, 2012년 11월에는 X-RAY 화물검색기를 설치하여 중요장비 및 자료, 위험물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방범설비(CCTV)도 최신형으로 교체(분당센터는 2014년 9월 교체), 감시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카메라, 모니터 증설 및 성능 향상으로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였다.

또한 경비구역을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방어지대로 구분, 설정하는 한편 중요시설 및 구역에는 초소와 과학화장비(CCTV카메라, 초음파탐지기, 카드리더 장치 등)를 설치, 이를 경비상황실과 연동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금융결제원의 직장 예비군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자체 시설방위와 인명 보호를 목적으로 본관의 경우 1983년 9월 19일 금융결제원 전신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시절 전국은행협회 예비군중대로, 분당센터는 2007년 3월 19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분대로 창설되었다.

예비군 조직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금융결제원의 직장예비군 규모가 편성 기준인 중대 규모 이하임에도 「통합방위법」에 의거, 직장예비군을 계속하여 편성 ·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직장예비군 운영과 함께 유사시 금융결제원의 시설 및 인명보호, 신속한 재난복구 등을 위해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직장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본관은 1988년 2월 1일, 분당은 2007년 3월 3일 발족하였다.

민방위대 조직은 원장 및 안전관리실장을 민방위대장으로 하고 지휘본부 이하 5개 분대(상황전파 · 인명구조 · 대피통제 · 소화 · 화생방분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속 대원들은 기본교육, 사이버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감사활동

감사의 기능

감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 및 지침 등 제반 규율사항의 준수 여부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검사 · 감독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 사후적 내부통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감사업무는 최근에 단순 통제기능 중심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전원적인 시각에서 조직의 경영 · 관리 · 내부통제제도 및 업무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제도 및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건전한 경영기반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제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과 가용자원의 운용 및 배분, 추진절차의 적정성 및 이행상황 점검, 기타 장애 요소 등을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발굴 · 제시함으로써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원활한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여 조직 내부의 미시적인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부적정한 요소를 발견, 개선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소를 감소시키고 안정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금융결제원의 지속가능경영을 밑받침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제도적 기반

금융결제원 정관은 감사의 선임과 임기,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사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규범체계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감사규정」과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감사규정 시행세칙」이 있다.
「감사규정」은 1984년 5월 9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서 제정된 이후 1986년 5월 23일 1차 개정, 1989년 2월 13일 2차 개정을 통하여 감사방법, 감사보조기관 설치, 이의신청, 긴급보고, 외부감사 통할 등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이후 2012년 2월 28일 5차 개정 등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규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감사규정 시행세칙」은 1986년 11월 1일 최초 제정되었으나 형식 및 체계 등을 전면 보완하여 2008년 6월 5일 다시 제정되었다. 이후 일상감사 대상 확대, 조치기준 등을 명시하는 등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사의 종류와 역할

일반감사

일반감사의 경우 매년 수립하는 자체 감사계획에 의거, 사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업무감사와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결산감사가 있다.
일반감사의 경우 본부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본부감사와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무소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부서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가급적 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사(監事)는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징계, 변상,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감사는 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산감사 시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내역 및 관련 장부에 대하여 정관 및 「회계규정」 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예금통장 잔액 및 유가증권 실물 등과 장부 기장내역이 일치하는지, 금고 보관자료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서면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감사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장이 별도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시 감사범위와 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198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총 9회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및 2016년에 대내 · 외적으로 이슈가 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각 1회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일정 서류를 대상으로 최종결재자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사(監事)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조직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과정인 일상감사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으로서 중요 경영활동이나 경비 집행 이전에 부적정한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14년 「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예산, 금전, 채권, 사고처리 관련 지침, 채용계획, 연간 업무운영계획 등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내부통제 관점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감사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내 · 외부 감사 실시 현황

구 분	내부감사			외부감사*	
	본부	특별	사무소	정기	특정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
2015년	○		○		
2016년	○	○	○		

*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 주관, 2010년부터 금융위원회 주관

외부감사의 수감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은 제반 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5회의 주무관청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결제원의 주무관청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서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결제원은 설립 초기인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당시 재무부의 위임을 받은 대행감사기관인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았으며,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재무부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로부터 격년 주기로 직접 감사를 받았다.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주무관청은 금융결제원의 사업 운영, 예산 및 회계처리, 급여 및 복지, 전산시스템 및 중요시설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왔으며, 최근에는 급여 및 복지제도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외부인의 시각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업무 변화방향

최근 기업의 분식회계나 자금담당 직원의 비리 및 횡령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조직 전반에 큰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부정적 이슈는 쉽게 확대 재생산 전파되어 예전 같으면 단순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들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정 위반사항 적발 위주의 사후감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방

감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대내 · 외적인 영향력이 큰 자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대고객 접점 업무, 정보보호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예방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면감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감사를 강화하는 등 감사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보다 체계화, 고도화된 감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권익 및 복지증진 활동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 그 모태가 되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노동조합이 1984년 5월 창립되었고, 1986년 6월 금융결제관리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명칭을 "금융결제관리원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1986년 10월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대변조직으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88년에는 조합원 자격을 본부 직원에서 본 · 지부 직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분회조직과 대의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체계화하였다. 1993년에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한 심도 있는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이 속해 있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2000년 3월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재출범함에 따라 금융결제원 노동조합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이하 금융결제원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2001년 금융결제원지부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 범위를 3급 대리 이하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금융결제원 종업원으로 정함으로써 조직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을 통해 2002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임금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금융결제원지부도 이와 관련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써왔다.
2006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조직, 인사, 노동조합 등 각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1996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직원의식구조의 변화」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2007년에는 금융결제원 신임 원장 공모에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이 응모하여 자율경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지부조직 축소에 따른 희망퇴직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확보하였으며, 산별교섭을 통해 2009년 삭감되었던 신입직원 초임을 정상화하였다.
또한 2014년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도입, 2015년 육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 실시 및 "PC-OFF 제도" 시행 합의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앞장서 왔다.

노동조합의 조직

금융결제원 노동조합 조직은 1984년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당시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와 집행위원으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2명), 회계감사, 5개 부서 및 3개 분회 13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조직변경 및 지속적인 사업 확대 등으로 2016년 6월말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정책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회계감사, 19개 분회 510명의 조합원으로 성장 · 발전하였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도 1986년부터 조합전임 2명과 직원 2명에서 1990년 4월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 여성부장, 직원 1명이 되었다. 1998년 11월 여성부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교체하고 2003년 1월에는 총무부장, 정책기획실장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2004년 1월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을 여성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현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책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이 상임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대 노동조합 위원장 명단

	성 명	재임기간
1 대	이무홍	1984. 5 . 10 ~ 1985. 5 . 31
2 대	하용록	1985. 6 . 1 ~ 1986. 6 . 1
3 대	하용록	1986. 6 . 2 ~ 1986. 12. 31
	이영진	1986. 6 . 2 ~ 1986. 12. 31
4 대	김은규	1987. 1 . 1 ~ 1988. 12. 31
5 대	이영진	1989. 1 . 1 ~ 1990. 8 . 31
6 대	이창주	1990. 9 . 1 ~ 1992. 12. 31
7 대	김일중	1993. 1 . 1 ~ 1994. 12. 31
8 대	김일중	1995. 1 . 1 ~ 1997. 12. 31
9 대	주재현	1998. 1 . 1 ~ 2000. 12. 31
10대	주재현	2001. 1 . 1 ~ 2003. 12. 31
11대	나상은	2004. 1 . 1 ~ 2006. 12. 31
12대	오일석	2007. 1 . 1 ~ 2009. 12. 31
13대	오일석	2010. 1 . 1 ~ 2012. 12. 31
14대	정윤성	2013. 1 . 1 ~ 2016. 1 . 11
15대	최재영	2016. 1 . 12 ~ 현 재

은행지로관리소		
1대	노재관	1978. 12. 8 ~ 1980. 12. 19
2대	이영진	1980. 12. 20 ~ 1983. 12. 31
3대	노충호	1984. 1 . 1 ~ 1985. 12. 31
4대	이영진	1986. 1 . 1 ~ 1986. 6 . 1

노동조합의 활동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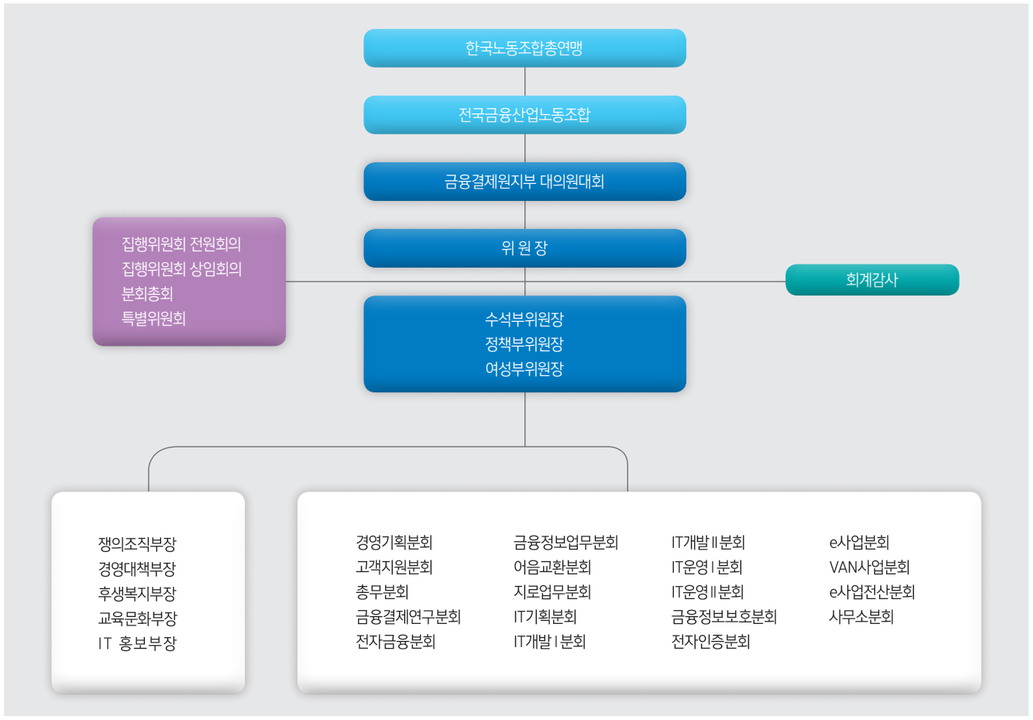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특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행해지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1986년 10월 6일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그동안 거의 해마다 이를 갱신 체결해왔다.



임단협 등 타결 이상헌 前 원장, 나상은 前 노조위원장 (왼쪽부터)
2006. 12. 19.

2000년 산별체제 전환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차원의 「통일단체협약」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4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제정, 이후 매년 갱신 체결해 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매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과 발전 도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 조직도



– 교육홍보

노동조합의 교육홍보활동은 조합원의 의식을 제고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활동으로서 1985년부터 신입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소개 및 조합활동 사항, 노동조합 동지애 인식 및 관련 법규 등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 신입직원 연수 시에는 노동조합 소개시간이 별도 배정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초급관리자 연수 시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조합홍보물 「노조통신」을 발행하여 조합의 활동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호소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1996년 3월부터는 발간물을 「조합소식」과 「노설」로 이원화하여 교육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보고,
2007년(제24년차), 2009년(제26년차), 2015년(제32년차) (왼쪽부터)

– 기타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 친선과 교류를 도모할 목적으로 각종 행사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1993년 12월부터 매년 노동조합 주최 문화행사를 개최해왔으며, 2004년부터는 이를 보다 내실화하여 조합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족여름캠프 및 가족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 조합원 및 직원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04년 10월부터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여 조합원 및 직원자녀의 독서교육 및 지식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문화행사, 2007년 강원도 홍천

교양 및 취미그룹 활동

금융결제원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교양 및 취미 그룹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다.

건생모, 낚시회, 농구사랑회, 바둑회, 볼링회, 사진회, 산악회, 서예반, 설우회, 소리길, 야구회, 원구회, 자원봉사, 초우회, 칸타빌레, 테니스회, 한결회 및 KFTC 밴드 등 18개 그룹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정의 예산지원은 물론 전문강사의 초빙, 각종 대회참가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동우회

금융결제원 퇴직자 모임인 동우회는 금융결제원 창립 10주년인 1996년 5월 31일 당시 퇴직자 50여명이 금융결제원 1층 회의실에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 김재윤 초대원장과 최형 전 감사를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다음 달인 6월 2일 정식 출범하였다.

금융결제원에서 4급 이상 책임자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동우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직 임원 및 1급 직원 또는 2급 부서장은 준회원으로서 퇴직 시 정회원이 된다.

출범초기에는 정회원 70명과 준회원 25명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5월 현재 정회원 127명, 준회원 31명에 이르고 있다.

동우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있는 통신문과 동우회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kftcob)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원동정 및 동우회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매년 등산 및 역사기행 등 문화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동우회 사무실은 금융결제원 생활관(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내에 위치, 동우회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들 간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동우회 창립식
1996. 5. 31.

교양 및 취미그룹 활동 모습



야구회



바둑회



테니스회



사진회



건생모



농구사랑회



원구회



KFTC밴드

교양부서 현황

교양부서명	회원수	활동내역
건 생 모	49명	1994년 11월 24일 심신단련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출범한 건달회(건강달리기회)가 2002년 12월 4일 헬스회와 통합하여 건생모(건강을 생각하는 모임)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달리기 등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있다.
낚 시 회	32명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1986년 9월 29일 결성되었고 매년 시조회 및 납회 등 정기적인 낚시모임으로 회원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구사랑회	46명	2002년 11월 11일에 결성되었고 농구경기를 통하여 지구력과 체력을 기르며 매월 실내체육관에서 팀워크에 필요한 전술훈련 및 외부기관과의 친선경기를 하고 있다.
바 둑 회	31명	1986년 11월 18일 결성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인 원내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프로기사를 초빙하여 지도대국이나 강의를 듣는 등 바둑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볼 링 회	50명	1991년 5월 22일 볼링동호인이 주축이 되어 출범하였으며 정기적인 볼링 모임으로 회원들의 체력단련과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사 진 회	44명	1993년 3월 31일 영상미학을 추구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출범하였으며 전문강사 초빙 강좌 및 촬영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산 악 회	104명	1986년 9월 17일 원내 등산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정기산행 및 기획산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4월에 백두산 등정을 실시하였다.
서 예 반	49명	서도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2011년 3월 결성되었으며 한자서예강습, 체본쓰기, 각종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해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설 우 회	103명	1994년 11월 15일 겨울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키동호인 모임으로 출범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스키모임을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소 리 길	95명	2000년 4월 12일 결성되었으며 역사현장 답사, 사물놀이, 외부 전문가의 전통문화 강습 등을 통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야 구 회	57명	2003년 5월 13일에 결성되었으며 구리 인창고등학교 야구장 및 한양대학교 야구장 등에서 정기적인 야구경기 모임 외에 외부기관과의 친선경기 등을 통해 교류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원 구 회	131명	1987년 7월 25일 축구 동호인으로 결성되었으며 대내 경기뿐만 아니라 대외 친선 경기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교류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회	347명	2007년 11월 1일에 결성되었으며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마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초 우 회	59명	2012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되었으며 스트레스의 해소와 활기찬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호회로 발전하고 있다.
칸 타 빌 레	41명	클래식 음악의 연주 및 공연관람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결성되었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한 원내 악기레슨(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등), 외부 공연관람(음악회, 뮤지컬 등) 및 원내 강당 정기연주회 등의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테 니 스 회	65명	1986년 9월 7일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결성되었으며 매월 월례 테니스대회 및 춘 · 추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 결 회	127명	1987년 1월 7일 은행지로관리소의 여직원 모임인 은지회를 모태로 출범하였으며 각종 교양강좌 개설(예절교육, 지점토, 꽃꽂이, 차밍스쿨, 수지침 등),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KFTC밴드	39명	2004년 7월 15일 결성되었으며 정기 합주연습 및 정기공연, 친목도모 활동과 더불어 원내 각종 행사에서도 공연하고 있다.





창립 30주년
2016.

기념 체육대회
5. 28






금융결제원 창립30주년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 Jump Up Again !










금융결제원 창립30주년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
Jump Up Again !











사회공헌 활동

금융결제원은 국가 ·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사 1촌 자매결연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7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평성교회
평성교회
장애인바다체험

Ⅳ

제4편 금융결제원의 업무

제1장 어음교환업무
제2장 지로업무
제3장 전자금융업무
제4장 금융정보업무
제5장 IT업무
제6장 금융정보보호 및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대책
제7장 e사업

01

어음교환업무

1. 어음교환
2. 전자어음 등록 및 관리
3. B2B업무
4. 부도관리

「어음 · 수표법」상 어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으로만 발행되고,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 · 운영되고 있다.

어음교환

개요

「어음 · 수표법」상 어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의 채무는 추심채무로서 어음소지인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발행은행에 직접 실물을 추심(제시)하거나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실물을 직접 제시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는 「어음 · 수표법」의 개정으로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수납은행이 그 어음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형태로 작성한 후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지급제시하는 방식도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어음교환 업무에는 크게 어음 · 수표 하단의 텍스트정보만을 교환하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과 어음 · 수표의 이미지정보도 동시에 교환하는 어음 · 수표 정보교환으로 나뉘어 있다. 참가은행은 어음 · 수표를 정보화하여 교환소를 통하여 지급제시하면 된다. 다만, 교환소에 위탁하여 제시하는 은행(의뢰은행)은 자기앞수표와 어음으로 구분하여 교환소에 제출하면 되고, 교환소는 의뢰은행의 제시정보를 작성하여 지급은행별로 분류한 후 지급은행에 전송하게 된다. 현재 어음교환 참가은행 중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어음교환소에 정보작성을 위탁하여 교환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945년 조흥은행 안동지점에서 발행한 금액 70만원 약속수형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1945년 조흥은행 안동지점에서 발행한 금액 25만원 약속수형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어음교환과 차액결제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이란 수표 하단에 MICR이 인자(印字)된 텍스트정보(수표번호, 금액, 발행은행 등)를 교환소 전산망을 통해 교환 · 결제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2000년 5월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였고 2002년 9월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교환사무가 대폭 경감됨은 물론 수표의 분실 · 도난 등에 따른 위험도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우편환증서를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하였다.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의 전국 확대실시로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입금 다음 날 자금화가 가능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가하였다. 자기앞수표의 자금화 시각은 입금 다음날 14:20[은행 영업시간 단축(2009년 4월 16:30→16:00) 이전에는 14:50]이었으나 2012년 6월 12:20으로 2시간 단축하여 고객의 수표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2004년 8월에는 은행고객이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자금화하려면 은행 간 차액결제가 종료되는 그 다음 날 14:50(현재는 12:20)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교환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은행 간에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은행 고객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을 시행하였다.

약속어음(종이어음) 대체수단 주요 사항 비교

구분	전자채권	전자어음	기업구매자금어음
타행간 사용		가능	
발행주체	구매기업	좌동	판매기업
발행방법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사용)	좌동	인터넷뱅킹 또는 서면 발행 후 은행 접수
할인(대출) 시 이자비용 부담	판매기업	좌동	구매기업
세제 및 금리혜택	저리융자(판매기업)	-	저리융자(구매기업)
배 서	불가능	가능	불가능
만 기	180일 이내	1년이내	38일 이내
이용수수료	없음(은행자율 결정)	있음	없음(은행자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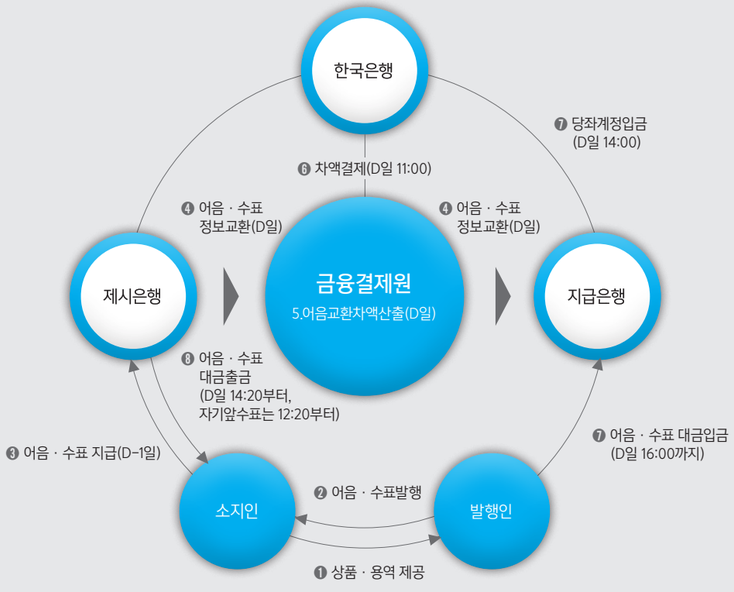
어음 · 수표 정보교환

어음 · 수표 정보교환이란 약속어음 · 당좌수표 · 가계수표 및 콜자금결제통지서 등 제증서의 하단에 MICR이 인자(印字)된 텍스트정보[어음(수표)번호, 금액, 발행은행코드 등] 외에 어음실물의 이미지정보를 어음교환소 전산망을 통해 교환 ·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 · 수표법」상 전자정보에 의한 지급제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5월 이후 어음 · 수표 이미지정보교환이 추진되어 2009년 10월 서울지역에서, 2010년 11월에는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전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중일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관어음은 영업시간 중에, 당일 수납어음(일반어음)은 영업종료 후에 각각 나누어 교환소에 이미지정보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을 단일 결제권역으로 일원화하여 기존 격지 간 추심 소요기간을 3~5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2011년 5월에는 서울을 제외한 50개 지방어음교환소의 일괄 지정취소(폐쇄)로 대규모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감내해야 했다.

「어음교환업무규약」은 2010년 11월 어음 · 수표 정보교환 전국 확대실시와 동시에 전문 8장 29조로, 동 규약 시행세칙은 전문 8편 121조로 전면 개정되었다. 규약 및 시행세칙의 실물교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되고 「어음정보교환업무 시행세칙」과 「어음정보관리 시행세칙」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규약과 관련된 「재해발생 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과 「은행경영상 긴급상황발생 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도 정보교환에 맞게 개정되었다.

어음교환 처리 절차



차액결제와 자금조정

어음교환의 결과로 발생한 참가은행의 교환차액(총제시금액에서 총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중앙은행에 있는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정(우체국은 국고예탁금계정, 특별참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은 일반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어음교환소가 중앙은행에 당좌계좌를 보유하여 교환결과 지급할 금액이 있는 은행이 그 금액만큼을 동 계좌에 입금하면 어음교환소에서는 입금된 전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할 금액이 있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교환차액을 결제하였다. 그 후 1976년 5월에는 중앙은행에 있는 어음교환소계정을 없애고 직접 참가은행 간에 대차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97년 12월에는 지방어음교환소의 차액결제자료 송부방법도 중앙은행 지점 앞 직접제출에서 중앙은행 본점을 경유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산화하였고, 2007년 3월부터는 차액결제 모(母)교환소 결제방법이 폐지되었으며, 2010년 11월 정보교환의 전국 시행에 따라 서울어음교환소가 모든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일괄 작성하여 중앙은행에 전송하고 있다.

자금조정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과 수납은행과의 수표금액 수수(차액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1983년 1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자기앞수표 이외에도 자금조정이 필요한 비거주자용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콜자금결제통지서, 현송금영수증, 부도(오류)어음대금영수증 등이 자금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초기에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수납은행에게 수표수납금액과 동일한 적수(積數)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그 다음 날에 회수하는 자금적수보전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결제규모가 커질수록 한 은행의 결제불이행 시 여타 참가은행으로 결제리스크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2004년 7월에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전전영업일의 익일물 무담보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 타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정보교환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한 국내용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외국환은행 간 교환하고, 그 대금을 2영업일에 정보교환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이라 한다.

내국신용장 업무는 1970년대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따라 실시되었고 내국신용장을 교환하기 위하여 서울 등 7개 지역에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1981년 11월에는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 5월에는 환어음 자금청구방식을 전산화(추심점포에서 어음금 청구내역을 단말 입력하여 개설점포 앞 파일전송)하여 참가은행의 교환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2003년 8월에는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국신용

장 개설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5년 5월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을 구축,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해서도 대금결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1년 5월에 지방어음교환소가 폐쇄되면서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실도 부산, 대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폐쇄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내국신용장 환어음 결제방식이 완전히 폐지되고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정보교환 결제방식으로 일원화되어 부산 등 나머지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실도 모두 폐쇄되었다.

온누리상품권 정보교환

온누리상품권 정보교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 · 관리하고 있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국에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금융결제원에 위탁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0년 7월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교환가능한 제증서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정보교환업무는 어음교환업무의 일부로 어음교환차액결제에 포함하여 결제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6개 은행이 참가하였으나 현재는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주체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구 시장경영진흥원)이고 참가은행은 판매와 수납을 담당한다.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5천원권과 1만원권이 판매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온누리전자상품권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품권(5만원, 10만원권)은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에 구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의 사용 편의성 및 홍보강화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말 기준 연간 발행금액이 약 9,000억원(약 1억건)에 이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유지보수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어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Knote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용질서의 심각한 훼손과 어음제도의 부작용 등을 인식한 정부는 2000년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어음 발행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어음교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참가은행은 어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어음정보관리 요령」을 제정, 2000년 10월부터 운영하였다. 그 후 이 요령은 2009년 2월 「어음정보관리시행세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통합되었다.
어음정보관리시스템(www.knote.kr)은 참가은행의 어음정보 등록 및 조회 등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과 어음발행인과 소지인이 어음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06년 12월 정부의 기업상생협력회의 어음제도 개선 검토지시에 따라 2008년 1월 전국은행연합회는 어음제도 개선방안(당좌개설요건 및 발행인 신용조사 강화 등)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에 어음발행정보 등록제 도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09년 2월부터 어음발행정보 등록 ·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는 어음의 사고신고 조회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전자어음 등록 및 관리

의의

UNOTE UBIQUITOUS NOTE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 약속어음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 ·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작성,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간 대금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지급수단이다. 이와 같은 전자어음 도입으로 어음발행 남발,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거나 보완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의 유통 ·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도입 및 발전

전자어음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전자어음은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발행 · 유통되는 어음으로 동 법률에 의하여 약속어음으로만 발행되며,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 · 운영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어음의 발행 · 유통 · 지급제시 등 전자어음 거래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05년 1월에 관리기관으로 지정(법무부)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05년 2월부터 전자어음 시행에 필요한 업무요건, 전산개발요건 등을 정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 「전자어음업무규약」을 제정하였다. 2005년 9월에는 8개 은행이 전자어음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16년 6월 현재 한국은행을 제외한 17개 전 은행이 전자어음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면서 전자

전자어음 도입 효과



어음 이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어음이 기업 간 상거래에서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자어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어음은 금액 · 만기일 등을 공란으로 하는 백지어음으로는 발행할 수 없으며, 어음요건을 모두 기재한 완전어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둘째, 금융기관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지를 금융기관으로 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셋째, 어음거래 및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만기일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8년 5월부터는 6개월로 단축되고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연쇄부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배서는 20회로 제한되며 다섯째, 지급수단으로서의 어음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 어음을 받은 수취인은 최대 4회에 한하여 어음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다. 여섯째,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의 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어음 관련 주요 업무내용은 이용자 등록, 발행, 배서, 결제, 부도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용자 등록업무는 전자어음 이용자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고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발행인 또는 수취인으로 등록하는 업무이다.

발행업무는 관리기관에 발행인으로 등록된 이용자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어음 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업무이다. 배서업무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 배서할 어음을 선택한 후 배서에 필요한 항목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업무이다.

다음으로 결제업무는 만기가 도래한 전자어음을 결제하는 업무로,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서 만기일에 자동으로 발행인 거래은행 앞으로 지급제시 되며,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처리 한 경우 결제금액은 소지인의 수취계좌로 입금된다.

그리고 부도제재업무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부도제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 등 제재를 하는 업무이다. 부도제재는 기존 실물어음과 동일한 원칙으로 운영되며, 전자어음 부도회차와 실물어음 부도회차를 합산하여 관리한다. 부도제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서울어음교환소에 위임하고 있다.

실물어음(약속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

구 분	실물어음	전자어음
존재형태	서면	전자문서
종 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발행등록	없음(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발행·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배서제한	무제한	총 배서회수 20회
만기제한	무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
일부지급	「어음법」상 허용(은행약관에서는 불허)	금지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장관 지정)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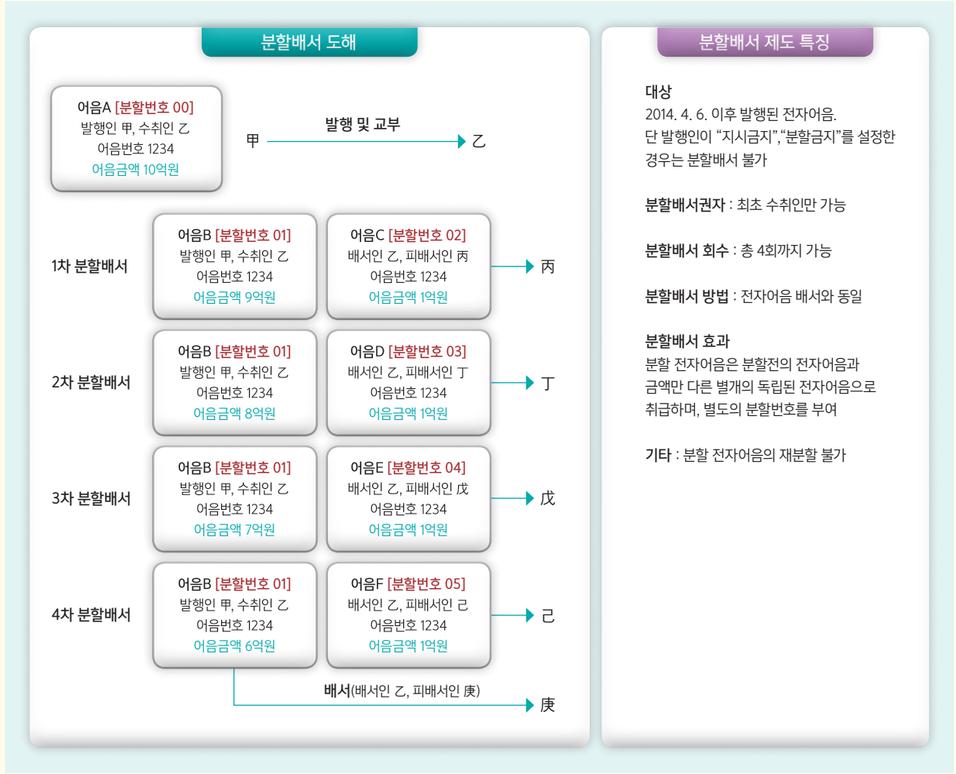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

개념

「전자어음법」상 분할배서 제도는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한 자(최초 수취인)가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배서양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취지는 최초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결제 및 어음할인 등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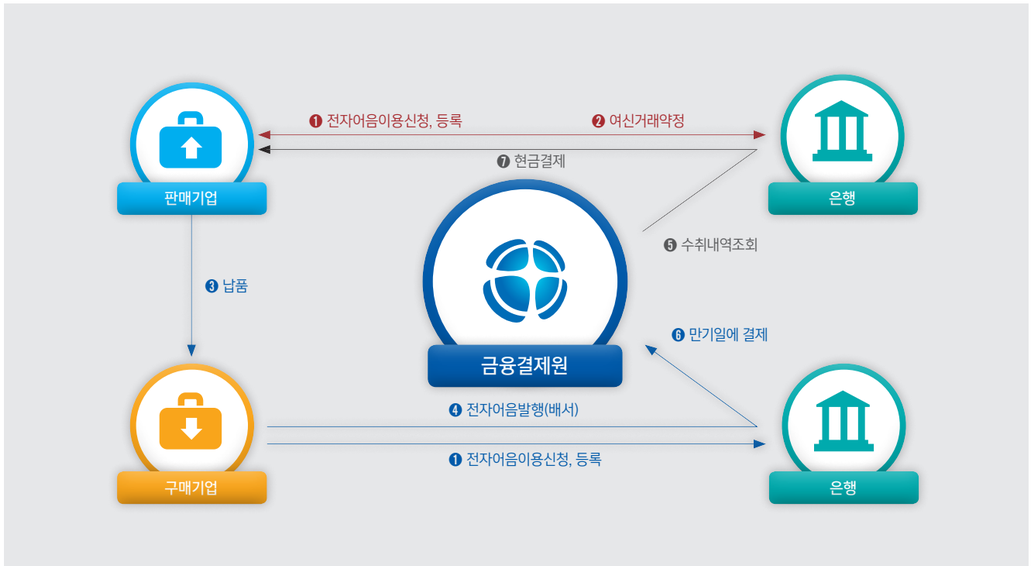
2009년 전자어음 의무발행제도 시행 이후 전자어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법」 제7조의 2항을 신설(2014. 4. 6. 시행)하여 분할배서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였다.

분할배서 도해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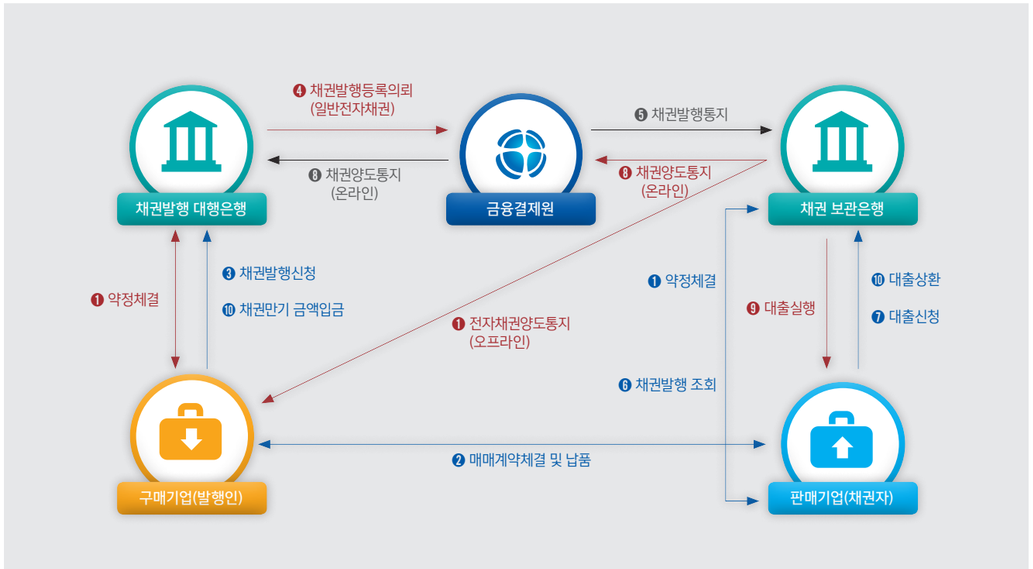


* 그림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2014. 4. 4.)

전자어음 업무흐름



전자채권 업무흐름



B2B업무

전자채권 등록 및 관리

의의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상거래대금 결제를 위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여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에 등록한 채권이다. 전자채권의 특징은 만기가 180일 이내로 짧고,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이하 보관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만기일에 관리기관이 자동 지급제시 한다는 점이다.
전자채권의 주요 업무로는 발행, 양도통지, 결제 및 미결제 제재업무가 있다.
먼저 발행업무는 구매기업의 발행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하 발행은행)이 발행내역을 관리기관 원장에 등록하고 판매기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도통지업무는 판매기업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자채권 양도 사실을 구매기업에 통지하는 것이다.
결제업무는 전자채권 만기일에 관리기관이 발행은행에 지급제시하고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입금하여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결제 제재업무는 발행은행이 만기일에 미결제 전자채권을 관리기관에 통지하면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기업을 거래정지처분하고 전체 은행에 통지하여 해당 기업과의 전자채권 거래를 즉시 해지하고 2년간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도입 및 발전

2000년 9월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업무를 2001년도 금융정보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01년 2월 금융결제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위탁하였다. 이에 2002년 2월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규약 및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같은 해 3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7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같은 해 3월 금융위원회에 전자채권의 발행, 양도 및 결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6월 양도통지를 전자문서 통지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

의의

기업구매자금어음(이하 구매자금어음)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말한다. 이 제도의 특징은 구매자금어음을 판매기업이 환어음방식으로 발행한다는 점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는 점 그리고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39일 이내로 매우 짧고 결제자금을 구매기업이 대출받으므로 판매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다.
주요 업무로는 어음정보교환업무와 어음금청구업무가 있다.
어음정보교환업무는 판매기업이 추심의뢰한 구매자금어음과 세금계산서를 거래은행이 정보화하여 은행 간 교환을 통해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제시하는 업무이다. 어음금청구업무는 판매기업 거래은행이 구매기업에서 인수한 동 어음에 대하여 어음 정보교환

일로부터 제7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금을 청구하고 구매기업이 익영업일에 결제하는 업무이다.

도입 및 발전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어음남발에 따른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등의 이유로 어음결제 축소 및 어음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2월 재정경제부 주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어음 기반의 "구매자 금융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 어음교환제도로는 수용하기 곤란하였기에 환어음교환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같은 해 8월 가동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기존의 환어음 이외에 전자방식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해서도 기업구매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결제기일 이전에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정보교환에 회부된 구매자금어음에 대한 지급인의 인수거절 및 부도통보를 전산전문 송수신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2010년 11월 판매기업 거래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약정 정보를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중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관리

의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하 외매채)은 구매기업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가장 활성화된 어음대체수단이다. 외매채는 전자채권과 거의 동일하나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동일한 은행과 거래해야 한다는 점, 양도통지를 우편통지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외매채의 주요 업무로는 발행, 결제 및 미결제 제재업무가 있다.

먼저 발행업무는 구매기업이 외매채를 발행하면 은행은 발행내역을 은행 원장에 등록한 후 판매기업에 통지하고 금융결제원에 등록하는 업무이다. 결제업무는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이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한 후 금융결제원에 결제내역을 통보하는 업무이다. 미결제 제재업무는 만기일에 외매채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결제한 발행기업을 거래정지처분하는 것이다.

도입 및 발전

외매채는 2001년 2월 개별은행의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은행별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미결제 발행기업에 대한 제재가 없었으므로 판매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09년 12월 이용약정 및 발행내역, 결제 및 미결제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하고, 미결제 발행기업에 대한 신규 발행 금지 및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 등의 제재를 은행 자율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발행기업에 대한 미약한 규제로 인하여 판매기업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2015년 6월 거래정지처분제도를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매채 발행한도, 발행, 미결제 및 거래정지처분 정보를 동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기 타

네트워크론 정보중계

네트워크론은 판매기업이 별도의 담보 없이 조달청과의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아 계약이행 소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론 정보중계는 2009년 3월 조달청, 참가은행 및 금융결제원 3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같은 해 7월부터 실시하였다.

전자지급보증서 발급 및 조회

전자지급보증서는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지급보증서를 은행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전자지급보증서 발행내용을 출력 및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종이문서로 발급된 지급보증서의 위조사고가 일부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전자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2013년 1월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여 같은 해 10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4년 7월 조달청의 비축물자 외상방출업무에 대한 전자지급보증업무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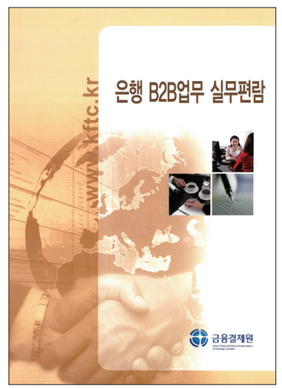
B2B 상거래정보 관리

B2B 상거래정보 관리업무는 B2B 거래기업의 부정대출 방지를 위하여 B2B거래 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정보 및 대출정보(이하 상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은행이 B2B거래 대출 취급 시 조회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2011년 7월 감사원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감사 시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적격 대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B2B거래 대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은행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한 T/F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및 중복대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 12월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정보제공 거부로 보류되었다.

2013년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에 국세청의 의견을 보고하는 한편 은행에는 2014년까지 은행별로 세금계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2015년 금융결제원에 상거래정보를 집중하여 은행 간 공유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년 12월 금융결제원은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실시하였다.

한편 2015년 9월 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 구매자금 대출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주관하는 제도개선 T/F 회의를 거쳐 2016년 4월 부패척결추진단이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은행 B2B업무 실무편람」
2011. 12.

부도관리

개요

부도

부도란 일반적으로 지급 제시된 어음을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어음 · 수표법」 등의 제한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지는 부도와 그렇지 않은 부도가 있다. 그리고 1차 부도란 어음대금을 부도 다음 날 결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부도가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진다.
어음발행인(주 채무자)의 부도내역을 어음교환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도정보를 참가은행과 공유하여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에서 배제함으로써 어음의 원활한 유통과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910년 경성수형교환소 설립 시부터 수행하였다.

거래정지처분

거래정지처분은 적법하게 지급 제시된 어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도를 발생하게 하거나 당좌(가계당좌 포함) 「예금거래약관」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발행인을 모든 참가은행과 2년간 당좌(가계당좌 포함)예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음교환소의 처분이다. 초기에는 어음 · 수표 불량거래자에 대한 거래정지처분기간이 1년이었으나 1983년 4월부터 2년으로 강화되었다. 어음교환소는 예금부족 부도로서 부도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가 없는 때 거래정지처분을 하고,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그 내용을 참가은행에 통지한다.
한편 1989년 1월에는 가계수표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가 1년간 3회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1994년 12월에는 이를 2회로 강화하였다. 거래정지처분 제도는 부도사유의 변경과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등 사회 ·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리절차

개요

어음교환소 개설 당시부터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실물에 부도사유를 기재한 후 당일 15:00(당시 은행영업종료시간)까지 어음실물을 제시은행에 반환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였고, 제시은행은 소지인에게 부도어음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부도량이 증가하고 교통 혼잡 등으로 당일 직접 반환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9월부터는 지급은행에서 부도 당일 전화나 팩스로 부도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부도어음실물은 부도 다음 날 어음교환을 통하여 제시은행에 반환(역교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는 정보교환의 실시로 어음을 수납한 제시은행에서 부도어음을 소지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있다.
교환 회부된 어음의 대금은 은행 간 차액결제를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제시은행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지급은행은 해당 어음금을 제시은행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도어음대전의 회수라 한다. 초기에는 제시 · 지급은행 간 현금수수방식이었으나 1964년 1월 부도어음지급통지서를 발행하여 교환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4년 9월부터는 부도어음대전회수영수증을 발행하여 부도어음실물과 함께 교환에 회부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하였다. 2010년 11월부터는 부도어음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일반어음 제시정보에 포함함으로써 부도어음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1981년 1월에는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미결제어음)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부도어음 통보시각 전에 미리 제시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는 제시은행에서 소지인에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결제어음통보제도가 신설되었다. 어음 · 수표에 대한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은 14:00까지(전산에 의한 경우 13:30)이며 어음소지인은 14:20 이후에 어음을 자금화 할 수 있다. 다만, 자기앞수표의 경우 2012년 4월에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을 12:00까지(전산에 의한 경우 11:30)로 앞당겨 수표소지인은 12:20 이후에 수표를 자금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음 · 수표의 부도통보는 영업종료 시까지 제시은행에 유선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 및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야 한다. 2006년 8월에는 참가은행이 합의한 경우 이 시각을 연장할 수 있게 제도화하였다.

부도사유

부도사유는 발행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한다. 어음의 유통량 증가로 부도량도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부도사유를 정형화하여 업무처리의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어음 · 수표법」에서 정한 지급거절 사유를 포함하여 부도사유를 8가지(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 접수, 위 · 변조, 제시기일경과 또는 미도래,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 상위)로 한정하였다. 1966년 4월에는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라는 부도사유가 추가되었고 어음 · 수표 이외의 교환 가능한 제증서에 대하여도 부도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1977년 5월에는 가계수표제도를 시행하면서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가 추가되었다. 또한 1980년 1월에는 안내서미착 사유를 추가하여 현재 11가지로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예컨대 형식불비와 예금부족이 경합)에는 발행인 신용 관련사항(예금부족)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부도사유가 분실 · 계약불이행 등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 송달인 경우에는 각각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부도사유 적용 관련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도어음의 신고

참가은행은 제시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그 내역을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은행(제시은행)과 연명으로 부도어음신고서를 작성하여 교환소에 제출하였다. 1991년 1월에는 부도어음신고서 제출주체를 지급은행으로 명시하여 작성과 제출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부도어음의 신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다가 1996년 6월 일괄전송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부도어음신고 내역은 어음종류, 금액, 부도사유, 지급일, 발행인(지급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어음발행인 관련 사항과 기업규모,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 등을 포함한다. 이는 부도통계의 활용도(실효성)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도어음신고서의 부도확인번호는 부도를 통보한 지급은행이 제시은행으로부터 받

은 확인번호로서 1994년 9월에 유선에 의한 부도통보 및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되었다.
서울어음교환소는 1998년 12월 전국 부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서울과 지방어음교환소 간 이원화되어 있던 부도관리시스템을 단일화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1~4차 부도가 교환소별로 관리되어 거래정지처분이 해당 어음교환소 참가지역에 한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2006년 2월부터 전국의 부도상황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도 및 거래정지처분 통지

어음교환소는 지급은행이 신고한 부도어음 중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도어음에 한하여 발행인별, 부도사유별로 구분하여 부도발생 다음 날에 전 참가은행에 부도통지를 하고 있다. 부도통지 대상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무거래, 사고신고서접수, 위 · 변조,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 명령송달,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이다. 부도 통지한 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이 부도 다음 날까지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못하거나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음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참가은행에 통지하고 있다.

부도제재에 대한 구제

어음의 부도통지 및 거래정지처분까지의 절차가 발행인이 아닌 참가은행의 귀책사유인 경우 발행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용을 회복한 경우 당좌예금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부도구제"이다. 부도구제에는 부도신고 취소, 부도통지 취소, 거래정지처분 취소, 거래정지처분 해제가 있다.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 취소 제도는 1993년 8월에 신설되었고 어음교환소에서 승인하고 있다. 거래정지처분 취소와 해제는 초기에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였고, 1964년 1월에는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거래정지처분 취소는 1997년 10월부터,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1996년 11월부터 어음교환소에서 결정하고 있다.

부도율

어음의 부도율은 일반적으로 부도금액을 교환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부도율을 산정하기 시작한 1954년 1.16%에서 1990년 0.04%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1995년 0.12%로 증가추세를 보인 후 현재는 0.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총 교환금액에 현금자동인출(CD), 타행환 등 전자결제금액과 콜거래, 국고자금회수, 수취인지정이체 등 신한은금융망(BOK-Wire+) 거래금액을 포함한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율을 산출하여 공식적으로 매월 언론에 공표하고 있어 어음교환소에서 산정하는 부도율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기업구매자금어음 등 다양한 어음대체수단의 등장과 전자결제 비중의 증가, 금융거래 및 결제관행의 변화 등에 따라 총 지급결제금액 중 어음 · 수표의 교환결제금액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어음 부도율이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경제지표로서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02

지로업무

1. 일반사항
2. 장표지로
3. 자동이체
4. 대량지급
5. 납부자자동이체
6. 인터넷지로

지로업무는 장표지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및 대량지급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사항

지로업무의 종류

지로업무는 장표지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및 대량지급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참가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지로장표를 수취하여 지로자금을 수납 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이다. 인터넷지로업무는 참가기관과 금융결제원이 전자수납매체를 통해 지로자금 등을 수납 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하는 전자수납업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부자에게 납부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전자고지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이체업무는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의 출금청구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납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대량지급업무는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의 이체의뢰에 따라 자금을 지로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납부자자동이체 업무는 참가기관이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타 참가기관의 수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이다.

지로거래의 승인과 지로번호

지로거래의 승인

이용기관은 지로제도를 이용하여 각종 자금을 수납하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지로이용약관」에 따라 각 업무별로 소정의 신청서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고 그 이용을 승인받거나, 지

로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가기관 및 금융결제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자동이체업무는 납부자가 출금참가기관에 사전 신청(약정)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지로번호

금융결제원은 지로업무별, 이용기관별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지로이용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지로번호는 지로업무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의 고유한 식별번호이기 때문에 복수부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용기관별로 하나의 지로번호를 부여한다.

지로번호는 「전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이용기관의 업종에 따라 구분, 부여되며 업종코드 2자리, 업종별 일련번호 4자리,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지로번호는 장표지로업무, 자동이체업무를 이용하는 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여타 업무의 경우는 승인번호 등을 지로번호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로번호(7자리) 구성체계

산업(업종)분류번호	업종별 일련번호	검증번호(CHECK DIGIT)
75	0001	1

지로업무 관련 규정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과 「지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관련 약관 및 계약 등에 의거, 지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로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지로업무규약」(이하 규약)은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지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업무규범이다. 이 규약에는 참가기관의 의무를 비롯하여 지로업무자료 처리, 지로차액의 결제방법, 지로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로이용수수료의 처리기준은 물론 참가기관 제재 · 과태금 부과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은 금융결제원 지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폐한다.

「지로업무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은 규약에서 위임받은 지로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규범으로 각 지로업무별로 이용기관의 승인, 참가기관(수납 및 지급참가기관), 금융결제원 및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세칙 역시 금융결제원 지로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폐한다.

약관

「지로이용약관」은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이용기관 및 이용고객과 당사자 또는 쌍방이 되어 지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업무규범이다. 동 약관은 이용기관의 의무, 이용신청 승인 및 취소, 지로처리 결과통지, 자금결제 시기, 이용수수료, 과실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금융결제원은 지로 이용기관 중 대형 이용기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로이용약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항(자료 송 · 수신시간 · 자금이체기일 · 지로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이용기관, 참가기관, 금융결제원)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규정

지로업무와 관련하여 참가기관, 이용기관, 금융결제원이 사용하는 서식을 시행세칙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로장표 중 일반OCR, 정액OCR, MICR장표의 규격 및 항목 등을 규정한 지로장표 구비요건 및 표준OCR장표의 규격 및 항목 등을 규정한 표준OCR장표 구비요건이 있다.

수수료

지로업무 관련 수수료는 지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지로이용 관련 수수료"와 참가기관(이용기관 거래 참가기관과 이용고객 거래 참가기관) 간에 수수되는 "수납(출금)대행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별도 계약에 의거, 이용기관이 수납(출금) 참가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광의로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이므로 "지로이용 관련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로이용 관련 수수료

지로이용 관련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지로수수료와 납부자가 부담하는 고객수수료로 구분하며,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 앞 수납자금 이체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당 참가기관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고객수수료는 의뢰받는 시기에 참가기관에서 별도 징수하고 있다.

수납(출금)대행비용

수납(출금)대행비용이란 지로이용기관의 지로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이 해당 이용기관의 지로대금을 수납하거나 출금을 대행한 상대 참가기관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수납(출금)대행비용은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시 차감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납(출금)한 금액이 정해진 수납(출금)대행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수납금액을 수납(출금)대행비용으로 한다.

자금정산(지로차액결제)

결제방식

지로대금 수납(출금) 참가기관과 지로계좌 보유 참가기관 간 자금정산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한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과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대행은행을 통하여 지로업무차액을 결제한다.

결제절차

- 차액결제금액 산출

금융결제원은 매일 참가기관의 지로업무별 지로차액결제금액을 합산하여 결제한다. 인터넷지로의 지로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금(자금이체기일이 수납일로부터 제7영업일인 지방세입금 제외)은 장표지로 결제금액에 합산하여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며, 국고금은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지로업무별 자금이체기일은 다음 표와 같다.

지로업무별 자금이체기일

업무별		자금이체기일	
장표지로	일반OCR, 정액OCR, MICR장표	수납일+제2영업일	
	표준OCR장표	수납일+제3영업일	
인터넷지로		지로요금, 공과금	수납일+제2영업일
		지방세입금	수납일+제2영업일
			수납일+제7영업일
자동이체		출금일+제3영업일	
		출금일+제7영업일	
납부자자동이체		출금일+제1영업일	
대량지급		출금일+제1영업일	

– 차액결제의뢰(한국은행) 및 차액결제자료 전송(참가기관)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자금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일(매일) 지로 차액결제청구서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1시간 전(10:00)까지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지로결제지시자료를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2시간 전(09:00)까지 참가기관에 전송(대행은행에는 위탁기관의 자료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차액결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에서 전송한 각 참가기관별 차액결제자료에 의거, 결제일 11:00시에 참가기관 당좌예금계좌의 대차대체로 결제하고 지로차액결제통지서를 해당 참가기관에 송부한다.

수납자금이체

수납자금이체란 지로계좌 보유 참가기관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업무별 지로입금지시내역에 의거, 본·지점 간 자금정산(전금 또는 역환)을 실시한 후 지로 이용기관 지로계좌 또는 수취인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로 이체일은 상기 자금이체기일과 같은 날이다. 이때 입금액은 수납(출금)대행비용(공과금 관련 수수료)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비분담

금융결제원은 지로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지로업무 회비의 경우 참가기관별로 수익자분담원칙에 따라 분담하게 하며, 매년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초기 지로업무 회비는 전년도 지로수납실적에 따라 총경비의 30%는 수납건수, 30%는 수납금액, 40%는 수납적수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86년 3월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에서 수수료 면제분을 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분담기준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 수납장표정보화의 실시와 동시에 표준OCR장표의 경우 장표처리환경이 기존의 금융결제원 집중처리방식에서 자체처리 또는 금융결제원 위탁처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후 정보화처리에 따라 지로회비를 지로처리분 회비와 정보화처리분 회비로 구분하여 징수하였다. 2012년 12월 대상 업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정보화처리분 → 장표처리분, 지로처리분 → 전자지로분)한 이후 2014년 8월 자동이체 문자메시지 발송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지로업무분과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무분으로 구분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장표지로

개요

장표지로업무는 이용기관이 사전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에게 납부할 금액이 기재된 지로장표를 송부하면 참가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지로장표를 수취하여 지로자금을 수납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로 입금함과 아울러 수납내역을 이용기관에게 통보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이용기관은 전 참가기관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납부자 또한 참가기관의 창구(무인수납기 포함)와 전자수납채널(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학자금, 물품판매대금, 신문구독료, 사용료 및 각종 회비 등의 수납업무에 이용되고 있다.

지로장표의 종류

지로장표는 「지로이용약관」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OCR장표, 정액OCR장표, MICR장표 및 전자납부전용장표와 수납대행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 표준OCR장표가 있다. 이용기관이 발행하는 장표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장표구비요건(지로장표 구비요건, 표준OCR장표 구비요건)에 따라 인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처리절차

창구수납분의 처리

지로장표의 수납 참가기관은 창구에서 수납한 지로장표의 경우 정보작성기기(스캐너 등)를 이용하여 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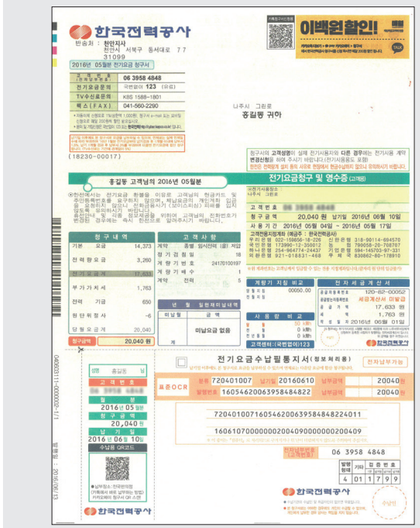
지로장표의 종류



일반OCR



정액OCR



표준OCR



MICR

정보를 작성, 무인수납기에서 수납한 수납정보와 함께 장표 종류별로 구분하여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전송한 수납정보에 금액 등의 정보누락분과 이중수납분, 오류처리분이 있을 경우 해당 수납기관에 전송하여 수납정보를 확인 처리하며, 표준OCR장표의 경우 발행정보와 상이한 경우에는 과오정정처리하여 자금을 정산한다.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이 작성한 수납정보를 이용, 자금이체기일을 기준으로 자금결제를 위한 수납 및 지급집계내역, 지로입금지시자료 등을 작성하여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 앞 전송하고 차액결제일에 지로차액결제청구서를 한국은행 앞 전송, 차액결제를 의뢰한다.
지급기관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지로입금지시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전자수납분의 처리

전자수납서비스는 지로장표 등의 창구수납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은행의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이용기관 및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도입되었으며, 조회수납, 입력수납, 즉시수납 및 예약수납 등의 방법으로 전자수납할 수 있다.
이용기관이 납부자에게 발부하는 지로장표 고지내역(고지정보)을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면 금융결제원은 제공된 고지내역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자수납은 납부자가 CD/ATM에서 지로장표상에 표시된 지로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현금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지로대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이후 전자수납서비스 매체로 유 · 무선전화가 추가되었으며, 2000년 3월부터는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처리절차는 제6절(인터넷지로업무)에서 상술한다.]
지로이용기관은 고지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동시에 전자납부번호를 수록한 지로장표를 납부자 앞으로 발부한다. 납부자가 CD/ATM 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면 금융결제원이 보관한 고지정보에서 고지내역을 찾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를 완료하면 이체일에 금융결제원은 지로 차액결제에 포함하여 이를 결제한다.

수납내역의 통지

금융결제원은 수납명세 등을 이용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정액OCR 및 MICR장표 이용기관에 대하여는 지로장표 실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부 등에서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OCR장표 이용기관에 대하여는 전산매체(MT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였다.
이후 수납내역 등의 우편 또는 인편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사이트(e-giro.giro.or.kr)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를 2004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기관은 지로입금통지서, 수납명세자료, 입금정정내역 등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표준OCR장표 이용기관의 경우에는 일괄전송망을 통해 수납내역을 전송하고 있다.

자동이체

개요

자동이체는 납부고객이 거래 및 이용기관 등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정해진 납기일에 해당기관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납부고객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이다. 이는 전기 · 통신 · 가스요금을 비롯하여 보험료, 신용카드요금, 케이블방송요금, 지방세, 상 · 하수도요금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금 수납에 이용되고 있다.



'은행지로 자동이체' 신문 광고 [1993. 12. 23. 동아일보]

업무처리절차

자동이체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은 참가기관, 이용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및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1994년 12월에는 참가기관에서만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기관에서도 직접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또는 거래 참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2015년 3월부터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자동이체 출금청구자료를 확인, 수납기관별로 작성한 자동이체 출금지시명세를 출금일 전 수납기관에 전송하고,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출금지시명세에 따라 해당 출금일에 납부자의 자동이체원장 등록 내용을 확인한 후 출금한다.
수납기관은 자동이체 수납자금을 출금한 후 출금불능분과 부분출금분을 수록한 출금결과명세를 출금일 다음 영업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이 전송한 출금결과명세를 종합하여 수납 및 지급집계명세 등 결제자료를 작성한 후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에 전송한다.
지급기관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자동이체 수납금 입금지시명세에 따라 수납금을 정한 입금일에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출금처리가 완료된다.
문자메세지 발송업무는 2014년 6월부터 참가기관을 대신하여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탁하는 참가기관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필요한 정보파일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해당 고객 앞으로 전송하고, 전송 결과 역시 해당 위탁 참가기관 앞으로 익영업일에 전송하고 있다.

대량지급

개요

대량지급은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지급기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여러 은행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편리한 제도로

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지급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업무처리절차

이용기관은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의뢰 내역을 금융결제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이체지정일 전 금융결제원에 제출한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의 대량지급의뢰자료에 따라 수납기관별로 작성한 대량지급자금 수납지시명세를 이체일 전 수납기관에 전송한다.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자금 수납지시명세에 따라 이체일 전 대량지급자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서 출금하여 수납한다. 또한 수납기관은 대량지급자금 수납결과를 이체일 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이 전송한 대량지급자금 수납결과에 따라 지급기관별로 작성한 대량지급자금 입금지시명세와 수납 및 지급집계명세를 이체일 전 지급기관에 전송한다. 지급기관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입금지시명세에 따라 이체일에 출금할 수 있도록 수취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납부자자동이체

개요

납부자자동이체업무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수취은행)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이체지정일에 수취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은행 간 자동계좌이체제도이다. 이 제도는 타행환으로 송금하거나 직접 수취은행에 가서 납부



다른은행에도 자동이체 된다

30일부터…대출금 이자등 정기납부금 대상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출금 이자 등 정기 납부금을 다른 은행에 보낼 수 있는 자동이체서비스가 30일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 한 은행 안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이체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은행들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의 일괄전송 시스템과 연계해 오는 30일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은행에 불입금을 낼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한 번만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나 정기적금 불입, 각종 회비의 납부 및 용돈 송금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형에 자동이체 신청만 해두면 자기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 예금통장이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다른 은행에 입입이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자동이체서비스 대상은 대출금 이자, 적금 불입금, 신탁 적립금, 각종 회비, 입치료 등 정기적으로 내는 일정 불입금이다.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3백원 정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래은행의 아무 지점에서나 납부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 개시 관련 신문 기사
[1994. 4. 28. 한겨레]

업무처리절차

참가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자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 확인한 후 신청내역을 납부자자동이체원장에 등록한다.

수납기관은 납부자자동이체원장에 따라 출금일 납부자의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을 출금하고 출금명세를 작성하여 출금일 출금명세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이 전송한 출금명세를 지급기관별로 분류하여 납부자자동이체 입금지시명세를 작성, 이체일에 지급기관에 전송하고, 지급기관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납부자자동이체 입금지시명세에 따라 이체자금을 이체일에 해당 수취계좌에 입금한다.

인터넷지로

개요

인터넷지로서비스란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국고금, 지방세입금을 납부자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등 각종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공동으로 구축한 인터넷 납부용서비스이다.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각종 요금납부 시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는 국내 모든 은행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과 우체국계좌까지 가능하고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가 지로업무에 특별참가하게 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계좌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및 관세 납부가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추가되었다.



인터넷지로 이용 모습

인터넷지로는 지로이용 청구기관의 징수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납부자에게는 납부편의를 제고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는 지로장표 창구수납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입 회원 수는 260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도의 납부건수는 2억 1,639만건에 이르고 있다.

도입 및 발전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지로제도를 인터넷 기반으로 개선 ·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수차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한 "전자지로 다양화 추진계획"이 1999년 10월 19일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의결되면서 인터넷지로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11월 1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로장표의 전자고지와 전자수납서비스(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EBPP)를 담당할 금융결제원 사이트 명칭으로 인터넷지로(Internet Giro)를 제정하고, 2000년 3월 31일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개설,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0년 7월 1일에는 입력납부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3년 4월 23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징수기관에서 고지자료를 제공받아 인터넷지로시스템에 고지DB를 구축, 조회납부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13일부터는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약납부제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 12월 7일부터는 비회원 납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한편 인터넷지로업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납부대상 요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등에 대한 인터넷지로 납부를 추

진하여 2001년 6월 15일에는 춘천시가 최초로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3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해졌다.
2011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결제원과 개별 계약을 체결, 지방세입금을 납부하던 방식에서 전국지방세입금 표준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를 해오고 있다.
또한 2001년 6월 22일에 인터넷지로시스템과 국가의 세입 · 세출을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재정자금을 인터넷지로, CD/ATM 등 전자수납채널로 수납할 수 있는 "국세 · 지방세 전자고지 · 납부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이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1월 2일부터는 재정자금 전자수납서비스가 본격 실시되어 국세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국고금 및 기금이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장표 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주)KT와도 인터넷지로 납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2001년 10월 19일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4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등 4대 기관 요금에 대한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지로 사이트 이용자들의 사용편의와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005년 9월 5일부터 납부자들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지로 및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의 납부시간을 은행영업일 09:30~19:00에서 09:00~22:00로 3시간 30분 연장하였으며, 2015년 12월 21일부터는 인터넷지로 및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의 납부시간을 연중 00:30~23:3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12일부터는 각종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인터넷지로 사이트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기업전용 지로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제공, 기업고객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였으며, 2007년 9월 20일부터는 인터넷지로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를 추가하였다.
이밖에도 지방세입금의 세외수입 등 납부대상요금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연계기관의 확대와 결제수단 추가를 통하여 인터넷지로 이용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2010년대에 이르러 모바일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납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지로서비스를 추진, 2010년 8월 26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1일 지방세입금을 모바일지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등 모바일지로를 통해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되고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간편한 결제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지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앱카드 등 간편 결제기능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 사용 간편화 등 납부 편의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지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고지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지로 업무 참가기관 및 징수기관

구 분		내용
참가기관		21개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 BOA 및 금융투자회사는 국고금 · 지방세입금 수납불가
징수 기관	정부기관	국세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연계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등 6대 광역시를 비롯한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택스시스템을 통해 연계
	공공기관	KT,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일반기관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등 약 18,600개 지로이용기관 *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조회납부 가능기관 : 약 5,000개

주요업무

개요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자가 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내역을 조회하거나 직접 입력한 후 자신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과정은 인터넷지로의 기본 처리절차이다.
납부된 금액은 지로차액결제방법 등을 통하여 "납부일+2영업일" 또는 "납부일+7영업일"(지방세입금)에 해당 청구기관의 집금계좌로 입금되나 국고금의 경우 국고대리점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한다.

인터넷지로납부 요금종류

구 분	요금종류
국 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국고금	경찰청범칙금, 특허수수료, 검찰청벌과금, 고용 · 산재보험 등 국고금 및 기금
지방세입금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 과 금	KT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로요금	통신요금, 신문대금, 도시가스요금 등 고지서상에 지로번호가 표시된 모든 요금


인터넷지로를 포함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국세 및 국고금 납부서비스

2000년 8월부터 금융결제원은 경찰청 범칙금 인터넷납부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4월에는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 국세 전자납부를 실시하였다.
2003년 1월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 모든 국고금과 기금으로 납부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국세 및 국고금 전자납부는 인터넷(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스마트폰, 은행창구 등에서 조회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이 국세(관세)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세와 관세를 시작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포함), 같은 해 9월에는 법원인지대, 2014년 10월에는 고용 · 산재보험료, 도로점용료/과적과태료, 기타 국고금과 기금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고금 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2013년 이전의 경우 법령에 따른 조세(인지세) 및 국가세입금(수수료 등)을 납부할 때 수입인지를 이용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

입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수입인지 업무 관련 서비스는 구매(판매)업무, 환매업무, 소인업무가 있다.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

2009년 8월 27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납부방식을 단일 전자납부 처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센터로 지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2009년 11월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계약을 체결(부산광역시 등 246개 지자체 대표 및 21개 은행, 13개 카드사), 2011년 3월부터 지방세를 대상으로 납부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방세입금을 온라인 방식으로 수납처리하고 있다.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기능 제공 및 행정자치부의 위택스시스템과 은행, 카드사 간 금융결제원이 중계센터 역할을 하여 납세자는 인터넷(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 자동화기기(CD/ATM), 스마트폰 및 은행·지방자치단체 창구 등에서 지방세 고지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한 후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수납분은 지로 차액결제(D+7영업일) 방식으로 수납은행과 금고은행 간 자금결제를 하며, 신용카드 수납분은 신용카드사에서 위탁은행을 경유하여 월 1회 금고은행으로 입금된다.



지방세납부 편의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김수명 前 원장(왼쪽에서 두번째)
2009. 8. 20.

공과금 및 지로요금 납부서비스

지로요금 납부서비스는 납부자가 인터넷지로 등에서 각종 지로요금 고지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납부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는 서비스로 1999년 9월 10일 "전자지로 다양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2002년 11월부터 인터넷뱅킹시스템과 연동하여 인터넷뱅킹에서도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3년 4월에는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KT 전화요금,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의 경우 해당기관과 개별 계약에 의하여 납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부자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은행창구 등 해당기관의 고지자료 DB에서 고지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 및 지방세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보편화됨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통합사회보험료, 2015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카드 납부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연계서비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지로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국세 및 국고금, 지방세입금, 지로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현재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 및 스마트뱅킹 앱에서 지로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

인터넷지로사이트는 지로공과금 납부 관련 서비스 외에 금융결제원 업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로공과금의 납부를 지정된 납기일에 계좌에서 자동출금, 납부하는 자동이체신청서비스의 제공과 아울러 계좌잔액, 입출금내역 및 사고수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에서 납부한 내역에 대해 납부자가 별도로 납부확인증을 출력, 보관하지 않더라도 납부내역을 5년간 관리하여 조회할 수 있는 납부내역 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Focus

인터넷지로의 발전 과정 및 방향

금융결제원은 표준OCR장표 이용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및 (주)KT와 인터넷지로 납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10월 19일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4일 한국전력 전기요금 등 4대 기관 요금에 대한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 13일부터는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약납부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04년 12월 7일부터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비회원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10월 1일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대행업무를 실시하는 등 인터넷지로를 통한 대상업무 및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 휴대전화로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각종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위택스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그 납부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납부 편의 제고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2015년 12월 21일부터는 납부시간을 연중 00:30~23:30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인터넷지로 이용 고객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지로 모바일

INTERNET GIRO

"인터넷지로 모바일서비스"란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지로·공과금 및 국고·지방세 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00년 3월 인터넷지로 업무 실시 이후 각종 지로 · 공과금 및 국고 · 지방세 입금으로 납부대상 요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인터넷지로를 통한 업무처리량은 2015년 전체 지로업무량(자동이체, 대량지급, 납부자자동이체 제외)의 건수 대비 약 62.1%, 금액 대비 91.2%를 차지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터넷지로 납부 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 수	125,291	179,500	187,752	199,574	216,390
금 액	305,878,489	344,397,220	362,161,008	377,402,407	402,351,271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모바일 중심의 생활패턴 등 지급결제 및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간편결제 등 핀테크 기술의 도입으로 보다 간편한 결제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지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앱카드 등 간편결제 추가, 공인인증서 사용 최소화 등을 통하여 납부 편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모바일지로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03

전자금융업무

1. 금융공동망
2.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
3. 현금카드결제
4. 스마트금융

전자금융업무의 핵심인 금융공동망사업은 1980년대 정부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전자금융공동망의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서비스, 스마트 기반 지급결제서비스 등으로 확산되었다.

금융공동망

CD공동망

개요

CD공동망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 고객이 타 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현금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986년 7월 금융전산추진위원회는 정보화 추세와 선진 전자금융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CD공동망 사업을 위탁하였다.
CD공동망업무는 1988년 7월 7개 시중은행과 5개 국책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88년 10월 10개 지방은행 및 1991년 11월 하나은행의 참가로 당시 국내 모든 은행이 참가하였다.
1997년 4월 씨티은행, 1998년 10월 홍콩은행, 2001년 9월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9년 4월 15개 금융투자회사, 2009년 11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추가로 참가, 2016년 6월 현재 총 38개 기관이 CD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다.
CD공동망의 이용시간과 제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은행영업시간 중에만 운영되던 CD공동망은 은행의 자동화코너 및 점외CD/ATM의 설치 확대에 따라 1995년 9월 08:00~22:00까지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한 끝에 2007년 10월부터 현재와 같은 00:05~23:55으로 확대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CD공동망 실시 초기에는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서비

스만 제공하였다. 그 후 1993년 9월 BC카드를 대상으로 현금서비스업무를 실시한 이후 은행계 신용카드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4년 2월 타행 CD/ATM을 이용한 동행 및 타행 간 계좌이체서비스, 1999년 6월 3개 은행 간 계좌이체서비스, 2006년 12월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 2007년 12월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 안내서비스, 2013년 7월 현금서비스 ATM금리고지서비스를 추가함에 따라 고객은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법과 제도의 변화 및 금융당국의 방침 등에 따라 금융보안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도 속속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지연인출, 2014년 4월 참가기관 간 송금인 정보중계 및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전면 실시, 2015년 3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2015년 5월 ATM 지연인출 시간 확대, 2015년 6월 현금서비스 MS카드 사용 제한, 2015년 9월 ATM 지연인출 기준금액 하향 및 ATM 지연이체, 2015년 12월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업무가 실시되었다.

CD공동망의 도입으로 고객은 모든 참가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등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기관은 CD/ATM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거래빈도가 높은 소액 현금지급 거래를 창구업무에서 분리함으로써 점포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내용

CD공동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지급업무 및 잔액조회업무로 구분된다. 지급업무는 계좌에서의 현금지급, 현금입금, 계좌이체 및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있다. 잔액조회업무는 계좌 잔액조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조회가 있다. 현재 CD공동망에서 사용 가능한 계좌는 은행의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 신탁예금, 투자자예탁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예탁금)이다.

CD공동망에서 현금지급 및 현금입금의 1회 최고거래금액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 출금한도 및 입금한도는 600만원이다.

CD공동망의 계좌이체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금인출 업무량은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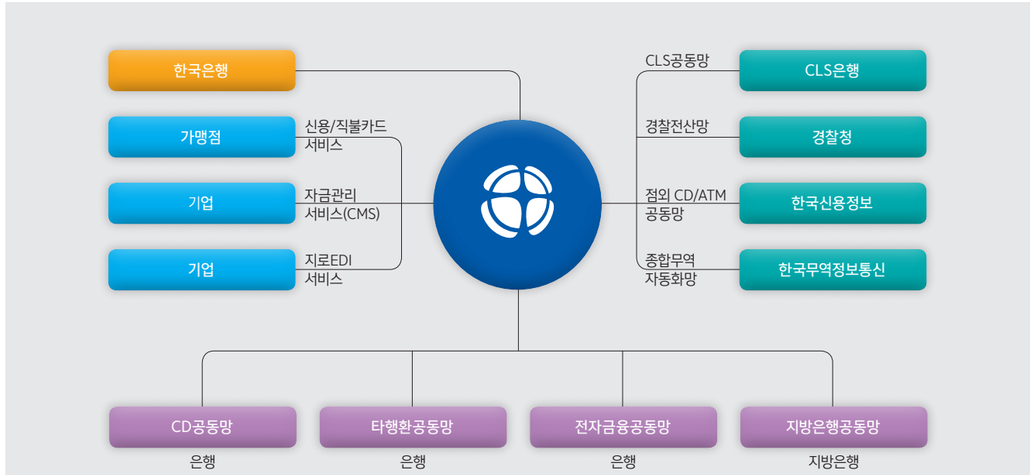
최근 5년간 CD공동망 이용건수 현황

(단위: 천건)

연 도	건수 합계	현금인출		계좌이체*	현금서비스	
		현금인출	잔액조회		서비스인출	잔액조회
2011	921,498	242,687	401,415	275,440	1,463	493
2012	987,886	259,966	414,117	311,906	1,436	461
2013	1,028,067	270,449	416,081	339,261	1,268	1,008
2014	1,059,684	271,028	409,075	376,944	1,104	1,533
2015	1,076,279	269,881	400,813	403,397	923	1,265

* 수취조회 건수 제외

금융공동망 구성도



타행환공동망

개요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이용고객이 전국 모든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1988년 2월 금융결제원에 타행환공동망사업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988년 7월 "타행환시스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89년 12월 타행환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였다.

타행환공동망은 1989년 12월 서울소재 8개 은행 및 5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990년 4월 조흥은행을 비롯한 11개 은행, 같은 해 7월 서울은행 등 3개 은행, 1992년 2월 한국산업은행, 1994년 8월 씨티은행, 2002년 7월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등 외국계 은행과 2001년 9월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참가하였다. 2009년 4월 21개 금융투자회사, 2009년 11월 산림조합중앙회, 2013년 6월 중국공상은행이 추가로 참가, 2016년 6월 현재 총 50개 기관이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 실시 초기에는 현금송금,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 조회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나 1997년 10월 타행발행 일반자기앞수표 송금업무를 추가하였다. 2000년 11월 송금 시 수취조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4월 수취조회 적용대상금액을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하였다.

타행환공동망에서의 송금한도는 최초 1,000만원이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한 끝에 2011년 9월 5

억원으로 상향 조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타행환공동망의 이용시간과 제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07:00~17:00까지 운영되던 타행환공동망은 2009년 11월 07:00~18:00까지로 이용시간이 연장되었고, 자기앞수표 자금화 시각도 14:20에서 12:20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2013년 1월 및 2015년 6월에는 타점권 부도처리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변화 및 금융당국 방침 등에 따라 금융보안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되었다. 2014년 3월 참가기관 간 송금인정보 중계업무가 실시되었고, 2015년 3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타행환공동망이 지정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의 도입으로 고객은 금융기관 간 송금 및 조회업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기관은 생산성 제고 및 대고객 편의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내용

타행환공동망은 현금 송금, 자기앞수표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능 예금종목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당좌,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예탁금)이 있다. 고객은 은행기준으로 영업일 09:00~16:00까지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타행환공동망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십억원)

연 도	송금*		자기앞수표조회
	건수	금액	
2011	103,561	866,470	723
2012	97,886	891,734	636
2013	93,800	928,781	667
2014	94,318	1,044,804	705
2015	93,441	1,165,874	657

* 수취조회 제외

그러나 타행환공동망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확산에 따라 업무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은행 영업전략도 영업점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래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금융공동망

개요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뱅킹과 같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중계업무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2001년 3월 기존의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공동망시스템으로 탄생되었다.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1987년 3월과 9월 "금융전산망 198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고객조회시스템(구 ARS공동운용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988년 3월 "ARS 공동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89년 4월 ARS공동망을 본격 가동하였다.

ARS공동망은 음성응답서비스를 통한 조회, 안내, 신용카드 업무 등을 주로 제공하다가 1990년 ARS 이용매체의 확대를 위하여 조회 방법을 자동응답서비스로 변경하였다.

1999년 9월에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 제공하던 전화서비스를 특수번호인 "1369번"으로 단일화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전자금융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각 은행의 홈 ·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한 타행이체업무가 기존의 타행환공동망 및 CD공동망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어 1998년 7월 기존 ARS공동망을 활용한 홈 · 펌뱅킹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0년 6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가 "전자금융공동망 구축 추진계획"을 금융정보화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01년 4월 기존 ARS공동망을 전자금융공동망으로 확대 개편하여 홈 · 펌뱅킹 중계업무와 대고객서비스업무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홈 · 펌뱅킹 중계업무는 2001년 4월 25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같은 해 7월 도이치은행, 같은 해 9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2년 12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참가하였다. 2009년 4월 25개 금융투자회사, 2009년 11월 산림조합중앙회, 2012년 6월 BNP파리바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참가, 2016년 6월 현재 총 56개 기관이 홈 · 펌뱅킹 중계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홈 · 펌뱅킹 중계업무의 실시 초기에는 타행이체, 자기앞수표 조회 및 거래확인 조회업무를 제공하였고, 2002년 6월 대량이체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2001년 10월에는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이체한도를 건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1년 4월 전자금융공동망 홈 · 펌뱅킹 중계업무가 시행됨과 동시에 참가기관별로 공동 운영시간과 개별 운영시간을 구분하였다. 현재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00:05~23:55까지, 공동 운영시간은 07:00~23:30까지이며, 그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하고 있다. 다만, 대고객서비스의 환율안내는 09:00~23:55까지이다.

한편 법과 제도의 변화 및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융 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였다.

2006년 5월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 가동, 2010년 10월 대고객서비스(1369) ARS 운영체제 개선 및 신규 ARS시스템 가동, 2011년 9월 홈 · 펌뱅킹업무를 통한 금융정보조회서비스 확대(가계수표, 어음발행정보 추가), 2014년 3월 참가기관 간 송금인정보 중계, 2015년 2월 납부자자동이체 개선 추진 관련 타행자동이체 자금성격 코드 추가, 2015년 12월 및 2016년 2월 기존 본인계좌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조회업무, 2016년 2월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결제시스템 업무를 실시하였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하여 참가기관은 창구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함은 물론 비용절감 및 수수료수입 증대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용고객은 은행을 직접 찾지 않고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내용

전자금융공동망은 홈 · 펌뱅킹 중계업무와 대고객서비스업무로 나누어진다. 홈 · 펌뱅킹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거액 타행이체(출금한도 10억원 초과), 거래확인조회, 어음 · 수표조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등이 있다. 대고객서비스업무에는 전화 또는 PC 등의 이용매체를 통한 계좌 · 신용카드 조회, 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환율안내, 비대면 실명확인 조회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의 이용가능 예금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당좌, 가계당좌, 신탁예금, 적금, 펌뱅킹서비스를 위해 설정한 가상계좌예금과목, 투자자예탁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예탁금)이 있다.

홈 · 펌뱅킹 중계업무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의 이용편리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홈 · 펌뱅킹 중계업무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뱅킹의 급증,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 연계 등으로 핵심적인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대고객서비스업무는 1995년 이후 개별은행에서 ARS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자금융공동망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십억원)

연 도	대고객조회업무		홈·펌뱅킹 중계업무		
	금융조회	신용카드	계좌이체		조 회
	건 수	건 수	건 수	금 액	건 수
2011	44,556	1	1,995,638	11,134,905	1,868,454
2012	39,509	1	2,236,106	11,852,925	2,094,706
2013	35,886	1	2,531,992	12,536,685	2,355,375
2014	33,260	0	2,759,289	13,805,981	2,500,479
2015	31,606	0	3,060,115	16,032,803	2,789,280

지방은행공동망

개요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들이 공동 개발, 상품화한 종합통장 형태의 "뱅크라인(BANKLINE)"관련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금융결제원 간의 중계시스템을 상호 연결한 시스템이다.

1995년 12월 지방은행협의회에서 전산망의 공동 구축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듬해 3월 지방은행협의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지방은행협의회 분과위원회로부터 전산망 구축의뢰를 받아 1997년 2월 "지방은행 뱅크라인 중계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 추진하여 같은 해 6월 10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통 · 폐합으로 현재 6개 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지방은행공동망은 고객에게 지방은행의 모든 영업점을 이용하여 입 · 출금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고객서비스의 향상과 함께 지방은행의 점포 제한에 따른 영업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업무내용

지방은행공동망은 금전거래업무와 비금전거래업무로 나누어진다. 금전거래업무는 입금거래업무, 출금거래업무가 있고, 비금전거래업무는 통장이월/재발행/정리 등 통장 및 증서 관련업무, 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각종 조회 관련업무, 예금잔액증명발급 등 각종 코드의 등록 및 해제업무가 있다.

적용계좌로는 기본계좌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으며, 연결계좌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이 있다.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인 09:00~16:00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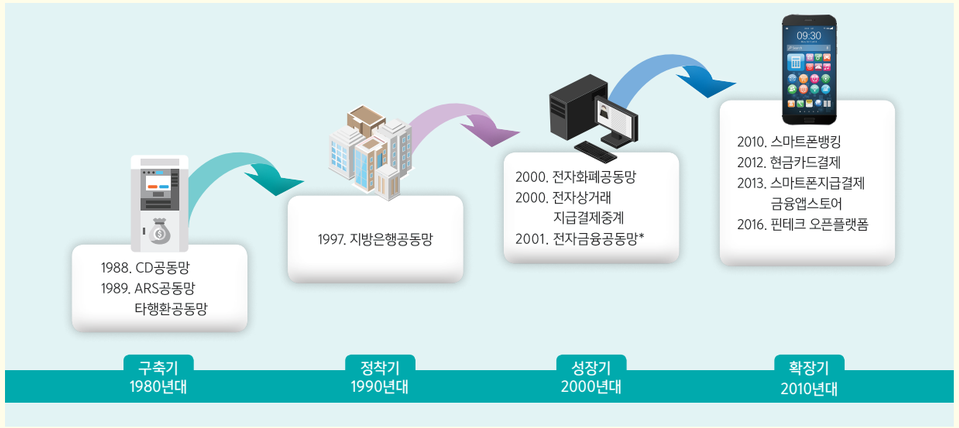
지방은행공동망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확산에 따라 업무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지방은행공동망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십억원)

연 도	입금		출금		조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1	41	174	60	876	123
2012	35	112	48	915	112
2013	29	100	44	995	104
2014	25	84	40	786	95
2015	21	111	39	910	74

Focus

전자금융업무 변천과정



* ARS공동망에 홈펌뱅킹업무 추가하여 전자금융공동망으로 개편

주요 전자금융업무 연혁

CD공동망	
1988. 7	CD공동망 본격 가동
1993. 9	현금서비스 실시
1994. 2	동행 및 타행 계좌이체서비스 실시
1999. 6	3개 은행 간 계좌이체서비스 실시
2006. 12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 실시
2007. 12	ATM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 안내서비스 실시
2012. 6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제도 적용
2013. 7	현금서비스 금리고지서비스 실시
2014. 4	참가기관 간 송금인정보 중계 업무 및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전면 실시
2015. 5	ATM 지연인출 시간 확대
2015. 6	MS현금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 제한

타행환공동망	
1989. 12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타행환공동망 가동
	* 현금입금, 추심대전입금, 자기앞수표조회 실시
1997. 10	타행발행 일반자기앞수표, 타행환 송금업무 실시
2000. 11	송금 시 수취조회서비스 실시
2014. 3	참가기관 간 송금인정보 중계 실시
2015. 6	타점권 부도 시 처리절차 개선 실시

전자금융공동망	
1989. 4	ARS공동망 가동(8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 잔액조회,무통장거래내역조회, 환율안내 실시
1990. 8	ARS공동망 응답방식 변경(음성→자동응답)
1999. 9	ARS공동망 전화번호 단일화(1369)
2001. 4	전자금융공동망 가동(기존 ARS공동망 확대 개편)
	* 홈펌뱅킹 : 타행이체, 자기앞수표조회, 거래확인조회
2002. 6	홈펌뱅킹업무에 대량이체 추가 실시
2006. 5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 가동
2011. 9	금융정보조회서비스 확대(가계수표, 어음발행정보 추가)
2014. 3	참가기관 간 송금인정보 중계 실시
2016. 2	기존 본인계좌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업무 실시
2016. 2	전자금융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결제업무 실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	
2000. 12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업무 실시
2001. 3	조달청 공공입찰통합서비스 적용
2001. 8	서비스 명칭(BANKPAY) 제정
2002. 11	시 · 군 · 구 행정정보화사업 적용
2003. 7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적용
2004. 12	제휴PG사를 통한 이용기관 모집방식 도입
2005. 7	(주)옥션 온라인쇼핑몰 적용
2006. 12	IPTV 기반 TV결제서비스 실시
2008. 7	결제대금 실시간 입금서비스 실시
2010. 12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2012. 5	스마트폰 바코드결제서비스 실시
2013. 11	간편결제서비스 실시
2014. 6	휴대폰 추가인증 실시
2015. 11	실시간환불 실시
2016. 7	스마트폰번호 기반 간편결제 개선 실시

전자화폐공동망

개요

K-CASH 전자화폐공동망이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를 고객들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기관 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전자화폐란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카드에 은행예금의 일정액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이전하여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지급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이다.

전자화폐는 1994년 광주은행 및 동남은행에서 지역기반 경영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 MS카드에 전자통장, 선불카드, 신분증, 출입증 등 다목적으로 사용가능한 IC카드를 적용하면서 도입되었다. 그 후 1994년 7월 충북은행, 동남은행, 국민은행이 공식적인 전자화폐 표준화 제정을 제안하고 타 은행들도 MS카드가 IC카드로 대체될 것을 대비하여 은행 간 IC카드의 호환성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금융IC카드표준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모든 은행이 참가하는 한국형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9년 1월 13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에서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융결제원에 사업추진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후 전자화폐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IC카드표준」이 1999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1999년 7월에는 교통 분야 활용이 가능한 비접촉식 기능을 추가하여 「금융IC카드표준」을 개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금융IC카드표준」이 제정됨과 함께 전산적인 설비를 완비하여 1999년 4월 "시범사업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0년 3월 역삼동 일대를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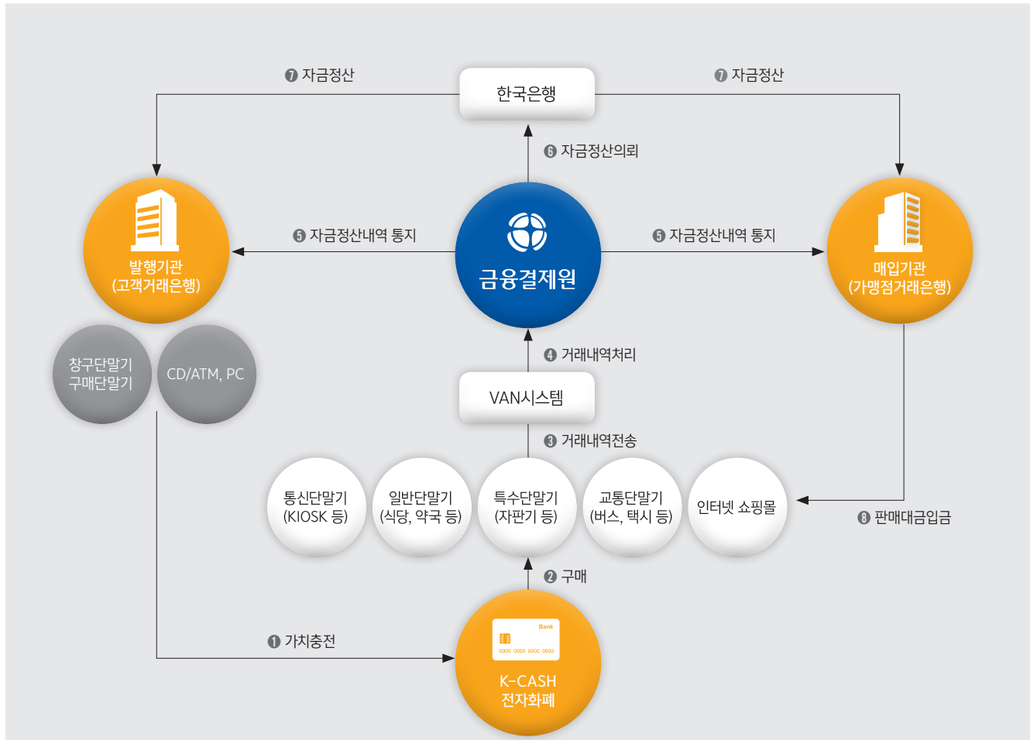


K-CASH 카드

시범실시를 하였다.

K-CASH 사업이 시작될 즈음 시장에는 V-Cash, Mybi, A-Cash, 몬덱스 등 5개의 전자화폐사가 설립되어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였다. 특히 새롭게 부상한 대중교통 요금결제(교통카드) 시장에서 5개 전

K-CASH 서비스 절차



자화폐사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A-Cash(경기, 인천) 및 Mybi(부산)가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K-CASH의 경우는 춘천, 김해, 안동, 서귀포 등 소규모 지역 몇 곳에서 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전자화폐 사업자 중 주요 교통카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V-Cash, 몬덱스는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K-CASH의 경우는 비록 대규모 교통카드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참가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교, 관공서, 군부대(나라사랑카드) 등 특정공간 내에서의 선불형태의 전자지급수단으로서 역할을 개척하는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업무내용

전자화폐는 충전 · 환불 · 구매(결제)서비스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은행(전자화폐 발급), VAN사(가맹점 결제인프라 제공), 금융결

제원(정산센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2015년 기준으로 군부대(48%), 학교(41%), 관공서(11%)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건수와 금액은 2010년 528만건, 131억원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99만건, 80억원 수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향후에도 전자화폐의 주요 시장인 대규모 교통카드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

개요

BANKPAY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업무(이하 PG서비스)란 온라인쇼핑몰 등(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에서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전문을 중계하고 결제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PG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결제하는 실시간 계좌이체이다.

PG서비스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던 2000년 초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 7월 금융결제원 이사회는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업무 추진계획"을 의결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실시간 계좌이체용 PG시스템을 구축하였고 PG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규약과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2000년 12월 해당 업무를 본격 실시하였다.

2001년 7월에는 PG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bankpay.or.kr)를 개설하였고 8월에는 서비스 명칭을 BANKPAY(뱅크페이)로 정하고 11월에는 심벌마크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7월과 2004년 3월에는 신용카드와 K-CASH를 새로운 결제서비스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K-CASH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미미하여 중단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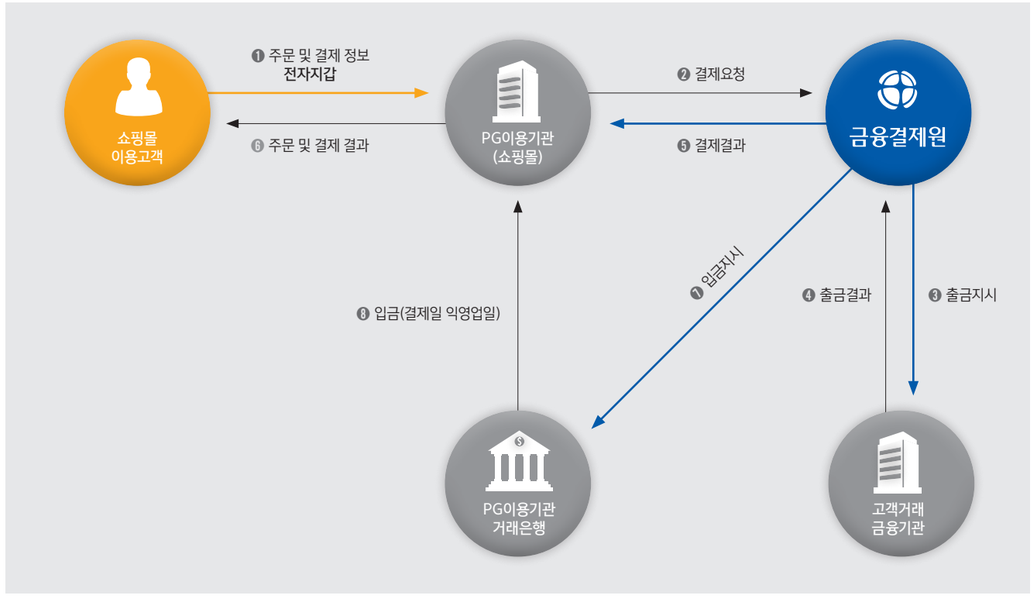
PG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전자정부사업과 PG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2001년 3월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서비스, 2002년 11월 시 · 군 · 구 행정정보화사업, 2003년 7월 대법원의 등기인터넷서비스와 연계되면서 PG업무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2년 5월에 도입된 공공기관용 수수료 체계는 공공기관의 PG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일반기관도 2005년 7월 국내 최대 인터넷경매업체인 옥션이 이용을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해 11번가, 인터파크 등과 같은 이용기관(온라인쇼핑몰)은 물론 항공사, 보험사, 공제조합 등 다양한 기관이 PG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PG서비스 이용기관의 모집 및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당초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직접 모집하던 방식에서 2004년 12월부터는 PG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PG사와 금융결제원 간의 제휴계약을 통해 제휴 PG사가 이용기관을 모집 · 관리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중 · 소형 이용기관까지 PG서비스 이용을 확장할 수 있었다. 2016년 6월 현재 이니시스, KCP 등 22개사가 제휴 PG사로 참여하고 있다.

PG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발전이 이어졌다. 2006년 7월 IPTV 기반의 TV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08년 7월에는 PG서비스 결제대금 실시간 입금방식을 추가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모바일거래 증가에 맞춰 스마트폰용 PG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2년 5월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서비스도 실시하였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의 확산으로 결제 편의성과 보안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결제정보를 등록한 후 결제 시 이를 활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4년 6월에는 휴대폰 추가인증을 실시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실시간 환불절차를 도입하였고 2016년 7월에는 간편결제를 스마트폰번호 기반으로 개선하여 PG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서비스 절차



업무내용

PG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16개 은행을 포함하여 총 38개로 결제대금의 입출금을 담당하고 이용기관 관리 등의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한다. PG서비스 이용기관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기관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반기관으로, 이용방식에 따라 직접이용기관과 제휴 PG사를 통한 간접이용기관으로 구분된다. 2016년 6월 현재 약 22만개가 있다.

PG서비스 이용고객은 인터넷(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고객이면 개인은 물론 법인도 이용 가능하며 결

제 시에는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및 예금주 실명번호를 기본으로 하되 결제방법이나 이용기관 및 고객 유형에 따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 OTP와 같은 보안매체를 필요로 하기도 하며, 이용기관별 출금한도를 설정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PG서비스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되고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며 이용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다. 2015년 중 PG서비스는 일평균 12만 6천건, 46억원이 이용되어 실시간 계좌이체 PG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핀테크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실시간 계좌이체 이용율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PG 업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 · 발전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 건수	39,719	37,585	39,208	42,701	46,118
이용 금액	14,481	15,192	16,160	16,709	16,911
수수료수입	125	125	131	131	131

현금카드결제

개요

현금카드결제(Cashcard Payment)업무란 CD/ATM에서 현금인출 등을 위해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마트, 백화점 등 현금카드가맹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직불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VAN사와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결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 처리하는 업무이다.

현금카드결제서비스는 IC카드를 사용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며,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카드가맹점은 1개의 거래은행과 가맹함으로써 국내 전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지급카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가맹점수수료를 이용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 우리나라 지급카드 시장은 신용카드가 지급카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향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 사회적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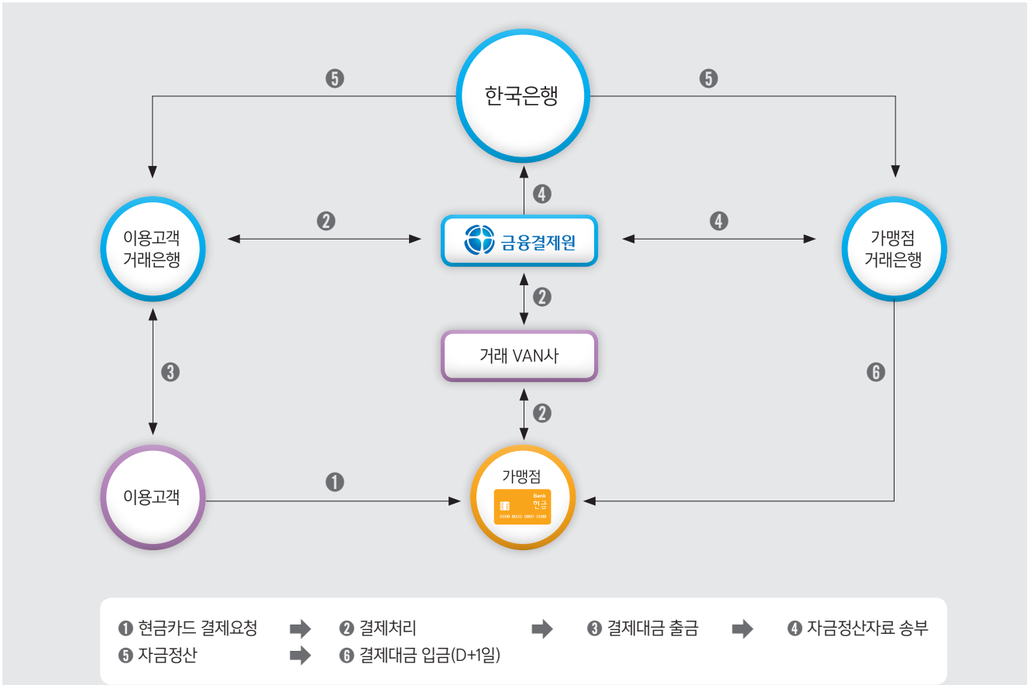
이에 정책당국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직불형 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응, 현금카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금융기관의 니즈가 결합, 현금카드결제시스템의 구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정책당국과 금융기관, VAN사, 가맹점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1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본격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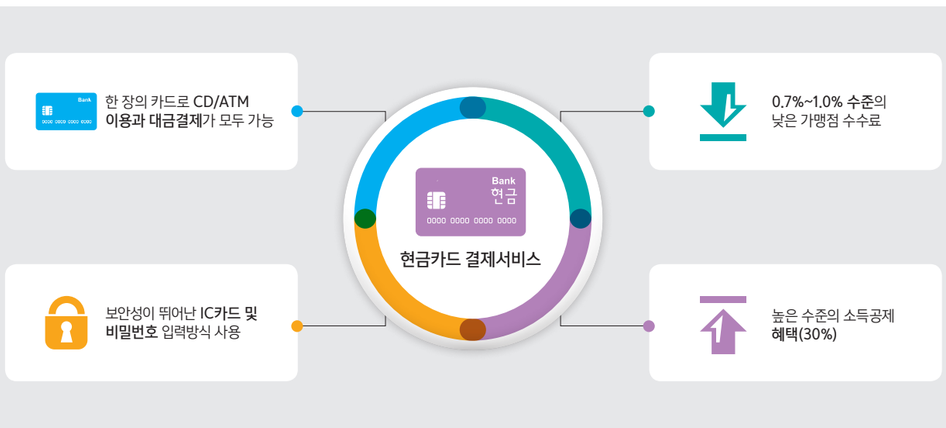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8개 은행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업무처리절차, 규약,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VAN사와 금융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 11월 전국 125개 이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현금카드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현금카드결제서비스는 25개 금융기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절차



현금카드 결제서비스의 장점



관이 참가하고, 국내 모든 VAN사가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전국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업무내용

현금카드결제업무는 크게 결제서비스와 결제서비스를 보조하는 부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결제서비스는 현금카드 소지고객이 현금카드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결제업무 본연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부가서비스는 고객과 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보조적으로 제공되는 결제결과 확인 및 취소서비스, 계좌잔액 조회서비스를 의미한다. 현금카드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365일이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대금결제를 요청하면 카드단말기에 삽입된 IC카드로부터 생성된 결제정보가 VAN사와 금융결제원을 경유, 금융기관으로 전달되고, 고객 통장에서 출금 처리된 결과가 다시 카드단말기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업무가 처리된다.

현금카드결제업무는 실시 초기인 2013년 약 25만건, 약 300억원의 처리실적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약 225만건, 약 2,000억원의 처리 실적을 달성, 비약적인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 업무는 가맹점의 지속적 확대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향후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금융

스마트폰뱅킹

개요

스마트폰뱅킹은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거래은행의 뱅킹앱을 설치하여 자금이체, 납부, 조회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뱅킹서비스이다. 2008년 이후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은행은 스마트폰 OS별로 뱅킹서비스를 각자 개발하는데 따른 중복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 2009년 3월 금융결제원과 워킹그룹을 구성,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정보화사업의 하나로 스마트폰뱅킹서비스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부터 은행권 스마트폰뱅킹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탁받아 고객과 은행 간 뱅킹거래를 중계하는 은행 공동의 스마트폰뱅킹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에 2010년 4월 윈도우즈 모바일OS를 사용하는 옴니아폰을 시작으로 5월에는 아이폰, 9월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스마트폰뱅킹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 블랙베리, 2012년 4월에는 바다 기반에서도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다수가 점차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 집중되면서 사용자가 적은 윈도우즈 모바일과 바다 기반 스마트폰뱅킹서비스는 2013년 12월, 2014년 12월에 각각 중단되었다.

업무내용

금융결제원은 은행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뱅킹용 앱 개발 및 거래중계를 처리하고 있다. 참가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신규 모바일OS에 적용할 뱅킹앱 개발을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은 앱을 개발하여 요청은행과 테스트 및 앱 점검 후 해당 OS별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한다. 그리고 이 앱을 통해 요청된 고객의 이체, 조회 등 뱅킹거래를 참가은행으로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폰뱅킹 중계처리 건수는 2015년 기준 약 5억 6,000만건이며, 대다수 은행이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위하여 개별 제공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중계처리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스마트폰지급결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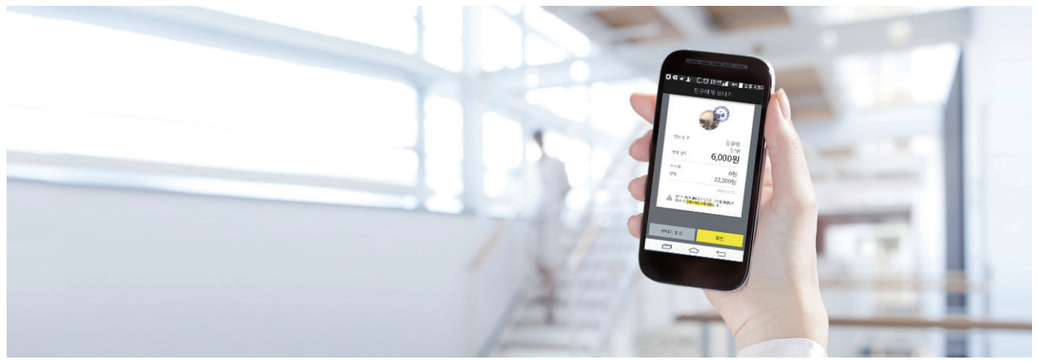
BankWallet 스마트폰지급결제는 국내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모바일지갑(뱅크월렛) 앱서비스로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뱅크월렛 앱을 설치하고 은행 공동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를 발급받아 간편송금,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및 다양한 금융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근거리무선통신 기술 중의 하나인 NFC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기반 비접촉식 결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권에서는 모바일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결제수단의 개발 및 은행 중심의 모바일결제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계좌기반 소액결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참가은행은 2011년 3월 모바일업무 공동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체인 모바일금융협의회 내에 실무작업반을 구성, 은행 공동의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사업계획안을 도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한편 서비스 브랜드명을 “뱅크월렛(모바일지갑)”과 “뱅크머니(모바일머니)”로 정하고, 2012년 12월 특허청에 서비스 상표를 출원(2013년 12월 등록)하였다.

뱅크월렛서비스는 2012년 11월 SKT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3년 3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는 KT고객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SNS



플랫폼사업자인 (주)카카오와 제휴, 카톡 친구계정을 연동한 뱅크월렛 카카오서비스도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1회성 바코드를 부여받아 오프라인가맹점에 제시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뱅크월렛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간편해진 휴대폰번호 기반 송금 · 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업무내용

스마트폰지급결제업무는 뱅크머니 발급 · 충전서비스, 송금서비스, 결제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발급서비스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뱅크월렛앱을 구동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거래은행 계좌정보와 뱅크머니 이용 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PIN)를 등록, 뱅크머니를 발급받는 서비스이다. 뱅크머니는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휴대폰번호를 기준으로 1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거래내역 정산이 완료되면 즉시 해지도 가능하다. 충전서비스는 고객이 뱅크머니 발급 시 등록한 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하여 뱅크머니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본인계좌에서 충전된 금액 또한 언제든지 계좌로 즉시 환불할 수 있다.
송금서비스는 앱에 발급받은 뱅크머니를 이용하여 개인 간(P2P) 주고 받기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를 선택(입력도 가능) 또는 카톡 친구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뱅크머니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결제서비스는 뱅크머니가 충전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코드나 비밀번호만으로 편의점, 쇼핑몰 등 온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후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2016년 6월 현재 약 2만개의 전국 편의점(GS25 제외)에서 바코드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 모바일 쇼핑몰은 점차 확대 중에 있다.

금융앱스토어

개요

금융 app STORE 금융앱스토어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앱을 보급하고자 참가은행이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는 금융앱 전용마켓이다.
금융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금융앱은 실제 참가은행이 직접 개발하여 등록한 앱이기 때문에 앱 위 · 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고, 국내 모든 은행의 금융앱을 한 번에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안전하고 편리한 대고객 유통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앱스토어업무는 2012년 4월 "금융앱스토어 구축 기본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를 거쳐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내용

금융앱스토어업무는 금융 앱 검수 및 유통 관련 부가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앱 검수는 은행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개발한 금융앱을 금융앱스토어에 등록하기 전 앱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유통 관련 부가업무는 신규 OS 및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된 경우 해당 앱의 작동 이상유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앱스토어를 이용한 고객의 앱 설치 이용건수는 2015년 기준 약 6만 5,000건으로 고객의 인지도가 높은 구글Play, 애플앱스토어에서도 금융앱 이용이 가능하여 금융앱스토어 이용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04
금융정보업무

1. 금융정보중계업무
2. 자동이체통합관리업무
3. 대외망 접속업무
4. 외환 · 국제업무
5. 금융기관공동 전산업무

금융정보업무는 각종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보중계업무를 비롯하여 자동이체 통합관리업무, 대외망 접속업무, 외환 · 국제업무, 금융기관공동 전산업무 등이 있다.

금융정보중계업무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중계업무

개요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중계업무는 위 · 변조 신분증으로 금융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대포통장, 금융사기 등) 해결에 일조하고자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발급기관의 등록정보와 실시간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업무이다. 2013년 10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는 금융결제원에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중계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4년 1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업무를 실시하였고, 이듬해 7월에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동 중계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별 개별서비스(민원24, efine, hikorea 등)에 직접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업무 비효율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6년 현재 16개 전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협약체결
김종화 前 원장(제일 왼쪽)
2014. 2. 25.

체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서민금융기관, 대신증권 등 11개 금융투자회사, 삼성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 한국증권 금융 등 38개 기관이 이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업무내용

금융기관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스캔하여 신분증 진위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한 정보를 중계기관인 금융결제원 앞으로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은 동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전송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수신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 앞으로 전송한다.
이후 신분증 발급기관은 수신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 그 결과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전송함으로써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 결과를 통지한다.

최근 2년간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중계업무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
주민등록증	9,511,636	33,386,877
운전면허증	-	15,876,385

예금압류 관련정보 중계업무

개요

동 업무는 압류요청기관이 조세 · 벌금 · 과태료 · 공공요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우편(등기) 송부하는 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압류요청기관과 은행 간 관련정보를 중계하는 업무이다.
이는 은행의 예금압류 관련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2008년 은행의 전산화 요구에 따라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중계업무를 시작하였다.
2016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업무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등 17개 금융기관도 참가하고 있다.
업무 참여방식은 금융결제원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과 신용평가회사를 경유하는 방식이 있다. 금융결제원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의 경우 금융결제원과 전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등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 같은 전산 역량을 보유한 기관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회사를 경유하는 방식은 내부 전산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업무내용

동 업무는 압류요청기관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예금압류 관련 정보를 은행으로 전달하면 은행은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수신응답내역을 금융결제원을 거쳐 압류요청기관으로 전달한다. 파일 전송은 영업일에 1회 전송된다.

최근 5년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 중계업무 전송 실적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782,515	25,309,470	22,707,485	17,908,062	21,391,804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 중계업무

개요

동 업무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창업자가 중소기업청(재택창업시스템) 및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중계하는 업무이다.
2008년 4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가 참가하여 재택창업TF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금융결제원으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관련 협조를 요청, 2010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증명서 발급을 확대, 시행하였다.
2016년 현재 농협은행을 비롯하여 15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업무내용

동 업무는 창업자가 재택창업시스템 및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은 은행으로 발급요청 정보 및 수수료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 증명서발급 결과를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이 해당 발급결과를 재택창업시스템 및 인터넷등기소로 전송하면 창업자는 온라인으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 중계업무는 영업일 09:00~18:00까지 이용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금압류 관련정보 중계업무 이용 현황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235	3,088	3,347	4,675	5,179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업무

개요

동 업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피감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은행조회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편으로 관련서류의 수 · 발신이 이루어져 인적 · 물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업무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2012년부터 금융결제원, 은행, 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실무책임자회의를 통해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중계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3년 제1차 전자금융위원회의 동 업무 추진 의결을 통해 이듬해 1월부터 해당 업무를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은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인증업무기준3402」*에 따른 시스템 인증을 받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농협은행을 비롯하여 16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용기관은 감사인 428개, 피감기업은 약 3만 6,400개(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임의감사 실시법인)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주택법령에 의한 단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으로도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업무내용

동 업무는 피감기업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udit.kftc.or.kr)에서 은행조회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면 담당회계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은행으로 전송한

* 인증업무기준3402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인증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통제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증 기준

다. 은행은 은행조회서를 발급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고 담당회계사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내역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은행조회서 발급 요청 및 발급요청서 확인은 365일 08:00~22:00까지 가능하며 은행조회서 열람 및 출력은 365일 00:30~23:50까지 가능하다. 은행조회서 발급내역은 영업일 기준으로 1회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된다.

최근 2년간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업무 이용 현황 (단위 : 건)

2014	2015
191,889	279,774

채권정보중계업무

국민주택채권정보 중계업무

- 개요

채권정보중계업무 중 국민주택채권정보 중계업무는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이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과 면허권자인 대법원(등기소)에 동 채권의 매입 및 사용정보를 중계하는 업무이다.

동 업무시스템은 2005년 5월 18일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채권의 취급은행을 국민은행 단독취급에서 농협 및 우리은행으로 추가 ·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수 은행 및 면허권자와의 정보 중계를 위해 구축되었다. 동 서비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국민주택채권정보 중계업무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 업무내용

소유권 이전 및 인 · 허가를 위해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채권판매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채권판매은행은 채권발행정보를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을 경유, 대법원(등기소)에 전송한다. 이후 채권을 매입한 민원인이 해당관청에 등기 또는 인 · 허가를 요청하면 해당 관청은 대법원(등기소)을 통해 채권발행정보를 확인한 후 등기 또는 인 · 허가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해당관청에서 등기 또는 인 · 허가를 승인하면 해당 채권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채권사용정보를 금융결제원을 경유, 채권판매은행에 전송하고 민원인은 등기 또는 인 · 허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정보 중계업무 이용 현황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3,621,938	3,396,627	3,667,196	4,301,480	5,238,922

지방채권정보 중계업무

- 개요

지방채는 「지방공기업법」(제19조) 및 「시 · 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 인 · 허가 취득, 시 · 도와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방채권정보 중계업무는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은행과 조달청 간 채권의 매입 및 사용정보를 중계하는 업무이다.

2009년 5월 행정안전부는 원격지 민원인의 지방채 발급 시의 불편해소와 비용 절감을 위해 동 업무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7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6년 현재 지방채권정보 중계업무에는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 업무내용

해당관청 담당관은 계약서 초안에 기초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사이트에 채권매입을 위한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민원인(계약업체 등)은 정보를 수신하고 은행, 채권종류 등을 입력하여 채권매입을 신청한다. 조달청은 금융결제원을 경유, 채권발급은행 앞으로 발급 관련 기초정보를 전송하면 해당은행은 가상계좌 및 채권매입금액을 다시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나라장터사이트로 전송한다. 은행에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한 민원인은 해당은행 앞 채권매입금액을 입금하고, 입금받은 해당은행은 매입필증을 금융결제원을 경유, 조달청으로 전송한다. 해당관청 담당관은 채권매입을 확인하고 채권매입 확인결과를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해당은행으로 전송한다.

최근 5년간 지방채권정보 중계업무 이용 현황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5,160	30,467	28,269	32,260	38,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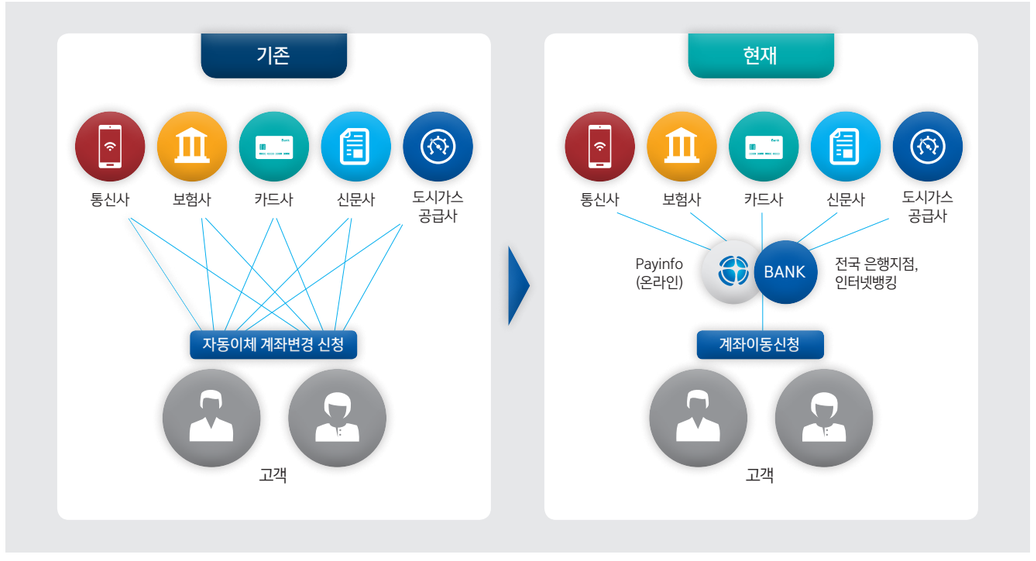
자동이체통합관리업무

자동이체등록정보관리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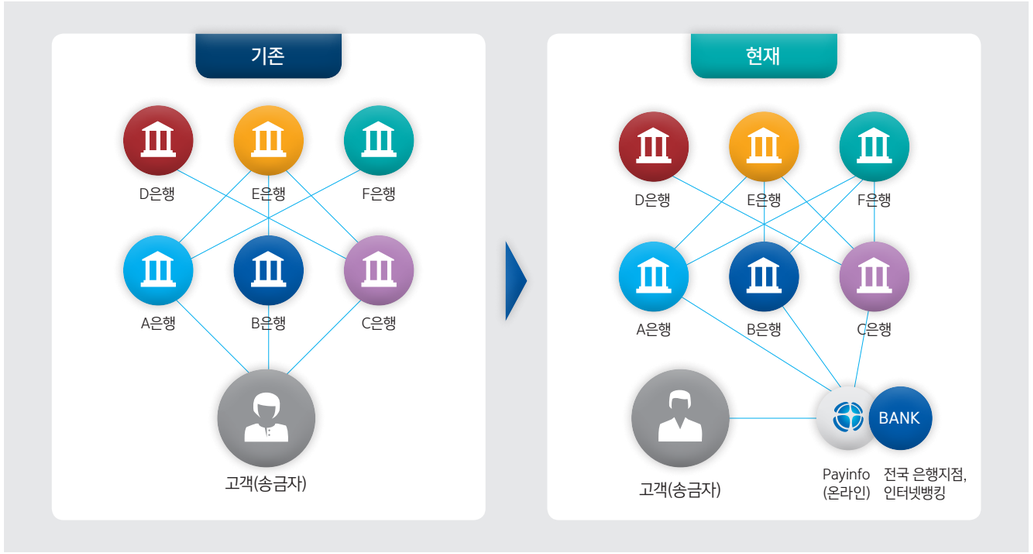
개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자동이체등록정보관리업무란 자동이체 이용고객이 본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자동납부 통합관리서비스의 효과



자동송금 통합관리서비스의 효과



일괄조회하고, 해지 또는 변경하거나 자동납부 신청 시 이용기관에 제출한 동의자료(이하 동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지로, CMS, 펌뱅킹 및 납부자/타행 간 자동이체, 계좌 간 자동이체 등)를 금융결제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집적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금융결제원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이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 출금계좌에 자동이체의 등록 · 해지가 발생할 때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를 송신하고 있으며, 고객은 요금청구기관에 별도 접촉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www.payinfo.or.kr)등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업무내용

자동이체등록정보관리업무에서 제공하는 주요업무로는 자동이체 조회, 해지 및 변경이 있다.

자동이체 조회는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자동이체 해지는 고객으로부터 해지요청을 접수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기관에 전달, 고객의 자동이체를 해지 처리하는 업무이다.

자동이체 변경은 고객의 출금계좌변경 요청을 접수하여 변경 전·후 금융기관과 이용기관 간 관련정보를 중계하여 고객의 자동이체 출금계좌에 대한 변경을 처리하는 업무로 계좌이동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업무이다.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 흐름도



자동이체 해지 서비스 흐름도



자동이체동의자료관리업무

개요

자동이체동의자료관리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위탁한 업무로 2015년 10월부터 실시하였다.

금융결제원은 납부자가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동의자료를 전달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동의자료를 일괄 수취,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내용

자동이체동의자료관리업무는 크게 동의자료 수신, 동의자료 대사 및 동의자료 보관으로 구분된다.

동의자료 수신은 이용기관이 납부자들로부터 수취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 흐름도



한 동의자료를 중계기관(지로, CMS, 펌VAN, 펌재판매기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업무이며, 동의자료 대사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정보와 이용기관이 송신한 동의자료를 매핑(mapping)하여 등록된 동의자료의 전달여부를 대사하는 업무이다. 동의자료 보관은 이용기관이 전달한 동의자료를 변경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업무이다.

펌뱅킹중계업무

개요

펌뱅킹중계업무는 금융기관과 이용기관 간 개별 계약에 따른 펌뱅킹 업무 중 자동이체등록 및 해지정보를 중계하는 업무로 2015년 10월부터 실시하였다.
펌뱅킹 이용기관과 금융기관은 자동이체통합관리업무가 실시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록 및 해지정보를 상호 간 중계할 수 있는 공동의 중계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결제원에서 동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 내용

펌뱅킹중계업무는 금융기관과 펌뱅킹 이용기관 간의 펌뱅킹 자동이체 해지내역 및 출금계좌 변경요청 내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정보를 중계하는 업무와 펌뱅킹 이용기관으로부터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수신하여 보관하는 업무로 크게 구분된다.
그 밖에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신규 · 해지 요청을 금융기관 앞으로 송신하여 이용기관과 금융기관 간 자동이체 등록을 중계하는 "펌 직접접속 중계업무"가 있다. 이 업무는 현재 비씨카드,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 7개 이용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대외망접속업무

경찰망업무

금융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의 접속은 1991년 경찰청의 "대범죄전쟁 추진대책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경찰망업무는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특정계좌에 대하여 부정사용범이 예금인출을 시도하면 해당은행은 관련 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경찰청에 온라인 전송하고, 경찰청은 자체 전산망으로 인출시도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연락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은 1992년 3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업무 위탁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2009년에 신협, 산림조합중앙회가 참가하였고, 2010년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가하여 2016년 현재 21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외망접속업무 전송 실적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9,170	6,227	5,399	10,755	8,971

무역자동화망접속업무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의 접속업무는 1990년대 초반 해외교역량이 늘어나면서 무역업체와 은행 간에 수수되는 제반서류가 증가, 이에 대한 처리시간 및 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역자동화망과의 접속추진은 1991년 7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접속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같은 해 4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탁받았으며 1993년 5월 "금융전산망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의 접속시행계획"에 의하여 전산망 접속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4년 1월부터 본격 접속이 실시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신용장 통지 및 개설, 수출입승인 업무에 적용되었다.
이후 대상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계산서 · 입출금 통지업무, 수출입관련 대금결제업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참가기관은 2016년 6월 현재 17개 기관으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무역자동화망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일 09:30~16:00까지 운영되었으나 1995년 6월 09:30~19:30까지로 확대되었다. 이후 관세수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업일 및 토요일 23:00까지로 이용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은행영업시간 조정에 따라 개시시간 역시 09:00로 조기화 되었다. 2013년 3월부터 관세수납업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무역자동화망업무는 영업일 09:00~23:00까지 운영되고 있다.
무역자동화망 접속업무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은 무역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으며, 국제무역거래 관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류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e-L/C공동업무

e-L/C(전자신용장)공동업무란 L/C의 통지, 원본 보관, 매입한도관리 등을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용장 관리업무이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VAN/EDI 기반의 폐쇄적인 무역자동화망을 e-Trade Platform 체제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7월 민관 합동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 발족

되어 제1차 회의에서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 동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전자무역촉진종합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2004년 10월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무역협회와 같은 무역 유관기관 간 협의에서 전자적 수출입대금결제체제 구축을 위한 e-L/C관리시스템 구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추진계획이 2005년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작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전산시스템은 정부예산으로 구축되었으며 2005년 9월 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1단계 업무인 e-L/C 한도관리시스템 구축, e-L/C 등록 및 매입신청 관리 업무가 최초 실시되었다.
1단계 업무실시 이후 e-L/C 양도내역 관리 등 신용장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한 2단계 업무가 2007년 2월에 실시되었으며, 2008년 3월에는 전자방식 신용장 매입 및 외국계은행 간접접속을 위한 3단계 업무가 실시되었다.
참가기관은 2016년 6월 현재 18개 기관으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및 일부 외국계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은 은행영업일 00:30~23:30까지 운영되고 있다.

차액결제시스템

은행 간 차액결제시스템은 지급결제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신회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금융기관 상호 간의 자금거래를 차액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간 차액결제시스템 (2016년 6월 기준)

구 분	업무명	지정결제시각
어음교환	어음정보교환 및 온누리상품권	11:00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
	내국신용장(외화)	〃
	전자채권	〃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	〃
	전자어음	〃
	기업구매자금 및 내국신용장(원화)	〃
금융공동망	CD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지방은행공동망	〃
	전자화폐공동망	〃
	PG	〃
	전자금융공동망	〃
	직불카드공동망	〃
	국가간공동망	〃
지 로	지로	〃
e 사 업	CMS공동망	〃

은행 간 차액결제시스템은 금융공동망의 구축과 함께 기존 팩시밀리로 처리하던 차액결제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네트워크를 연결, 전산화하게 되었다.
1987년 7월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차액결제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차액결제 자료의 전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2016년 6월 현재 차액결제시스템으로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업무는 어음정보교환 및 온누리상품권업무 등 총 17개에 달하고 있다.

외환 · 국제업무

CLS공동망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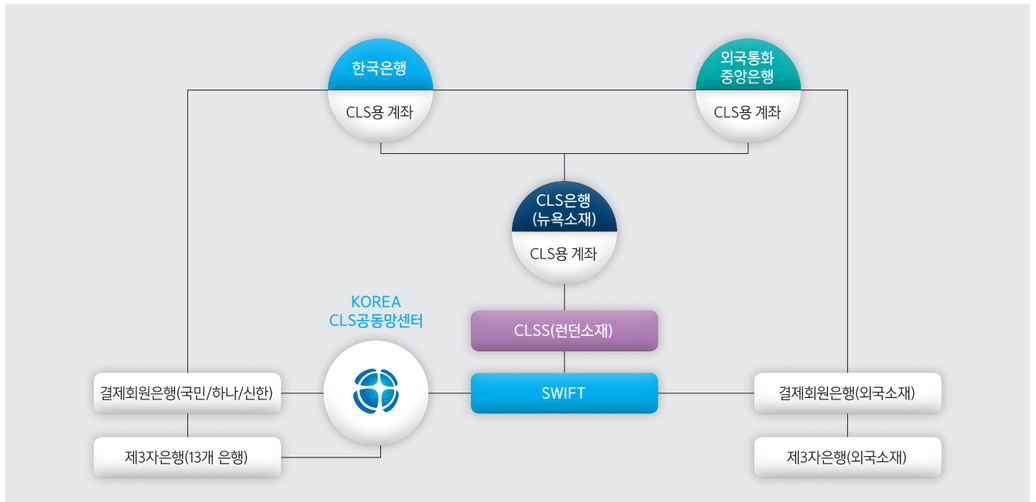
개요

CLS공동망업무는 국내 금융기관과 국제 외환거래 동시결제서비스 전문은행인 CLS은행을 상호 연결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외환결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수취·지급통화에 대한 동시결제를 제공하는 업무로 2004년 12월 본격 실시되었다.
CLS공동망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CLS은행에 통화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결제회원(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과 결제회원에 외환거래 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3자 기관(17개 국내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추진 경과

전통적인 외환결제 방식의 경우 국가간 시차로 인해 먼저 매도통화를 지급하고도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등으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바, 동시결제 방식인 CLS결제방식의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제거 및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원화의 CLS은행 결제통화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화가 결제통화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이 CLS은행에 결제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시 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이 결제회원을 희망하였고 나머지 국내 은행은 제3자 기관으로 CLS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은행은 전산투자비용 절감 및 업무수행 편의를 위해 CLS은행과의 결제업무처리 전산시스템을 공동망 형태로 구축하기를 희

CLS 참가기관 구성도



망하였다.
이에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동시결제를 위한 CLS공동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2003년 6월 "외환동시결제를 위한 CLS공동망 구축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축사업자로 금융결제원을 지정, CLS공동망 구축을 위탁하였다.
금융결제원은 2003년 7월 CLS구축전담반을 구성하여 CLS공동망 구축작업에 착수, "CLS공동망 구축 기본계획(안)" 및 "CLS공동망업무 회비분담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안은 2003년 10월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CLS공동망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며, 12월부터는 결제회원인 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CLS서비스를 우선 실시하였다. 제3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2005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
2008년 2월에는 신한은행이 CLS은행의 승인을 받아 제3자 기관에서 결제회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결제회원은 3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금융결제원은 도입 초기부터 사용하던 해외 CLS서비스용 패키지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을 실시, 2009년 7월 참가기관에 적용하였다. 또한 CLS은행에서 CLS서비스 접속 아키텍처 교체 및 전문체계 변경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CLS공동망시스템을 이에 맞게 개편하였으며 2015년 11월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CLS공동망업무에는 15개 국내 은행은 물론 국내 외국은행지점(모건스탠리은행, 대화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이 특별참가하여 2016년 6월 현재 20개 금융기관이 동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업무내용

CLS공동망의 주된 기능은 CLS은행과 국내 참가기관을 연계하여 참가기관의 외환매매거래 제출 및 자금결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기관은 외환매매거래체결 후 거래정보를 CLS공동망으로 전송하며, CLS공동망은 이 거래정보를 검증 · 기록한 후 CLS은행에 전송한다. 또한 CLS은행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자금결제일에 통화별 차액결제자료를 CLS공동망으로 송신, CLS공동망에서는 이 수신자료 및 DB에 저장된 거래송신 자료를 토대로 각종 결제정보를 생성하여 참가기관에 통지한다.
CLS공동망을 통해 처리 가능한 외환거래에는 현물환, 선물환 및 스왑이 있으며, 처리 가능한 결제통화는 14개 통화(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 한국 원, 홍콩 달러, 뉴질랜드 달러)이다. CLS공동망은 토 · 일요일, 1월 1일 및 12월 25일을 제외한 여타 일자에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06:45~22:30까지이다. 다만, 동절기의 개시시각은 07:45부터이다.

국가간 ATM업무

개요

국가간 ATM업무는 각 국가의 ATM망을 연계하여 자국민이 본인 계좌의 카드로 해외의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하거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2000년대 이르러 국가간 인적교류 및 외국체류 인구 증가로 현지화폐 인출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대부분의 국내 현금인출용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2009년 2월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글로벌카드(비자/마스터 등)를 이용한 해외 현지화폐 인출서비스를 실시, 고객들의 불편 해소와 과다한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결제원에 국가간 ATM업무 추진을 위탁하였다.

업무내용

국가간 ATM업무는 개설업무와 취급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설업무는 국내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제휴 ATM에서 실시간으로 국내카드와 연결된 국내계좌의 출금가능잔액을 확인하거나 해당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 해외국가의 현지통화를 출금하는 업무이다. 취급업무는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국내의 제휴ATM에서 출금가능 잔액을 조회하거나 한국 원화를 출금하는 업무이다.
국가간 ATM업무는 양 국가간 제휴된 ATM에서 자정 전후 약 10분간의 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한 365일 24시간 제공되며, 국가간 결제는 미국달러화(USD)를 결제통화로 양 국가의 공통영업일에 차액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국내은행 간 결제는 결제은행과 참가은행 간 원화 차액결제 방식으로 여타 국내 금융공동망의 차액결제 방식과 동일하다. 국가간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양 국가의 공휴일을 감안, 최대 결제금액 이상의 은행보증서를 상호기관 앞으로 발행 및 교환하고 있으며, 국내은행 간 원화결제리스크는 한국은행의 "순채무한도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양국 간 서비스 수수료는 현금인출 건당 $1, 잔액조회 $0.18[APN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0.25(미국)로 정해져 있으며 고객수수료의 경우 참가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거래금액에 대한 국외결제를 담당하는 결제은행은 환전 및 송금 대가로 거래금액의 0.1%를 결제은행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ExK 서포터즈 모집 홍보 포스터
2016. 6.

국가간 송금업무

개요

국가간 송금업무는 국가간 ATM업무를 통해 연계된 공동망을 활용하여 기존 해외 송금서비스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2010년대 이르러 세계적인 송금규모 증가로 기존 송금서비스에 대한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저개발국가 이주노동자의 본국송금 비용 감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고, 아울러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소액송금 수수료를 거래액의 5% 이하로 감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주도하에 금융결제원이 사원은행과 함께 국가간 송금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업무내용

국가간 송금업무는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당발(Outbound)서비스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타발(Inbound)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에는 베트남과의 당발서비스만 실시 중에 있다.

국가간 송금업무 이용가능 지역 및 은행

대상국가	베트남
송금가능 해외은행	베트남(Vietin Bank, GP Bank, AB Bank)
송금가능 국내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1회 송금한도는 5,000달러 이하이며, 양국 간 거래통화 및 결제통화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져 있다. 달러 송금 후 필요 시 수취은행(지급은행)이 해당국 통화로 환전하여 입금할 수 있다.

이 업무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외화송금이 가능하며, 송금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수취인 성명을 확인 후 송금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서비스 이용채널은 은행창구,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참가은행별 제공 가능한 채널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은 국가간 ATM업무와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참가은행에서 은행창구에 한하여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은행 영업시간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

개요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는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금융기관 고객에게 외화자금을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2010년 10월 본격 실시되었다.

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는 외화자금을 타행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의뢰기관, 타행으로부터 송금 의뢰된 자금을 자행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기관 그리고 의뢰기관과 지급기관 간 외화자금결제를 담당하는 결제은행으로 구분된다. 금융결제원은 각 참가기관을 연결하는 중계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 경과

2010년대 이전까지 기존 외화송금방식으로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요청한 외화자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송금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송금 전 수취인 계좌의 존재 및 입금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2008년 6월 5개 사원은행이 기존 외화송금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결제원에 금융공동망 방식의 외화송금업무 추진을 요청하였다.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차례의 실무적 논의를 거쳐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이 기본계획(안)이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9년 10월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시스템 구축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는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 「금융결제원 회비분담기준」을 제 ·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다.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 실시 당시 참가 금융기관은 8개에 불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참가로 2016년 6월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과 4개 국내 외국은행지점 등 20개 금융기관이 본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업무내용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는 송금업무와 조회업무로 크게 구분된다. 송금업무는 고객이 의뢰기관의 취급점포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관 고객의 수취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송금과 고객이 의뢰기관의 취급점포를 이용하여 지급기관의 수취인 앞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수취인송금이 있다.

조회업무에는 계좌송금 전 의뢰기관에서 수취계좌의 입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취계좌조회, 송금한 거래의 결과를 조회하는 거래확인조회 그리고 참가기관에서 결제은행에 있는 자행 결제계좌의 통화별 포지션 상태를 조회하는 포지션 상태조회가 있다.

국내 외화자금이체 중계업무를 통해 송금이 가능한 통화는 USD, JPY, EURO 등 21개 통화이다. 송금업무 운영시간대는 영업일 09:00~16:30까지이며, 조회업무는 17:00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공동 전산업무

주택청약공동업무

도입 배경

"주택청약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공급제도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1978년에 도입되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자는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청약자는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한 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입주자(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저축 취급업무는 한국주택은행(현재의 국민은행)이 전담하였으나 1999년에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다수 은행에서 입주자저축 계좌업무 및 청약신청, 입주자선정, 당첨자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되어 은행 공동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청약공동업무가 실시되었다.

추진경과

국토교통부는 1999년 1월 입주자저축을 모든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의 "청약예금 취급기관 다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4월 관련 설명회

차세대인증실 과장대우 | 이제은

판교 신도시 주택청약업무의 추억



2006년 초, 우리 원 주택청약업무 역사상 최고의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청약 건이 있었다. 바로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인터넷 청약이다. 당시 뉴스에는 연일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랐고,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눌 정도였다. 판교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신도시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계획되었고,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인근 분당신도시보다 새 아파트라는 장점을 지녀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금토천, 운중천, 청계산과 광교산이 둘러싸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여 판교 청약 당첨은 소위 "로또" 당첨으로도 불리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접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약자들이 일시에 몰려 전산망이 다운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 통장 종류와 자격, 순위, 거주 지역별로 접수일을 달리하였고, 기한을 넘기거나 자격요건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청약은 무효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원 주택청약팀(2개로 팀이 분리되기 전이었다)을 비롯한 개발 · 운영팀 담당자들은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apt2you 사이트의 각종 안내 문구와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이용 고객이 청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모의 청약 메뉴를 신설하는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무주택기간, 청약자의 나이,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업무 담당자가 봐도 복잡한 청약자격 문의 등으로 민원전화는 폭주하였고, 업무시간 중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려면 전화선을 잠시 빼두고 다녀와야 할 정도였다. 또한 자정을 기하여 전날 청약 경쟁률이 발표되다 보니 그 순간 반영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슴 졸이며 야근을 했고, 당첨 발표 이후 심한 말로 항의하는 민원전화에 상처받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서로를 다독였던 기억도 난다.

지금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판교 신도시 청약 업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엄청난 양의 인터넷 청약을 순조롭게 무사히 처리하면서 고생한 만큼 큰 보람을 느꼈던 값진 경험이었다.

판교 중대형 분양주택 청약 경쟁률

유형	블록	평형	가구수	서울·수도권 1순위 경쟁률	유형	블록	평형	가구수	서울·수도권 1순위 경쟁률
아파트	A2-2 (주공) 서판교	38	111	5.4:1	아파트	A13-1 (현대)서판교	56	7	868.9:1
		45	64	3.9:1			68	3	516.7:1
		58	2	31.0:1		A20-1 (주공)서판교	40	154	28.2:1
		61	2	11.0:1			47	21	62.5:1
	A7-2 (경남) 서판교	38	168	1.5:1		A21-1 (금호) 동판교	38	233	83.6:1
		39	3	52.0:1			43	329	75.6:1
		44	162	9.5:1			57	6	766.0:1
		47	3	56.0:1			57C	2	280.5:1
		57A	3	37.0:1			68	4	339.8:1
		57B	1	59.0:1		A27-1 (대림)동판교	38	90	27.5:1
		58	2	63.5:1			44	153	18.6:1
		70	3	59.3:1		B2-1 (현대)서판교	45	83	83.8:1
	A8-1 (주공) 서판교	38	151	14.0:1	연립	B3-1 (주공) 서판교	54	69	85.8:1
		45(A)	40	14.1:1			46	50	20.1:1
		45(B)	51	13.6:1			47	8	16.0:1
		57	2	86.0:1			47TR	8	100.3:1
		68	2	23.5:1			48	11	19.4:1
		61	2	27.5:1			53	22	22.7:1
	A9-1 (대우) 서판교	39	68	48.3:1			55	8	8.4:1
		44	58	15.6:1			55TR	1	42.0:1
		45	20	30.4:1			56	3	14.7:1
		57	2	250.0:1			56TR	5	123.6:1
		69	1	190.0:1			56.8	2	9.0:1
	A9-2 (대우) 서판교	38	101	49.3:1		B4-1 (대우) 서판교	47	15	18.3:1
		44	125	30.7:1			56	19	16.2:1
		57	2	210.0:1		B6-1 (주공) 서판교	48	29	14.2:1
		69	1	125.0:1			48TR	29	21.5:1
	A10-1 (대우) 서판교	38	48	27.3:1			54TR	13	12.3:1
		43	90	10.7:1			55	46	12.9:1
		56	3	139.0:1			76	47	19.9:1
	A13-1 (현대) 서판교	38	168	74.1:1	임대	A19-1 동판교	41	269	10.1:1
		43	110	56.5:1			48	1	131.0:1
		44	115	100.7:1					

* 출처 :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

에서는 21개 은행이 취급의사를 표명하였고 공동전산시스템의 구축을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0년 2월에 주택청약팀을 신설하는 한편 3월에는 「주택청약공동업무규약」을 제정하였고, 3월 27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산관리지정지관으로 지정받아 주택청약공동업무를 실시하였다. 2002년 1월 부터는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8월에는 대형스크린 및 전산시스템을 갖춘 전산추첨실을 설치하였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선정업무 대행(2009년), 순위확인서 온라인 발급(2010년), 3순위 인터넷 청약(2011년), 임대주택 중복입주자 관리(2012년),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2013년) 등 신규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및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가점제 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청약신청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관련 사항을 검토 · 적용해왔다.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업무내용

주택청약공동업무는 크게 입주자모집공고관리,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당첨자관리 및 입주자저축 계좌관리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관리업무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역을 등록 · 관리하고, 참가은행에 전송하여 청약접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이다. 청약접수업무는 모집공고상의 일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신청을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접수하는 업무이다.

입주자 선정업무는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업무이며, 당첨자관리업무는 당첨자의 입주자저축 계좌관리 및 향후 청약제한사항을 적용하고 부적격당첨자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입주자저축 계좌관리업무는 1인 1계좌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계좌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체 참가은행의 입주자저축 계좌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일괄 관리하여 계좌를 개설, 변경, 해지하는 업무이다.

퇴직연금공동업무

도입 및 경과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 RECORD KEEPING CENTER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이 노후재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중 퇴직금은 이직 과정이나 실직 후에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거나 사업장의 퇴직재원 적립부족으로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후재원으로서 활용되

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의 이직, 퇴직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사업장의 충실한 퇴직금 재원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주목받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던 제도로 1998년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채택된 이후 2005년 1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정식 도입되었다.
금융결제원은 2004년 2월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같은 해 12월 퇴직연금RK(Record Keeping)센터 구축 전담팀을 설치하였다. 2005년 1월 은행연합회 신탁전문위원회에서 은행권 공동기록관리센터로 금융결제원이 지정되고, 같은 해 3월 금융결제원 총회에서 구축 추진계획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12월 1일 운영을 개시하고 같은 달 19일 농협을 비롯한 9개 참가은행을 대상으로 정식 업무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2개 은행 및 1개 증권사가 업무에 추가 참가하였으며, 기존 참가기관의 독자 전산시스템 구축 또는 퇴직연금 사업철수로 인해 그 수가 줄어들어 2016년 6월 말 현재 4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업무내용

금융결제원은 참가은행의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 가입자, 자산운용,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지급 등의 제반 정보를 기록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업무는 크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 · 보관하여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업무와 가입자로부터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상품정보관리, 시산 · 연금계리 업무지원, 수수료관리, 통계관리 등의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 공동코드

도입 및 발전

금융기관 공동코드는 금융기관의 자금결제 및 공동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다. 금융결제원은 공동코드의 제정, 정정, 추가, 삭제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이 개별 증권회사에서 소액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등 지급결제 관련 업무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기관코드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같은 해 7월 공동코드의 기관코드를 2자리에서 3자리로 개편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증권회사 등 154개 기관에 부여된 점별코드는 전국적으로 2만 9,783개에 이른다.

업무내용

공동코드는 기관코드 3자리, 지점코드 3자리, Check-Digit 1자리, 합계 7자리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이 기관코드 부여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은 공동전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은행들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 코드를 부여하게 된다. 공동코드 온라인 업무란 참가기관이 온라인으로 금융결제원에 지점코드 등록 등을 신청하고 금융결제원이 온라인으로 참가기관에 지점코드원장 갱신내역을 전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공동코드 등록업무시간은 영업일 09:00~20:00까지로 운용하고 있다. 다만, 15:00 이후 접수분은 익영업일 접수분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공동코드 조회 업무시간은 영업일 09:00~24:00까지로 정하고 있다.

일괄전송업무

도입내용

일괄전송업무는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 간에 지로, 부도정보, 공동코드, 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및 자금청구 · 반환요청 등의 자료를 일괄전송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파일로 상호 교환하는 온라인 송 · 수신업무이다.
1989년 11월 25일 각행 실무자회의에서 온라인에 의한 "CD공동이용업무의 미완료 및 거래내역자료" 전송방안이 강구되어 일괄전송업무가 추진되었다.
참가기관으로는 일괄전송업무 실시 초기에는 주택은행 외 10개 은행이 참가하였으나 1991년 국민은행 외 13개 은행의 추가를 시작으로 2016년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참가까지 2016년 현재 86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1995년 12월 관련 규약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에 거쳐 업무별, 참가기관별로 TCP/IP 통신방식을 통한 자료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하게 되었다.

업무내용

일괄전송자료는 은행지로 및 CD공동업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급결제 관련시스템의 지속적 증가와 금융결제원 및 참가기관 간 송 · 수신자료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16년 6월 현재 일괄전송 송 · 수신 파일 종류는 1,064개에 이르고 있다.

일괄전송자료내역 (2016년 기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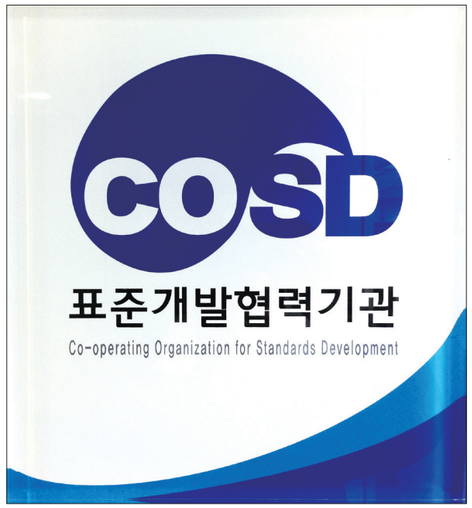
서비스명	업 무 종 류	파일종류
금융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공동코드, 주택청약,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 PG업무, 스마트폰뱅킹, 스마트폰지급결제 등	677
어음교환	부도업무, 자기앞수표, 어음정보,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EDI), 전자수입인지, 온누리상품권 등	149
지 로	일반이체, 자동이체, 대량지급,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자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205
차액결제	한국은행 차액결제	7
기 타	신용카드, 신용카드가맹점정보, 전자공무원증발급카드, 나라사랑카드 등	26
계		1,064

금융표준화

국가 표준화

- 개요

금융결제원은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금융권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COSD)으로서 금융분야의 국가표준을 개발, 관리하고 있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산업계의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고 표준화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은행분과위원회(Subcommittee : SC7)와 금융보안분과위원회(Subcommittee : SC2)의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금융과 관련된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금융권 표준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표준개발협력기관(금융결제연구소)

고 있다.

- 업무내용

주요 업무는 국가표준 제 · 개정, 국가표준 적부 확인, 국가 표준화 관련 조사연구, 표준화 대상 조사, 기술위원회 운영, 금융 분야 표준 정비 등이 있다. 2010년 이후 매년 국가기술표준원과 국가표준화개발사업 협약을 맺어 2015년까지 총 67종의 표준을 정비하였다. 2016년 현재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표준은 약 44종에 달한다.

단체 표준화

- 개요

금융결제원은 2009년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지정한 금융표준 전담기관으로서 각종 금융산업 단체표준을 개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지정한 시험기관으로서 2009년부터 금융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금융장비 등이 금융산업 단체표준에 맞게 제조, 개발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업무내용

주요 업무에는 금융산업 단체표준화 대상발굴을 위한 유관기관들 대상의 수요조사, 표준안 개발, 워킹그룹 운영, 표준적합성 시험, 시험기준 및 지침서 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 2009년 이후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금융 MicroSD 표준 등 약 15종의 표준을 제 · 개정하였으며 표준적합성 시험은 약 420건을 수행하였다.

05

IT업무

1. IT기획
2. IT개발
3. 시스템 운영

국내 대표적 지급결제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의 IT부문 발전과정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IT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약 250여명의 IT인력이 132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500여대의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IT기획

IT거버넌스 및 아키텍처 통할

IT거버넌스 및 아키텍처 관리기반 확보 (2006~2009년)

- 개요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역삼-분당센터 간 분산 운영형 최적화시스템 구축 및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시스템 정렬(Alignment)과 통합(Integration), 확장성 강화 등을 위해 IT자원의 전사적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05년 7월부터 약 9개월간 외부 전문기관과 금융결제원 전담 조직에서 EA(Enterprise Architecture) 계획을 수립하였다.

- 전사적 통합관리체계(EA) 구축

금융결제원은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목표와 15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중요도와 시급성, 추진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개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 추진성과

금융결제원은 2006년 4월 EA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IT방향성 및 원칙을 정의하고, IT의 To-Be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EA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분당센터 전산시스템 세부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에는 IT BCP 체계 구축 및 「IT BCP 운영 관리 지침」 제정을 통해 분산 운영형 최적화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IT업무관련

전사적 통합관리체계(EA) 구축



제반 지침 제정, IT아키텍처 관리계획 수립, 정보기술표준 수립, 정보시스템 규모 산정방법 표준화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효율적인 IT자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성과들은 "제1차 IT중기발전계획"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제1차 IT중기발전계획 추진(2010~2012년)

- 개요

금융결제원은 IT비전이 지향하는 미래발전방향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IT중기발전계획(2010~2012년)을 수립하여 해당 기간 중 IT 사업계획 수립 및 IT업무 추진의 기본방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IT중기발전계획 전략과제

당시 수립한 IT중기발전계획에서는 외부 동향조사 및 내부 현황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8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과제명	과제 설명
IT 거버넌스 체계화	IT거버넌스 관점으로 IT프로세스를 정비하여 IT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IT 인프라 아키텍처 표준화	전원적 IT인프라 아키텍처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구축 ·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표준 개발 Framework 구축	표준 개발 Framework를 정의하여 개발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외주개발 관리체계 개선	외주업체 선정 방식, 외주인력 활용방법 등을 정하여 외주개발 관리체계를 정비함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최근 네트워크 기술 동향과 우리 원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ITSM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자동화,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핵심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함
IT 기능단위 조직 활용도 제고	IT부서 기능단위 조직의 업무범위를 전원적으로 확대 · 조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IT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함
전원적 데이터아키텍처정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 ·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적 데이터 아키텍처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추진성과

금융결제원은 IT거버넌스체계 재정립 및 IT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IT프로세스의 성숙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IT자원의 운용을 위해 계획기간 동안 공용전산기기 비용분담 방법 수립, IT업무 외주관리 체계 개선 및 관련 규정 정비, 통신장비 및 관리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효율화 검토,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ITSM(IT Service Management, IT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분야 국제표준인 ISO/IEC 20000 인증 획득과 전원적 데이터아키텍처(DA)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한층 체계화되고 안정화된 IT관리 체계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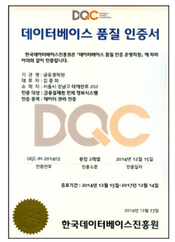
ISO/IEC 20000 인증서
2011. 11. 4.

제2차 IT중기발전계획 추진(2013~2015년)

- 개요

금융결제원은 2012년 제2차 IT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IT중기발전계획에서는 "IT와 비즈니스의 전략적 연계", "IT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강화"부문으로 구성, 금융결제원 중기발전계획(2013~2015년)에서 목표하는 "신규 서비스의 창출 및 성공적 추진",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안정성 강화", "조직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과제명	과제 설명
차세대 IT전략 수립	IT영역별 우리 원 수준을 진단하고 차세대 IT 전략 수립 및 현행 EA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
IT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IT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의 유기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IT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IPT(Internet Protocol Telephony) 도입 검토	우리 원 음성 통신용 유선 전화망과 데이터 통신용 IP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PT 도입을 검토
IT인력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IT연수 체계를 수립하고, 중 · 장기적으로 경력개발계획(CDP)과의 연계를 검토
개발 언어 표준화 추진	우리 원 개발 언어의 특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여 유형에 따라 표준을 재정비하고 개발 언어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
차세대 웹 표준(HTML5) 대응체계 수립	효과적인 웹 표준 적용과 차세대 웹 표준(HTML5)의 체계적인 적용방안 및 대응체계 마련
DATA 품질관리 체계정비 및 고도화	DA관리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보안 및 품질관리 인증 획득을 통해 데이터의 보안 및 품질관리체계를 고도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구축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안성을 제고



DQC-M Level2
인증서
2014. 12. 23.

- IT중기발전계획 전략과제

제2차 IT중기발전계획은 외부 동향조사 및 내부 현황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8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DQC-M Level2 인증서 수여
2014. 12. 23.

- 추진성과

금융결제원은 IT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차세대 IT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IT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분석 · 개발팀 역할을 조정하고, 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개발언어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2014년 데이터관리 인증(DQC-M)을 획득하였으며,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성과를 실현하였다.

IT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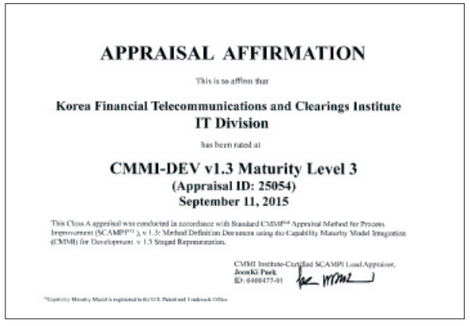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IT기반 서비스 증가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규모 및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표준화된 IT개발 및 운영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IT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적용과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관리(PMS), 형상관리(Harvest), IT서비스관리(ITSM)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IT프로세스의 효과적 실행 및 조직 내재화 촉진을 위하여 IT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IT개발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금융결제원은 IT개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정립,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IT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IT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W개발과 유지보수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기 위해 1999년 12월에는 C/S개발방법론을, 2000년 11월에는 유지보수방법론을, 2005년 10월에는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을 제정하였다. 또한 S/W 개발 및 유지보수의 산출물 등록 · 관리를 위하여 2001년 12월 형상관리방법론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12월에는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S/W품질관리체계를 제고하고, 대외 신뢰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는 국제품질인증모델(CMMI)에 기반한 금융결제원 IT개발업무의 표준지침들을 재정립하였으며, 2012년 9월 18일에는 S/W품질관리 국제표준(CMMI-DEV)의 최초 인증에 이어 2015년 9월 11일 본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획득하였다. CMMI-DEV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 SEI)에서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APPRAISAL AFFIRMATION

This is to affirm that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IT Division

has been rated at

CMMI-DEV v1.3 Maturity Level 3
(Appraisal ID: 25054)
September 11, 2015

This Class A appraisal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CMMI℠ Appraisal Method for Process Improvement (SCAMPI℠) v 1.3: Method Definition Document using the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CMMI) for Development: v 1.3 Staged Representation.

CMMI Institute-Certified SCAMPI Lead Appraiser,
Joonki Paek
ID: 6406177-01

℠Capability Maturity Model is registered in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CMMI 재인증 인증서
2015. 9. 11.

현재 IT개발 프로세스는 「IT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절차에 의거, 프로젝트관리, 공학, 지원 영역과 프로세스관리(공통) 영역(4개)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표준지침(15개), 가이드/방법론(14개), 양식/사례/기타(62개)로 작성되어 전자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IT운영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금융결제원은 대외 우수사례와 내부 환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IT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하였고, 국제 표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IT운영 프로세스는 「IT운영 관련 선진사례집」(IT Infrastructure Library)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IT자원의 전사적 통합관리체계(Enterprise Architecture) 구축 컨설팅 결과 등을 기반으로 2006년 8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방법론(IT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 활동 및 절차, 역할 등의 기준 제시)을 정립, 체계화하였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IT운영 체계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 2010년 12월 IT운영 프로세스의 통합관리, 장애의 사전예방, 업무처리 상황의 모니터링 및 측정 등이 가능한 ITSM 시스템을 구축, IT운영 프로세스를 효율화 하였고, 2011년 11월 4일에는 IT서비스관리체계의 국제표준인 ISO/IEC 20000 인증을 획득하여 대외적으로 IT서비스 제공 및 관리 수준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ISO/IEC 20000 인증은 IT운영조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IT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IT서비스 경영, 설계 및 전환, 제공 프로세스 등 6개 영역을 심사하여 부여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LRQA

CERTIFICATE OF APPROV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of:

KFTC
253, Tehéran-ro, Gangnam-gu
Seoul, 135-756, Korea

has been approved by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to the following IT Service Management Standard:

ISO/IEC 20000-1:2011

The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is applicable to:

The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that covers the provision of IT Service Management (ITSM) processes (Incident Management, Information Security) services to all internal customers of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Original Approval: 9 November 2011
Current Certificate: 7 May 2013
Certificate expiry: 8 November 2014

Certificate No: 10140129U

Signed for LRQA Group Ltd. on the behalf of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ISMF

ISO/IEC 20000
재인증 인증서
2013. 7. 5.

금융결제원은 정기적으로 ISO/IEC 20000 사후심사(6개월 주기)와 갱신심사(3년 주기)를 통해 IT서비스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IT운영 프로세스는 「IT업무규정」, 「IT업무규정 시행세칙」, 「IT업무규정 시행절차」에 의거 서비스관리, 서비스제공과 서비스지원 영역(3개)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표준지침(9개), 가이드(3개), 양식/사례(8개) 등으로 작성, 전자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IT감리

IT감리업무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 ·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금융결제원의 IT감리업무는 1998년 12월부터 「전산시스템 안전대책기준」 및 「정보시스템 운영 감리 지침서」 등에 따라 시스템운영업무에 대해 운영부서의 자체감리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2003년 12월 「S/W개발감리 지침」 및 「전산업무관리규정」 제6장(정보 시스템감리)의 제정을 통해 운영부서에 이어 개발부서의 자체감리까지 확대 수행되었다.

이후 2005년 8월부터 IT기획부에서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IT감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IT외주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8월 「위탁감리가이드」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위탁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IT감리업무 기획

당해 연도 감리의 기본방향, 감리대상 업무 및 기간, 감리인, 감리일정, 위탁감리 수행 여부 등을 포함한 연간 감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감리 수행결과 분석, 외부기관의 감리동향 파악, 장애분석 등을 통해 IT감리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IT개발 · 운영감리 및 외부위탁감리

IT개발 및 운영감리는 당해 연도 연간 감리계획에 따라 개발프로젝트감리, 유지보수감리, IT운영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개발프로젝트감리는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에서, 유지보수감리 및 IT운영감리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부서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프로젝트 및 대상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부위탁감리는 IT외주업무에 대한 감리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12월 정보시스템 감리 강화방안을 수립, 2011년 12월 e사업전산실에서 추진한 "신용 · 직불카드 온라인 승인중계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시범실시 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IT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외주개발사업에 대해 외부위탁감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이후 2015년 7월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추진 사업", 2016년 4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 및 2016년 7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외부위탁감리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IT외주개발 사업을 외부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지원하고 있다.

IT개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

지급결제 기반 · 금융전산망 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은 1986년 설립 이후 전신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가 수행하던 어음교환업무 및 은행지로업무를 승계, 전담 운영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업무처리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어음교환업무는 1990년에 이르러 업무 전산화가 본격화되어 교환차액결제자료 온라인 전송, 부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를 등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납장표정보화 추진에 따라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관련 시스템 도입 및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2000년 5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가동하였다.
지로업무의 전산화는 1980년대 자동판독분류기(R/S기) 처리를 통해 지로장표의 대량처리체제를 구축한 이후 1990년대 지역처리센터 분산처리와 영상판독분류시스템(IPS)의 구축, 가동 등을 통해 전산화가 가속화 되었다.
또한 IPS는 1998년 5월 구축이 완료되어 업무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전자정보의 이동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수납장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설립 초기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중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사업 전담기관으로 CD공동이용시스템, ARS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을 구축하였다.
금융전산망 중 가장 먼저 구축된 CD공동이용시스템은 1987년 3월 현금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사양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기본설계서를 확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금융결제원과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최초 시스템 구축을 완료, 1988년 7월 본격 가동하였다.
이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ARS공동망은 1989년 4월에, 타행환공동망은 1989년 12월에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는 한편 1992년 8월 금융전산추진부에 편제된 금융전산망 개발 · 운영업무를 전산개발부 · 전산운영부로 이관하는 전산 부문의 조직 개편을 통해 전산업무의 체계적, 유기적 운용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금융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함께 1993년에는 경찰전산망과 점외 CD/ATM공동이용망, 1994년에는 무역자동화망과의 접속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997년에는 지방은행공동망, 2000년에는 전자화폐공동망을 구축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존 ARS공동망을 확대 · 개편하는 전자금융공동망 구축 추진계획에 따라 2001년 4월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 본격 가동하였다.
금융결제원은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하여서도 1990년대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 및 자금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하였다.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은 1995년 9월 신용카드 거래승인업무 시스템을 시작으로 직불카드공동망을 구축, 1996년 2월 가동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전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거래승인업무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신용 · 직불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안정성 및 처리 효율을 개선하였다.
자금관리서비스시스템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시스템 구축 위탁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996년 8월 CMS대량자금이체업무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및 대고객 서비스 확대

1990년대 전화선(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PSTN)을 이용한 모뎀 통신을 시작으로 2000년대의 광랜 그리고 현재의 무선 인터넷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는 은행 공동망 기반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참가기관 중심에서 대고객부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2000년에 구축한 인터넷지로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인터넷지로서비스는 경찰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등의 대규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고, 납부자가 PC를 통해 조회 · 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기관의 고지와 이용고객의 납부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에 구축된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서비스(PG)는 은행 공동망을 이용하여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었고, 공인인증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의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계좌이체 PG서비스를 선도하였다.
2002년에는 주택청약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ASP서비스가 구축되었다. 주택청약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판교신도시 청약과 같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대량접속을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의와 참가기관의 업무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자세금계산서ASP서비스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비스로, 2007년에 구축된 정부납품대금청구서비스와 통합하여 현재 온라인대금청구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중계하는 B2B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비즈니스에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본격 도입한 서비스라는데 의의가 있다.
2000년도 중반부터는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홍보를 비롯한 대고객 정보제공의 창구로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CMS, B2B, 전자어음, 지방교육재정정보중계, KFTC VAN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자체 홈페이지를 갖게 되었다. 2016년 현재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연결된 대외용 패밀리 사이트는 23개에 달하고 있다.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었고 휴대폰 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뱅크월렛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핀테크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지급결제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금융결제원은 2009년 11월 본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로 해외의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하거나 이체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SO8583표준의 "국가간 ATM망 연계 시스템"을 내부개발로 구축, 완료하고 이후 2014년에는 국가간 송금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이 "지방교육 행 · 재정 통합시스템"에서 각종 자금의 수납 및 지급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은행 간 관련정보를 중계하는 서비스도 자체 기술로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10년에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은행공동의 5개 OS(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모바일, 블랙베리, 바다) 뱅킹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아이패드) 플랫폼 개발, 2014년에는 뱅크월렛 카카오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2012년 인터넷지로 업무의 서비스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지로를 재개발하였고, 2013년에는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아파트관리비 수납 중계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에는 "차세대 VAN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메인 프레임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CMS 안전성 강화방안"으로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는 등 신규 지급결제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개발조직의 변화

은행지로관리소의 전산부를 모태로 출발한 IT개발조직은 전산부 내 전산개발과를 시작으로 몇 차례 명칭변경과 조직개편과정을 거쳐 1992년 8월 기존의 "과" 단위 조직에서 "부" 단위 조직인 전산개발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4년 2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과체제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담당제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에는 EFT/POS전담반의 해체로 수익사업 개발업무가 전산개발부로 이관되었다.
1997년 2월에는 전산개발부의 부서명이 전자금융연구소로 변경되었고, 개발업무는 부속실인 시스템개발실에서 수행하였다. 이어 1998년에는 시스템개발실 내에 금융망개발팀, 어음 · 지로개발팀, VAN업무개발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발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자금융연구소장에게 팀 운영권을 부여하고, 기존 3개 팀을 개발1팀, 개발2팀, 개발3팀, 개발4팀으로 개편하였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본부제 및 팀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시스템개발실의 개발1~3팀은 정보시스템부(어음지로개발팀, 금융망개발팀, 인터넷OA개발팀)로 개발4팀은 사업지원실(VAN개발팀)로 이동되었다.
2003년에는 e사업 관련 개발조직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 및 통합콜센터시스템 등 원내 관리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OA개발팀을 인터넷개발팀과 경영정보개발팀으로 분리하였다.
2008년 1월에는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개발팀의 분석업무를 분리하여 시스템분석팀을 신설하는 한편 RK개발업무가 정보시스템부로 이관됨에 따라 RK개발팀을 신설하였다.
2011년에는 정보시스템부를 기능중심으로 세분화하여 개발업무부서로 IT개발부를 신설하였고, 원내 모바일업무 개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개발팀을 신설하였다.
2011년 1월에는 시스템분석2팀을, 2012년 7월에는 e시스템분석팀을 신설하여 업무중심형 개발조직에서 S/W개발프로세스 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도모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S/W 재사용에 대한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용S/W개발반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금융결제원의 IT개발조직은 팀제, 담당제 등의 운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운용을 부단히 도모해왔고, 근래에는 조직 기능을 세분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업무지원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시스템 및 조직의 변화

금융환경과 IT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융결제원 설립 초기인 1980년대 중반에는 배치(Batch)업무 위주로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1990년대에는 온라인 · 배치업무가 혼재되어 운영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웹 서비스가 늘어나고 UNIX 기반의 오픈형 시스템을 점차 활용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인터넷지로 업무를 시작으로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중계(PG), 기업 간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전자어음, 주택청약 등의 업무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운영 환경으로 UNIX 시스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현재 CD, 타행환, 전자금융공동망 홈 · 펌뱅킹 업무 등은 TANDEM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여타 인터넷 환경 기반의 대부분 업무는 웹 ·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UNIX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 운영 부문의 조직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당시 정보시스템 운영부문은 전산부 내 전산운영과로 출발하여 1992년 8월 전산운영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정보시스템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1년 2월 본부 및 부 ·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 변경에 따라 부 내에 개발팀, 운영팀이 신설되었다. 이때 VAN 관련 운영업무는 정보시스템부에서 분리, 특수사업본부 내 VAN운영팀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고 2008년 1월에는 e사업시스템팀으로, 2010년 12월에는 e사업운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보시스템부는 시스템관리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기 위해 2008년 4월 기능 중심의 팀(시스템관리팀, 시스템지원반)을 신설하였으며, 운영 인력의 직무능력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팀 간 업무 조정 등 조직 운영의 효율화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개발팀, 운영팀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로 10여 년간 운영되어온 정보시스템부는 2011년 1월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IT개발부, IT운영부로 분부(分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T서비스 관리

2006년 8월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금융결제원 EA 컨설팅 결과 등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방법론은 운영요구사항관리, 가동처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운영상태관리,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릴리즈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 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절차를 표준화한 것으로 이 같은 운영관리방법론에 따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운영 서비스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조직의 직무 능력을 높였다.

2011년에는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IT운영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는 ITIL 버전 3을 기반으로 IT서비스 관리체계(ITSM)를 정립하고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IT서비스관리 수준 향상 및 내재화를 위해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인 ISO/IEC 20000의 요건으로 금융결제원 프로세스를 진단하여 2011년 11월 4일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인증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IT서비스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4일 ISO/IEC 20000-1 : 2011 재인증을 획득하였다.

IT업무 지속성

백업센터 구축

금융결제원은 2000년대 이르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재해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센터를 구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2007년 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백업센터를 신축하고 전산시스템의 차질 없는 이전 · 구축과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분당시스템 구축반을 설치 ·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고객센터업무, 무역망, PG, B2B, 전자화폐, e-LC 시스템을 분당센터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타행환 · CD백업시스템 통합 및 상호백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해복구 훈련

금융결제원은 재해복구등급별 시스템 구축 운영 수준을 준수, 업무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센터전환, 데이터 복구, 소산자료 복구검증 등의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복구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점검, 운영요원의 비상시 위기 대응능력 강화, 서비스 전환 단계별 발생 예상 위험의 관리 및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고 참가기관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참가기관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복구 1등급 업무 중 대상 업무를 선정, PFMIs(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따라 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통합대시보드

ISO22301 인증 획득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금융위원회 「IT모범규준」 등에서 요구하는 위기대응능력과 IT업무지속성 관리수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IT업무지속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09년 4월 BS25999 인증을 획득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 BS25999가 ISO22301로 승격되면서 업무지속성을 위한 요구사항, 절차 등이 더욱 구체화되고 계획 · 관리내역이 강화됨에 따라 ISO22301 인증규격을 토대로 IT업무지속성체계를 점검 · 보완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인증을 획득, 금융결제원의 IT업무지속성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인증자격 유지를 위해 1년 주기로 사후 심사를 진행하면서 IT업무지속성체계 점검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인증 갱신 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통합관제

금융결제원은 2015년 8월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시스템운영을 업무운영팀과 인프라관리팀으로 구분, 운영하던 조직체계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다수의 데이터를 종합 · 분석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금융 감독당국의 장애대응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장애 유무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와 방법을 변경하고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로부터 취합한 결과를 통합대시보드에서 일괄 조회함으로써 전체 업무의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구성, 금융결제원 전체의 위기상황 관리 및 IT운영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데이터 아키텍처관리

금융결제원은 2010~2011년 각 시스템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표준화하고 메타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시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중복 정의, 불일치 문제 등을 줄이고 데이터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표준 · 구조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전원적 데이터 관리체계의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

2013~2014년에는 금융결제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점검, 오류 데이터 분석· 정제 등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2014년 12월 15일에는 "데이터 관리체계 및 데이터 관리 성숙 수준을 진단, 데이터 관리 활동을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가 잘 정의되어 지속적 ·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데이터 품질에 대한 조직의 인식이나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데이터 관리 인증(DQC-M) 통합 2레벨을 획득하였다.

e사업전산실 팀장 | 이영진

지난 프로젝트를 회고하며



올해는 우리 원이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고, 저로서는 입사 2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1997년 1월 입사 후 저는 프로그램 개발, 분석, IT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에서 2000년까지 구축, 추진되었던 지로 수납장표정보화입니다.

지로 수납장표정보화는 지로 장표의 실물 이동 없이 전자정보만으로 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으로 당시에는 Truncation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가은행의 전자정보화 여건이 여의치 않아 참가은행으로부터 지로장표 실물을 전달받아 우리 원 본 · 지부에서 전자정보 작성을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로장표에서 데이터와 이미지를 전자화하여 입금 및 이체자료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보관하는 IPS(Image Processing System)의 구축이 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IPS는 높은 처리 성능의 요구와 이미지 처리 등 그 당시로는 다소 생소한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0년 7월에 오픈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고 주변사람들에게 "고생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 사이 많이 늙었다."라는 칭찬(?)을 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가은행들이 하나둘 자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약 10년 뒤에는 위탁처리를 위한 우리 원 본 · 지부의 IPS는 사라져 참가기관과의 전자정보 송 · 수신을 위한 시스템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추억 속의 시스템이 된 것이죠.

몇 개 더 기억나는 프로젝트들은 2005년에 "IT자원의 전사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종합계획"이라는 EA(Enterprise Architecture) 컨설팅 프로젝트입니다. EA는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IT 인프라를 잘 정렬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당시 금융권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실시하던 컨설팅이었습니다. 컨설팅의 결과는 그 후 여러 가지 IT 프로세스와 체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인터넷지로 재개발, 자동이체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었고,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 직승인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조직을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합니다. 살아있으려면 기본 신진대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현재 업무의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으려면 우리 조직이 속해있는 생태계 변화를 잘 따라가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표현이 바로 프로젝트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과거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은 사라져 버렸고, 어떤 것은 다른 체계의 밑거름이 되었고, 또 어떤 것은 지금 한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모두가 우리 원의 발전과 변화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우리 원이 더욱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6

금융정보보호 및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대책

1. 공인인증
2. OTP인증
3. 금융정보보호
4. 지급결제리스크 관리대책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 및 OTP인증업무 뿐만 아니라 날로 고도화 ·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기획, 금융전산 위기대응 측면에서도 리스크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인증

업무소개

전자거래는 편리하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방 환경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송 · 수신되는 전자문서의 노출 또는 위 · 변조 위험성이 존재하고 거래 후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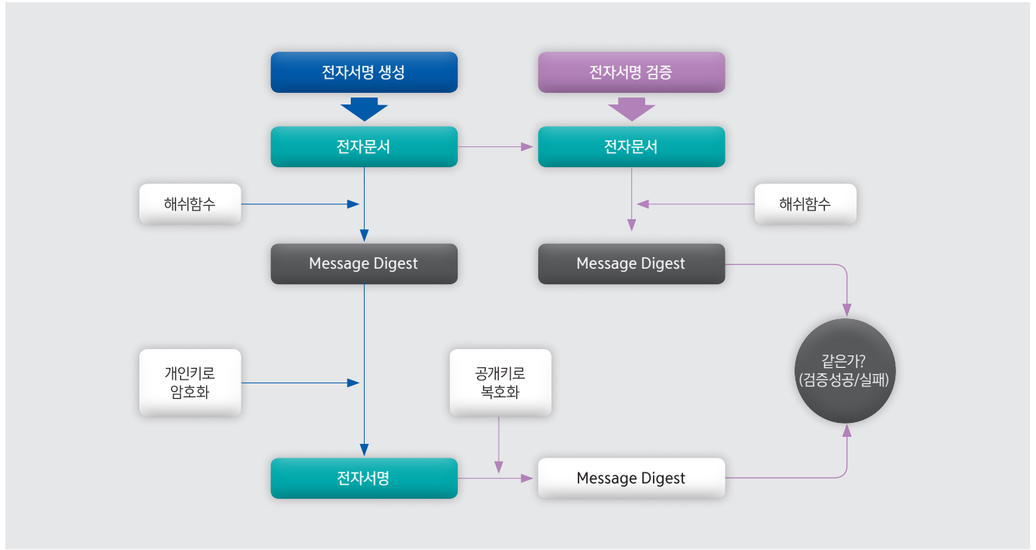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암호학적 기법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인증서라 하며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일상생활의 인감증명서에 비유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제출하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거래, 전자정부 민원업무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인인증제도는 「전자서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 과정



도입 및 발전

공인인증기관 지정

국내 은행들은 1999년부터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은행별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사설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사설인증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은행 간 상호연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정보통신부(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과 공인인증기관의 관리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부문은 금융결제원, 증권부문은 코스콤(주), 민간부문은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조흥은행 등 10개 은행의 정책 · 기술부문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은행 공동의 공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0일 공인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비하여 정보통신부 앞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2000년 4월 1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업무의 홍보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업무의 명칭을 “yessign”으로 제명하였고 1999년 12월 공인인증업무용 심벌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업무 등록대

- yes는 긍정적 · 고객지향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며 sign과 어울려 공인인증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표현한다.
- sign을 둘러싸고 있는 강렬한 빨간색 원은 실생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의 인증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 검정색 yes와 흰색의 sign을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인증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행기관(Registration Authority : RA)으로서 가입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대면확인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공인인증업무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공인인증서비스 실시

금융결제원 등록대행기관 현황 (2016. 8월말 기준)

구 분	등록대행기관	기관수
사원은행	산업, 농협, 우리, SC, KEB하나, 기업, 국민, 신한,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16
특별참가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BNP파리바, 중국공상은행	7
계		23

공인인증업무는 2000년 9월 1일 조흥, 제일, 광주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후 같은 해 12월 9일 조흥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실시되었다.
공인인증업무를 개시하면서 개인 및 법인 전자거래용 인증서는 무료 발급하였으며 서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버인증서는 유료(1,100,000원/년)로 발급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공인인증기관 인증수수료 정책에 따라 2002년 3월 23일부터 법인 범용인증서를 유료(110,000원/년)로 발급하였으며, 2004년 8월 14일부터는 법인 금융거래용 인증서를 유료(4,400원/년)로 발급하였다.

이후 개인인증서 유료화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정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6일부터 개인인증서도 범용(유료, 4,400원/년)과 은행/보험용(무료, 용도제한용)으로 구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재해나 전산장애에 조기 대응, 365일 안전한 업무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역삼동 본관내에 운영 중이던 공인인증 주센터를 2007년부터 경기도 분당센터로 이전하였으며, 원격지 백업센터를 서울 역삼동 금융결제원 건물 내에 운영 · 가동하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기관들은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위하여 2003년 1일 24일부터 "공인인증기관 간 전자서명 상호연동업무 협약"을 체결, 본격적으로 공인인증기관 간 상호연동을 실시하였다.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은 암호학적 알고리즘 및 사용되는 전자서명 키(Key)의 안전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발급되어온 공인인증서는 1,024비트의 키 길이를 지니고 있었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등 국외 암호전문기관은 암호기술 및 컴퓨팅 성능의 발전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사용 중인 1,024비트 전자서명 키 및 SHA-1 알고리즘은 2011년 이후에는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키 길이를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상향하는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48비트 전자서명 키를 갖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실시하였다.

업무내용

공인인증서 발급 및 조회

공인인증업무는 가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조회하는 고유 업무와 시점확인서비스 등 인증서를 이용한 부가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는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가입자가 은행창구를 방문, 대면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신청한 후 금융결제원이 해당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이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 종류는 다음 표와 같이 크게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된다.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000년 12월 공인인증업무를 처음 개시한 이후 인터넷뱅킹의 활성화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정책(2002년 9월)에 힘입어 불과 10개월만인 2001년 10월 100만건을 돌파하였다. 이후 2016년 6월 현재 약 2,730만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급성장하였으며, 현재 약 3,470만건에 달하는 전체 공인인증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별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추이 (단위 : 천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월말
금융결제원	19,524	21,366	22,940	24,916	26,621	27,294
인증기관 합 계	26,549	28,382	30,006	31,599	33,875	34,720

공인인증서 유효성 조회업무는 이용기관에서 요청한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이 검증해 주는 업무이다. 이러한 조회방식으로는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방식과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방식이 있다.
CRL방식은 공인인증기관이 일정한 주기(통상 24시간)로 공인인증서 폐지목록을 게시하면 이용기관이 그 목록을 다운로드받아 검증하는 방식이며, 공인인증기관의 기본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 비금융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OCSP방식은 이용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요청한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이 즉시 검증해 주는 방식이며, 2002년 10월부터 유료로

yessign 공인인증서 종류

구분			용도	수수료 (원/년)	비고
개인	범 용		-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4,400	- 2006년 7월 1일부터 신규 발급 불가 - 기존 가입자는 갱신 및 재발급 가능
개인	용 도 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 은행, 신용카드 및 보험업무 - 정부 민원업무(단, 전자입찰 제외)	무 료	- 2006년 8월 1일부터 신용카드업무 추가
법인 / 단체	범 용		-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110,000	- 2006년 7월 1일부터 신규 발급 불가 - 기존 가입자는 갱신 및 재발급 가능
법인 / 단체	용 도 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 은행 및 보험업무 - 신용카드업무 - 정부 민원업무(단, 전자입찰 제외)	4,400	
법인 / 단체	용 도 제한용	전자세금용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	4,400	- 2009년 11월 2일부터 발급 시작
법인 / 단체	용 도 제한용	서버용	- 인터넷 응용서버 인증 및 보안채널 제공용	1,100,000	
법인 / 단체	용 도 제한용	기 타	- 발급대상 및 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별도계약	

제공하고 있다.
OCSP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50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시점확인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는 이용기관에서 제출한 전자문서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간정보를 첨가하여 이를 전자서명함으로써 전자문서가 제출된 시점과 당시의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보증하는 서비스이다.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쉽게 복사가 가능하며 내용을 변경하여도 외관상 변경 여부를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시점에 해당 전자문서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시점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점확인서비스는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가 해당 시점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2016년 6월 현재 금융결제원은 원내 전자어음업무 및 금융기관 창구 전자문서화, 보험사의 모바일청약업무 등에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

2009년 7월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 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방법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 이용환경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용고객은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 공인인증서 제출로 회원가입, 아이디 · 패스워드 찾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웹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2016년 6월 현재 금융결제원은 원내 인터넷지로, 전자수입인지, 지로자료서비스, 금융정보조회앱 등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P인증

업무소개

OTP(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사용되며, 매 30초 또는 1분마다 변경되는 비밀번호를 의미한다.
OTP는 별도의 매체인 OTP발생기에서 전자적으로 생성되므로 고객이 OTP를 이용하려면 해당 OTP발생기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인 경우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발급한 다수의 OTP발생기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OTP공동업무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하나의 OTP발생기만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 가능하도록 중계업무를 제공한다. 즉, 고객은 각 금융기관 창구 등에서 OTP발생기를 발급받은 후 해당 OTP발생기를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등 59개 금융기관이 OTP공동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OTP발생기는 약 1,680만 개가 발급되어 이용되고 있다.

OTP 통합인증센터 참가 기관

분 류	기관명
은행(17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증권(31개)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주),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NH투자증권, 부국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BS투자증권, KTB투자증권
기타(10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리종합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삼성생명, 현대선물, 삼성선물, 펀드온라인코리아, 흥국생명

도입 및 발전

OTP공동센터 구축

국내에서 OTP발생기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인터넷뱅킹서비스 도입 초기인 2000년도로 당시 신한은행, 외환은행(현재의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기업 대상 뱅킹서비스에서 OTP발생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OTP발생기는 높은 구입비용 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금융기관 고객들은 보안카드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보안카드의 번호는 OTP와 달리 재사용에 따른 보안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2005년 보안카드와 관련된 국내 최초의 인터넷뱅킹 해킹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이 대책에는 금융기관 OTP공동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대책에 의해 설립된 금융보안연구원은 2007년 6월 29일에 신한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OTP공동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갔다. 2007년 12월 4일에는 공식적인 OTP공동센터(당시 OTP통합인증센터로 명명)의 개소식을 가졌다.
OTP발생기의 보급률은 2008년 4월 1일에 시행된 정부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정책"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OTP공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으며, 2009년 6월 29일에는 OTP공동센터의 장애 등에 대비한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하였다.
OTP공동센터는 세계 최초로 다수의 금융기관과 다수 업체의 OTP발생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OTP공동센터에 적용된 기술은 2011년 2월 13일에 국제표준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제표준(Recommendation ITU-T X.1153 : Management framework of a one time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service)으로 채택되었다.

업무 이관

2014년 2월 금융위원회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금융보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던 OTP공동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4년 11월 25일 금융결제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OTP공동업무의 인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OTP인수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OTP공동업무는 2015년 4월 10일에 금융결제원으로 최종 이관되었다. 업무 이관 후에도 서울 상암동과 가산동에 각각 위치한 OTP공동센터 및 백업센터의 설비는 OTP공동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이유로 당분간 그대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시스템 교체 없이 사용된 해당 설비의 노후로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5년 11월 14일에 OTP공동센터 및 백업센터의 설비를 재구축하여 분당센터와 역삼본부로 각각 시스템을 이관 완료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OTP 도입 추진

2009년 말 국내에 불어온 스마트폰 열풍은 OTP발생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금융기관은 OTP발생기의 소지불편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시 금융보안연구원은 산 · 학 · 연 인증기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OTP발생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스마트OTP는 IC카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가입자식별모듈) 등의 안전한 장치에 OTP 기능을 내장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안전하게 OTP를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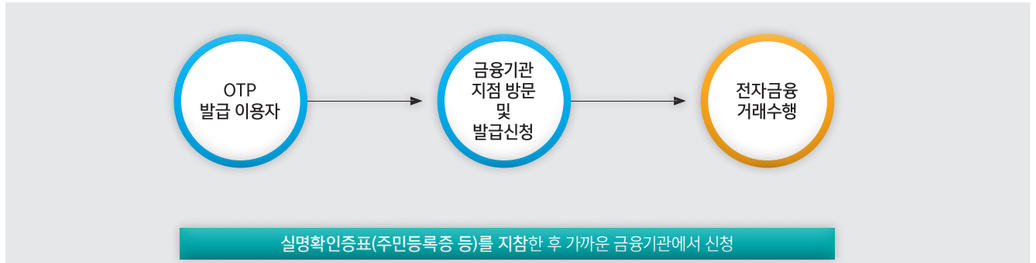
2011년 5월 31일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기관 3개사, OTP업체 2개사, 엘지유플러스와 공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USIM을 이용한 스마트OTP 기술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USIM을 이용한 스마트OTP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어 2012년 5월에는 IC카드를 NFC 방식으로 무선 접촉하여 OTP를 발생시키는 스마트OTP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기관은 스마트OTP를 실제 전자금융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전자금융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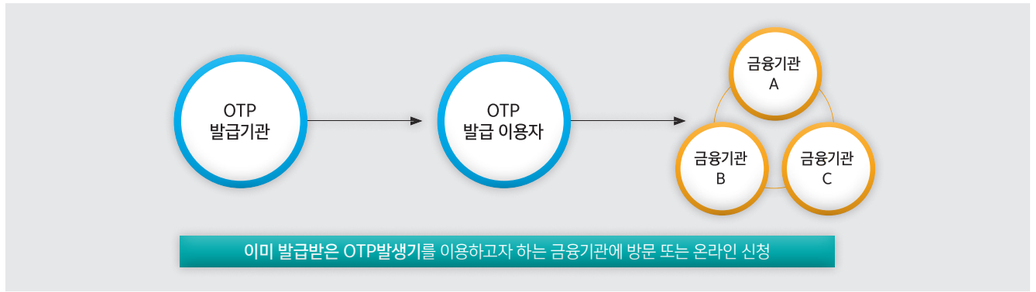
'NFC' 기반 스마트 OTP 서비스



OTP 발생기 발급절차



타 금융회사 이용등록 절차



규정」 제34조의 "매체분리원칙"에 대한 규정위반 우려 때문이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거래매체와 OTP발생기 등의 인증매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스마트OTP는 거래매체와 인증매체로 동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므로 동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2월에 정부의 규제개선 차원에서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중단했던 스마트OTP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5년 11월 27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마트OTP공동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이용가능 금융기관을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2016년 7월 중 스마트OTP공동앱을 출시하고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업무내용

OTP발생기 발급 및 관리

OTP공동업무는 OTP발생기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과 연계되는 업무를 총칭하며, 관리업무에는 인증업무, 등록업무 등이 있다.

OTP발생기의 발급업무는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OTP발생기를 교부하는 업무이다. OTP발생기 발급업무에 따른 누적 발

급량은 2007년 서비스 초기 157만개에서 2016년 6월 말 기준 1,680만개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OTP인증업무는 금융기관의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에 입력한 OTP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업무이다. 연간 인증거래량은 2007년 서비스 초기 2,900만건에서 2015년 말 기준 11억건으로 약 40배 정도 증가하였다.
OTP공동업무에서 가장 특징적인 업무는 OTP발생기를 여러 금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록 업무이다.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총 59개 금융기관에서 OTP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OTP공동업무에는 이 외에도 폐기, 보정, 사고신고, 효력회복 등의 관리업무가 있으며 24시간 운영된다.

수용적합성 시험

OTP는 OTP업체별로 생성 및 검증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센터는 다수의 OTP발생기와 검증 프로그램(이하 서버모듈)을 수용하여 OTP를 인증 처리하고 있다. 수용적합성 시험은 이러한 OTP업체의 OTP발생기와 서버모듈이 OTP공동센터의 설비와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시험하는 절차이다.
수용적합성 시험은 사전점검, 시험신청, 시험수행, 시험종료의 4단계로 구성되며, OTP업체가 금융기관에 신규 OTP발생기 및 서버모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OTP업체가 OTP발생기 및 서버모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수용적합성 시험은 통상 4주내에 종료된다.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금융결제원의 수용적합성 시험을 완료하고 OTP공동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OTP업체는 미래테크놀로지(국산), 오티피멀티솔루션(Vasco제품 공급), 우남솔루션(Toppan Forms제품 공급), 디엠엑스테크놀로지코리아(RSA제품 공급), 스마트크리에이티브(Smart Displayer제품 공급), 스마트이노베이션(국산), 에이티솔루션(국산)으로 총 7개사이다.

금융정보보호

업무소개

금융결제원은 날로 고도화 · 지능화되어 가는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CISO) 지정 및 원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보안성 검토, 보안관제, 취약점 분석 · 평가, 보안기술 분석,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정보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업무

보안성 검토

금융결제원은 신규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 보안대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정 대비 적정한지 여부와 잠재적 보안취약점 내포 여부 등을 보안성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서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다수 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중요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금융위원회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성 검토를 통해 각종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안전성을 확립하고 있다.

보안관제

보안관제업무는 금융결제원의 주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원 내 · 외의 전자적 침해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 분석 및 대응하는 업무이다. 침해 유형별 탐지 및 대응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침해유형별 탐지 및 대응 대책

침해유형	침해 유형 내용	탐지 및 대응
디도스 공격	대량트래픽을 발생시켜 시스템 자원 고갈 및 서비스 장애를 유발	디도스 공격 규모에 따라 단계별 대응 * 자체 대응시스템, ISP 디도스 대응서비스 등
해킹·웹변조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여 권한 탈취,컨텐츠 변조 등을 시도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
악성코드 감염	악성 프로그램을 PC 또는 서버에 불법 설치 시도	안티봇넷, 백신관리시스템 등을 이용
피싱 · 파밍	유사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중요 정보를 탈취 시도	피싱 · 파밍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이용
내부인 침해행위	내부인에 의한 중요 데이터유출 시도 등	자료유출방지시스템, DB보안시스템 등을 이용

취약점 분석 · 평가

취약점 분석 · 평가업무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비하는 업무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각종 법률 및 지침,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결제원 「정보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은 법률, 지침 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기반시설, 전자금융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동 시설들에 대해 정보보호 주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규 구축 또는 개편되는 시스템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정보보호 주관부서로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도 취약점을 분석 · 평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원내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수행하는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3년(2013~2015) 동안 총 3,118대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실시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보안기술 분석

보안기술 분석업무는 전자적 침해사고 관련 침투경로 및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보안사고 분석 · 대응업무, 정보보호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기술 연구업무, 2009년부터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금융IC카드 안전성시험업무로 구분된다.
그 중 보안사고 분석 · 대응 업무는 침해사실을 인지한 팀으로부터 분석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정보보호기술 연구업무는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대상으로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IC카드 안전성시험 업무는 금융IC카드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아 2016년 6월까지 약 330건의 시험을 수행하여 50여 건의 카드 취약성이 사전에 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안기술 분석업무는 보안위협을 예방하고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정보보호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이 불법복제로부터 안전

정보보호 중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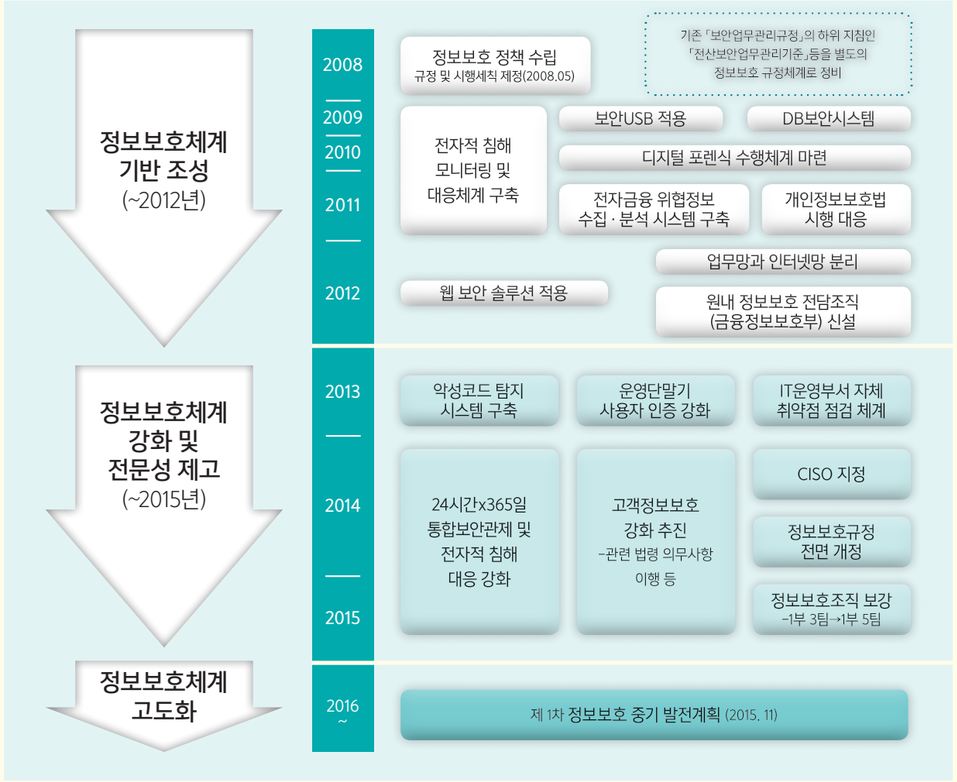
추진배경

금융결제원은 전자적 침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사회적 피해와 파급력이 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자산 보호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견고한 정보보호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왔다.

최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 증가에 따라 외부연계가 활발해지고,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서비스 제공 채널이 확대되는 등 내부 IT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자적 침해를 유발하는 보안위협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금융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출현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이 안전 중시에서 편의성으로, 사전 규제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책임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는 이러한 대내 · 외 환경 변화에 신속 ·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의 중 · 장기적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5년 11월 "제1차 정보보호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체계 수립 · 적용 경과



주요내용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는 "제1차 정보보호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부서 내 비상설 TF 구성 · 운영, 정보보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 · 외부 환경 분석, 전략과제 후보군 도출 및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보보호 환경변화에 신속 ·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최종 도출하였다.

제1차 정보보호 중기 발전계획 요약

비전

정보보호 환경변화에 신속 ·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

실행전략

전략목표	전략과제	추진일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재정비	2016~2019
	②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2016~2019
	③ 정보보호 연간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2016~2019
정보보호 업무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④ 정보보호 훈련 내실화	2017
	⑤ 보안관제 고도화	2016~2017
	⑥ 보안취약점 점검 강화	2016~2019
	⑦ 디지털 포렌식 대응 강화	2016
정보보호 역량 강화	⑧ 최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강화	2016
	⑨ 정보보호 인력 전문성 제고	2016~2019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및 사업부서 지원 강화	⑩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2016
	⑪ 사업부서에 대한 정보보호 부문 협력 및 지원 강화	2016~2019

향후 계획

금융결제원은 "제1차 정보보호 중기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과제별 수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중기발전계획(2020~2022)"과 연계하여 전원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제2차 정보보호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금융정보보호부 과장 | 채종명

3 · 20 사이버대란과
보안의 중요성



2013년 3월 20일, 평소와 다름없던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옆자리에 근무하던 선배께서 "지금 KBS, MBC 등 주요 방송사 PC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아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오셨다. 즉, PC가 켜지지 않거나 갑자기 블루 스크린을 띄운 채 먹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잠시 후 각 방송사와 인터넷 뉴스사이트 등에서도 몇몇 은행의 ATM 거래와 창구 거래 등이 중단되었다는 속보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4년 전 7 · 7 사태가 기억 속에 떠오르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긴급히 우리 원 PC에 문제가 없는지,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시작했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부서 내 비상근무조를 편성, 긴급 상황에 대비함과 아울러 보안업체와 계속 연락을 취하며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위한 백신을 공급받아 우리 원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이후에도 각 시스템별로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한동안 계속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원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우리 원에서는 3 · 20 사이버대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당한 비용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한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의심스러운 문자나 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기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수칙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공격은 사용자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무심결에 실행하게 하는 등 사용자 PC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심코 첨부파일을 열어보는 행위가 자신의 PC는 물론 기관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3 · 20 사이버대란 당시 우리 원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아찔해진다. 아마도 많은 직원들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임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큰 불편과 손실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평소 기본적인 정보보호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3 · 20 사이버대란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방송 · 금융권 전산마비 사건 개요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13년 3월 21일 발표 기준)

국내 주요 사이버테러 일지

2014년 7월
국회,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2009년 7월
7·7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 국회, 네이버, 미국 재무부 등
한 ·미 주요기관 23개 사이트 전산망 마비

2011년 3월
3·4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 국정원, 국민은행, 네이버 등
전산망 마비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으로 은행 서비스 중단

2012년 6월
중앙일보 해킹 당해 홈페이지 변조되고 자료 삭제

2013년 3월
KBS, MBC, YTN 언론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한 금융IC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금융결제원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준수 및 안전한 개인정보의 이용 ·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신규로 처리하는 업무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는 보안성 검토 시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을 통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은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대책

개요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기획, 금융전산 위기대응,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및 안정화 등의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리스크 관리업무는 신BIS협약(바젤Ⅱ)에 의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08년 8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리스크 관리대책"을 수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대책은 운영리스크 관리대상, 조직체계 및 관리수단 등을 정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2010년 6월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및 수행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리스크관리지침」이 제정됨으로써 리스크 관리 업무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2011년 10월 "리스크 관리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년 1월 팀 단위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리스크관리팀)이 신설되었다. 당시 리스크관리팀은 원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리스크 관련 업무들을 통합, 수행하였으며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대응 체계 정비, 교육 · 훈련실시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나갔다.

2013년에 이르러서는 원내 경영개선 T/F 등을 바탕으로 IT부문인 지급결제시스템(운영, 기술변화, 시스템)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총괄부서를 IT기획부로 변경하고, 리스크 관리와 IT감리 기능을 통합한 리스크감리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금융결제원 리스크 관리체계는 크게 IT부문 리스크와 비IT부문 리스크(경영, 법률, 평판 리스크 등으로 경영기획부에서 담당)로 이원화하여 리스크 통제 및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2016년 7월에는 "금융결제원 비전 재설정 및 직무분석 컨설팅"결과 전원적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IT기획부 및 경영기획부가 분리 수행하던 리스크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준법감시 기능 등을 포괄하여 리스크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실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금융결제원은 리스크 통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통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전원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Focus

금융결제원의 리스크 관리체계

리스크 관리체계

조직 체계

금융결제원의 리스크관리는 총괄부서인 리스크관리실을 중심으로 위기유형별 전담부서 및 단위업무부서로 계층화 된 조직체계를 갖추어 전원적으로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세스

금융결제원은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리스크에 대한 식별, 평가, 대응, 점검, 자가진단, IT실행계획, 보안성 검토 등의 사전적 리스크 예방활동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위기징후평가 · 모니터링, 위기(경보)대응, 「IT업무지속성계획」 실행, 훈련 등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위한 활동을 균형있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IT리스크부터 대고객사업 리스크 및 준법감시를 통한 법률리스크 관리까지 전원적 리스크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평시 및 위기상황 시 금융결제원 대응 조직 체계

<table>
<tr><th colspan="2">평시</th><th colspan="2">위기상황 시</th></tr>
<tr><td colspan="2">총괄부서</td><td>리스크관리실</td><td rowspan="2">위기상황
대 응 반</td><td>비상대책위원회</td></tr>
<tr><td rowspan="5">전담부서</td><td>자연 재해</td><td>총무부(재산관리팀)</td><td>비상대응반</td></tr>
<tr><td>기술적 재해</td><td>IT기획부(IT기획팀)</td><td rowspan="3">위기상황별
대응조치반</td><td>업무복구팀
(업무복구반, 인프라복구반, 초동대응반)</td></tr>
<tr><td>전자적 침해</td><td>금융정보보호부</td><td>침해사고대응반</td></tr>
<tr><td rowspan="3">인위 재난</td><td>안전관리실(화재/테러 등)</td><td>전산파업대책팀</td></tr>
<tr><td>총무부(노사협력반, 파업)</td></tr>
<tr><td colspan="2">단위업무부서</td><td>사업부서, 시스템개발/운영부서</td></tr>
</table>

금융결제원 리스크 통제 활동 현황

IT부문	정보보호부문	전시 · 재난 및 안전관리부문	경영리스크 부문
리스크식별 · 평가 ·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사이버보안진단	사업계획리스크검토
리스크점검	모의해킹	보안업무지도점검	대고객사업리스크진단
리스크통제자가진단	보안성검토	화재예방점검	사업진단평가
주간위기징후평가	정보보호규정준수실태점검	소방시설점검	사업추진상황점검
IT실행계획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평가 · 점검	전력등설비 및 시설물점검	준법감시
IT자원관리	전자적침해사고비상대응훈련	풍수해대비안전점검	언론모니터링
IT품질관리 · 감리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동절기특별점검	
IT업무지속성매뉴얼점검	을지연습	을지연습	
국가기반체계보호평가 · 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민방위훈련	
중요지급결제시스템평가	부서방문교육	예비군훈련	
재해복구훈련	임부서장교육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	
위기대응훈련	부서자체교육	전력수급비상단계별훈련	
부서자체훈련	정보보호전문가교육	전력수급비상단계처리대책	
안전한국훈련	정보보호온라인교육	보안실무담당자교육	
을지연습		신입직원보안교육	
리스크관리교육		청원경찰직무교육	
IT품질관리교육		민방위훈련(교육)	

리스크 관리 기획 및 금융전산 위기대응

리스크 관리 기획은 연간 리스크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금융결제원의 각종 리스크 취약 부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검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통한 전원적인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연 2회 리스크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관련 정보를 원내 공유하고 있다.

금융전산 위기대응은 크게 금융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위기경보 발령 대응 및 금융결제원 자체 위기상황 관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 금융결제원 「위기대응 행동매뉴얼」(금융위원회의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에 따라 2009년 최초 작성)에 의거, 위기상황대응반 등 비상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상황 전파 및 보고 등의 대응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및 안정화

대내 · 외 평가 및 점검

- 금융위원회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금융결제원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해 매년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계획"은 매년 4월경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계획(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국가기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 점검은 매년 9월경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및 국민안전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분야의 각 국가기반시설 기관(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2015년도 평가 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

- 한국은행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세칙」에 의거, 매 2년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에 대한 정기평가를 받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평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조직의 적정성, 일반사업 리스크 관리, 사이버 복원력 항목 등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리스크통제 자가진단 및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점검 항목을 보완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재난대응 훈련

금융결제원은 위기발생 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해복구 등급이 부여된 모든 업무(2016년 기준 128개)를 대상으로 재해복구 개별훈련, 재해복구 합동훈련, 참가기관 공동훈련, 위기대응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연 2회 금융위원회 주관의 금융기관 합동 · 연계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07

e사업

1. 카드VAN
2. CMS
3. 지로EDI
4. 기타

금융결제원의 e사업 조직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몇차례 개편되었으며 가장 큰 수익원을 이루는 업무는 CMS공동이용업무와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거래승인업무 등이다.

카드VAN

개요

VAN서비스는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한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축적하거나 변환 처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VAN서비스 중 하나인 카드VAN서비스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금융서비스 업무와 결합 발전시킨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카드VAN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한 신용조회, 거래승인조회 및 자금이체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 단말기(POS 포함)를 보급하고 단말기를 이용한 고객카드관리업무 및 현금영수증업무 등을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모습(뱅크포스 단말기)

주요 업무

신용카드업무

신용카드업무는 가맹점이 상품대금을 신용카드(Credit Card)로 결제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상태를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맹점은 매출전표 등 상품매출 내역을 카드사에 제시하여 상품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금융결제원이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에 배제된 신용카드VAN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성과 여타 VAN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를 동시 수행함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였다.

신용카드업무는 신용카드사와 개별 협약 및 전산접속이 되어야 가능한 업무이다. 금융결제원은 1995년 4월 6일 삼성카드와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1996년 1월 18일 외환카드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시 국내 22개 전 신용카드사와 업무처리 대행계약을 완료하였다.

1995년 9월 1일 신한은행과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업무 실시를 시작으로 1996년 3월 18일에 22개 국내 전 카드사와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업무를 실시하였다. 1996년 3월 4일에는 해외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서비스 실시 첫 해인 1995년 6만 7,000건을 처리하였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292만 6,000건을 처리하였다.



KFTC VAN 홈페이지(www.kftcvan.kr)

직불카드업무

직불카드업무는 물품구입자금을 직불카드(Debit Card)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익일 이체시키는 서비스이다.

직불카드업무는 1993년 12월 개정된 「신용카드업법」에 직불카드 관련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4년 4월 29일 재무부의 "직불카드 시행안"에 따라 1994년 31개 은행이 참여하는 "직불카드 참여은행협의회"가 구성되어 다수의 VAN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29일 동 협의회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6개 VAN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였고, 14개 은행으로 구성된 "표준화추진위원회"와 "전산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규약 전산처리 방법 등을 제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직불카드 VAN사업자이자 여타 VAN사 간 자금정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시스템을 구축, 은행 및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종합테스트를 실시하여 1996년 2월 1일부터 직불카드업무를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직불카드업무 시행 이후 신설된 VAN사업자들은 "직불카드 참여은행협의회"로부터 직불카드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하여 직불카드업무에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신설 VAN사업자의 직불카드 Center-VAN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Sub-VAN으로 참가하여 직불카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고객카드업무

고객카드업무는 통신사 또는 정유사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자신의 보너스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대금으로 결제하거나,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업무다. 금융결제원은 VAN사업자의 과잉공급으로 포화된 신용카드 시장에서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1999년 9월 현대정유 포인트카드 및 1999년 12월 한국통신프리텔 보너스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 제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보너스카드에 대한 중개 및 포인트 관리업무를 대행하였다. 2004년 7월에는 S-Oil 보너스카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재해복구시스템까지 구축 완료하였다.

이 업무는 보너스카드 발생포인트의 사용적립에 대한 업무이나 단순 포인트카드 처리로 끝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승인업무를 수반하므로 신용카드 승인업무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금영수증업무

현금영수증제도는 정부에서 세원의 투명성 제고 및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관련법령과 절차를 제정하여 전산망을 통한 현금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2008년 6월까지는 건당 5,000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 ·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 · 멤버십카드 ·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이 표시된다.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직계비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으며, 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이다.

대형가맹점 접속

대형가맹점 접속업무는 백화점, 할인점 및 대형유통센터 등과 같이 신용카드 승인관련 업무량이 많은 대형가맹점이 일반 카드승인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 자체 전산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신용카드 승인처리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금융결제원은 1996년 6월 8일 한국이동통신(현재의 SK Telecom)과 "신용카드 매출거래 관리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이동통신을 포함한 5개 업체를 시작으로 대형 법인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업무를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농협유통 등 830여개 가맹점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과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1996년 12월 19일 전산접속계약을 체결하여 위 · 변조 수표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리점 영업지원

영업지원 업무는 유통망인 뱅크포스 대리점에 단말기 보급 등의 관리업무와 단말기 이용가맹점의 민원응대 및 가맹점 정보등록업무 및 단말기 관련 기술지원 등의 업무로 구분된다.

유통망인 대리점은 1994년 4월 주요 일간지에 모집광고 및 개별섭외를 통하여 전국 14개 시 · 도에 43개 대리점을 모집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16개 시 · 도에 124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7월 24일에는 금융결제원 최초의 신용 · 직불카드용 단말기인 "DS-9500D"를 개발하여 출시한 이래 2016년 6월 현재 3개 제조사의 유선단말기 11종 및 무선단말기 8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뱅크포스 단말기, POS 단말기 및 카드리더기 등 총 49종의 단말기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단말기 인증을 취득하였다. 특히 에쓰오일 및 현대오일뱅크 셀프주유소용 보안단말기는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아 보급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별도의 보안 단말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형 POS 결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다.

지역별 BANKPOS 영업대리점 현황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대리점수	37	5	8	3	4	7	3	20
지 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리점수	8	4	5	4	4	4	6	2

CMS

개요

CMS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펌뱅킹과 달리 모든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자금이 이용기관에서 지정한 하나의 모계좌로 입금되는 편리함이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 한해 직접 접수를 허용하는 지로 자동이체와 달리 CMS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금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증수단을 제출받아 직접 접수를 이용할 수 있어 중 · 소형 이용기관에 적합한 출금이체 방법이다. 제출 받은 보증수단은 이용기관의 위험관리 및 부당인출 등에 대한 고객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용기관(사업자)은 은행공동 지급결제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저의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의 고객은 국내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선택에 제약 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정해진 날짜에 이용기관이 자동 출금하므로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기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2009년 동양증권 등 금융투자회사가 참가하여 현재는 국내 전 은행과 24개 금융투자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CMS 홈페이지(www.cmsedi.kr)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준사원으로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2014년 2월 "CMS 안정성 강화방안" 실행 추진 일환으로 CMS 신규 이용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보장하고 있다.

업무내용

CMS는 업무형태에 따라 출금이체업무(수납업무)와 입금이체업무(지급업무)로 나눌 수 있다. 출금이체업무는 각종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회비, 학자금, 후원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수납을 위해 납부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이다. 입금이체업무는 급여, 배당금, 이자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지급을 위해 이용기관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업무이다.

출금이체서비스

CMS출금이체서비스는 이용기관이 D-1일 출금자료를 전송하면, D일 출금 후 D+1일 출금결과를 제공하는 출금이체(3일)서비스를 서비스 실시 초기부터 제공해왔다. 2009년 10월부터는 출금이체(당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D일 10:00 이전에 출금자료를 전송하면 당일 출금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3일 및 당일이체 서비스는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어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4년 2월 "CMS 안정성 강화방안"의 실행 추진 일환으로 CMS 신규 이용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출금한도를 담보(보증)범위내로 제한하였으며, SMS 등을 통한 이용자 출금동의 확인 강화 및 출금자금 이체기일 연장 등 부당출금 인지 가능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CM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2017년부터는 고객이 자신의 출금이체 동의관련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기관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의 이미지나 녹취내용 등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해야 한다.

CMS는 2016년 6월 현재 약 2만여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3일이체 연간 처리량은 7억 7,100만건으로 처리금액은 약 86조원, 당일이체는 연간 1,300만건에 처리금액은 5.5조원에 달한다.

입금이체서비스(지급업무)

급여, 배당금, 적립금, 환불대금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을 이용기관이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이다. 2013년 참가 은행의 펌뱅킹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현재 업무가 줄었지만 여전히 대량의 자금을 입금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용기관은 지급 또는 수납계좌 보유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CMS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대량자금이체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서비스는 CMS이용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금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좌의 실명조회 및 고객계좌등록(해지)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계좌실명(예금주명)을, 비정상계좌인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려 주는 실시간 계좌실명서비스와 고객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금융기관 전산에 즉시 출금이체 신청(해지)내역을 등록하고, 비정상계좌이거나 등록(해지)이 불가한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려주는 실시간 출금이체 신청 등록(해지)서비스가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연간 처리량은 1.1백만 건에 달한다.

ASP업무(빌링원플러스)

BillingOne plus 빌링원플러스는 CMS출금이체 및 입금이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이용기관이 별도의 고객원장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원장관리부터 수납 · 지급 파일 생성 및 송수신, 수납 · 지급내역관리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billingone.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약 4,000개 정도의 이용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빌링원플러스 홈페이지(www.billingone.or.kr)

CMS현금영수증

이용기관의 출금내역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거래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용기관의 CMS 출금요청 · 출금결과 파일을 토대로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이 대행 생성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과, 이용기관이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직접 만들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다시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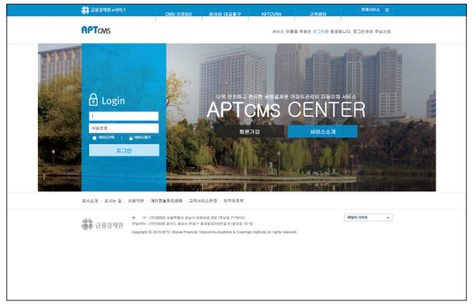
아파트관리비 출금이체 중계

APTCMS 아파트 관리소가 관리비를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업무이다. 이전 민간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관리비 수납업무 종속을 탈피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납부불편 해소와 은행 고유상품인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중계업무를 실시하게 된 서비스다.

최근 5년간 CMS업무 처리 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입금이체	건수	68,073	39,239	5,011	4,548	4,327
	금액	27,035,985	17,959,192	4,438,316	5,479,754	6,447,439
출금이체	건수	698,668	708,495	717,273	734,450	771,183
	금액	87,857,784	86,221,053	83,782,904	82,507,965	85,957,250



APTCMS 홈페이지(www.aptcms.kr)

지로EDI

개요

지로EDI서비스는 기존 MT 또는 FD(Floppy Disk) 등에 수록하여 인편으로 주고받던 수납내역서 등 각종 지로 관련 자료를 지로이용업체와 금융결제원을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망으로 연결하여 신속 ·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송 · 수신 및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지로EDI 홈페이지(www.cmsedi.kr)

업무내용

지로EDI 서비스는 1994년 제94-5차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의결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5년 12월 본격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지로EDI서비스는 약 600여개의 이용업체가 일반이체, 자동이체 및 대량지급 등의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은 지로자료의 편리하고 신속한 송 · 수신이 가능하며, 자료수발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이용기관에서 지로자료의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다.

지로EDI업무는 전송자료의 종류에 따라 일반이체 자료 송 · 수신업무, 자동이체 자료 송 · 수신업무, 대량이체 자료 송 · 수신업무로 나눌 수 있고, 자료 송 · 수신 방식에 따라 이용기관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지로EDI시스템 간에 전용선을 연결하여 자료를 송수신 하는 Host접속 방식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e-giro.giro.kr)를 이용하는 인터넷 방식이 있다.

기타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정보중계업무는 교육기관이 "지방교육 행 · 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세입 · 세출과 관련된 각종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교육부 및 18개 참가은행과 연계하여 중계 처리하는 업무이다.

학교의 각종 자금 수납 및 지급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결



에듀파인 홈페이지(edu.cmsedi.kr)

제원은 교육부로부터 2009년 6월 25일 이 사업을 위탁 받아 2010년 5월 31일부터 본격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이용기관 수는 10,000여개로 전체 학교의 약 90%가 이용 중에 있다.

온라인 대금청구

정부납품대금청구

정부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narabill.kr)에서 세금계산서, 승낙서, 거래명세서 등 대금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이다.

2007년 1월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구축 · 운영해온 재정경제부는 당시 이 시스템 중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던 물품 및 용역공제자의 대금청구 및 일부 재정지출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금융결제원에 요청, 2009년 1월부터 정부납품대금청구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이용기관 수는 약 11만개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 특화된 서비스(G2B)로 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성장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고객(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trusbill.kr)에서 발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중계하는 업무로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Yessign) 도입 초기에 인증서 적용 분야의 확대 차원으로 2002년 8월에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이용기관 수는 10만여개이며, 2011년부터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도 홈택스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백업

전산백업업무는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시 전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백업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하며 금융결제원에 "백업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참여를 요청, 2008년 10월부터 수출입은행의 백업센터를 구축 ·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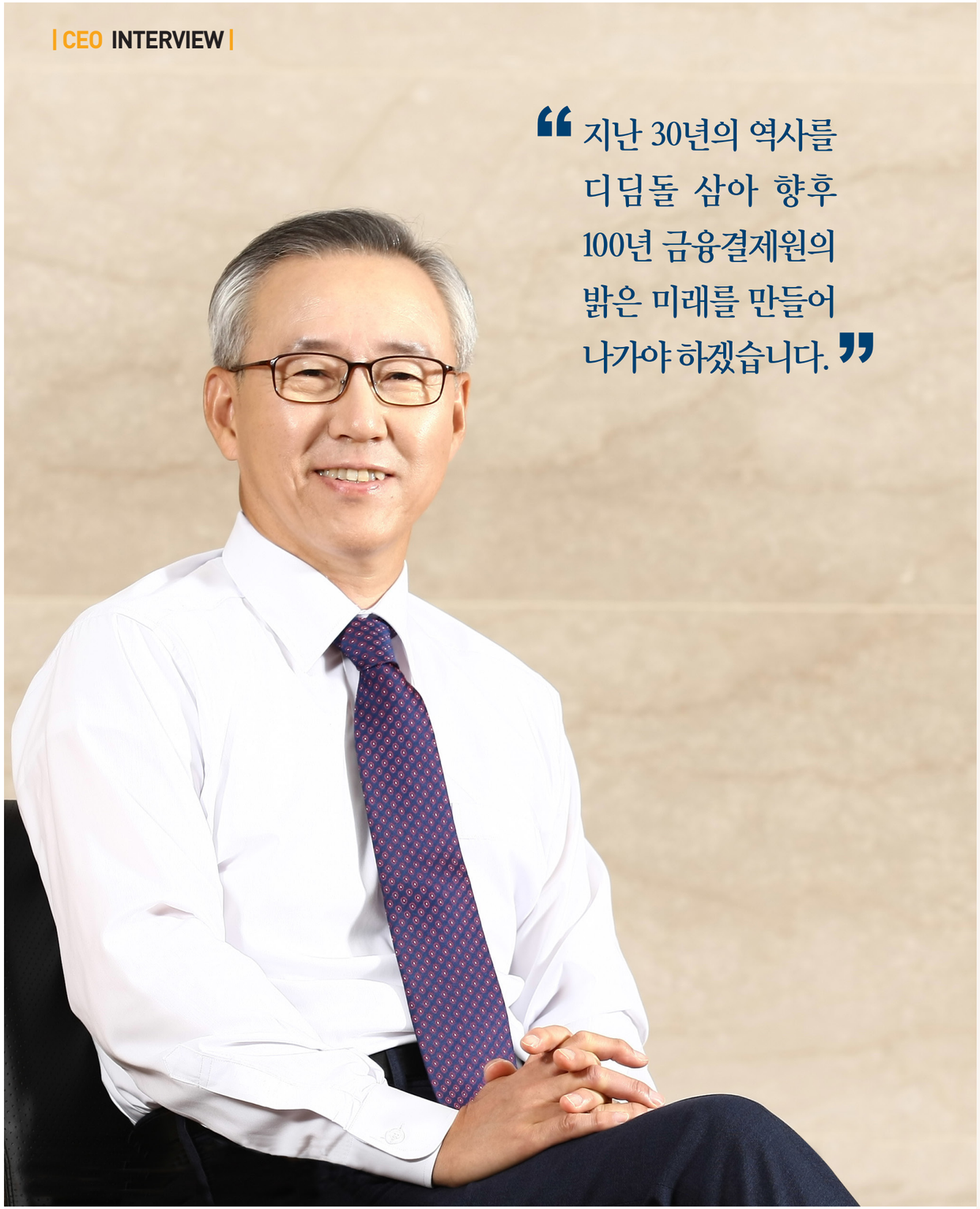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이를 수익사업(非회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16년 6월 현재 금융결제원의 전산백업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외국환중개(주) 등 2개 기관이 있다.

V

제5편 금융결제원의 비전

제1장 신 비전 및 가치체계

제2장 대내·외 경영환경 및 금융결제원의 발전방향



"지난 30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향후 100년 금융결제원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다가 금년 4월에 금융결제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인상은 어땠습니까?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제가 일했던 한국은행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직원 개개인이 각자 맡은 일에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친밀하게 지내며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점도 좋게 생각되었습니다.

올해로 금융결제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창립기념사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의 일생에서 "서른 살"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변곡점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가 10대 중반에 찾아오는 사춘기이고, 두 번째가 서른 살을 넘기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사춘기가 이전의 자신을 통째로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서는 진통기라고 한다면, 서른 살은 예전과는 다른 진지함과 성숙함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삶의 패턴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회사와 같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살, 스무 살 때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변화를 모색합니다.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덩치도 몰라보게 커집니다. 그러나 서른 살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시행착오에 뒤따르는 위험은 훨씬 커지고 성장속도도 느려집니다. 일이 안 풀리더라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전에 없이 책임도 커집니다. 한 마디로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간 쌓아 올렸던 조직의 역량을 냉정히 뒤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30년, 60년,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마인드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 원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미 있는 시기를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향후 100년 금융결제원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급결제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결제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어음수표교환이나 단순송금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의 지급결제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첨단 부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력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지급결제서비스에서 IT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우리 원의 컨설팅 보고서는 향후 주목되는 금융산업 연관기술로 플랫폼(오픈 API), 블록체인, 정보보안, 빅데이터의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지급결제서비스도 이 네 가지 기술을 기본축으로 하여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요구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성과 안전성은 다소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편리함과 효율을 추구하다보면 어느 정도 안전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은 간편결제를 구현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홍채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지급결제시장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출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편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난립해 있는 서비스와 업체들도 조정을 거칠 것이며, 종국에는 몇 개의 주력 서비스와 주력 업체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금융결제원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할까요?

IT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급결제부문의 강자였던 금융회사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위축되면 자연히 금융결제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전략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한 것도 이러한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택한 것은 네트워크 개념의 전통적 결제서비스가 미래에도 굳건히 존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합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변화와 기술발전 추세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의 기본 기능, 즉 고객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건히, 그리고 충실히 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조류에 너무 민감히 대응하다 보면 기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원 업무에 적용하고 응용할 때도 항상 "금융결제서비스 중심"으로서의 역할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결제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업무의 내용이나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면 임기 중에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와 업적을 내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CEO의 임기와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해법은 CEO의 임기를 늘리던가, 아니면 임기에 맞는 단기적 목표만 추구하든가 둘 중 하나일 텐데 그 어떤 것도 쉽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IT회사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지만 금융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금융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인적자본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외부적 제약요건이 많긴 하지만 업무 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근무환경 개선, 차세대 인재의 육성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원장님의 리더십이나 업무추진 스타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둘째는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혼자 주도하는 카리스마형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결정을 내리는 신중형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입이 우월한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창의력이나 통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자질이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카리스마형을 지향하는 케이스입니다. 조직을 망치는 독불장군식 리더십입니다.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무에 비해 권리가 너무 많으면 우린 그것을 모럴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권리에 비해 의무가 너무 많으면 우린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 "고객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건**히, 그리고 **충실**히 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쪽이든 정상은 아닙니다. 한 사회나 조직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척도는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특히 권리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큰 간부직원들은 그에 맞는 책임의 분량도 커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임원, 부실장, 팀장들 모두 이 점을 명심하면서 업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체득한 인생의 지혜나 철학 가운데 직원들에게 꼭 들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지혜나 철학을 말하기엔 역량이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에서도 공을 멀리 치려고 애를 쓰면 절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을 쥐어짠다고 해서 부모 뜻대로 크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공을 치고, 집착을 버리고 아이를 대하면 공은 똑바로 멀리 날아가고 아이들은 숨겨진 능력을 무섭게 발휘합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더 챙기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과 인간관계는 결코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모으는 자석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악취가 되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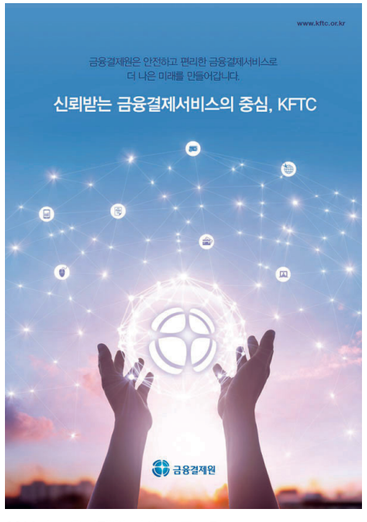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보상을 받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 그런 인간관계가 풍성한 조직은 품격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원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입니다.

01

신 비전 및 가치체계

1. 가치체계
2. 가치체계의 변천
3. 신 가치체계 정립 배경 및 구성 개요

1986년 설립 이후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미션, 비전 등 지향이념 및 가치체계를 시대상황에 맞게 재정립해온 금융결제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 외 금융서비스 및 지급결제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미래도약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016년 금융결제원 신 비전 포스터

가치체계

금융결제원은 2016년 조직구성원들이 추구, 실현해야 할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였다. 1986년 설립 이후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미션, 비전 등 지향이념 및 가치체계를 시대상황에 맞게 재정립해온 금융결제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 외 금융서비스 및 지급결제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미래도약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새롭게 정립한 미션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더욱 큰 미래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금융결제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

미션

금융결제원이 새롭게 정립한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이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핵심역량이자 설립 기반이기도 한 지급결제서비스를 비롯하여 정보중계업무 등 금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는 사업 영역 및 역할을 포괄적으로 표현함과 아울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더욱 큰 미래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안전”과 “편리”라는 키워드를 통해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함으로써 신뢰와 효율, 금융결제서비스의 선진화, 고도화를 구현하겠다는 금융결제원 본연의 사명의식, 고유한 지향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비전

금융결제원의 비전은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이다. 이는 금융결제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금융결제원의 경영철학과 미래상을 담고 있다.



핵심가치

금융결제원은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로 “전문성(Knowledge)”, “미래지향(Forward-looking)”, “신뢰(Trust)”,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설정하였다.

우선 “전문성”은 맡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적, 차별적 역량을 확보하여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지향”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급변하는 대내 · 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고객만족”은 고객우선, 고객중시의 자세로 금융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고객감동과 고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재상

금융결제원은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와 연계하여 이를 구현해나갈 인재상(人才像)도 새롭게 정립하였다. 금융결제원의 인재상은 “자기 분야의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Passionate Professional)”, “창의적 사고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Creative Challenger)”, “고객과 동료로부터 신뢰받는 인재(Sincere Partner)”,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재(Customer Value Creator)”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신 인재상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을 다함은 물론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신 인재상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을 다함은 물론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가치체계의 변천

제1차 비전, 미션의 정립

금융결제원이 지향하는 가치체계는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화해왔다.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후 세계적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 지급결제서비스 기관”을 최초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 안정성 제고,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 보급, 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 촉진, 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 조직역량 강화”를 미션으로 정립하였으며, 비전 및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원훈)는 인화(人和), 지성(至誠), 창의(創意)로 설정하였다.

제1차 가치체계 정립(설립 이후 ~ 2008년 6월)

미 션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 안정성 제고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 보급 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 촉진 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 조직역량 강화
비 전	세계 최고수준의 종합 지급결제서비스 기관
핵심가치 (원 훈)	인화(人和), 지성(至誠), 창의(創意)

제2차 비전, 미션의 정립

금융결제원의 가치체계와 원훈은 제1차 정립 이후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00년대 이르러 시대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비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인구의 급격한 확산, IT기반 금융결제서비스의 니즈 증대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08년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치체계 역시 재정립하였다.

당시 금융결제원이 새롭게 정립한 비전은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급결제 파트너"였으며, 새로운 미션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 조직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재설정하였다. 다만, 미션의 경우 기존 미션에서 큰 변화 없이 일부만 보완하였는데, 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존 미션 중 "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 촉진"은 제외하였으며, "조직역량 강화" 항목은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핵심가치는 "고객만족, 신뢰, 혁신, 열정"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제2차 가치체계 정립(2008년 6월~2016년 5월)

미 션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비 전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급결제 파트너
핵심가치	고객만족, 신뢰, 혁신, 열정



제3차 비전, 미션의 정립

금융결제원은 2016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 미래 30년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016년 5월 새로 정립된 비전은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로 금융결제서비스의 핵심요건인 안

제3차 가치체계 정립(2016년 5월~현재)

미 션	·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비 전	·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
핵심가치	· 전 문 성 (Knowledge) · 미래지향 (Forward-looking) · 신 뢰 (Trust) ·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전성과 편의성, 효율성 면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확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유사 체계를 유지해왔던 전략목표 성격의 "미션"은 조직의 설립 목적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로 재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비전과 미션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는 기존 핵심가치 가운데 "신뢰"와 "고객만족"은 유지하는 한편 "전문성"과 "미래지향"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전문성(Knowledge), 미래지향(Forward-looking), 신뢰(Trust),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으로 재설정하였다.



신 가치체계 정립 배경 및 구성 개요

배경

2010년대에 이르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핀테크의 확산, 정책당국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비금융기관의 시장참여 확대 등으로 금융 및 지급결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시장 내 경쟁 격화, 정책당국의 성과주의 도입 요구 등 경영효율성 제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금융결제원은 2016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관의 미래전략을 포함한 가치체계를 재정립하여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향후 30년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신 가치체계 수립을 추진,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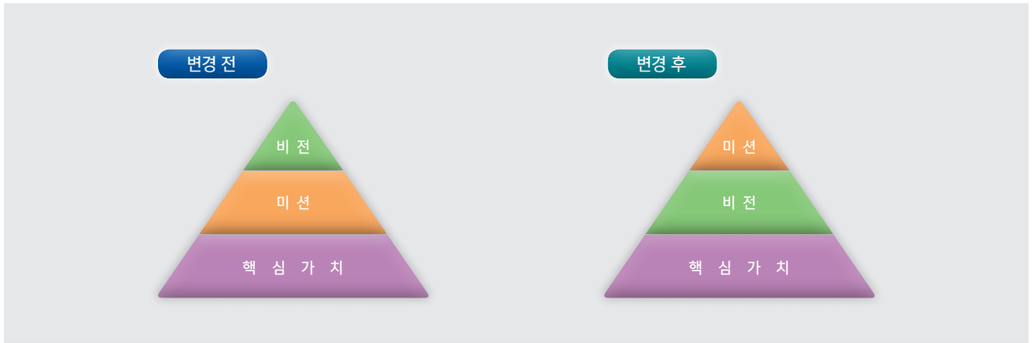
미션

금융결제원이 새롭게 정립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란 미션은 기관의 근본적 존재 이유와 목적, 미래 지향점 등을 제시함과 아울러 향후 추구, 실현해야 할 사명과 역할, 목표를 명확히 천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게 발전적 노력의지를 확고히 다지게 하고 진취적 행동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2008년 정립한 기존 미션은 그동안 대내 · 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상황과 시각에서 일부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항목의 경우 금융결제원 역할이

미션의 구성요소

구 분	고려사항	키워드
역 할 (How)	고객의 기대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금융결제서비스
고 객 (Who)	금융결제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미래
기대가치 (What)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안전, 편리

가치체계의 우선순위 조정(2016년)



다소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 항목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등 신규 고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미션은 신규 사업의 범위를 지급결제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하였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2016년 대내 · 외 환경변화와 미션의 구성요소인 역할, 고객, 기대가치의 변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션 재정립을 추진,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였다. 특히 새로 정립한 미션의 경우 미션 항목을 비전의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격상, 가치체계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및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설립목적과 미션을 동일한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기관의 가치체계를 보다 간결명료하게 재수립하였다.

미션의 재수립

기존 미션	재수립 미션
·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 사원은행 및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	
·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비전

금융결제원은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란 새로운 비전 정립을 통해 기관의 궁극적 사명과 역할을 표현한 미션과 더불어 향후 금융결제원의 지향목표와 미래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비전을 정립함에 있어 비전의 구성요소인 사업영역, 고객가치 제공, 미래 이미지, 핵심역량 등을 기존의 비전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이를 보완하여 새 비전을 정립하였다.

기존의 비전인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지급결제 파트너"의 경우 "사업영역"

비전의 구성요소

구 분	고려사항	키워드
사 업 영 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서비스의 범위	금융결제서비스
제 공 가 치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궁극적인 가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시 · 공간적 범 위	사업 및 서비스의 시간 · 공간적 범위이자 비전의 목표시점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 글로벌 연계 강화
미래이미지	비전 달성 시 금융결제원의 대외적 위상 및 포지션	신뢰받는 조력자
핵 심 역 량	우선적으로 선택,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가치 및 핵심 성공요인	금융산업 선도
서비스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 · 간접적 고객	참가기관, 정부 및 금융소비자



비전의 재정립

기존 비전	재정립 비전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급결제 파트너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

측면에서 새롭게 확대되는 금융정보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정보중계 역할 등을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가치 제공” 측면에서는 현재 금융결제원의 핵심고객인 사원은행의 금융결제원 제공 사업에 대한 니즈 반영이 미흡하고, “미래 이미지” 측면에서 역시 현재의 “파트너”는 금융결제원의 담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기관의 역할과 차별화된 특성, 비전 구성요소별로 도출된 주요 키워드 등을 종합하여 비전 재정립을 추진,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라는 비전을 최종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최고 수준의 금융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핵심가치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방식의 준거가 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임 · 직원들이 비전 달성을 위해 지키고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

핵심가치

핵심가치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방식의 준거가 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임 · 직원들이 비전 달성을 위해 지키고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핵심가치의 주요 구성요소인 회사, 구성원, 고객의 관점에서 기존의 핵심가치를 진단하고 키워드를 새롭게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핵심가치 중 “고객만족”과 “신뢰”는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핵심가치 중 “혁신”의 경우 서비스 개선 및 안정성 유지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이라는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핵심가치 중 “열정”의 경우 열정의 대상, 동기, 보상 등에 대한 임 · 직원들의 공감대 미흡으로 핵심가치에서 제외하는 대신 금융결제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역량 확보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전문성”을 핵심가치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핵심가치인 “신뢰”와 “고객만족”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문성”과 “미래지향”을 추가하여 최종 핵심가치는 전문성(Knowledge), 미래지향(Forward-looking), 신뢰(Trust),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핵심가치의 영문 첫 글자를 “K.F.T.C.” 즉, 금융결제원 영문 명칭 이니셜과 동일하게 조합함으로써 보다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핵심가치의 구성요소

구 분	고려사항	키워드
회 사	조직성과 증대를 통한 금융결제원의 가치제고 관점	미래지향, 선도
구성원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관점	신뢰, 고객만족
고 객	자율적 동기부여 및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관점	전문성, 책임

핵심가치의 재정립

기존 핵심가치	재정립 핵심가치
고객만족, 신뢰, 혁신, 열정	전문성, 미래지향, 신뢰, 고객만족

eA업실 사원 | 박성준

토론! 비전 배틀
참가기



저는 우리 원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토론! 비전 배틀(battle)"에 "e-노베이션"이라는 팀명으로 참가했던 박성준 사원입니다.

저는 토론! 비전 배틀 개최 공지를 보고 eA업실에서 근무 중인 홍기수 과장, 탁다미 계장과 함께 토론 배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앞으로도 우리 원에 오랫동안 근무할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하면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토론! 비전 배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비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로 배틀에 참가하기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을 참고하여 조직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비전의 세 가지 요소를 목적,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우리 원의 성격과 목표, 업무 등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은 비전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결국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의 현실적 여건을 분석하고 미래 전망을 예측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다수의 직원이 공감, 노력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수립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토론! 비전 배틀에 참가하게 되었고, 여러 선배님과 토론을 벌이며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미래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앞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 비전 배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점은 조직의 성과는 소통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토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저희 팀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비전수립 과정을 직원들과 함께 토론, 공유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이번 비전을 직원들과 함께 상호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금융결제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이 대내 · 외적으로 더욱 활발히 소통하는 조직이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02
대내 · 외 경영환경 및 금융결제원의 발전방향

1. 대내 · 외 경영환경
2. 금융결제원의 발전방향 및 계획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함께 은행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분야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핀테크 육성 정책"을 선정하였다.

대내 · 외 경영환경

2010년대에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 각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적 저성장과 저금리, 저소비 등으로 정의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자금교류의 촉진은 1980년대 금융의 국제화 바람으로 연결되었고, 금융의 국제화는 자국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금융규제 철폐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자유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이르러서는 전 세계 금융산업이 무한 경쟁체제로 개편되면서 금융기관 간 인수 · 합병으로 거대 금융기관이 등장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2000년대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활발한 인수 ·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출현 등으로 소수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양적 팽창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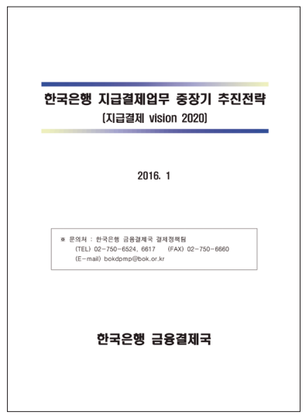
집중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 각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적 저성장과 저금리, 저소비 등으로 정의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대외 환경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기관 또한 세계적 경기 둔화와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신규 설립 은행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영업을 개시할 예정에 있어 향후 은행 및 금융업권 간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정책환경의 변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함께 은행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분야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핀테크 육성 정책"을 선정하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정책의 추진효과가 금융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 전략 (지급결제 vision 2020)" 2016. 1.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 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전략에는 "소액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의 대부분이 금융결제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향후 한국은행과의 유기적 정책공조 및 협력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변화촉진을 위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과 금융규제 개혁,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및 인터넷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은 · 산분리 완화 등의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도 관련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개방, 공유,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책을 생산 중이며, 공공정보의 유용한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 부처와의 서비스 협력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급결제산업 환경의 변화

지급결제산업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는 먼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동통신사를 시작으로 유통회사, IT 회사, SNS 플랫폼사업자 및 스마트폰 제조회사를 포함한 비금융기관까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점차 다원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다원화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는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차별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반면 금융정보의 수집 · 처리 주체 및 계층의 다원화와 복잡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사고에의 노출 경로 증가 및 이에 대한 공격 대응 부담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가져 오고 있다.

2015년 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약 4,239만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1%가 증가, PC를 이용한 순수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약 3,563만건을 추월하였다. 은행 거래 중 비대면 거래의 비중은 이미 89.2%이며,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등 비대면 거래 영역 확대에 따라 더 이상 영업점이 필요 없는 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서비스는 단순 부가채널 역할에서, 통합 멤버십 및 모바일 메신저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상품 간 시너지 창출과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통합 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이행을 위해 지

플랫폼사업자,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의 간편 송금 · 결제가 지급결제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국내 · 외 지급결제인프라 간 상호 연계성 확대 등 결제리스크 증가에 따른 감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규제완화와 맞물려 고객의 편의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B2C 전자상거래의 경우 2016년에는 모바일 쇼핑이 PC 기반의 온라인 쇼핑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제휴하던 형태의 이체 및 납부서비스도 오픈플랫폼과 연계하여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플랫폼사업자,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의 간편 송금 · 결제가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 사회환경의 변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 역시 저성장 경제 기조 및 시장 내 경쟁 격화로 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구매 시장과 해외 송금 규모의 급격한 성장 및 FTA를 통한 경제통합, 교류 증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지급결제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중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 및 국내 시장에의 공격적 진출 등으로 경제의 국경 또한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더구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 활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경제의 악순환 구조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라이프(Smart Life)가 대중화되었으며 특히 SNS는 페이스북 등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중심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니즈에 맞춘 온 · 오프라인 서비스의 융합(O2O), 파괴적 혁신 기업의 출현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카카오택시, Uber 등 혁신 기업 및 서비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자 중심의 온 · 오프라인 시장의 구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기술환경의 변화

최근 기술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키워드로는 블록체인, 플랫폼, 빅데이터, 바이오 인증 등을 들 수 있다. 블록체인의 경우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적용된 기반 기술로 거래 장부를 중앙컴퓨터 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분산 원장기술)을 의미하며, 해외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경우, 초기 광범위한 고객기반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과 서비스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우리은행이 최초로 구축한 메신저 기반의 모바일 금융플랫폼인 "위비톡"을 시작으로 금융기관 간 시장선점 경쟁 및 기 구축 플랫폼과의 제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의사결정, 고객관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정부 3.0"의 한 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통해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을 모색 중에 있으며, 금융유관기관 중 코스콤의 경우도 빅데이터 시장심리지수(Market Sentiment Index : MSI)를 개발하여 이미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플랫폼을 통한 정보 축적과 연계하는 등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사후규제 및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책임 강화,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거래방지시스템) 등 관련 보안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인증 및 정보보안 기술과 관련 2015년 말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 완화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기점으로 관련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인증기술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에의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적용이 도입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사후규제 및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책임 강화,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거래방지시스템) 등 관련 보안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핀테크 혁명 시대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프로세스 등 전원적 프로세스에 대한 IT전문가 적극 참여, IT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역량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부 경영환경 분석

금융결제원의 최근 연도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어음교환 업무량이 2015년 전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업무량 감소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었으며, 지로업무 역시 2014년 1.1% 감소에 이어 2015년에도 1.5% 감소하는 등 쇠퇴기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e사업과 인증업무의 경우에는 2015년도 업무량이 각각 5.2%와 6.9%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공동망의 경우에도 2015년 역시 업무량이 9.1% 증가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공동망 중 약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금융의 실적 증가분 중 97%는 모바일뱅킹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등 모바일뱅킹이 전자금융 업무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금융보안연구원으로부터 OTP업무 인수, 자동이체통합관리업무 본격 실시, 정보중계업무 확대 등에 따라 금융투자 및 보험회사의 금융결제원 사업에 대한 특별참가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중 금융결제원의 내부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부서와 IT부서 간 협업 제고, 신사업 개발 및 부진사업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전원적인 전략



경영체계와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핀테크 혁명 시대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프로세스 등 전원적 프로세스에 대한 IT전문가 적극 참여, IT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역량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발전방향 및 계획

대내 · 외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혁신 및 관련제도 변화에 걸맞은 국내 지급결제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방향

금융공동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산업의 중요 인프라로 국가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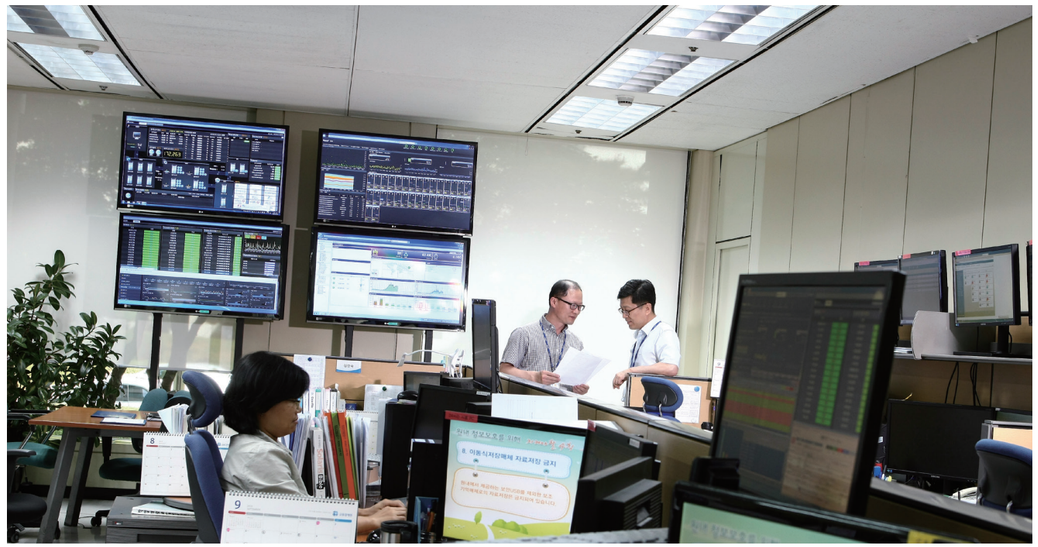
한국은행 "지급결제 vision 2020"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은행도 “지급결제 vision 2020”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전략목표로 제시하는 등 안정적 금융결제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다원화와 간편한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어음, 지로, 금융공동망 등 지급결제시스템과 서비스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우리나라 금융결제산업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 · 외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혁신 및 관련제도 변화에 걸맞은 국내 지급결제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 등 참가기관을 포함한 범금융권과 정부기관과의 견고한 연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금융공동망 등의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사업 분야로의 진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라이프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핀테크 혁신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T 경쟁력 제고 및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화 및 유연화를 달성하고 전원적인 전략경영과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신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고, 은행 등 참가기관을 포함한 고객가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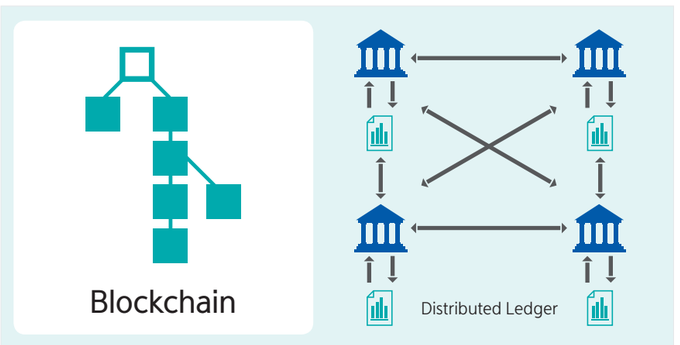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대내 · 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은행 등 참가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산업의 대변자 역할과 선진 지급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와 금융기관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둘째, 금융결제원은 금융권과의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결제 관련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내부적으로 Business Start-up 추진체계와 전략적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구축, 금융권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셋째, 서비스 측면과 시장 측면에서 신규사업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신규사

블록체인의 개념도



업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중 · 장기적 시각으로 국내 · 외 지급결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해외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 신규 글로벌 서비스 발굴 등 해외 지급결제 연계 및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신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고, 은행 등 참가기관을 포함한 고객 가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첫째, 기존 인증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증인프라를 활용한 신규서비스의 제공, 바이오인증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및 FIDO 기반 인증플랫폼 구축 등 인증사업 확대개편을 통해 "통합 인증 플랫폼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관련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금융공동망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등 탈중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payinfo, accountinfo) 등 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정보 조회, 유통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중계기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넷째, 기존 사업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 신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대고객 사업 고도화 및 스마트환경 전환 추진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금융결제원은 전원적으로 IT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 · 활용, IT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IT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섯째,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 강화하는 등 금융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및 전략적 경영체계 구축 등 급변하는 대내 · 외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미래지향적 경영체계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의 사업추진 체계를 점검, 개선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이 더욱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전략과 사업전략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전원적 신규사업 발굴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전략과 사업전략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전원적 신규사업 발굴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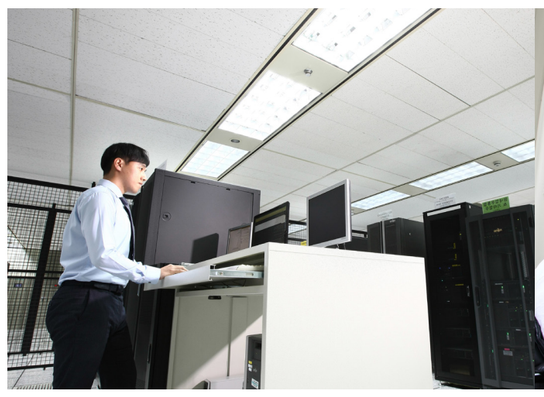
둘째, 전원적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조직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원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 조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결제원은 전원적 전략과 부문별(IT, 정보보호, 사업) 전략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목표 달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넷째, 금융결제원은 새로 수립한 가치체계 내재화를 통해 능동적 조직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고 전문역량 강화 및 투명경영의 지속 추진을 통하여 전원적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금융결제원 내부 경영진단을 통하여 조직 구조 및 체질 개선 등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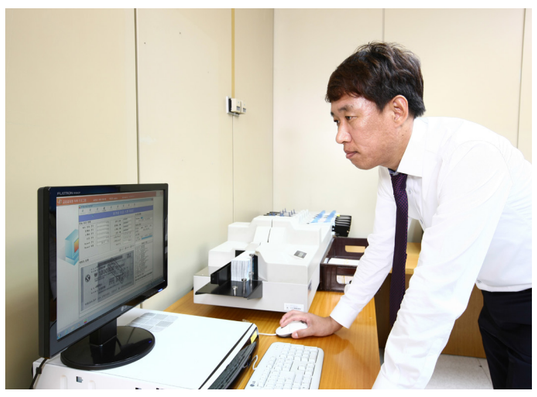


전문성 Knowledge

최고 수준의 전문 역량을 확보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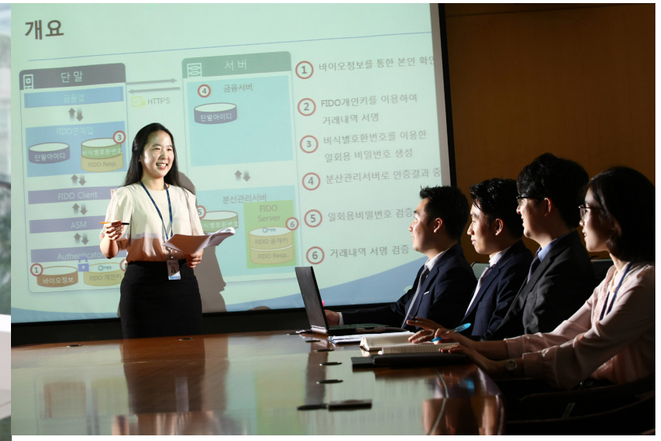




미래지향 Forward-looking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급변하는 대내 · 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금융생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뢰 Trust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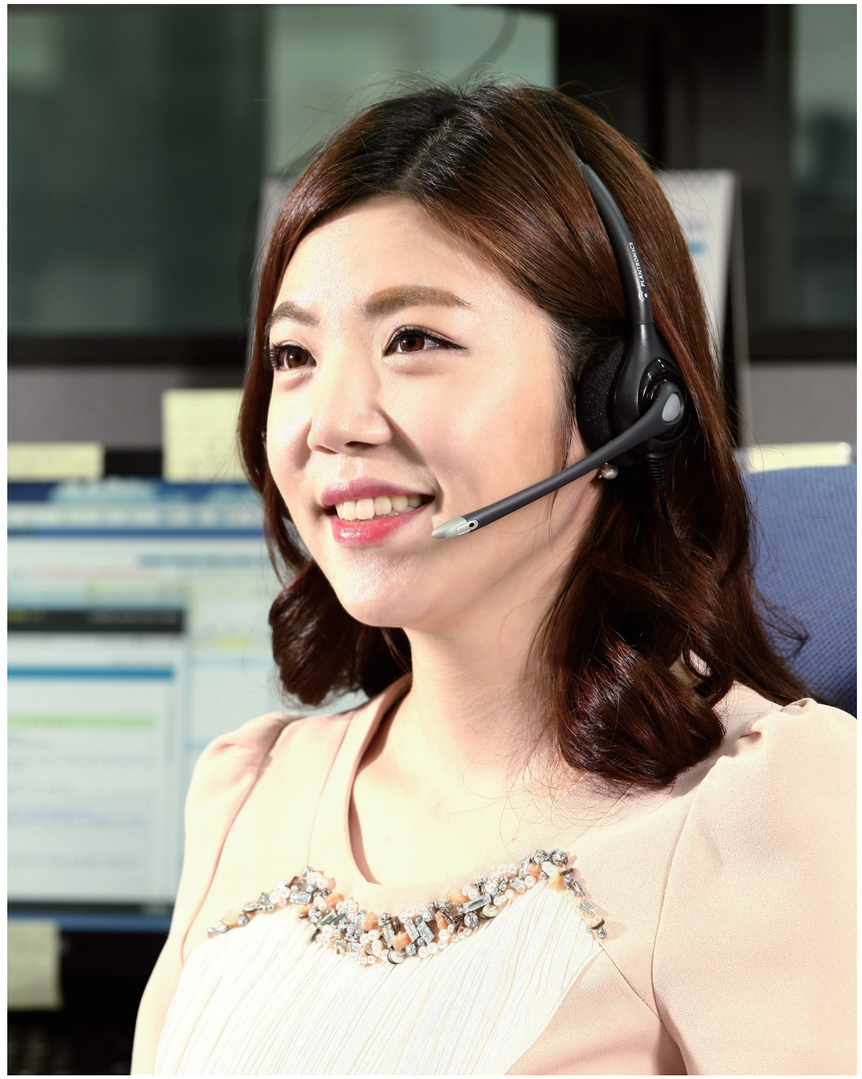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우선, 고객중시의 자세로 금융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과 고객가치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부 록

01. 금융결제원 소개
02. 조직도
03. 현 경영진
04. 역대 원장
05. 역대 임원
06. 정관
07. 사원 · 준사원 · 특별참가기관
08. 국제업무 및 해외사업 현황
09. 연표
10. 통계

01 금융결제원 소개



02


03

01 일반 현황

- **설립일 :** 1986년 6월 2일
- **설립목적 :**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
- **대표 홈페이지 :** www.kftc.or.kr

02 본부

(우)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연락처 : 1577-5500

03 분당센터

(우)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3)
연락처 : 1577-5500

04 사무소

| 부산사무소 | (우)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9-1 KEB하나은행 5층)
연락처 : 051)253-5411

| 대구사무소 | (우)419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1 (주)드림상호저축은행 7층)
연락처 : 053)423-2272

| 광주사무소 | (우)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 우체국보험회관 3층)
연락처 : 062)384-2411

| 대전사무소 | (우)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46 산업은행 3층)
연락처 : 042)485-0900

05 홈페이지 현황

업무명	기본 도메인	주요 서비스	개시일
메인 홈페이지	www.kftc.or.kr	금융결제원 소개, 서비스 안내 등	1999. 03. 02
공인인증(yessign)	www.yessign.kr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1999. 11. 01
인터넷지로	www.giro.kr	각종 지로 및 공과금 납부	2000. 03. 31
K-CASH	www.kcash.kr	K-CASH 충전/환불 등 관리	2000. 07. 01
계좌이체PG	www.bankpay.or.kr	Bankpay 가맹점 관리 등	2001. 08. 16
카드VAN	www.kftcvan.kr	신용/직불카드 중계, 가맹점 관리	2001. 11. 01
주택청약	www.apt2you.kr	주택청약 신청 및 당첨자 정보 조회	2002. 01. 02
TrusBill	www.trusbill.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신 등 관리	2002. 08. 13
CMS	www.cmsedi.kr	기업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2004. 05. 20
물품대금결제	www.buycard.kr	주류(양곡)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조회	2004. 07. 01
전자어음	www.u-note.kr	전자어음 발행, 조회 등 관리	2005. 09. 27
전자금융포럼	www.efforum.or.kr	전자금융관련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2005. 10. 04
퇴직연금 공동기록 관리(RK)	www.rk.or.kr	참가기관 퇴직연금 공동기록 관리	2005. 12. 02
모비싸인	www.mobisign.kr	휴대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2008. 04. 04
국세 납부	www.cardrotax.kr	국세,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	2008. 10. 01
나라빌	www.narabill.kr	정부기관 온라인 대금청구 등 관리	2008. 11. 01
어음정보센터	www.knote.kr	어음의 등록 및 조회 등	2009. 01. 22
통합빌링ASP	www.billingone.kr	통합빌링ASP 서비스	2010. 07. 19
ExK	www.exk.kr	국가간ATM 공동이용 및 송금	2010. 12. 17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kr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발급	2012. 12. 19
금융앱스토어	www.fineapps.co.kr	금융회사별 금융앱 다운사이트	2013. 01. 31
뱅크월렛	www.bankwallet.co.kr	국내은행 공동의 모바일지갑서비스	2013. 12. 04
아파트CMS	www.aptcms.kr	아파트관리비 CMS서비스	2013. 12. 19
출금이체정보	www.payinfo.or.kr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2015. 07. 01
오픈플랫폼 공동업무	www.open-platform.or.kr	오픈플랫폼공동업무 포탈	2016. 08. 30
합 계	운영부서 : 10개 부서, 기본 홈페이지 : 25개		

02 조직도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부	고객지원실	금융결제연구소	총무부
전략기획팀	고객관리팀	연구기획팀	업무지원팀
조직관리팀	고객지원팀	(조사연구)	노사협의반
진단평가팀		(결제연구)	재산관리팀
예산관리팀		(결제기술연구)	경리팀
대외협력팀		(인증보안기술연구)	인사관리팀
법무팀		**신사업개발실**	인력개발팀
리스크관리실		신사업개발팀	**안전관리실**
리스크관리팀		신기술개발팀	**비서실**
리스크대응팀			

금융망본부			
전자금융부	금융정보업무부	어음교환부	지로업무부
전자금융기획팀	금융정보기획팀	교환기획팀	지로기획팀
전자금융업무팀	금융정보관리팀	전자어음팀	인터넷지로팀
전자상거래팀	금융정보업무팀	교환관리팀	지로업무팀
현금카드업무팀	주택청약기획팀		
미래금융실	주택청약업무팀		
미래금융기획팀	퇴직연금업무팀		
스마트금융팀	**국제업무실**		
핀테크업무팀	외환업무팀		
	국제업무팀		
	해외사업반		

IT본부		
ITT기획부	ITT개발부	ITT운영부
ITT기획팀	시스템분석1팀	시스템관리팀
백업센터추진반	공용S/W개발반	시스템지원팀
IT자원관리팀	시스템분석2팀	네트워크팀
ITT감리팀	어음개발팀	어음지로운영팀
	지로업무개발팀	금융망운영팀
	금융망개발팀	전자금융운영팀
	금융정보업무개발팀	
	모바일개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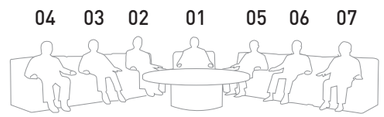
정보보호본부		
금융정보보호부	전자인증부	
정보보호기획팀	인증기획팀	
정보보호관리팀	인증업무팀	
정보보호평가팀	인증개발팀	
정보보호기술팀	인증운영팀	
개인정보보호팀	**차세대인증실**	
	차세대인증기획팀	
	차세대인증업무팀	
	차세대인증시스템팀	

e사업본부		
e사업실	VAN사업실	e사업전산실
e사업전략팀	VAN기획팀	e시스템분석팀
e사업재무팀	VAN지원반	e사업개발팀
채널사업팀	법인사업팀	VAN개발팀
CMS기획팀	BANKPOS팀	e사업운영팀
CMS업무팀	상품개발팀	
부산사무소		
대구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03 현 경영진



01 **이흥모** 원장
02 **신동원** 전무이사
03 **박연상** 금융망본부장
04 **한창현** IT본부장
05 **이종규** 경영전략본부장
06 **김영준** eA업본부장
07 **조화건** 정보보호본부장





원장 이 흥 모



전무이사 신 동 원



감사 황 문 연



경영전략본부장 이 종 규



금융망본부장 박 연 상



IT본부장 한 창 현



정보보호본부장 조 화 건



eA업본부장 김 영 준



제1대 김재윤
1986. 6. 2 ~ 1986. 11. 28



제2대 전영수
1986. 11. 29 ~ 1989. 1. 13



제3대 이창수
1989. 1. 14 ~ 1992. 1. 13



제4대 박찬문
1992. 1. 14 ~ 1995. 1. 13



제5대 신복영
1995. 1. 14 ~ 1997. 7. 21



제6대 이경재
1997. 7. 22 ~ 1998. 5. 12



제7대 김영대
1998. 5. 28 ~ 2001. 4. 5



8

제 8 대 윤귀섭
2001. 4. 6 ~ 2004. 4. 5



9

제 9 대 이상헌
2004. 4. 7 ~ 2007. 4. 6



10

제 10 대 김수명
2007. 4. 7 ~ 2010. 4. 6



11

제 11 대 송창헌
2010. 4. 7 ~ 2013. 4.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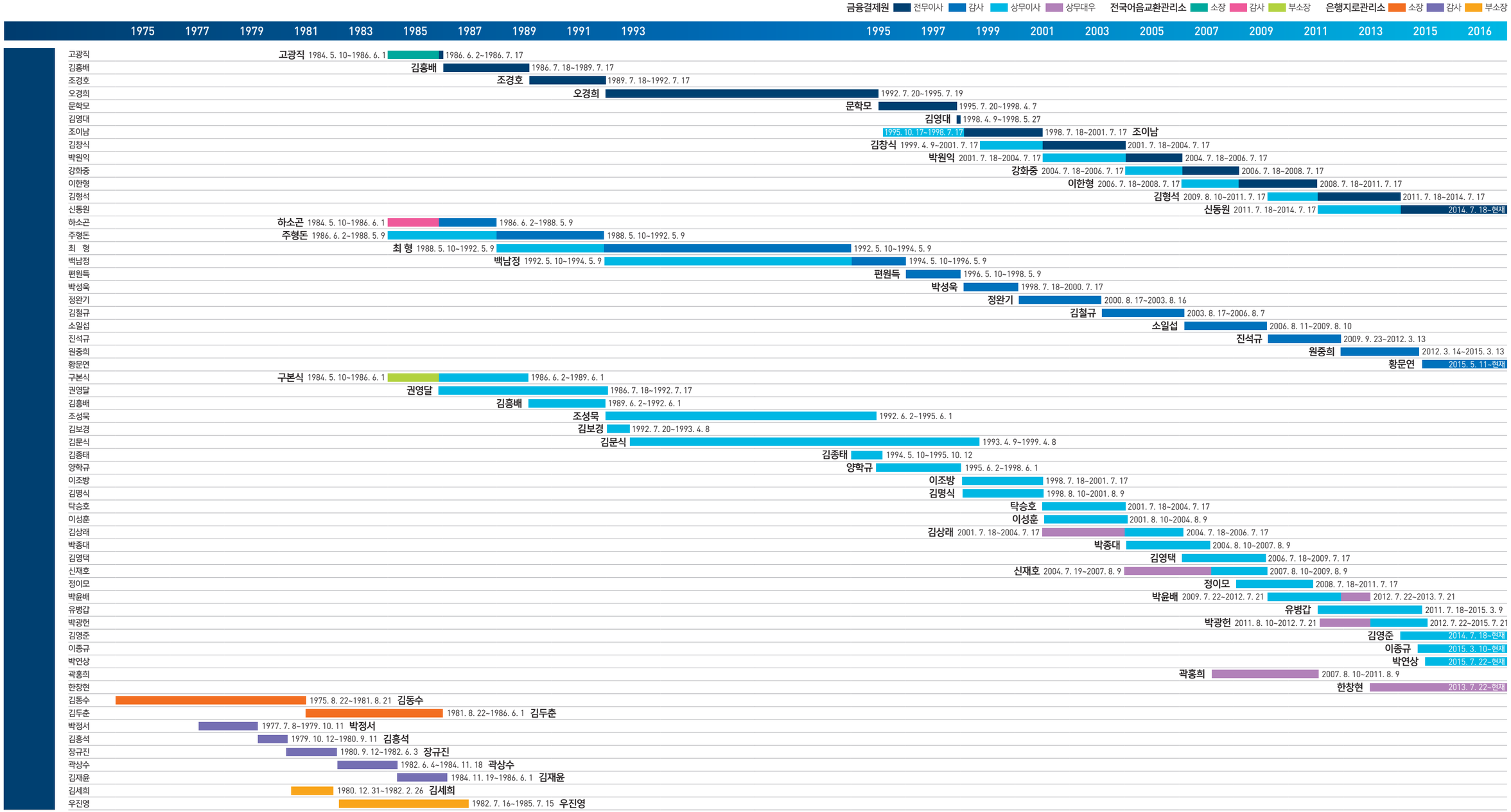
제 12 대 김종화
2013. 4. 7 ~ 2016. 4. 6



13

제 13 대 이흥모
2016. 4. 7 ~ 현 재

05 역대 임원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감사 상무이사 상무대우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소장 감사 부소장
은행지로관리소 소장 감사 부소장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고광직 1984. 5. 10~1986. 6. 1 1986. 6. 2~1986. 7. 17
김홍배 1986. 7. 18~1989. 7. 17
조경호 1989. 7. 18~1992. 7. 17
오경희 1992. 7. 20~1995. 7. 19
문학모 1995. 7. 20~1998. 4. 7
김영대 1998. 4. 9~1998. 5. 27
조이남 1995. 10. 17~1998. 7. 17 1998. 7. 18~2001. 7. 17
김창식 1999. 4. 9~2001. 7. 17 2001. 7. 18~2004. 7. 17
박원익 2001. 7. 18~2004. 7. 17 2004. 7. 18~2006. 7. 17
강화중 2004. 7. 18~2006. 7. 17 2006. 7. 18~2008. 7. 17
이한형 2006. 7. 18~2008. 7. 17 2008. 7. 18~2011. 7. 17
김형석 2009. 8. 10~2011. 7. 17 2011. 7. 18~2014. 7. 17
신동원 2011. 7. 18~2014. 7. 17 2014. 7. 18~현재
하소곤 1984. 5. 10~1986. 6. 1 1986. 6. 2~1988. 5. 9
주형돈 1986. 6. 2~1988. 5. 9 1988. 5. 10~1992. 5. 9
최 형 1988. 5. 10~1992. 5. 9 1992. 5. 10~1994. 5. 9
백남정 1992. 5. 10~1994. 5. 9 1994. 5. 10~1996. 5. 9
편원득 1996. 5. 10~1998. 5. 9
박성욱 1998. 7. 18~2000. 7. 17
정완기 2000. 8. 17~2003. 8. 16
김철규 2003. 8. 17~2006. 8. 7
소일섭 2006. 8. 11~2009. 8. 10
진석규 2009. 9. 23~2012. 3. 13
원중희 2012. 3. 14~2015. 3. 13
황문연 2015. 5. 11~현재
구본식 1984. 5. 10~1986. 6. 1 1986. 6. 2~1989. 6. 1
권영달 1986. 7. 18~1992. 7. 17
김홍배 1989. 6. 2~1992. 6. 1
조성묵 1992. 6. 2~1995. 6. 1
김보경 1992. 7. 20~1993. 4. 8
김문식 1993. 4. 9~1999. 4. 8
김종태 1994. 5. 10~1995. 10. 12
양학규 1995. 6. 2~1998. 6. 1
이조방 1998. 7. 18~2001. 7. 17
김명식 1998. 8. 10~2001. 8. 9
탁승호 2001. 7. 18~2004. 7. 17
이성훈 2001. 8. 10~2004. 8. 9
김상래 2001. 7. 18~2004. 7. 17 2004. 7. 18~2006. 7. 17
박종대 2004. 8. 10~2007. 8. 9
김영택 2006. 7. 18~2009. 7. 17
신재호 2004. 7. 19~2007. 8. 9 2007. 8. 10~2009. 8. 9
정이모 2008. 7. 18~2011. 7. 17
박윤배 2009. 7. 22~2012. 7. 21 2012. 7. 22~2013. 7. 21
유병갑 2011. 7. 18~2015. 3. 9
박광헌 2011. 8. 10~2012. 7. 21 2012. 7. 22~2015. 7. 21
김영준 2014. 7. 18~현재
이종규 2015. 3. 10~현재
박연상 2015. 7. 22~현재
곽홍희 2007. 8. 10~2011. 8. 9
한창현 2013. 7. 22~현재
김동수 1975. 8. 22~1981. 8. 21
김두춘 1981. 8. 22~1986. 6. 1
박정서 1977. 7. 8~1979. 10. 11
김홍석 1979. 10. 12~1980. 9. 11
장규진 1980. 9. 12~1982. 6. 3
곽상수 1982. 6. 4~1984. 11. 18
김재윤 1984. 11. 19~1986. 6. 1
김세희 1980. 12. 31~1982. 2. 26
우진영 1982. 7. 16~1985. 7. 15

제정 1984. 4. 27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설립준비위원회 창립총회 의결

개정 1985. 5. 10 제85-2차 총회 의결, **개정** 1986. 4. 18 제86-4차 총회 의결,
〃 1986. 5. 26 제86-7차 총회 의결, 〃 1987. 6. 25 제87-2차 총회 의결,
〃 1989. 9. 21 제89-7차 총회 의결, 〃 1990. 3. 31 제90-2차 총회 의결,
〃 1991. 2. 19 제91-2차 총회 의결, 〃 1992. 1. 14 제92-1차 총회 의결,
〃 1992. 6. 27 제92-7차 총회 의결, 〃 1992.12. 30 제92-10차 총회 의결,
〃 1994. 6. 2 제94-3차 총회 의결, 〃 1994.12. 27 제94-6차 총회 의결,
〃 1995.11. 17 제95-9차 총회 의결, 〃 1996. 8. 8 제96-4차 총회 의결,
〃 1999. 7. 24 제99-4차 총회 의결, 〃 2000. 7. 10 제00-2차 총회 의결,
〃 2006.10. 27 제06-7차 총회 의결, 〃 2012. 2. 28 제12-1차 총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결제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결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음교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업
2. 지로에 관한 사업
3. 금융공동망의 구축 · 운영사업
4.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사업
5.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전산업무의 지원 또는 대행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결제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결제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행할 수 있다.

1. 지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기관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사업
2. 금융공동망과 외부기관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정보를 중계하는 사업
3.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지급결제사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사업
4.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사업에 부수되는 공인인증 등록대행 및 관련 부대사업
5. 유사시 개별 금융기관의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한 전산백업시스템 구축 · 운영사업
6. 신용 · 직불 · 선불카드망을 이용하여 결제정보를 중계하는 부가통신 및 관련 부대사업
7. 소유 부동산의 임대

[전문개정 2012. 2. 28]

제2장 사원

제5조(사원 및 준사원 등) ①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은행은 총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제4조 제1항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은행이 아닌 기관으로서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사원자격의 취득) ① 사원이 되고자 하는 은행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은행은 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 은행이 제2항의 기일 내에 가입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결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사원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신청 은행은 제3항에 의하여 사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7조(사원의 권리와 의무) ① 사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② 사원은 제34조의 경비에 충당할 회비를 납부하고, 결제원 정관의 규정 및 각종 회의체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8조(사원명부) ① 사원명부는 결제원의 주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본점 소재지
3.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4. 설립자인 사원은 출자금액, 설립 후 가입한 사원은 가입금액

②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사원은 그 변경내용을 즉시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때 또는 기타 변경이 생긴 때에는 원장은 즉시 사원명부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원의 대표권) ① 사원으로서 결제원에 대한 모든 행위는 사원인 은행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② 사원은 제1항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을 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원자격의 소멸) 사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사원의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
2. 제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의 상실
3. 파산선고
4.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 다만, 영업계속의 목적으로 새로운 은행을 설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때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11조에 의한 제명

[전문개정 2012. 2. 28]

제11조(사원의 제명결의) 사원이 이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거나 기타 결제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대표로 있는 은행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2. 28]

② 의장은 총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개시일 전 2개월 이내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2. 28]

1. 의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관리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제27조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7일전까지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2. 28]

② 각 사원의 표결권은 1개로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8]

④ 의장은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결제원과 결제원의 어느 사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표결권이 없다.

⑥ 준사원 및 원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⑦ 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하여는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원의 가입금 결정 및 제명
3. 제5조 제2항의 특별참가기관 참가승인
4. 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분
5. 출자금 및 회비분담기준 결정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7.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8.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선임
9. 기타 의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2. 28]

제17조(총회의사록의 작성 배포)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사원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② 결제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원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 8인으로 한다. 다만, 원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개정 2012. 2. 28]

③ 비상임이사는 사원 중 한국은행에서 1인, 여타 사원 중에서 6인, 준사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2. 2. 28]

④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유고시에는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승계하는 자가 이사가 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2. 28]

제19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관리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8]

③ 제1항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그 대리인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2. 28]

⑥ 각 이사의 표결권은 1개로 한다.

⑦ 결제원과 결제원의 어느 이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표결권이 없다.

⑧ 상무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개정 2012. 2. 28]

⑨ 이사회의 서면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2. 28]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법령, 정관의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결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업무수행 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제15조 제4항에 의해 총회의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2. 28]

제22조(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배포)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결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급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6장 임원

제24조(원장) ①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은 결제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전무이사) ① 전무이사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무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6조(상무이사) ① 결제원에 3인 이내의 상무이사를 두며 상무이사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상무이사는 원장,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① 결제원에 감사 1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임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제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결과 위법 ·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결원) 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제원 상임이사는 표결권이 없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30조(상임고문) ① 결제원은 결제원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상임고문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제7장 사무부서와 직원

제31조(부서의 설치) ① 결제원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의 설치 및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2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8장 출자 및 회계

제33조(기본재산) ① 결제원의 기본재산은 출자금 · 가입금 · 참가금 기타 법인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재산으로 한다.

② 결제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제34조(경비) ① 결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과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의 회비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회비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로 구분하며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분담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반환청구 금지 등) ① 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금 등 기본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원이 제10조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회비에 대하여는 결제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 시점에서 납입 과부족액을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추가 납입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제36조(회계년도 및 예산 · 결산) ① 결제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정관변경

제37조(정관변경) ① 정관은 총회 의장, 원장 또는 총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해산

제38조(해산) ① 결제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9조(해산시의 재산처분) ① 결제원을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내지 제11조, 제15조 제1항 단서, 제16조 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41조(수익사업의 수행)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1984. 4. 27)

제1조(관리소의 업무개시일) 관리소는 1984년 5월 10일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제2조(업무 및 인원의 인수) 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로부터 어음교환업무, 신용정보관리업무 및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무업무와 이와 관련한 인원을 인수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사원) 설립자가 대표하는 금융기관은 설립당시의 사원이 된다.

제4조(설립자) 관리소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1984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총재 최 창 락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의 1번지
한국산업은행 총재 정 춘 택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회장 윤 근 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조흥은행 행장 송 기 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의 1번지
한국상업은행 행장 김 상 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3의 1번지
제일은행 행장 이 필 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
한일은행 행장 이 석 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의 1번지
서울신탁은행 행장 김 용 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36의 1번지
중소기업은행 행장 김 선 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의 1번지
국민은행 행장 박 종 석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한국외환은행 행장 정 인 용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의 1번지
한국주택은행 행장 류 돈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의 1번지
신한은행 행장 전 세 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한미은행 행장 황 창 기

제5조(경과조치) ① 1984년도의 회계년도는 1984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소 업무개시일 이전에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이사회에서 어음교환업무 및 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관리소의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5. 5. 10)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8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 6.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관리원은 사단법인 은행지로 관리소(이하 "지로관리소"라 한다)의 업무, 인원 및 재산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② 지로관리소의 업무에 관하여 동 기관의 각급 회의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관리원의 총회 또는 각급회의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③ 지로관리소의 각종 규약,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지로관리소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원의 해당부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업무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다.

⑤ 1986년 6월 1일 현재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의 임원이 이 정관 시행일에 관리원의 직급명칭이 다른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각각 그 직에 초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가 유임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6. 5. 31 항산설]

부칙(1986. 5. 26)

이 정관은 198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광주직할시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6. 25)

이 정관은 1987. 7. 6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21)

이 정관은 1989. 10. 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명칭변경 (이하 관련조항 포함)은 1989.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 31)

이 정관은 1990. 5. 17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2. 19)

이 정관은 1991. 3. 5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 14)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1992. 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27)

이 정관은 1992. 7. 6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 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선임이사의 임기)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3명 또는 4명이 교체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1994. 6. 2)

이 정관은 1994. 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7)

이 정관은 1995. 1. 9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7)

이 정관은 1995.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8. 8)

이 정관은 1996. 8. 22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1999. 8.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은 이 정관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0. 7. 10)

이 정관은 2000. 7. 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2006. 12. 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2012. 3. 7)부터 시행한다.

07 사원 · 준사원 · 특별참가기관

01 사원

CI	기관명	메인 홈페이지	본점 소재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www.bok.or.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KDB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NH농협은행	농협은행	banking.nonghyup.com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신한은행	신한은행	www.shinhan.com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우리은행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Standard Chartered SC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KB 국민은행	국민은행	www.kbstar.com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KEB Hana Bank	하나은행	www.kebhana.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citibank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www.citi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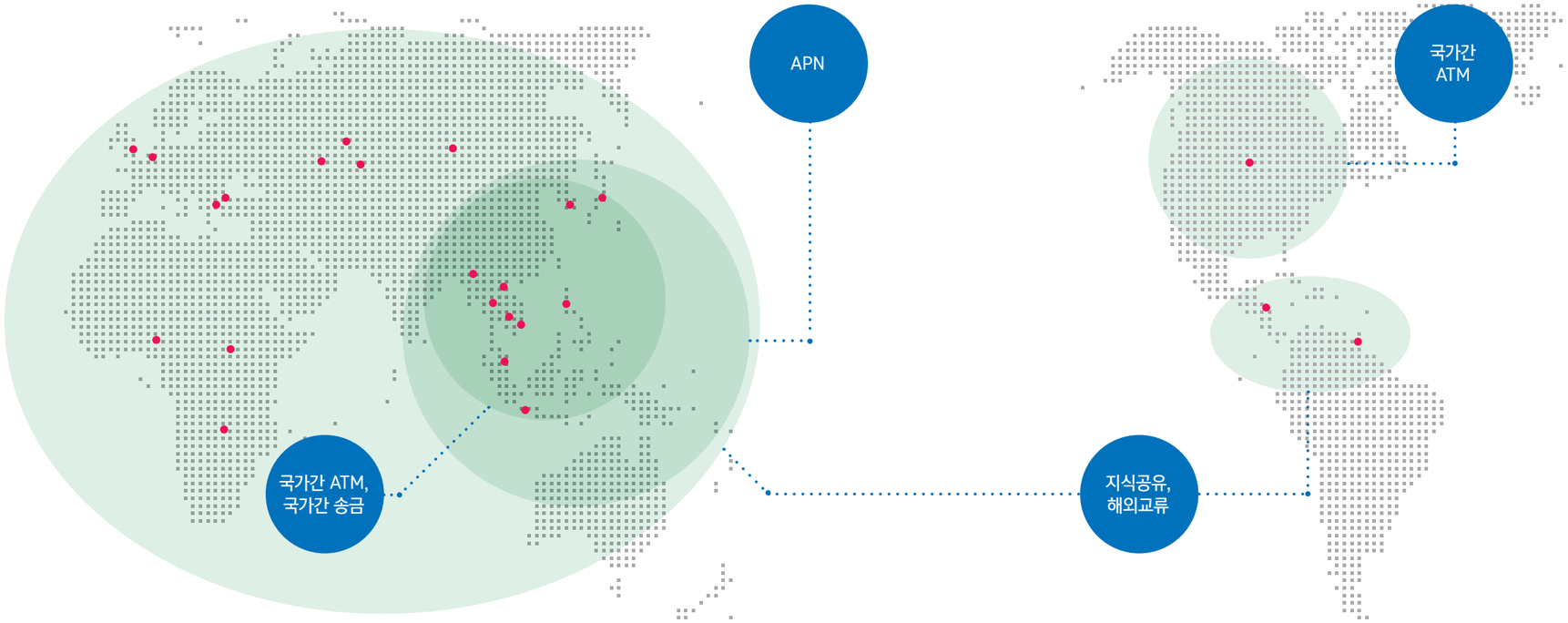
02 준사원

CI	기관명	메인 홈페이지	본점 소재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www.suhyup.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DGB대구은행	대구은행	www.dgb.co.kr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BNK 부산은행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부산광역시 동구 문현금융로 30
KJB 광주은행	광주은행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제주은행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제주도 제주시 오현길 90
전북은행	전북은행	www.jbbank.co.kr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BNK 경남은행	경남은행	www.knbank.co.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KODIT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KIBO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03 특별참가기관 (60개 기관)

기관명	메인 홈페이지	본점 소재지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수산업협동조합	www.suhyup.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홍콩상하이은행	www.hsbc.co.kr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도이치은행	www.db.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알비에스피엘씨은행	cib.rbs.com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www.bk.mufg.jp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미즈호은행	www.mizuhobank.co.jp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1
뱅크오브아메리카	www.bankofamerica.com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1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www.jpmorgan.co.kr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5
모간스탠리은행	www.morganstanley.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비엔피파리바은행	www.group.bnpparibas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중국공상은행	www.icbc.com.c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대화은행	www.uobgroup.com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11
중국은행	www.bank-of-china.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교통은행	www.bankcomm.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교보증권	www.iproves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신증권	www.daishin.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동부증권	new.dongbuhappy.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home.imeritz.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미래에셋대우	www.miraeassetdaewoo.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증권	www.smartmiraeasse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부국증권	www.bookook.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신영증권	www.shinyoung.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한금융투자	www.shinhaninves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에스케이증권	www.sk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에이치엠씨투자증권	www.hmcib.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8
엔에이치투자증권	www.nhqv.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엘아이지투자증권	www.ligstock.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유안타증권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유진투자증권	www.eugenefn.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이베스트투자증권	www.ebestsec.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키움증권	www.kiwoo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하나금융투자	www.hanaw.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이투자증권	www.hi-ib.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한국투자증권	www.truefriend.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화투자증권	www.hanwhaw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현대증권	www.hdable.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www.bridgefn.co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리딩투자증권	www.leading.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비엔케이투자증권	www.bnkfn.co.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아이비케이투자증권	www.ibks.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케이비투자증권	www.kbsec.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케이티비투자증권	www.kt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한양증권	www.hygoo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삼성생명보험	www.samsunglife.com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흥국생명보험	www.heungkuklife.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미래에셋생명보험	life.miraeasset.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신한생명보험	www.shinhanlife.co.kr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우리종합금융	www.wooriib.com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삼성선물	www.ssfutures.com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펀드온라인코리아	www.fundonline.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08 국제업무 및 해외사업 현황



APN(Asian Payment Network)

회 원 국	회 원 사
대한민국	금융결제원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태 국	ITMX (National ITMX Compay Limited)
일 본	NTT DATA
인도네시아	Rintis (PT Rintis Sejahtera)
	Artajasa (PT Artajasa Pembayaran Elektronics)
말레이시아	MEPS (Malaysian Electronic Payment System)
	MyClear (Malaysian Electronic Clearing Corporation sdn Bhd)
중 국	UPI (Unionpay International)
호 주	Cuscal (Cuscal Limited)
뉴질랜드	Paymark (Paymark New Zealand Limited)
베트남	NAPAS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Vietnam)
필리핀	BancNet
싱가폴	NETS (Network for Electronic Transfers Singapore Pte Ltd)

지식공유 실적

구 분		대상기관	추진기간	사업내용
지 급 결 제 시스템 구축		베트남 중앙은행	1999 ~ 2000	은행 간 시스템 구축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003 ~ 2004	중앙은행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구축
지 급 결 제 컨 설 팅	사 전 타당성 조 사 컨설팅	라오스 중앙은행	2011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분석 및 현대화 방향 수립
		몽골 중앙은행	2011	
		몰도바 중앙은행	2012	
		필리핀 중앙은행	2012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2013	
		캄보디아 중앙은행	2014	
	경제발전 경 험 공유사업	몰도바 중앙은행	2014	지급결제기관 설립 지원 컨설팅
		캄보디아 중앙은행	2015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2015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국가간 공동망 서비스 실시 현황

구 분	대상국가	서 비 스	이용가능 은행	실시
국가간 A T M	말레이시아	현금인출	HongLeongBank, CIMB, RHB	2010
	미 국	현금인출 잔액조회	NYCE 회원은행(약 3,000개)	2011
	필리핀	현금인출	BDO, Encash, UCPB, Union Bank 외 58개 은행	
	베트남	현금인출 잔액조회	AgriBank, SacomBank, SaigongBank, AB Bank, VietinBank, SeABank, HD Bank, BIDV, ACB	
	태 국	현금인출 잔액조회	TMB, UOB, KTB, ThanachartBank, Kbank	
	인도네시아	현금인출 잔액조회	BJB, KEB hana Bank	2015
국가간 송 금	베트남	해외송금	VietinBank, AB Bank, GP Bank	2014

연도별 해외사업 관련 교류기관

교류연도	기 관 명	국 가 명
2003	CLS Group	영 국
2010	Kazakhstan Interbank Settlement Centre	카자흐스탄
	Abu Dhabi Systems and Information Centre	U A E
	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
	Bank of Mongolia	몽 골
	Ministry of ICTPA of Mongolia	
	Bank of the Lao PDR	라오스
2011	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
	Bank of Mongolia	몽 골
	Central Bank of the DR Congo	콩 고
	Central Bank of Sri Lanka	스리랑카
	Central Bank of REPUBLIC OF GUINEA	기 니
2012	National Bank of Moldova	몰도바
	e-Government Centre of Moldova	
	Standard Chartered Bank of Keyna	케 냐
	Bank of Mongolia	몽 골
	Bank of the Lao PDR	라오스
	Ministry of Finance of Moldova	몰도바
	Central Bank of Suriname	수리남
	Department of ICT of Seychelles	세이셜
	Ministry of Finance of Seychelles	
	Central Bank of Seychelles	
	Government of Panama	파나마
	Sudan National Information Centre	수 단
2013	Bank of Zambia	잠비아
2014	Central Bank of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National Bank of Cambodia	캄보디아
	National Bank of the Kyrgyz Republic	키르키스스탄
	Central Bank of Myanmar	미얀마
	State Bank of Pakistan	파키스탄
	Bangko Sentral ng Pilipinas	필리핀
	Bank of Thailand	태 국
	National Bank of Tajikistan	타지키스탄
	State Bank of Vietnam	베트남
2015	National Bank of Cambodia	캄보디아

08 국제업무 및 해외사업 현황

최근 금융결제원을 방문한 해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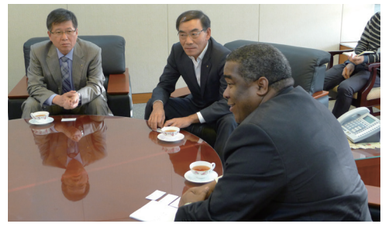
미국 금융정보분석원 방문
2011. 09. 23.



네덜란드 중앙은행 방문
2011. 11. 2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방문
2012. 09. 20.



수리남 중앙은행 방문
김형석 前 전무(정중앙), 박광헌 前 상무(왼쪽)
2012. 10. 15.



몽골 중앙은행 총재 방문
송창헌 前 원장(앞 줄 오른쪽),
박광헌 前 상무(뒷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2012. 02. 15.



잠비아 중앙은행 방문
2013. 0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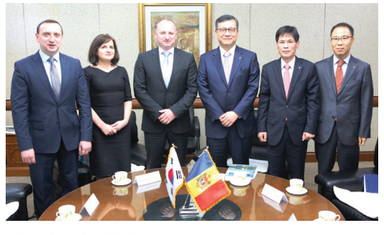
캄보디아 중앙은행 방문
김영준 상무(왼쪽에서 세 번째)
2014. 09. 15.



키르키스스탄 중앙은행 방문
2012. 05. 30.



SC케냐 은행장 방문
김형석 前 전무(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광헌 前 상무(제일 왼쪽) 2012. 07. 04.



몰도바 중앙은행 방문
김종화 前 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김영준 상무(오른쪽에서 두 번째) 2014. 11. 05.



영국 앤스미스 그룹 방문
신동원 전무(오른쪽에서 다섯번째)
2016. 05. 25.

09 연표


경성은행집회소 건물
1928. 11. 01.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발족
1975. 10. 01.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창립 기념식
1984. 05. 10.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기념식
1986. 06. 02.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현판식
1986. 06. 02.



금융결제관리원 창립 1주년 기념식
1987. 06. 02.


CD중계시스템 가동식
1987. 09. 24.



CD공동망 가동식
1988. 07. 01.

1910~1974

1910. 07. 01. 경성수형교환소 개설
1918. 01. 평양수형교환소 개설
1928. 11. 0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1931. 08. 25. 사단법인 부산은행집회소 설립
1944. 09. 01. 내국환집중교환제도 실시
1948. 09. 01. 경성수형교환소, 서울수형교환소로 개칭
1954. 04. 20. 수형교환 1일 2회(토요일 1회) 실시
1957. 02. 15. 체신부장관, 금융기관 사설전화시설 설치 인가
1957. 03. 15. 수형교환 횟수 변경 (1일 2회→1회)
1960. 05. 20. 월말 1일 2회 교환제도 폐지
1962. 02. 01. 협정필인 날인어음(수표)제도 실시
1962. 10. 01. 금융기관 신용조사소 개설
1963. 01. 01. 제주어음교환소 개설
1963. 12. 20. 서울수형교환소, 서울어음교환소로 개칭
1967. 04. 17. 외환증서교환 실시
1967. 07. 21. 내국환집중교환결제협정 제정
1969. 01. 04. 사고 어음, 사고신고예수금제도 실시
1969. 07. 16. 재무부, 금융기관사무기계화지침 시달
1969. 08. 25. 금융기관사무기계화개발위원회 발족
1969. 10. 01.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설립
1970. 08. 21. 외환교환실규약 제정
1970. 10. 02.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금융기관 최초로 컴퓨터(UNIVAC-9400) 가동
1971. 07.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서울어음교환소 기계화 기초조사위원회 설치
1972. 01. 20. 재무부,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추진원칙 시달
1973. 11. 21. 금융기관 CODE제정반 편성
1974. 09. 13. 제주은행, 서울어음교환소 대리교환 참가
1974. 12. 12. 경남은행, 서울어음교환소 대리교환 참가

1975

1975. 01. 11. 재무부, 금융업무전산화지침 시달
1975. 04. 01. 서울은행집회소,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개편
1975. 04. 18. 금융기관 사무기계화개발위원회, 금융업무전산화개발위원회로 발족
1975. 06. 27. 금융기관 콜거래실규약 제정
1975. 07. 11.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금융업무전산화 종합육성계획 승인
1975. 10. 01. 서울은행협회 전자계산부,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로 발족
1975. 11. 01. 서울은행협회,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1976

1976. 06. 22. 재무부,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법인설립 인가
1976. 12. 31.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은행지로제도 실시계획 확정

1977

1977. 03. 02. 상호어음교환제도 최초 실시
1977. 04. 29.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협정 제정
1977. 06. 03. 내국신용장교환실규약 제정
1977. 06. 22.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
1977. 07. 01. 내국신용장, 어음교환 실시
1977. 11. 18. 은행지로 및 어음교환업무 기계화추진방안 확정

1978

1978. 04. 21.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제2단계 금융업무 전산화 종합계획 승인
1978. 07. 28. 금융기관 공동코드규약 제정

1979

1979. 04. 01. 국고금, 채권자계좌 앞 이체업무 지로제 실시
1979. 10. 어음교환용 R/S 가동

1980

1980. 01.11. 서울어음교환소, R/S처리 실시

1981

1981. 03. 01.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
1981. 04. 01. 전국은행협회에서 콜거래실 운영
1981. 05. 01. 계좌이체MT 교환업무처리 개시
1981. 07. 24. 지방어음교환소 설치절차 제정 시행
1981. 08. 01.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

1982

1982. 01. 04.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
1982. 02. 01. 온라인 급여자동이체제도 실시
1982. 07. 01. 전신전화요금, 예금계좌자동이체 실시
1982. 12. 03. 은행지로관리소 내 SWIFT사무국 설치

1983

1983. 02. SWIFT본부 이사회, 우리나라 특별가입 승인
1983. 09. 23. CD 공동이용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확정
1983. 10. 01. 통합공과금 수납이체업무 지로제 실시
1983. 12. 01. COM시스템(DX-4590)의 공동이용 개시
1983. 12. 01. 일반계좌이체업무, OCR방식으로 대량처리

1984

1984. 05.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금융전산망 기본추진방안 확정 및 금융전산추진위원회 발족
1984. 05. 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발족
1984. 05. 10. 전국은행협회, 금융기관 콜거래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 이관

1985

1985. 08. 03. 어음교환 기계처리 분산처리 실시

1986

1986. 01. 28. 외환거래실규약 제정
1986. 03. 25. 원화여행자수표, 어음교환 대상증권에 추가
1986. 04. 18.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공식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1986. 05. 01. 지방세 중 재산세 수납업무 지로제 실시
1986. 05. 23.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신용정보업무 전국은행연합회에 이관
1986. 05. 23. 금융결제관리원 위원회규정 제정
1986. 06. 0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1986. 07. 16. 금융전산위원회, CD 공동이용시스템 개발업무 금융결제관리원에 위탁
1986. 07. 31. 원훈(인화, 지성, 창의) 및 영문명칭(KFTC :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확정
1986. 12. 01. 은행지로관리소 잔여재산, 금융결제관리원에 이관 완료
1986. 12. 제1기 신입사원 21명 채용

1987

1987. 03. 06. 은행지로관리소 청산 종결
1987. 03. 06. CD 공동이용시스템 실시계획 확정
1987. 06. 02. 금융결제관리원 창립 1주년 기념식

09 연표


어음교환R/S시스템 가동식
1989. 02. 01.


ARS공동망시스템 가동식
1989. 04. 19.



외화 콜거래 중개업무 개시 기념식
1989. 12. 01.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가동식
1989. 12. 16



SWIFT 개통 축하연회
1992. 03. 02.


금융전산망과 점외CD/ATM망 접속 서비스
개시 기념식 1993. 10. 08.


뱅텔시스템 가동식
1997. 06. 02.



지로업무IPS 가동식
1998. 05. 12.

1988

1988. 02. 19.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개발업무 위탁
1988. 04. 06. 전산망조정위원회,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1988. 04. 30. CD공동망, 서울소재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1단계 가동
1988. 04. 30. 은행 간 차액결제시스템 가동
1988. 07. 01. CD공동망 본격 가동
1988. 07. 14. 타행환공동망시스템 추진계획 확정
1988. 08. 01. 전기 및 전화요금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 확대
(전기요금 : 경기도 전역, 전화요금 : 지로업무 실시 지역)
1988. 10. 20. CD공동망, 전국 확대 실시
1988. 12. 22. 제재금 및 과태금 적립방안 총회 승인

1989

1989. 04. 19. 8개 시중은행 및 5개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ARS공동망 가동
1989. 05. 01. 직원합숙소 설치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임차)
1989. 09. 12. 중기발전계획(1989~1991년) 수립
1989. 09. 28. 정관 변경 [①원명칭 변경(금융결제관리원→금융결제원),
②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 추가]
1989. 10. 04. 재무부, 금융결제관리원에 콜거래 중개업무 수익사업 허가
1989. 11. 01. 원명칭, 금융결제관리원에서 금융결제원으로 변경
1989. 11. 08. 원화 콜거래수익사업 개시
1989. 12. 16.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타행환공동망 가동

1990

1990. 01. 01. 모지부 6개 지정 운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강릉지부)
1990. 07. 25. 경영합리화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 전무이사, 위원 : 상무이사 3인, 부서장 6인,
- 간사 : 기획실장
- 실무소위원회 : 사무실확보, 예산통합추진, 경영자율화추진

1990. 08. 20. BC카드, ARS공동망 참가
1990. 12. 01. 일괄전송망 가동
1990. 12. 27. CI 매뉴얼 발간

1991

1991. 03. 01. SWIFT이사회, 국내 참여기관의 회원가입 승인
1991. 04. 30. 재무부, 금융결제원의 원화 콜거래 중개허가 취소
1991. 06. 24.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 제정
1991. 07. 11. 기본재산의 운용지침 제정
1991. 10. 31. 중기발전계획(1992~1994년) 수립
1991. 11. 16. 본부사무실 일부 이전 (강남구 삼성동 → 강남구 역삼동 717, 이전 부서 : 기획실, 총무부, 임원실, 도서실, 노동조합)
1991. 11. 30. ARS FAX통지업무, 서울지역 실시
1991. 12. 13. 본 · 지부 경비분담기준 일원화 및 분담금의 은행본부 일괄분담방안 제정(1992. 1. 1. 시행)
1991. 12. 13. 어음교환통계자료집(1960~1990년) 발간

1992

1992. 01. 20.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 실시
1992. 03. 02. SWIFT시스템 가동
1992. 08. 20. 사보 「금융결제원소식」 창간호 발간
1992. 10. 17.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제정
1992. 11. 02. 상호교환어음 기계처리 실시
1992. 12. 30. 정관 변경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의장은 금융결제원이 수행 등)

1993

1993. 02. 05.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1993. 02. 15. 경찰전산망, 금융전산망에 접속
1993. 02. 24. 국세자동계좌이체 실시
1993. 05. 10. ARS공동망,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24시간 연중무휴 실시
1993. 05. 27. 4개 지부 사옥매입 총회 승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1993. 05. 27. 원가 제정
1993. 06. 10. 영문 정관 발간
1993. 07. 01. 재무부, 금융결제원을 보안산하기관으로 지정
1993. 07. 26. 체신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실시
1993. 10. 06. 점외CD/ATM망, CD공동망에 접속

1994

1994. 01. 25. 종합무역자동화망, 금융전산망에 접속
1994. 02. 04. 금융기관 공동코드 온라인 전송처리시스템 가동
1994. 02. 22. 국세자동납부제도, 서울전역 확대 실시
1994. 04. 01. 부산지부, 지로업무 분산처리센터 가동
1994. 04. 11. EFT/POS 전담반 구성
1994. 04. 30. 촉탁 지부장 임용규정 폐지
1994. 04. 30.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실시
1994. 05. 14. 일괄전송 전용시스템 구축계획 확정
1994. 07. 29. 직불카드공동망 참여은행협의회, 금융결제원을 직불카드VAN사업자로 선정
1994. 10. 07.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원에 판매대금자동결제망(EFT/POS) 구축 위탁
1994. 10. 10. ARS공동망을 통한 가계수표 사고신고 및 조회업무 실시
1994. 10. 22. 재무부, 금융결제원의 부가통신사업 수익사업 승인
1994. 11. 10. 판매대금자동결제망(EFT/POS) 구축 추진계획 총회 승인
1994. 11. 20. OCR전기요금 수납대행업무 실시
1994. 12. 05. 상호교환대상 타지 일반자기앞수표의 당지교환 결제 실시
1994. 12. 26. 통합공과금 수납이체업무 폐지

1995

1995. 01. 25. 무역망시스템 가동
1995. 02. 20. 일괄전송 및 EFT/POS전용시스템 가동
1995. 03. 01. 채권자계좌이체업무 폐지
1995. 04. 01. 부가통신사업, 수익사업 개시(자본금 40억 원)
1995. 05. 04.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기관 IC카드 표준 제정
1995. 05. 11. 중기발전계획(1995~1997년) 수립
1995. 06. 17. ARS공동망, 수표조회업무 24시간 실시
1995. 06. 25. 지로업무 IPS구축 기본계획 수립
1995. 10. 16. 관세 국고수납업무 실시
1995. 11. 03. 국세청, 조세신고 및 납부전산화 전담사업자로 금융결제원 선정
1995. 11. 04. 토요일 근무복장 자율화 실시
1995. 11. 07. 지로통계자료집 발간 (1977~1994년)
1995. 12. 22. 지로EDI 서비스 실시
1995. 12. 29. ARS공동망 운영시간 참가기관 자율화

09 연표



산본생활관 준공식
1998. 12. 02.



Y2K인증 획득
1999. 07. 16.



베트남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참여 조인식
1999. 08. 07.



인터넷지로 전략적 제휴 조인식
2000. 08. 29.



서울외국환중개(주) 개업식
2000. 09. 18.



전국 최초 지방세 인터넷 수납 개통식
2001. 06. 15.



인터넷지로 가입회원 100만 돌파 기념식
2003. 10. 15.



금강산 전자결제 시스템 개통식
2003. 10. 27.

1996

- **1996. 01. 27.** 일괄전송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 **1996. 01. 31.**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원에 전자지갑 및 IC통장 표준화 개발 위탁
- **1996. 02. 01.** 직불카드VAN 서비스 실시
- **1996. 03. 18.** 신용카드VAN 서비스 실시
- **1996. 05. 21.** 은행지로업무 IPS구축 추진계획 수립
- **1996. 05. 28.** 자금관리서비스(CMS) 실시
- **1996. 06. 02.** 「금융결제원 10년사」 발간
- **1996. 07.**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기관공동의 전자화폐 도입 결의
- **1996. 08. 16.** 자금관리서비스(CMS) 대량자금이체업무 실시

1997

- **1997. 01. 01.** 연수이수학점제 시행
- **1997. 02. 01.** 전자금융연구소 설치 · 운영
- **1997. 02. 21.** 직원합숙소 신축계획 확정 (신축부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1997. 03. 03.** 직불카드 VISA INTERLINK업무(해외서비스) 실시
- **1997. 03. 31.** 주무관청(재정경제원) 승인 : 수익사업조정승인
  - 「S/W 관련 자문 · 개발 및 공급업」 신설
  - 해외협력사업 근기 마련
- **1997. 04. 21.**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지방은행공동정보망구축사업계획 확정
- **1997. 05. 26.** 지급결제시스템 백업센터 부지 매입 확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3, 4(2필지)
- **1997. 05. 27.** 장기발전계획(1998~2007년) 수립
- **1997. 06. 17.** 지방은행공동정보망 가동
- **1997. 06. 23.** 부도어음신고 및 입금통보업무 전산화, 전국 확대 실시
- **1997. 08. 26.** 은행경영상 긴급상황발생 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 규약 제정
- **1997. 09. 01.** 순채무한도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1997. 10. 06.** 타행발행 일반자기앞수표, 타행환 송금업무 실시
- **1997. 11. 24.** 중기발전계획(1998~ 2000년) 수립
- **1997. 12. 10.** 지급결제통계관리시스템 구축
- **1997. 12. 31.** 일반자기앞수표, 당일 2회 어음교환 실시

1998

- **1998. 05. 12.** 지로업무 IPS 본격 실시
- **1998. 06. 01.** 은행 간 전자우편업무 실시
- **1998. 10. 21.** 금융기관 수납장표정보화사업 추진 전담반 구성
- **1998. 12. 01.** 사원자격 소멸 : 동화, 동남, 대동은행
  준사원자격 소멸 : 경기, 충청은행
- **1998. 12. 02.** 금융결제원 생활관 준공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82번지)
- **1998. 12. 22.** 지로대금 홈뱅킹(PC)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

1999

- **1999. 01. 04.** 은행지로업무 실시지역,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 **1999. 01. 1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 **1999. 03. 08.**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개설 (www.kftc.or.kr)
- **1999. 06. 13.** Y2K Global Payment System 테스트 실시
- **1999. 07. 01.** ARS공동망, 은행 PC뱅킹 경로제공서비스 실시
- **1999. 07. 10.** 한국Y2K인증센터, 금융결제원 Y2K 인증 승인
- **1999. 07. 13.** 전자거래공인인증기관 추진계획 확정
- **1999. 07. 30.** 베트남 프로젝트 지원계획 수립
- **1999. 08.** 베트남 중앙은행의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 **1999. 09. 03.** ARS공동망 전화서비스 특수번호(1369)서비스 실시
- **1999. 09. 10.** 인터넷지로 추진계획 수립
- **1999. 09. 21.** 전화요금 온라인납부서비스 협약서 의결
- **1999. 09. 29.** 공인인증서비스 명칭 예스싸인(yessign)으로 확정
- **1999. 10. 11.** 전자화폐 명칭 케이캐쉬(K-CASH)로 확정
- **1999. 11. 01.** 인터넷지로(Internet GIRO) 명칭 제정

2000

- **2000. 01. 26.** 전자화폐 VAN처리시스템 가동
- **2000. 03. 27.** 주택청약공동업무 실시
- **2000. 03. 31.** 인터넷지로서비스 실시
- **2000. 04. 03.** ARS공동망, 전화요금 온라인납부 서비스 실시
- **2000. 04. 12.** 정보통신부, 금융결제원을 전자거래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 **2000. 04. 19.** 자기앞수표 정보교환규약 제정 : 서울어음교환소 지역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회부
- **2000. 05. 20.**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실시
- **2000. 06. 17.** ARS공동망을 통한 주택청약 당첨자 조회서비스 실시
- **2000. 07. 01.** 지로장표 인터넷 납부 실시
- **2000. 07. 02.** ARS공동망 전화서비스용 특수번호(1369) 전국서비스 실시
- **2000. 07. 06.** 어음교환업무규약 제정 (51개 어음교환소별 어음교환소 규약 통합)
- **2000. 07.** 전자화폐공동망 가동
- **2000. 07. 11.** 지로수납장표 정보화 실시 : 전기요금(7. 11), 건강보험료(7. 15), 국민연금(7. 20)
- **2000. 08. 28.** 경찰청범칙금 인터넷납부서비스 실시
- **2000. 08. 31.** 환어음정보교환시스템 가동
- **2000. 09. 18.**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설립
- **2000. 09.** 공인인증(yessign) 서비스 시범 실시
- **2000. 12. 26.**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PG) 서비스 실시

2001

- **2001. 02. 09.** 사업본부 · 팀제 도입
- **2001. 03. 06.** 베트남 지급결제시스템(IBPS) 구축
- **2001. 04. 16.**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기존 ARS공동망 확대 개편)
- **2001. 05. 02.**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축
- **2001. 06. 15.** 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실시
- **2001. 06.** 연구지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창간호 발간
- **2001. 07. 03.** PG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www.bankpay.or.kr)
- **2001. 07. 11.** 신용카드 PG 서비스 실시
- **2001. 08. 04.** 학자금, 인터넷지로 납부 서비스 실시
- **2001. 08. 14.**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PG) 서비스 명칭 뱅크페이(Bankpay)로 제정
- **2001. 09. 20.** 서민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사업 참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2001. 09. 21.** 물품대금결제 서비스 업무 실시(주류)
- **2001. 10.** 공인인증서 발급 100만건 돌파
- **2001. 12. 07.**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기본계획 확정
- **2001. 12. 31.** 중기발전계획(2002~2004년) 수립

2002

- **2002. 01. 02.** 은행공동 인터넷청약사이트 오픈 (www.apt2you.com)
- **2002. 01. 28.** 전자인증 신원확인 서비스 실시
- **2002. 02. 27.**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구축 추진계획 총회 의결
- **2002. 03. 04.** 전자채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2002. 03. 25.** 성과평가계획 확정
- **2002. 06. 19.** 전자금융포럼 발족
- **2002. 06. 22.** 자기앞수표정보교환, 전국 확대
- **2002. 07. 01.** 금융기관 주5일 근무제 실시
- **2002. 08. 13.** 전자세금계산서ASP서비스(TrusBill) 실시
- **2002. 08. 26.** 모바일 인터넷지로 서비스 실시
- **2002. 08. 30.** 1단계 침해사고대응체계 구축
- **2002. 09. 06.** 자기앞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 전국 확대 실시
- **2002. 09. 25.**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지급결제시스템 가동
- **2002. 10. 10.**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연계 현금결제 중계 서비스 실시
- **2002. 10. 27.** 실시간 공인인증서 상태조회 서비스 실시

09 연표



B2B결제 및 보증지원 업무 협약식
2004. 06. 25.



CLS공동망 시스템 가동식
2004. 12. 06.



모바일서비스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 체결식 2005. 04. 28.



B2B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식
2005. 05. 27.



VIS(시각표시물 표준) 선포식
2006. 01. 02.



고객센터 가동식
2006. 05. 15.


제2차 비전 선포식
2008. 08. 01.



USIM기반 CD/ATM서비스 업무 협약식
2008. 09. 25.

2002. 11. 01. 은행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지로시스템 간 연동실시
2002. 12. 17. 금융공동망 원격지 백업시스템 가동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전산원)
2002. 12. 23. 자체 백업센터구축계획 확정 :
건물신축 : 연면적 5만 2231m² 내외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부지
2002. 12. CD/ATM을 이용한 지로대금 자동수납 서비스 실시
2002. 12. 금융ISAC 구축 및 업무 실시

2003

2003. 02. 28. 2단계 금융 ISAC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완료
2003. 03. 10. 금융ISAC 서비스 확대 실시 : 은행권 침해행위 실시간 모니터링 등 대상업무 확대 및 연중무휴 24시간 체제 변경 운영
2003. 03. 전자금융연구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 실시
2003. 04. 21. CD/ATM을 이용한 지로대금 자동수납 서비스 본격 실시
2003. 05.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간 상호연동 실시
2003. 05.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구축 사업 참여
2003. 06. 0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외환동시결제를 위한 CLS공동망 구축계획 확정
2003. 07. 01. 대법원 등기인터넷 서비스, PG 서비스 제공계약체결 및 서비스 실시
2003. 09. 05.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정보 교환 실시
2003. 09. 18. 지로입금내역 통지방식 개선 (우편 및 인편 → 인터넷 조회 · 통지)
2003. 10. 15. 인터넷지로, 가입회원 100만 돌파
2003. 10. 17. CLS공동망 구축 기본계획 및 회비분담기준 총회 의결
2003. 10. 27. 금강산관광시설 내 전자결제시스템 가동

2004

2004. 01. 05. 신용카드 VAN업무, 인터넷안전결제시스템(ISP) 가동
2004. 02. 정부 구매카드 데이터송수신시스템 구축
2004. 03. 19.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04. 04. 27. 신용카드VAN 현금영수증사업자로 금융결제원 선정
2004. 06. 01. B2B업무 홈페이지 오픈 (www.bankb2b.or.kr)
2004. 06. 17. 제1회 지급결제세미나 개최(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2004. 06. 공인인증서비스 무정지서비스 체제 구축
2004. 07. 01. S-OIL 보너스카드관리시스템 가동
2004. 08. 05.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Ubi) 시범 실시
2004. 08. 06.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
2004. 08. 06. 은행보험용 기업공인인증서 유료화 실시
2004. 09. 02. 중기발전계획(2004~2006년) 수립
2004. 09. 20. 물품대금결제서비스업무 개시(유류)
2004. 09. 30. CLS공동망시스템 구축
2004. 10. 14. CMS·지로EDI 전용 홈페이지 오픈 (www.cmsedi.or.kr)
2004. 11. 20. 인터넷지로와 전문포털사이트(Daum)와의 연동 실시
2004. 11. 범용 개인공인인증서 유료화 실시
2004. 11. 16. 계좌이체PG 현금영수증사업자로 금융결제원 선정
2004. 12. 06. CLS공동망 가동
2004. 12. 14. 분당백업센터 착공

2005

2005. 01. 01. 법무부장관,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
2005. 01. 01. 현금영수증거래 중계서비스 실시
2005. 02. 0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e-L/C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의결
2005. 03. 09. 퇴직연금공동기록관리(RK)센터 구축 추진계획방안 총회 의결
2005. 04. 19. 중기발전계획(2005~2007년) 수립
2005. 05. 24. 3순위 주택청약 인터넷접수 서비스 실시
2005. 07. 08.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Ubi) 본격 실시
2005. 07. 22. 유 · 무선전화를 이용한 지로수납 서비스 실시
2005. 08. 02. (주)옥션, 계좌이체PG 서비스 실시
2005. 08. 17.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의 PG 서비스 실시
2005. 08. 24. 6시그마 세부추진계획 수립
2005. 09. 22. 은행공동의 e-L/C관리시스템 구축
2005. 09. 27. 전자어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2005. 12. 01. 퇴직연금공동기록관리(RK)센터 가동
2005. 12. 16. VIS(시각표시물 표준) 변경방안 확정

2006

2006. 01. 02. VIS(시각표시물표준) 선포식 실시
2006. 01. 02. 국민주택채권정보중계시스템 구축
2006. 02. 24. 전국 부도관련업무 통합관리 실시
2006. 02. 24. 부도통보시각 연장제도 도입(시행일 2006. 08. 01)
2006. 03. 02. CMS ASP 서비스 본격 실시
2006. 03. 10. 기업용 지로공과금 인터넷납부 서비스 실시
2006. 03. 21. BSC방법론에 기반한 성과평가관리 시행
2006. 04. 17. 고객센터업무 시범 실시 (대표전화 ☎1577-5500)
2006. 05. 11. 지방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업무 위탁 · 대행처리 실시
2006. 05. 15. 고객센터 가동 : 고객상담체계 일원화 및 고객응대 프로세스 표준화
2006. 05. 27.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 가동
2006. 06. 02. 「금융결제원 20년사」 발간
2006. 07. 01.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중단
2006. 08. 11.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발급 개시
2006. 12. 01. 정관 변경 (①수익사업의 범위 명시, ②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 등에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특별참가 허용)
2006. 12. 0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의무화
2006. 12. 08. CD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07:00~23:30 → 00:30~23:30)
2006. 12. 15. CD공동망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 실시
2006. 12. 타행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 실시

2007

2007. 01. 02. yessign 공인인증서(개인) 발급 1,000만건 돌파
2007. 01. 04. IT 업무지속성계획(BCP) 수립
2007. 03. 14. 분당센터 준공(지상 12층 지하 2층)
2007. 03. 19. 주택청약업무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2007. 03. 29. 한국지급결제학회 설립(금융결제원이 사무국 역할 수행)
2007. 03. 30.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완료
2007. 06. 01. 전자채권 전자방식 양도통지서비스 실시
2007. 07. 12. 어음 · 수표 이미지교환 시범실시 추진
2007. 07. 나라사랑카드 시스템 구축
2007. 09. 14. 나라사랑카드 1기 사업 결제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07. 09. 21. 인터넷지로 결제수단(신용카드) 추가 실시
2007. 09. 타행 ATM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실시
2007. 09. 개성공단 내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2007. 10. 08. 인터넷지로와 행정자치부 위택스 연동납부 실시
2007. 10. 19. 전자금융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00:00~23:30→00:05~23:55)
2007. 10. 19. CD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00:30~23:30 → 00:05~23:55)
2007. 10. 26. 자금 청구파일 표준화 실시 (CD, 타행환, 전자금융공동망)
2007. 11. 22. 역삼-분당센터 전산시스템 이전 · 재배치 및 백업시스템 구축
2007. 12. 18.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 안내서비스 실시
2007. 12. 20. 공과금 무인수납기 공동이용 실시

2008

2008. 01. 01. 성과상여금제도 실시 (팀장급 이상 대상)
2008. 02. 01. 공인인증서 기반 모바일(VM)뱅킹 서비스(Mysign) 실시
2008. 02. 13. 무역물류비용 결제서비스 실시
2008. 02. 21.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개편 기본계획 총회 의결
2008. 02. 25. yessign 보안서버용(SSL) 공인인증 서비스 개시
2008. 03.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 실시

09 연표



업무연속성관리 국제표준(BS25999)인증 수여식
2009. 04. 30.



지방세납부 행정안전부 협약 체결식
2009. 08. 20.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
2010. 06. 18.



어음교환소 개설 100주년 기념 전시회
2010. 06. 28.


국가간 ATM서비스 베트남과 본계약 체결식
2011. 03. 09.



IT 서비스 관리 ISO/IEC20000 인증 수여식
2011. 11. 25.



특허청 업무 협약 체결식
2011. 12. 22.


양재생활관 기공식
2013. 07. 12.

2008. 03. 지로 현금영수증 발급
2008. 04. 04. 휴대폰 전자서명 서비스(Mobisign) 개시
2008. 04. 인터넷지로 지방세 실시간 납부 전국확대 실시
2008. 06. 03. 금융결제원 외화자금이체 금융공동망 추진 요청 (5개 사원은행 요청)
2008. 07. 0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 전산접속기준 제정
- 「자본시장법」(2009. 2. 4.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업무취급에 대비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2008. 0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 (2008. 7~2009. 1)
2008. 07. 파키스탄 수표청산기관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 (2008. 7~2009. 1)
2008. 07. 금융기관 전산백업사업 추진(안) 이사회 의결
2008. 07. 공인인증서 (재)발급, 갱신 등 상세이력 조회 서비스 개시
2008. 07. 계좌이체PG 실시간 즉시입금 서비스 실시
2008. 09. 1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UbiTouch 서비스 표준안 제정
2008. 09. 29. 전자채권 보증서비스 연계업무 실시
2008. 10. 0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대행업무 실시
2008. 11. 19. 4대 사회보험 체납자 예금압류 관련 정보중계시스템 구축
2008. 11. 정부 네트워크론 정보중계서비스 실시
2008. 11. 정부납품대금청구(나라빌) 실시
2008. 12. 04. 전자어음 기한후 배서제도 실시
2008. 12. 18. 인터넷지로 모바일납부 서비스 실시
2008. 12. 19. UbiTouch 서비스 실시(KTF 고객 대상)
2008. 12. 23. 공인인증서 강제폐지지침 제정

2009

2009. 02. 02.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개편 이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2009. 02. 02. 어음 발행정보 등록 · 조회서비스 실시
2009. 02. 26. 어음교환 차액결제자료 전송시각 변경(은행 영업시간 관련)
2009. 02. 27.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국가간 ATM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의결
2009. 03. 05. 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별로 부여한 계정을 사용자별 1개의 계정으로 통합)
2009. 04. 01. 주택청약업무 입주자선정 일원화 실시 (입주자 선정업무를 전산관리기관에서만 취급)
2009. 04. 22. IT 업무지속성계획(BCP) 국제인증(BS25999) 획득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
2009. 04. 은행 예금압류 관련정보 중계서비스 실시
2009. 06. 18. 지로원장 통합 추진 (일반이체, 자동이체, 대량지급, 인터넷지방세)
2009. 07. 02. 조달청 네트워크론업무 실시
2009. 08. 03. 지역본부 및 지부 일부폐쇄 : 3개 지역본부(인천, 충북, 강원), 11개 지부(성남, 의정부, 안양 등)
2009. 08. 25. 행정안전부, 통합수납처리센터 운영기관으로 금융결제원 지정
2009. 08. 27.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센터 운영기관 업무위탁계약 체결
2009. 09. 11. 인터넷지로 365일 납부 서비스 실시
2009. 09. 2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추진
2009. 10. 02. CMS출금이체(당일) 서비스 실시
2009. 10. 30. 전자금융공동망 시스템 처리능력 보강
2009. 10. 어음 · 수표 이미지 정보교환 실시
2009. 11. 0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개시
2009. 11. 09.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등 시행
2009. 11. 16. 타행환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07:00~17:00→07:00~18:00)
2009. 11. 25.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 체결
- 부산광역시(전국 지자체 대표), 은행,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2009. 12. 01. IT중기발전계획(2010~2012년) 수립
2009. 12. 14.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 중계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2009. 12. 14. 서울상호교환권역 17개 * 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어음 · 수표 이미지 정보교환 실시
*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안산 등
2009. 12. 18. 전자채권 거래정지처분 해제제도 도입
2009. 12. 2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관리업무 실시

2010

2010. 01. 07.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 추진 계획(안) 총회 의결
2010. 03. 18. 온누리상품권 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2010. 04. 29. 모바일뱅킹서비스 실시(옴니아폰 대상)
2010. 05. 19. IT서비스 관리체계(ITSM) 구축
2010. 05. 아랍에미리트 세금 전자납부시스템 컨설팅 수행
2010. 06. 21. 빌링원플러스업무 실시
2010. 06. 28. 어음교환소 개설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0. 06.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10. 07. 16.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 관세납부 대행 협약서의 부속특약 체결
2010. 07. 2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금융권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지정
2010. 07. 23.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가동
2010. 08. 26.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지로서비스 실시
2010. 10. 19. 전자금융공동망대고객서비스(1369) ARE 운용체재 개선 및 신규 ARE시스템 가동
2010. 10. 22. 국내외화자금이체중계업무 본격 실시
2010. 10. 25. 폰ATM서비스 실시
2010. 11. 19. 어음 · 수표 이미지 정보교환 전국확대 실시
2010. 12. 14. 스마트폰 계좌이체 PG서비스 실시(모바일옥션)
2010. 12. 17. 국가간 ATM 공동이용서비스 말레이시아(MEPS) 개시
2010. 12. 21. 지방세이체업무 폐지
2010. 12. 28. 지부 지로장표 처리업무 종료

2011

2011. 01. 01. 조직 개편
- 신설 : 4개 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업무기획실 업무총괄팀
- 폐쇄 : 6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8개 지부(울산, 창원, 진주, 구미 등)

2011. 02. 10. 법무부장관 앞 어음교환소지정 취소 신청(서울어음교환소 제외 49개 어음교환소 지정 취소)
2011. 02. 24. 서울특별시 세입금 온라인 수납대행 계약 체결
2011. 02. 24.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방세입금 납부대행 계약체결 : 금융결제원, 14개 신용카드사, 농협중앙회
2011. 03. 02.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 업무 실시
2011. 03. 09. 지방어음교환소 폐쇄
2011. 06. 22. 온누리 전자상품권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 실시 시기(2011. 9)
2011. 07. 02.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인 서비스 실시
2011. 07. 04.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납부 실시
2011. 07. 라오스 및 몽골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
2011. 08. 30.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대응센터(KISA 118) 관련 협약 체결 및 서비스 실시
2011. 08. 31. 국가간 ATM공동이용 서비스 베트남(Banknetvn) 개시
2011. 09. 08. 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대행 업무 실시
2011. 09. 16. 인터넷지로 24시간 납부 서비스 실시
2011. 11. 플러그인 없는 공인인증 서비스(yessign plus) 실시
2011. 12. 01. 퇴직연금 정보 중계서비스 개시
2011. 12. 08. 국가간 ATM공동이용 서비스 태국(ITMX) 개시
2011. 12. 16. T-커머스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 실시
2011. 12. 22. 특허청과 금융분야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2011. 12. 28. 스마트폰 기반 UbiTouch 서비스 실시

09 연표


필리핀 업무 제휴 체결식
2014. 09. 19.



DQC-M Level2 인증 수여식
2014. 12. 23.


금융보안원 전적 직원 송별식
2015. 04. 19.



계좌이동서비스 시연 및 은행권 협약식
2015. 10. 29.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2016. 06. 02.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계약 1주년 기념식
2016. 06. 07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 업무협약 체결식
2016. 06. 14.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개통식
2016. 08. 30.

2012

2012. 01. 04.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현금카드결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의결
2012. 03. 07. 정관 변경
- 수입사업 범위 : 사업단위별로 규정
- 기본재산의 사용 · 처분 관련 사항 명시 등

2012. 05. 필리핀 및 몰도바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
2012. 06. 26.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제도 시행
2012. 06. 27. 타행환공동망 자기앞수표 자금화 시각 조기화 실시 (14:20→12:20)
2012. 07. 05. 은행권 특허분쟁 공동대응 협약체결(금융결제원, 16개 은행)
2012. 07. 1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012. 07. 금융결제연구소, 산학협동연구과제 최초 실시(계명대학교, 전자무역 U-TRADE 관련)
2012. 08. 시점확인서비스 은행 외 기관 대상 서비스 실시
2012. 09. 14. 생체정보를 활용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대체 파일럿 추진
2012. 09. 24. 전자채권 등 미결제 및 결제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2012. 10. 16. IT중기발전계획(2013~2015년) 수립
2012. 10. 30. 금융IT포럼 구성 (금융결제원이 사무국 역할, IT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총 17개 정회원 및 유관업계 준회원)
2012. 11. 21. 현금카드결제서비스 실시
2012. 11. 21. 뱅크월렛서비스 시범 실시(SKT 대상)
2012. 12. 27.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시범 실시
2012. 12. 31. 주택청약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 실시

2013

2013. 01. 08. 바코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 실시
2013. 03. 19. 뱅크월렛서비스 본격 실시
2013. 04. 아파트관리비 출금이체 중계업무 실시
2013. 04. 23.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본격 실시
2013. 04. 29.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 등록 및 조회 서비스
2013. 05.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
2013. 06. 27. 전자어음 상환청구(소구) 서비스 실시
2013. 07. 31. IT 업무지속성계획(BCP) 국제인증(ISO22301) 획득
2013. 09. 16. 출국정보 조회시스템 타기관 연계 서비스 실시
2013. 10. 08. 전자지급보증서 발급 · 조회 서비스 실시
2013. 12. 19. 전자수입인지업무 대행기관 지정(기획재정부) 및 전자수입인지 대행업무 실시
2013. 12. 27.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중계 서비스 본격 실시

2014

2014. 02. 14. 내국신용장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일원화 실시
2014. 02. 14. 고액 자기앞수표 이미지 교환 방안 수립 · 실시
2014. 02. 19. CMS 안전성 강화방안 실행 추진
- 신규 이용기관 등록요건 강화, 부당인출 탐지 시스템 구축, 출금동의 확인 강화 등

2014. 03. 13. 참가기관 간 송금인정보 중계업무 실시 : 타행환, 전자금융, CD공동망(4. 11)
2014. 04. 06. 전자어음 의무발행자 확대 및 분할배서제도 실시
2014. 04. 11.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전면 실시
2014. 07. 03. 직원 생활관 준공(64실) 기념식(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07. 캄보디아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
2014. 07. 몰도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관 설립 지원 KSP 시스템컨설팅 수행
2014. 08. 07.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중계업무 실시 (행정자치부)
2014. 09. 25. 통합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대행업무 실시
2014. 11. 11.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본격 실시
2014. 12. 05. 국가간 송금 서비스 베트남(Napas) 개시
2014. 12. 05. 전자어음 배서보증제도 실시
2014. 12. 19. 고객지원실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4. 12. 29. 자동이체(납부) 통합관리업무 조회서비스 시범실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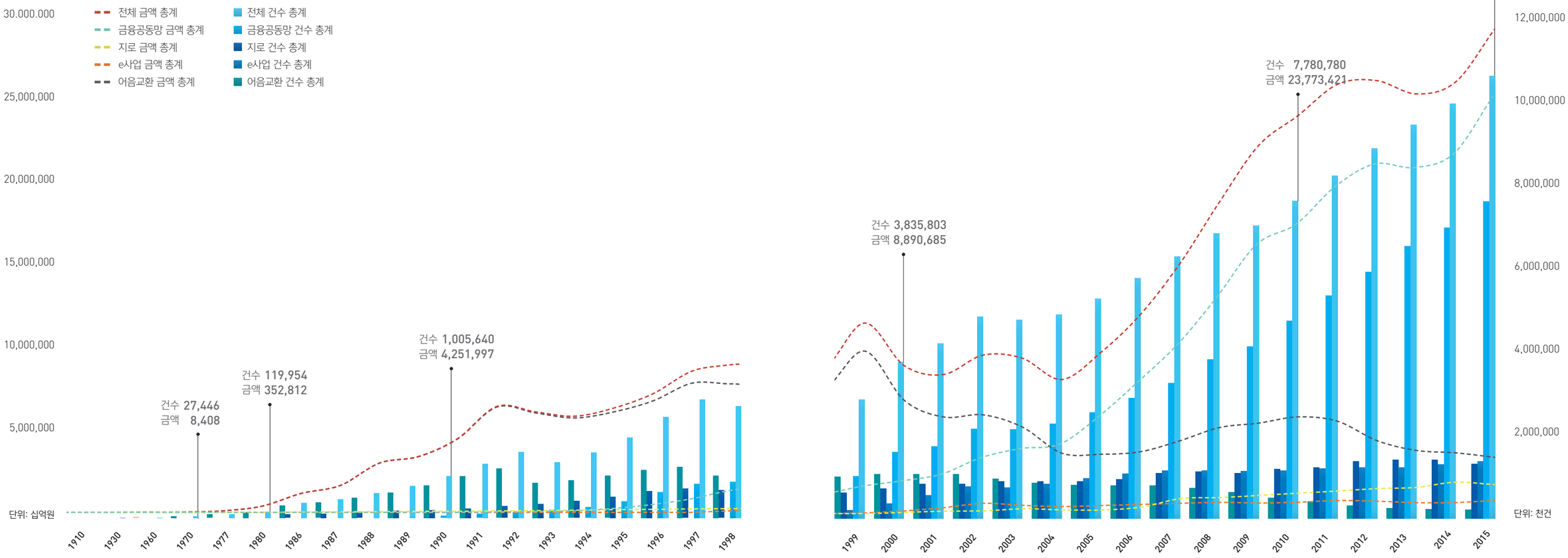
2015. 02. 02. 바이오정보시스템 테스트 베드(손바닥 정맥) 운영 : 본관(2. 2~3. 20), 분당센터(4. 2~5. 15)
2015. 03. 16. 금융위원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CD, 타행환 공동망)
2015. 04. 10. 금융보안원으로 금융ISAC 업무 이관
2015. 04. 10. 금융보안연구원으로부터 OTP 공동업무 인수
2015. 04. 29.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대행업무 실시
2015. 05. 08.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실시 (경찰청)
2015. 06. 29.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거래정지처분제도 도입
2015. 07. 01. 자동이체(납부) 조회 · 해지서비스 실시
2015. 07. 01. 행정자치부 모바일 납부서비스 연계 확대 실시
2015. 07. 21.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금융감독원 앞 등록 (「여신전문법」 개정)
2015. 07. KSP 시스템컨설팅 수행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지원
2015. 07. 캄보디아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KSP 시스템컨설팅
2015. 09.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A'등급 획득 :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
2015. 10. 29. 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 개최
2015. 10. 30. 자동이체(납부) 변경서비스 실시
2015. 11. 27. 스마트OTP 서비스 개시
2015. 11. 27. 전자어음 사고신고등록 및 조회 서비스 실시
2015. 05. 26. 국가간 ATM공동이용 서비스 필리핀(BancNet) 서비스 개시
2015. 11. 30. 국가간 ATM공동이용 서비스 인도네시아(Rintis) 서비스 개시
2015. 12. 17. 나라사랑카드 2기 사업 결제사업자 선정
2015. 12. 18.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참가기관 간 공유업무 실시
2015. 12. 21. B2B상거래정보 등록 · 조회업무 실시
2015. 12. 22. 기존(본인)계좌를 활용한 비대면실명확인 업무 실시(은행권)

2016

2016. 02. 26.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결제업무 실시
2016. 02. 26. 참가기관 채널을 통한 자동이체(납부) 및 자동이체(송금) 조회 · 해지 · 변경서비스 실시
2016. 04. 14. 휴대폰번호 기반 뱅크월렛서비스 실시
2016. 05. 28. 신비전 선포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
2016. 06. 14.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관리 업무협약 체결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17개 은행)
2016. 06. 25. 어음의 사고신고 조회 서비스 실시
2016. 07. 12.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
2016. 08. 01. 중기발전계획(2017~2019년) 수립
2016. 08. 30.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개통
2016. 09. 27. 아르메니아 중앙은행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10 통계

총지급결제 금액 및 건수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1910	1930	1960	1970	1977	1980	1986	1987	1988
건수 총계	59	2,277	6,138	27,446	73,150	119,957	368,265	451,783	594,407
금액 총계	0	1	4,759	8,408	81,983	352,812	1,088,145	1,549,043	2,836,487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건수 총계	774,877	1,005,640	1,296,755	1,568,875	1,333,248	1,561,455	1,917,794	2,417,594	2,830,164
금액 총계	3,218,193	4,251,997	6,103,158	5,785,731	5,541,903	6,015,103	6,842,623	8,147,749	8,514,717

(단위: 천건,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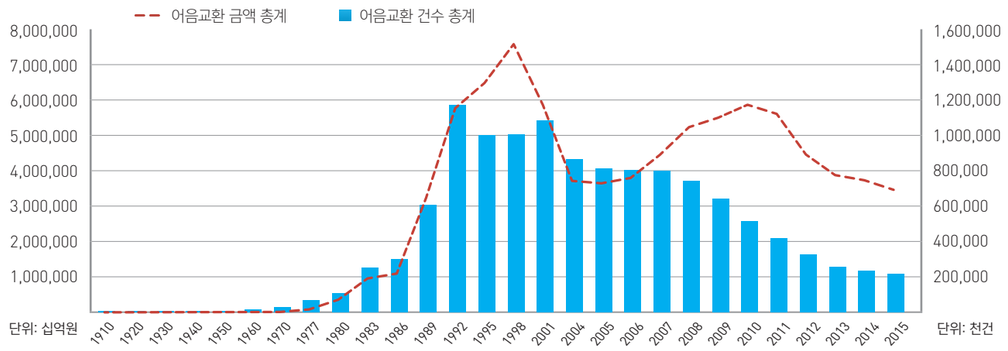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총계	2,668,827	2,919,043	3,835,803	4,285,171	4,940,128	4,867,136	4,993,458	5,381,338	5,890,323
금액 총계	8,808,479	11,450,648	8,890,685	8,390,340	9,542,417	9,360,131	8,095,224	9,713,102	11,962,445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총계	6,416,928	6,981,740	7,175,438	7,780,780	8,400,033	9,062,572	9,643,642	10,153,471	10,835,163
금액 총계	14,980,376	18,621,949	21,999,216	23,773,421	25,628,712	25,852,807	25,063,954	25,773,634	28,943,369

10 통계

어음교환 금액 및 건수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77	1978	1979
건수 총계	59	1,410	2,277	3,511	1,141	6,138	27,446	65,333	71,749	89,635
금액 총계	0	1	1	5	490	4,759	8,408	81,983	163,090	282,113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건수 총계	108,374	143,509	205,776	254,926	250,698	271,308	301,989	367,474	486,476
금액 총계	352,812	455,650	678,795	947,752	1,104,127	1,304,373	1,083,165	1,542,107	2,825,784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건수 총계	612,830	779,369	997,114	1,179,532	838,595	898,623	1,010,470	1,146,623	1,222,192
금액 총계	3,201,781	4,227,113	6,056,272	5,715,350	5,429,682	5,781,761	6,416,338	7,435,901	7,391,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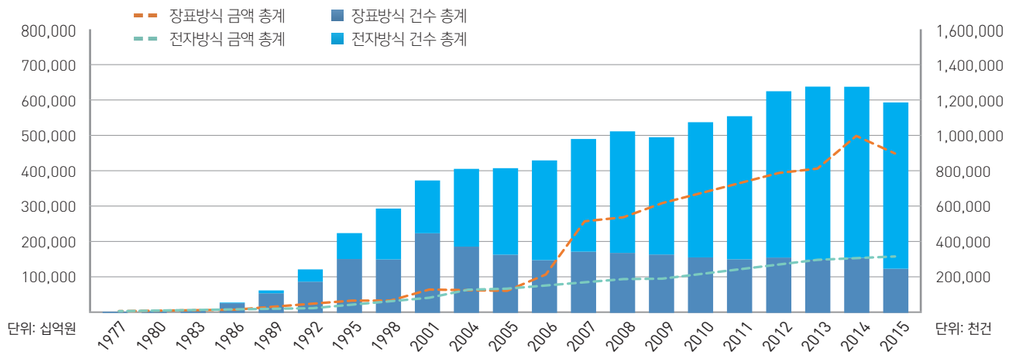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총계	1,012,465	1,027,172	1,091,810	1,094,536	1,098,519	976,657	871,963	822,902	810,208
금액 총계	7,505,827	9,677,298	6,790,061	5,804,002	5,929,350	5,211,499	3,678,264	3,611,577	3,761,789

(단위: 천건, 십억원)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총계	805,375	747,824	648,891	517,334	422,055	327,509	258,385	236,510	220,699
금액 총계	4,405,604	5,180,432	5,444,716	5,808,729	5,554,367	4,416,197	3,837,729	3,695,614	3,427,242

지로 금액 및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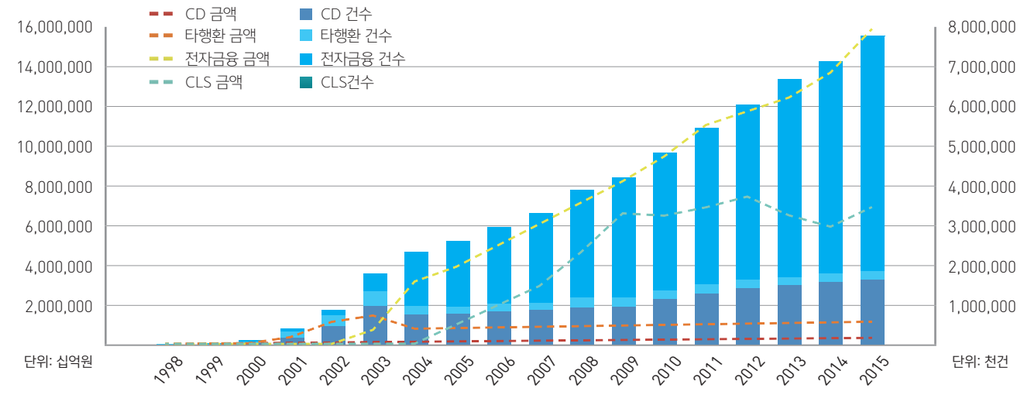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지로 총계		장표방식 총계*		전자방식 총계**		인터넷지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7	**7,817**		7,817		급여계좌이체 1977. 5. 업무개시			
1980	**11,583**		11,580		3			
1983	**22,225**		21,344		881			
1986	**66,276**	**4,980**	61,888	4,165	4,388	815		
1989	**143,424**	**15,099**	124,899	12,471	18,525	2,628		
1992	**277,783**	**28,143**	199,422	19,572	78,361	8,571		
1995	**509,015**	**46,240**	343,740	29,555	165,275	16,686		
1998	**664,820**	**54,616**	341,033	29,747	323,787	24,870	2000. 3. 업무개시	
2001	**844,584**	**98,416**	507,797	60,464	336,787	37,952	71	53
2004	**918,348**	**122,000**	422,374	61,172	495,974	60,828	5,478	17,693
2005	**922,473**	**120,700**	370,932	56,935	551,541	63,765	10,034	33,760
2006	**972,101**	**175,907**	336,680	102,748	635,421	73,159	36,558	50,843
2007	**1,108,339**	**335,025**	390,397	251,517	717,942	83,508	72,236	196,342
2008	**1,157,477**	**353,567**	382,265	262,794	775,212	90,773	80,794	226,149
2009	**1,119,500**	**394,462**	372,054	302,504	747,446	91,958	95,589	247,461
2010	**1,215,066**	**435,927**	354,217	329,165	860,849	106,762	107,388	276,750
2011	**1,253,655**	**477,197**	341,577	358,632	912,078	118,565	125,291	305,878
2012	**1,412,995**	**521,986**	352,896	386,774	1,060,099	135,212	179,499	344,397
2013	**1,441,925**	**544,325**	339,090	398,902	1,102,835	145,423	187,735	362,160
2014	**1,441,803**	**641,700**	350,995	490,556	1,090,808	151,144	199,547	377,401
2015	**1,341,511**	**596,164**	281,940	441,252	1,059,571	154,912	216,359	402,350

* 장표 방식은 장표지로, 지방세, 국고 및 서울시 등
** 전자방식은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등
*** 인터넷지로는 장표 및 전자방식에 포함, 총계에는 제외

10 통계

금융공동망 금액 및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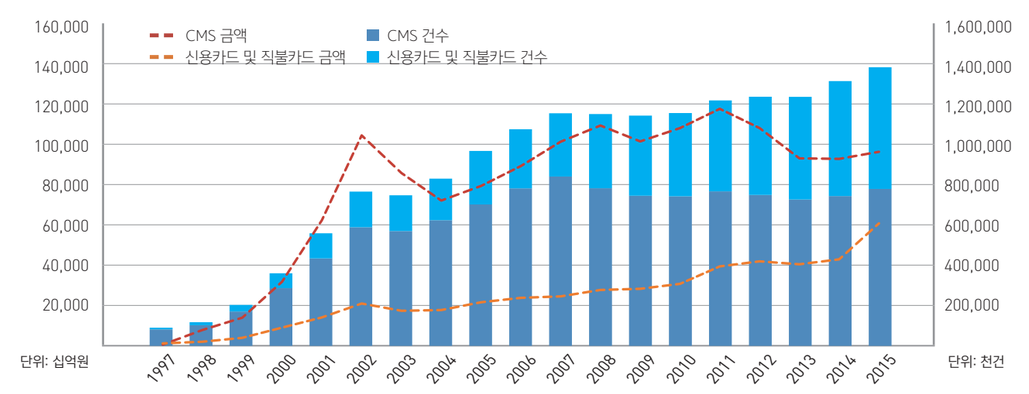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금융공동망													
	건수 총계	금액 총계	CD		타행환		전자금융		지방은행		CLS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6														
1987			1988. 7. 업무개시				ARS							
1988	**5,913**	**481**	5,913	481	1989. 12. 업무개시		1989. 4. 업무개시							
1989	**18,623**	**1,313**	15,569	1,301	16	12	3,039							
1990	**37,016**	**7,209**	20,588	1,886	6,217	5,322	10,211							
1991	**73,885**	**24,691**	27,022	2,843	21,999	21,848	24,864							
1992	**111,560**	**42,237**	37,660	4,334	37,615	37,903	36,285							
1993	**158,242**	**77,006**	53,234	6,836	55,465	70,170	49,543							
1994	**255,616**	**189,798**	102,672	16,407	89,900	173,391	63,044							
1995	**398,242**	**380,036**	182,883	31,906	139,406	348,131	75,953							
1996	**619,670**	**656,197**	312,069	55,671	200,109	600,525	107,492		1997. 6. 업무개시					
1997	**815,687**	**1,060,946**	443,910	79,868	245,281	979,401	125,731		765	1,676				
1998	**870,943**	**1,236,835**	475,789	78,908	270,844	1,154,295	122,595		1,715	3,632				
1999	**1,045,199**	**1,700,080**	611,406	107,516	323,617	1,589,196	108,774	홈 · 펌뱅킹 중계	1,402	3,368				
2000	**1,637,540**	**1,982,758**	923,900	157,275	608,142	1,822,116	103,941	2001. 4. 업무개시	1,557	3,367				
2001	**1,773,410**	**2,410,178**	966,312	206,590	380,951	1,486,810	423,907	712,491	1,543	4,282			697	4
2002	**2,203,243**	**3,381,668**	949,596	249,026	315,642	1,097,726	930,717	2,030,433	1,183	4,431			6,105	52
2003	**2,189,198**	**3,920,444**	803,569	215,854	260,304	895,920	1,114,005	2,805,205	684	3,390	2004. 12. 업무개시		10,636	75
2004	**2,329,444**	**4,184,272**	755,744	188,857	224,032	801,925	1,332,359	3,179,984	589	2,404	2	10,993	16,718	109
2005	**2,608,640**	**5,840,978**	775,107	205,636	180,632	788,351	1,632,978	3,926,142	485	1,854	261	918,765	19,177	230
2006	**2,960,684**	**7,901,116**	841,603	235,590	182,521	806,080	1,911,094	4,939,405	392	1,739	748	1,917,939	24,326	363
2007	**3,316,648**	**10,101,958**	883,737	245,389	164,651	812,205	2,238,236	6,079,917	347	1,577	878	2,962,331	28,799	539
2008	**3,896,752**	**12,918,480**	941,609	245,057	245,383	812,555	2,678,449	7,173,614	309	1,379	985	4,685,219	30,017	656
2009	**4,214,118**	**15,997,544**	953,923	244,519	236,434	803,903	2,989,338	8,282,385	270	1,143	1,003	6,664,725	33,150	869
2010	**4,840,402**	**17,194,404**	1,150,711	259,205	217,219	814,484	3,435,412	9,545,623	248	1,034	1,269	6,553,938	35,543	20,120
2011	**5,459,613**	**19,432,545**	1,294,971	277,872	214,664	866,470	3,908,422	11,134,905	224	1,049	1,391	6,978,064	39,941	174,185
2012	**6,041,122**	**20,756,991**	1,424,346	295,811	206,924	891,734	4,370,290	11,852,924	195	1,027	1,432	7,519,449	37,935	196,046
2013	**6,665,694**	**20,540,638**	1,499,195	311,626	201,784	928,781	4,923,226	12,536,685	178	1,096	1,421	6,563,293	39,890	199,157
2014	**7,120,267**	**21,358,681**	1,577,798	336,446	203,274	1,044,804	5,293,003	13,805,981	160	870	1,410	5,982,276	44,622	188,304
2015	**7,769,904**	**24,754,426**	1,633,028	356,811	203,345	1,165,874	5,880,971	16,032,803	135	1,021	1,586	6,988,169	50,839	209,748

* K-CASH, 물품대금결제, 계좌이체 PG, 외화자금이체 등

e사업 금액 및 건수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e사업							
	건수 총계	금액 총계	CMS		신용카드		직불카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4. 업무개시			
1995	**67**	**8**			67	8	1996. 2. 업무개시	
1996	**2,963**	**431**	1996. 5. 업무개시		2,927	430	36	1
1997	**92,163**	**3,015**	82,614	1,195	8,952	1,817	597	3
1998	**120,599**	**11,202**	103,552	8,526	14,967	2,672	2,080	3
1999	**210,428**	**19,209**	172,717	14,582	32,774	4,621	4,938	6
2000	**370,130**	**41,812**	289,681	32,466	74,499	9,335	5,950	11
2001	**572,641**	**77,745**	438,786	62,943	126,204	14,791	7,651	10
2002	**784,268**	**126,835**	595,748	105,109	178,889	21,719	9,631	7
2003	**768,294**	**104,498**	576,418	86,400	179,617	18,090	12,259	8
2004	**851,790**	**91,191**	630,765	72,711	208,734	18,473	12,291	6
2005	**994,023**	**102,391**	709,929	80,000	268,665	22,385	15,429	6
2006	**1,105,625**	**114,548**	790,631	89,854	296,553	24,583	18,441	111
2007	**1,183,481**	**127,338**	850,207	101,922	317,272	25,337	16,002	79
2008	**1,176,951**	**138,500**	791,486	109,952	372,277	28,491	13,188	57
2009	**1,165,519**	**131,226**	753,779	102,110	401,744	29,071	9,996	45
2010	**1,175,984**	**140,313**	750,997	108,730	417,689	31,544	7,298	39
2011	**1,237,477**	**158,591**	775,434	118,280	456,625	40,277	5,418	34
2012	**1,254,164**	**151,562**	757,587	108,726	493,209	42,813	3,368	23
2013	**1,252,751**	**135,026**	734,641	93,706	515,547	41,304	2,563	16
2014	**1,331,516**	**137,240**	751,987	93,413	577,349	43,816	2,180	11
2015	**1,401,133**	**158,702**	787,859	96,942	610,711	61,752	2,563	8

발 간 후 기

우리나라 지급결제 역사의 주역으로 함께 해온 금융결제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모든 기초를 확고히 세운다는 "이립(而立)"의 나이에 들어선 금융결제원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금융결제원 30년사」(이하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약 9개월의 힘든 집필, 편집과정 끝에 30년사라는 한권의 책을 담아낸 발간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30년 역사를 새로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발간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임 ·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련 학계 등에서 공감을 얻고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객관성과 함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실무작업반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발굴하기 위해 야근, 주말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집필진과 실무위원들은 혼신의 힘을 쏟아 원고 작성과 감수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9개월은 금융결제원의 10년 전 모습과 성장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全) 임 · 직원뿐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도 동참하셔서 큰 힘을 실어주신 것은 뜨거운 감동으로 남습니다. 인터뷰와 기고문, 개인적으로 간직하던 사료들과 앨범 속의 사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30년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금융결제원의 소중한 역사의 조각들로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담지 못한 사료들과 애환이 담긴 각종 기록들을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40년사 발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 되고 보완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번에 발간되는 30년사가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급결제 발전사를 비춰주는 귀중한 사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30년사 발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주신 실무위원 및 집필위원, 실무작업반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보람과 수고의 땀방울을 닦으면서 그동안의 노고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또한 30년사가 나오기까지 기획, 편집, 인쇄 전 과정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다니기획 추기숙 대표이사님과 최미진 이사님, 함정임 부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금융결제원 30년사」 발간위원회

「금융결제원 30년사」를 만든 사람들(가나다순)

발간위원회	**위원장**	전무이사	신동원
	위 원	본부장	김영준, 박연상, 이종규, 조화건, 한창현
		부 장	김승호, 김연수, 김 인, 김충진, 남진석, 류재수
			박순만, 박완성, 박철우, 손희성, 안순용, 이순락
			임경빈, 임병안, 장건흥, 장우찬, 최 영, 최재희
		실 장	고재연, 김종찬, 문관섭, 서성윤, 정대성
실무위원회	**위원장**	소 장	정길용
	위 원	팀 장	고광수, 고평기, 노제원, 성재경, 안윤환, 오병일
			오일석, 윤정환, 윤철표, 이규현, 이동욱, 이병화
			이상준, 이송원, 이영진, 장병환, 차병주
집필위원회	**위 원**	팀 장	최대원
		부장대우	권성호, 김근일, 김준문, 김진수, 김현정, 노선미
			류혜선, 배기헌, 배승만, 백미연, 유수상, 유영구
			정재희, 최규선, 최재준, 황규현, 황의철
		차 장	김상환, 김순일, 박지현, 백승주, 설정환, 성재철
			손용황, 심희원, 양철호, 왕양한, 윤종달, 이창희
		과 장	김태웅, 신휴근, 오영석, 윤태권, 이성준, 천장욱
		과장대우	권혁진, 양예나
실무작업반		반 장	김시홍
		차 장	손동진
		과 장	정현진

30년사 편집을 마치며.

금융결제원 30년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작업은 사실상 한정된 시간과 지면 내에서의 고투였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배들이 닦아 놓은 10년사, 20년사의 땀과 노력, 집필진들의 훌륭한 원고 덕분에 30년사 발간이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사료들을 하나하나 접하고 정리하면서 시대의 고비마다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금융결제원의 역동성과 저력, 아픔과 성장의 과정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사에는 더욱 뿌듯하고 자랑할 만한 새로운 역사들이 가득 담기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미래의 「금융결제원 40년사」 발간실무작업반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도와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무작업반)



지급결제 30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

금융결제원 30년사
1986-2016

발 행 처 금융결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Tel. 1577-5500 / www.kftc.or.kr
발 행 인 이흥모
발 행 일 2016년 11월

기 획 제 작 (주)다니기획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3층(삼성동 청림빌딩)
Tel. 02)545-0623 / www.dani.co.kr

총 괄 책 임 추기숙
윤 필 김문경
기 획 총 괄 최미진
기 획 진 행 함정임
교 정 교 열 문현경, 이 송, 권태원
아트디렉터 최희주
디 자 인 남용모, 박수연, 정재명, 강승모
사 진 촬 영 이강우(비인스튜디오)
제 작 진 행 사재웅
인 쇄 서진문화인쇄

I S B N 978-89-97110-88-9

Copyright© 2016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본 도서에 수록된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결제원